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1호
1994

머리말 ..... 최응구 1

■論文

周時經「말모이」의 底本에 대하여 ..... 김민수 3
언어와 이념 -국어사전의 경우- ..... 김진우 19
료동에서의 조선민족의 활동에 대하여 ..... 엄성흠 29
Korean Dumping in the United States: A Fictitious Crime? ... 윤여민 40
Interdependence in Northeast Asia: The Role of North Korea 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 K.A.NamKung 59
한국공업화에 있어서의 국가 · 재벌관계와 "민주화" ..... 고용수 69
新東北亞時代의 韓國과 日本의 役割 ..... 김진현 84
Korea철학사 연구 제문제에 관한 몇 고찰 ..... 헬가 · 피히트 97
한국음악문화의 사회적 특성 ..... 이병원 110
리조전기과학기술사의 특징에 대하여 ..... 임정혁 120

■특집 《제2차 통일을 지향하는 철학》

주체적민족관과 조국통일의 당면문제 ..... 박승덕 129
조국통일과 인민대중의 주동적역할 ..... 강명철 146
전민족대단결은 우리 민족구원의 옳바른 길 ..... 리천수 158
원불교의 상생철학과 통일관 ..... 김영두 170
민족문제에 관한 철학적 전망 -생산양식의 변동과 문화적 생산력- ..... 김도종 177
통일을 지향하는 철학 -민족의 공동체 의식과 화쟁사상- ..... 오형근 187
천도교의 평화관 -조화사상과 관련하여- ..... 노태구 195
남한의 그리스도교신학은 겨레의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송기득 219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ISKS)

머 리 말

국제고려학회가 1990년 8월 일본 오사까에서 창립되여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학회 임원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코리아학 소장학자 국제학술회의》《국제고려의학 학술회의》《북경서화세미나 및 작품전시회》《한반도문제의 재검토－군비통제, 핵문제, 경제개혁－》《중국조선족교육의 특징 및 전망》《제4회 이중언어학 국제학술회의》《제1차 미국코리아학 국제학술회의》《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회의》《여성문제회의－한국과 재미한인사회에 있어서 성, 문화, 정치－》등 학술모임이 본학회의 단독주최 혹은 다른 학술단체와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여 좋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본학회는 중국, 일본, 미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독일,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몽골 등 나라의 천여명의 학자들을 회원으로 한 큰 학술단체로 발전하였습니다.

1990년 8월 제2차 총회에서 학회지를 발간하기로 결정이 된 이후 본부사무국성원들의 노력으로 오늘 드디여 국제고려학회 학회지 《국제고려학》창간호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이 창간호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나라의 이름있는 학자들의 론문을 실을수있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훌륭한 론문을 보내주신 저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드리는바입니다.

아울러 본학회지가 회원 여러분들과 독자 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속에서 보다 훌륭한 학술지로 발전하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최 응 구

周時經, 「말모이」의 底本에 대하여

金　敏　洙

1. 緖論 : 「말모이」의 성격과 의문점

朝鮮光文會에서 1913년에 편찬하기 시작했던 「말모이」는 이미 알려진 대로 내국인의 주관 아래 내국인에 의하여 편찬된 최초의 국어사전이다. 開化期 1890년대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국어사전의 편찬이 이때까지 착수되지 못했다. 또, 10여종의 사전이 기왕에 있었지만, 그것은 다 외국인에 의한 외국어의 對譯辭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사이 전설처럼 기록만 전하던 「말모이」는 1969년에 원고 일부가 발견됨으로써, 역사적 사실이었음이 실증되고, 이 원고에 대한 사실규명이 관심사가 되었다.

「말모이」는 六堂 崔南善(1890~1957)이 합방후 1910년 10월에 창립한 朝鮮光文會의 기획으로[1]한힌샘 周時經(1876~1914) 주재하에 편찬했으나 출판되지 못하고, 그 원고만이 역사의 물증으로 잔존하게 되었다. 이 원고는 내제 1, 알기 2, ㄱ~갈죽 153, 찾기 50, 字劃찾기 26, 총 232면에 장수로는 117장의 분량이다. 李秉根(1977)에서는 원고를 발굴한 소장자로서 진품임을 확인하고 凡例인 알기를 중심으로 해명하고, 李秉根(1986)에서는 알기를 영인, 본문을 조판으로 공개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2].

필자는 1976~86년에 소망하던 「歷代韓國文法大系」 102책을 기획하고 편집하면서 찾아낸 희귀한 자료 가운데 이와 밀접한 李奎榮(1890~1920)의 비망록 「온갖것」, 저술 「한글적새」, 기록 「한글모죽보기」 등에 접하는 행운을 얻었다. 이런 여건하에 「말모이」는 朝鮮光文會에서 1913년 9월에 周時經, 金枓奉, 李奎榮 등이 편찬하기 시작했고, 그 원고 제1책 零本은 1914년 3월경에 붓글씨로 정서하기 시작했으며, 「말모이」는 1916년에 「辭典」으로 개고하다가 완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혔다(金敏洙 1983).

「歷代韓國文法大系」를 완간한 후, 일찍부터 구상하던 개인전집 편찬계획을 구체화하여 1987년 4월에 착수한 「周時經全書」 전6권의 편집이 1989년 7월경에 완결되었다. 출판은 1992년 2월로 늦어졌으나, 이 책에는 「말모이」와 관련된 자료도 거의 망라되었다[3]. 그사이 1988년 11월 16일 六堂文庫에서 「말모이」의 저본으로 짐작되는 芳賀矢一 著 「新式 辭典」을 발견했고, 全書 속의 해설에 이 점을 새로 덧붙였다(金敏洙 1992. 4 : 137). 이 저본은 그 편찬과정의 규명에 있어 중요한 물증일 것이다.

「말모이」는 비록 출판되지 못했더라도, 최초의 국어사전으로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편찬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六堂文庫에

있는「新式 辭典」은 앞뒷장이 떨어져 저자도 발행사항도 알지 못할 정도로 낡았다. 다른 관련자료「俗語辭海」도 역시 몹시 낡아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되었던가를 말하는 표시로 느껴졌다. 그래서, 이들 문헌의 출판사항을 조사하고 확인하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국내에서는 그 실물을 찾아낼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선 낙장이 없는 이들 문헌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마침 국제고려학회 초청으로 1992년 3월에 大阪을 방문하는 기회에 고서점을 열심히 뒤졌으나 찾기에 실패했다. 그 행동을 옆에서 지켜본 大阪經濟法科大學 吳滿 교수는 國立國會圖書館 소장본「新式 辭典」의 부분복사를 4월 13일자 항공우편으로 부쳐 왔다. 그러나, 그것은 1922년 축책판의 1925년 29판이었다. 1912년 초판사항이 없어서 매우 섭섭하나, 짐짓 적극적으로 협조의 노고를 아끼지 않은 吳교수의 우정에 깊이 감사한다.

1993년 1월 공동연구를 위한 早稻田大學의 초청으로 東京을 방문하는 기회에 다시 찾아 나섰다. 國會圖書館에서는 무관한 芳賀矢一의「改修 辭典」(1931)만 확인하고, 早大圖書館에 신청한「俗語辭海」는 판권이 없는 慶應大學 소장본이었다. 후자는 시중 日本書房에서 실물을 찾아 확인했지만, 정작 필요한 저본의 초판은 끝내 접하지 못했다. 그래서, 문제되는 초판연월은 부득이 축책판에 있는 序言의 기년 大正元年八月三十日에 의하여 편의상 1912년 9월로 상정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4].

본고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잔존한「말모이」원고 제1책이 언제 작성되었는가를 더 확실히 하고, 또 그 저본이 된 사전은 무엇인가를 실증하고자 한다. 첫째, 불확실한「말모이」원고의 작성시기는 저본의 출판연월에 근거하여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상한「말모이」의 규모는 실증된 저본을 통하여 잔존한 부분원고를 토대로 그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기록이 미비하고 원고조차 산질된 최초의 국어사전에 관하여 70년 전의 사실을 얼마큼 밝힌 결과가 될 것이다.

2.「말모이」稿本의 起緣과 성립과정

국어사전의 필요성은 이미 언급한 대로 개화초기부터 이구동성으로 제기해 왔다. 당시는 다음 인용문에서 보듯이 1)언문옥편, 2)국문옥편, 3)國文字典, 4)國語辭典 등, 명칭을 지금과 달리 옥편이라고 하다가 후에 字典, 辭典이라고 했고[5], 그 완성은 국어를 확립함으로써 영원한 자주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요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이것은 국어의 공통적 기준이 될 표준사전을 널리 보급하여 서구 문명국과 같이 인민을 잘 가르치고 외세의 침범을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6].

특히 周時經은 1897년에 다음 2)와 같이 이미 국문옥편의 중요성만 아니라 편찬에 관한 구상을 제시했다. 즉, 표제어가 될 어휘의 수집과 주석, 발음표시, 행문의 漢字混用과 橫組 등을 제안했는데, 어휘수집은 다음 7)과 같이 1909년에 행동으로 나타났다. 또, 발음표시, 한자혼용, 횡조 기타는「말모이」고본에서 실현되어 있다. 그래서, 최초의 국어사전을 편찬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하 인용문에

서 ( )속, 띄어쓰기와 맞춤법, 오자의 교정 등은 필자가 한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1)리봉운, 「국문졍리」(1897. 1) 셔문

리치를 궁구하야 언문옥편을 만들어 죠야에 발행하야… 행문케 하고 동몽도 교육하면 우리나라 글이 자연 밝을것이오 독립권리와 자쥬사무에 뎨일 요긴한것이니 여러 군자는 깁히 생각하시기를 바라압

2)쥬상호(시경), "국문론", 「독립신문」 2-114(1897. 9. 25) 1~2면, 2-115(1897. 9. 28) 1면

불가불 국문으로 옥편을 만들어야 할지라 옥편을 만들자면 각색 말의 글자들을 다 모으고 글자들마다 뜻들도 다 자세히 내려니와 불가불 글자들의 음을 분명하게 표하여야 할터인데… 음이 놉흔 글자에는 뎜 하나를 치고… 옥편을 꾸밀것 갓흐면 누구던지 … 옥편만 펴고 보면 환하게 알지라

한문을 아는 사람일지라도 한문의 음만 취하야 써서 노은고로 흔히 열자면은 일곱이나 여듧 은 모르나니 차라리 한문글자로나 쓸것 갓흐면 한문을 아는 사람들이나 시원이 뜻을 알것이라… 또 글씨를 쓸 때에는 외인편에서 시작하야 오른편으로 가며 쓰는것이 얼마 편리한지라

3)李能和, "國文一定意見" 「皇城新聞」 2196(1906. 6. 2) 1면.

愚以爲一定國文 其法有三 一 延請博學多聞士人 模倣「言泉」〔日文字典之最良者〕 輯述國文字典一部事… 三 輯述國語規範一冊 添入國語一科於小學校事

4)周時經, 「대한국어문법」(1906. 6) 跋文

말과 글은 한 社會가 組織되는 根本이요 經營의 意思를 發表하어 그 人民을 聯絡케 하고 動作케 하는 機關이라… 祖先의 말과 글을 닦지 아니하고 他國의 말과 글이 들어옴을 받아 困하어 主權을 잃고 그 奴隸가 되는 者는 이로 다 말할수 없거니와… 各種 字典 文典 敎科書가 極히 具備하되 오히려 不足할가 念慮하어 옛것을 곳치고 새것을 더하며 다사리고 또 다사려서 所用에 맛당하도록 하고…

5)朴太緖 "國語維持論" 「夜雷」 1(1907. 2. 5), 8~12면.

其矯弊方策이 惟有一焉하니 分條論左하노라… 〔三〕 …國語辭典을 編纂하야 國語를 一定하고 永久히 保存하야 准用할 事

6)周時經, "必尙自國文言" 「皇城新聞」 2447(1907. 4. 6) 1면.

字典 文典 讀本을 著成하여 더욱 精利한 文言이 되게 할뿐더러 我全國 上下가 國文을 我國의 本體로 崇用하여 我國이 世界에 特立되는 特性의 表柄을 堅持하고 自由萬萬歲를 永享케 伏乞하나이다.

7)李奎榮, 「한글모죽보기」(1917)기록

會錄 四二四二(1909)年 十月 二十四日(日曜) 第 回 總會를 私立靑年學院內에 開하다. 古語, 方言, 蒐集하기와 本會를 當局에 請認하자는 周時經 先生의 動議가 되다.

朝鮮言文會規則 第九條 會員의 義務는 左와 始함 一 入會 後 一個年 內에 一千種 以上의 朝鮮語를 蒐集하야 本會에 提出할 事(＊周時經 작성, 1913. 3. 23. 개정)

현존하는「말모이」는 아래 10)에서 보듯이 기록과 서지적 방증에 의하여 작성시기의 상한연대를 1914년 3월로 추정했다(金敏洙 1983). 다시 부연하면, 다음 8)과 9) 기록은 편찬을 시작한 시기가 1913년 9월임을 입증하고, 10)의 사실은 고본의 원고지가 빨라서 1914년 3월에 인쇄되었음을 뜻한다[7]. 물론 이전에 원고지를 인쇄하려고 만든 활자라고 하기는 어렵고, 기껏해야 잡지인쇄에 앞서 1~2개월 전에 주조했을 여지는 있겠다. 이때는 周時經이 작고 4개월 전「말모이」를 주관하던 시기였다.

8)검돌(李奎榮), 稿本「온갖것」 들(1913)

네즘 두온 네열 여섯해(단기 4246년, 서기 1913) 아홉달(9월)에 朝鮮光文會 朝鮮語字典 編纂하는데 일을 본 뒤에 보고 들은바를 가리어 적음. 끗없는 꼿속땅 젊은손(李奎榮) 씀.

9)김두봉,「조선말본」(1916. 4) 권두

머리말 …지난(1914년) 여름에 우리 한힌샘(周時經) 스승님이 돌아기시고… 알기ㅂ. 이 글은「말모이」에 쓰랴고 그러께(1913년) 여름에 열물앞,

무원어른 시골집에서 만들엇던것인데 지난(1914년) 가을붙어 이를 좀더 다스리어 이제에 마친것이니라.

10)「말모이」 고본 제1권 원고지에 쓰인 한글자모의 활자가 崔南善의 인쇄소 겸 출판사 新文館에서 발행한 아동잡지「아이들보이」 7호(1914. 3)~11호(1914. 7) 권말에 연재된 풀어쓰기 "한글풀이"의 활자와 같다.

11)朝鮮光文會 編纂,「新字典」(1915. 12) 叙我의 言語와 關繫가 深切한 語文의 對譯辭書를 作成함은 辭典計劃의 一要件이 되니… 今此小編도 또한 其中의 一이오 未久에 踵出할 我語小典과 我語小法 等이 다 其一이라… 時는 歲乙卯(1915년) 仲秋節이라 崔南善이 曲稿 畔會樓에서 書하노라

12)김두봉,「조선말본」 판권뒤 광고

辭典 朝鮮光文會 編纂 近刊

朝鮮時語 五萬의 標準을 定하고 意義를 譯한것이니 朝鮮有語以後에 初有한 大著라 우리의 精神的 血液이 從此로 一段의 生機를 加得할지니라. 京城 新文館 發行

朝鮮光文會에서는 11)과 같이 창립하자「新字典」 편찬에 착수하여 1915년 9월에 일단락을 지었다. 그리고 이 때에 이와 쌍벽이 될 小辭典을 미구에 속간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 시기에 그 편찬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면, 그것은 1913년 9월에 착수하여 1914년 3월 이후에 고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위의 고증이 현실성을 갖는다. 특히 편찬에 착수한 시기는 저본이 분명한「新式 辭典」이 1912년 9월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더 소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한편, 12)「辭典」의 근간광고는「말모이」의 규모와 탈고가 임박한 시기를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즉, 5만 어휘의 실용사전 규모로 계획하여 이윽고 1914년 5월경「말모이」고본 제1권이 이루어졌고, 비판이 가해진 이 고본의 체재를「辭典」체재로 바꾸는 개고가 1916년 전후에 마무리를 전망할 단계가 되었을 것이라는 시사로 해석된다. 이 체재의 전환은「辭典」의 원고로 보이는 고본 ㅁㅂ 합본이 六堂文庫에 잔존한 사실로 입증된다[8]. 그러나, 예고까지 한 이것도 출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편찬에 착수하기 이전의 상황에 다소 의문이 없지 않다. 우선 분명한 것은 위 11)기록대로「新字典」다음에「말모이」출판을 기획한 점이다. 따라서, 1910년 朝鮮光文會 착립후「말모이」에 대한 준비로는 위 7) 1913년 3월 어휘수집의 움직임, 9)1913년 7~8월 김두봉의「말모이」용 문법서 집필등이다.「新字典」을 단락짓자 1913년에 그 편찬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이지만, 어휘수집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기이한 희귀자료「ㄷ」에 언급할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이 문헌은 子音 10종과 母音 6종과의 가능한 집합을 풀어쓰기로 보인 필사본이다. 10권 분량의 제3권으로 추정되는「ㄷ」은 책명도 내용도 알 수 없는 奇書에 속한다[9]. 金敏洙(1992. 4. 537~) 참조. 이것이 수학적 集合을 이용한 어휘수집의 자료라고 하면, 감탄할 기묘한 발상이며 수리에 밝은 周時經의 창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편찬초기에 단시일에 작성된 표제어 목록이라고 하겠고, 그 작성시기는 이미 추정한 1912년보다 1914년 편찬초기 혹은 검증기준으로 이후에 작성했을 여지가 많다.

어쨌든,「말모이」는 1897년 국어사전의 필요성이 제기된지 16년만에, 1911년에 朝鮮總督府에서 사전편찬에 착수하기 2년 늦게 착수했다. 강국의 위협하에 자주독립의 상징으로 의식하고, 국어의 표준사전, 실용소사전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당초에「朝鮮語字典」이던 명칭을「말모이」로 바꾸고, 5만 어휘의 표준사전「辭典」으로 개편하다가 끝내 출판하지 못했다. 日本의「新式 辭典」을 대본으로 했는데, 명칭에서도 3종이 공통성을 갖고 있다. '辭典'이란 말을 우리말로 풀면 '말모이'로 바뀌기 때문이다.

요컨대,「말모이」는 朝鮮光文會의 사업으로 崔南善의 계획에 따라 1913년 9월에 착수했는데, 朝鮮光文會「新字典」의 편찬(주로 새김부분)에 종사하던 中央學校 교사 한힌샘 周時經의 지도, 朝鮮光文會 사무원 배못 金枓奉을 주무로 준비하고, 검돌 李奎榮을 영입한 이들 편찬진이 1914년 5월경 그 고본 제1책을 작성했던 것이다. 이것은 최초의 국어사전의 물증으로서 귀중한 문화재이며 역사적 가치가 큰 유물이다. 다만, 그 제2책 이하의 작성여부는 실물이 없는 현재로는 추정할 길조차 없다.

3.「말모이」의 底本 : 표제어휘의 설정

1913년 9월에 편찬하기 시작한「말모이」는 1단계로 어휘수집을 하고, 2단계로 표제어의 주석을 했을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2단계의 표제어 배열순서, 주석방

법, 문법표시, 용어구분 등은 凡例인 알기에 밝혀져 있고, 원고의 글줄을 국한혼용한 것 등은 위 2) 기록과 일치한다. 다만,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이미 편찬한 「新字典」의 형식을 따랐다고 해야 하겠지만, 예상 밖이다. 띄어쓰기는 1910년 周時經, 「國語文法」 등의 전례로 보아 띄어썼을 것으로 짐짓 예상했기 때문이다.

한편, 사전이란 당대의 광범한 지식을 종합한 편람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헌을 섭렵하고 다른 사전의 체재를 널리 참조해서 이룩된 것이다. 즉, 사전편찬에서 이런 섭렵과 참조는 으레 있어야 하는 것이며, 사전편찬자는 여러 분야의 지식을 체계있게 종합한 정리자이며, 모든 지식의 창조자일 수는 없다[10]. 특히 최초의 사전편찬일 경우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런 참고는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사전편찬의 원칙에 비추어 그러한 부분적 섭취가 표절이라든가 모방이라고는 하지 못한다.

이미 「말모이」의 한 저본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남은 문제는 저본인가 아닌가의 실증이다. 저본으로 지목된 芳賀矢一 著 「新式 辭典」은 1912년 9월에 발행되어, 우선 1913년 9월 참조하기에 무리가 없다. 참조한 사실은 체재의 유사점과 주석의 유사점 등에서 쉽게 판정될 성질이다. 다음 13)에서 비교한 사전구성의 체재는 공통점이 적지 않다. 특히 같은 내용의 찾기와 字劃찾기는 다른 사전에서는 전례가 없다. 따라서, 선행하는 「新式 辭典」 체재를 참조한 것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11].

「新式 辭典」은 漢字로 표기하는 표제어를 漢字辭典式으로 배열하여, 音順으로 색출

13)사전구성의 체재와 색인

1)「新式 辭典」(1912)

序言 1~2
緒言(3항 29개조) 1~8
字音假名遣表 1~6

○語音索引 1~56
○漢字索引 1~92
本文(あ~を) 1~1573
附錄 固有名辭典 1~
版權

2)「朝鮮語辭典」(1920)

凡例1~3

諺文索引(음절색인)1~4
○漢字音索引1~17
○漢字劃索引1~15
本文(가~히)1~983

版權

3)「말모이」제1책(1914)

알기(6개조)1~2

○찾기(표제어색인)1~50
○字劃찾기1~26
本文(ㄱ~갸)1~153

14)표제어의 배열방식(+표 漢字語, 제名詞)

1)「新式辭典」(3단계)

かつ【褐】(名)……
褐藻(…)(名)〔植〕……
褐色火藥(…)(名)……
褐色人種(…)(名)……
褐石(…)(名)……(하략)
かん【監】一…… 二……
監禁(…)(名)……
監獄(…)(名)……(중략)
監督(…)(名)一…… 二〔法〕…
監督官廳(……)
監督書記(……)
監督判事(……)
三……(하략)
かん【感】(名)一… 二…
感應(…)(名)一… 二…
三〔理〕…－こいる(－coil)
－電流(－でんりゅう)(중략)
感覺(…)(名)一… 二…
感覺器(…)(名)……

2)「朝鮮語辭典」(3단계)

갈〔褐〕
褐寬博(갈관박)(名)……
褐色(갈ㅅ식)(名)……

감〔監〕
監〔감〕(名)……
監考(감고)(名)……
監官(감관)(名)……
監軍(감군)(名)……
監軍牌(감군패)(名)…
監禁(감금)(名)……(중략)
監督(감독)(名)……(하략)
감〔感〕
感覺(감각)(名)……(중략)
感動(감동)(名)……(중략)
感謝(감샤)
感謝無地(감샤무지)(名)……(중략)
感應(감응)(名)……(중략)

3)「말모이」(2단계)

＋갈식〔褐色〕(제)……－화약
〔褐色火藥〕(제)……－조〔褐色藥〕(제)
〔植〕……－인종
〔褐色人種〕(제)……(중략)
＋갈조〔褐藻〕(제)〔植〕……
＋감〔監〕(제)……
＋감고〔監考〕(제)……
＋감군〔監軍〕(제)……(중략)
＋감독〔監督〕(제)…－서긔〔監督書記〕(제)
…－청〔監督廳〕(제)－판ᄉᆞ〔監督判事〕(제)…(중략)
＋감옥셔〔監獄署〕(제)……

＋감〔感〕(제)……(중략)
＋감각〔感覺〕(제)……(중략)
＋감동사〔感動詞〕(제)〔文〕…(중략)
＋감샤〔感謝〕(제)…－하(엇)…(중략)(※엇形容詞)
＋감：응〔感應〕(제)ㄱ…ㄴ〔理〕…－긔뎐긔

感覺中樞(…)(名)…(중략)
感じ(…)(名)……
感じ入る(…)(動自四)…(중략)
感觸(…)(名)……
感觸器(…)(名)……(중략)
感歎詞(…)(名)〔語〕…(중략)
感動詞(…)(名)〔語〕…(하략)

か【彼】(代)……
カーノ(彼の)(代)……
カノーヨ(彼の世)(名)……
カーハ(彼者)……
カハータレドキ(彼者誰時)(名)……
カハータレボシ(彼者誰星)(名)……
カーヤツ(彼奴)(代)……

かいくらみどき【掻暗時】(名)……
かいぐり【掻繰】(名)……
かいぐる【掻繰る】(動自四)……
かいこす【掻越す】(動自四)……
かいこむ【掻込む】(動自四)……
かいしき【掻布】(名)……
かいぞへ【掻添】(名)……(하략)

感歎(감탄)(名)……(하략)
감(名)……
감(名)……
감나무(名)……
감복숭아(名)……
감참외(名)……

〔感應起電機〕(제)〔理〕…ー뎐류〔感應電流〕(제)〔理〕…ー코일〔感應코일(Induction coil)〕(제)〔理〕……(중략)
＋감촉긔〔感觸器〕(제)…(중략)
＋감탄ᄉᆞ〔感歎詞〕(제)〔文〕…(하략)
감(제)…ー대(제)……
감：(列)…ーナ무(제)……

깜박(억)……
깜벅(억)ㄱ… ㄴ… ーー하(만)ㄱ… ㄴ…「ー거리. ー대. ー이.」
깜작(억)… ーー하(밖)……「ー거리. ー대. ー이.」ー이(제)……(중략)
깜작ー스럽(엇)……
깜작ー이(列)……(중략)
깜적(억)……(하략)

하는 語首索引과 총획수로 색출하는 漢字索引이 필요하다. 「말모이」는 이에 대하여 위 14)의 예에서 보듯 단어를 母표제어로 거기에 복합어를 子표제어로 잇달아 수록했다. 이것은 오히려 「辭林」(1909)의 배열과 흡사하고, 이런 배열에서 굳이 찾기를 만든 것은 지나치다[12].

그러나, 15)표제어의 대조에서 보듯 추종치만 않고, 국어어휘를 위주로 하여 중심있게 선별적으로 취사한 것은 참조를 넘은 선택이라고 하겠다.

15)표제어의 대조(「家」의 예)

1)「新式 辭典」에만 수록된 어휘 : 家宰, *家臣, 家稅, *家傳, 家範, 家僕, 家名, 家務, 家紋, 家祿, 家格, 家學, 家瑾, 家雞, 家系, *家兄, 家計簿記, 家憲, *家嚴, 家公, 家財, 家相, 家相見, 家資, 家土, 家慈, 家質, 家什, 家集, 家從, *家政, *家族, 家尊, *家畜, 家長權, 家猪, 家庭小說, 家庭敎育, 家兎, *家譜, 家父, 家婦, 家扶, 家老, 家齡, 家鴨(46) *표(9)「朝鮮語辭典」수록

2)「말모이」에만 수록된 어휘 : 家家, 家家禮, *家間, 家間事, 家契, 家故, 家口, 家規, 家基, 家春, 家券, 家垈, *家庭見聞, 家庭之學, 家亂, 家禮, 家母, *家門瑕敝, 家變, *家兵, 家夫, 家殯, 家貧, 家蓼, 家舍, 家書, 家勢, 家屈, 家率, 家數, 家信, 家業, 家役, *家屋稅, 家用, 家運, 家人父子, 家藏什物, 家主, 家座, 家座嫡奸, 家親, 家僧, *家宅搜索, *家宅侵入罪, 家品, 家行, 家禍(48) *표(8)「朝鮮語辭典」무수록

3)공통된 어휘 : 家, 家計, 家具, 家國, 家君, *家禽, 家內, 家奴, 家庭, 家丁, 家弟, 家道, 家督, *家督相續, *家督相續人, 家僮, *家例, 家累, 家門, 家法, 家事, 家産, *家山, 家聲, 家塾, 家乘, 家釀, 家屋, 家人, *家資分散, 家作, 家藏, 家長, 家中, 家宅, 家風, 家鄕, 家訓(38), *표(6)「朝鮮語辭典」무수록

16)표제어 '家' 분포의 비교

1)「新式 辭典」 84개와 「말모이」 86개 비교 : 공통 38개, 비공통 84−38=46개, 86−38=48개

2)「新式 辭典」 86개와 「朝鮮語辭典」 102개 비교 : 공통 41개, 비공통 86−41=43개, 102−41=61개

3)「朝鮮語辭典」 102개와 「말모이」 86개 비교 : 공통 72개, 비공통 102−72=30개, 86−72=14개

4)3종 사이의 관계 : 공통 32개, 비공통 84−32=52개(新辭), 86−32=54개(말), 102−32=70개(朝辭)

5)「新式 辭典」과의 관계 : 「말모이」만의 공통 38−32=6개, 「朝鮮語辭典」만의 공통 41−32=9개

위 15)의 1)에서 취해야 했을 어휘는 家臣, 家傳, 家僕, 家系, 家兄, 家嚴, 家政, 家族, 家畜, 家譜 등이며, 15)의 2)에서 家家禮, 家間事, 家政, 家口, 家基, 家券, 家垈, 家兵, 家殯, 家蓼, 家勢, 家率, 家業, 家用, 家運, 家藏什物, 家親, 家僧, 家宅 등은 특히 우리의 독특한 어휘를 찾은 것으로 주목할 부분이다. 그런데, 朝鮮總督府 편찬 「朝鮮語辭典」(1920)의 표제어와의 대조에서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결과가 나타났다. 즉, 이들 3종 사이의 표제어는 위 16)과 같이 예상외에 묘한 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분포관계는 하나의 예를 비교하여 분석한 것이지만, 몇 가지 면에서 새로운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말모이」에서 「新式 辭典」을 참조했다면, 38개를 수용하고 46개를 버리며 자체로 48개를 따로 설정했을 것이다. 둘째, 「朝鮮語辭典」에서 「新式 辭典」을 참조했다면 41개를 수용하고 43개를 버리며 대체로 61개를 따로 설정했을 것이다. 셋째, 「말모이」에서 「朝鮮語辭典」 초고를 참조했다면, 72개를 수용하고 30개를 버리며 대체로 14개를 따로 설정했을 것이라는 등을 가정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 「新式 辭典」을 공동으로 참조했다면, 공동으로 32개를 수용하고 52개를 버리며 비공동으로 각기 54개, 70개를 세운 것이 된다. 다섯째, 표제어의 공통을 유사성으로 해석한다면, 6개보다 많은 9개를 수용한 「朝鮮語辭典」에서 그 만큼 「新式 辭典」을 더 충실히 참조한 것이 된다. 위 13)「朝鮮語辭典」의 구성에서 아래 17)표제어의 3단계 배열방식까지도 「新式 辭典」과 똑같다는 것은 「新式 辭典」이 그 저본이었다는 실증이다. 따라서, 「말모이」와의 관계도 다른 면을 새로 엿보게 하고 있다.

1911년 4월에 착수한 「朝鮮語辭典」은 실제로 朴彝陽, 玄櫶, 宋榮大, 金敦熙 한인 4명에 의하여 2년간 8만의 어휘수집, 2년여에 주석초고가 작성되었다. 그후 1915년 7월부터 카트에 옮겨 배열을 정하고 稿本을 작성하기 2년여에 끝냈다고 하니, [13]「新式 辭典」의 참조는 상치될 것이 없다. 결국, 최초의 두 사전이 다 같은 사전을 저본으

로 했다. 그 연유는 미상이나, 1913년 6월부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魚允迪(1868~1935)과 周時經과의 지면이 어떤 정보통로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요컨대, 「말모이」는 대체로 1897년 周時經의 구상을 반영하고 있으나, 사전구성이 체재에서는 「新式 辭典」을 저본으로 참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은 「朝鮮語辭典」 역시 이것이 저본이었다는 것이다. 표제어의 배열과 설정에서는 오히려 「朝鮮語辭典」이 더 저본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 사전이 다 같은 저본을 가지고 편찬했다는 점에서 표준사전, 실용소사전을 목표한 기획이 같고, 두 사전 사이의 교섭도 확인키 어려우나 어떤 식으로든지 있었다고 해야 순리일 것이다.

4. 「말모이」의 底本 : 주석내용의 참조

사전편찬은 문예작품과 같이 창작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으레 여러 문헌이 참조되게 마련이다. 그 문헌 중에서 특히 많이 참조한 사전을 저본 혹은 대본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체재상의 저본, 주석상의 저본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말모이」가 「新式 辭典」을 체재상의 저본으로 삼은 사실은 사전구성, 표제어의 설정과 선택으로 보아 이미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어휘주석의 측면에서 과연 저본이 있었는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얼마큼 수용했는가를 찾아내서 규명해 볼 차례가 되었다.

사전주석은 표제어에 대한 모든 해석으로서 형태분할, 발음표기, 문법형태, 술어소속, 의미해석, 도해, 용례, 관련어, 복합어나 관용구 등의 子표제어와 그 주석 등이 다 포함된다. 사전편찬에서는 그 방식을 참조하고 영향을 받게 되지만, 日本語辭典을 참조할 경우에는 주석의 구성과 의미해석에 치중되기쉽다. 주석의 구조는 원초적 보편성이 있어 특이한 양식에 주목해야 하겠다. 표제어 배열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하 대조에서는 지면의 편의상 솎아내서 대조하고 배치를 조정한 경우도 있다.

17) 주석구성의 대조(+표 漢字語, 제 名詞)

1)「新式 辭典」(1912)

か【家】いへ。家訓(かくん) 家宰(かさい) 家事(かじ) 家臣(かしん) 家稅(かぜい) 家宅(かたく) 家傳(かでん) 家範(かはん) 家僕(かぼく) 家名…(중략)、

家計(かけい)(名)一家のくらしむき。一家の經濟。一簿記(-ぼき)。

家庭(かてい)(名)うちのうち。一家の中。

家庭小說(かていせうせつ) 家庭教育の助けとなる小說。

家庭教育(かていけういく)(名) 父母又は長上が、弟妹兒女に及ぼす教化。

か【嫁】— とつぐ。よめいりする。二 人に押しつける。なする…

2)朝鮮語辭典(1920)

가〔家〕

家家(가가)(名) 家毎(いへごと)。

家家禮(가가례)(名)

家によりて異なる禮儀。

家計(가·계)(名)「터수」の一 に同じ。(※ 터수 — 生活の程度)

家庭(가명)(名) 一「집안」の二に同じ。二 父母の膝下。

家庭敎訓(가명교훈)(名)

家庭に於ける敎訓。(略、家訓)。

家庭之學(가명지학)(名)家庭に於て受くる學問。

家訓(가·훈)(名)「家庭敎訓(가명교훈)」の略。

가〔嫁〕

3)「말모이」제1책 (1914)

+가〔家〕(제)ㄱ 집 ㄴ 가개【酒家】ㄷ 하는이. 용한이. (政治家)。

+가가【家家禮】(제)집집。

+가가례【家家禮】집집이다른禮。

+가계【家計】(제)세간살이의 셈。

+가계부긔【家計簿記】(제)세간살이의 簿記。

+가명【家庭】(제)집안。

+가명견문【家庭見聞】(제)집안에서 보고 듣은것。

+가명지학【家庭之學】(제)집안에서 배혼것。

+가훈【家訓】(제)집안어른 訓戒。

+가【嫁】(제)시집감。

○(動)ーす。
嫁期(かき)(名)よめいりどき。婚期。
嫁娶(かしき)(名)ーよめいりとよめとり。二 結結婚

か【稼】種をまく。○(動)す。
稼穡(名)(かしよく)農業。農事。農作。
か【葭】あし。
葭莩の親。(カフノシン)遠縁の親族。

がい【凱】かちどき。
凱歌(がいか)(名)勝軍の後で、祝ふ歌。かちどき。
凱旋(がいせん)(名)かちいくさして、歸ること。凱還。一門(ーもん)。

嫁期(가긔)(名)女子の嫁すべき年齢。(佳期)。
嫁娶(가・취)(名)「婚姻」(혼인)の別稱。

가〔稼〕
稼穡(가식)(名)「農事」(농ᄉᆞ)に同じ。
가〔葭〕
葭莩(가부)(名)蘆の薄皮。
葭莩之親(가부지친)(名)
遠き姻戚に當たる者の自稱。
개〔凱〕
凱歌(개가)(名)凱旋の時に奏する歌。
凱旋(개션)(名)凱歌を奏して軍を圖すこと。

+가긔【嫁期】(제)시집갈만 한때。
+가취【嫁娶】(제)시집가고 장가들는 것。

가색【稼穡】農事함에심고걷는것。(※원고에 수정하며 추가한 항목)

+개 : 【凱】(제)싸홈을이김。
+개가【凱歌】(제)勝戰하고돌아올때에부르는노래。
+개션【凱旋】(제)勝戰하고돌아오는것。(※원고에 수정하며 추가한 항목)

우선 표제어는 13)에서 예시한 대로, 2)「朝鮮語辭典」은 1)「新式 辭典」의 양식인 3단계인데, 3)「말모이」는 달리 2단계 배열이다. 그리고, 특히 우리말 표제어는 형태구분의 소홀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예가 눈에 뜨인다. 이런 구성은 주석방식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복합어 등 소속된 子표제어의 해석을 단축시키고 생략도 가능하여 간편한 실용사전에 요긴한 양식이다. 주석은 이 구성에서 참조한 흔적에 유의하고, 저본과 전혀 다른 주석도 다른 이유를 추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위 17) 예시에서 1)의 주석생략은 거의 수용하지 않고, 수용한 것은 특히 14) 깜박, 깜작 등과 같이 3의 일부분이다. 둘째, 1) 주석의 참조는 2)보다 3)이 더 현저해 보이는 반면, 의외로 2)와 3)의 근사성이 발견되고 있다. 가령, 家計, 家庭, 凱歌, 凱旋 등은 3)이 1)과 매우 가깝고, 家家, 家家禮, 家庭之學, 嫁期 등은 2)와 3)이 더 비슷한 것과 같다. 특히 2)와 3)과의 관계는 막연히 편찬진 한인의 공통점이라기보다 양자간에 교통이 있었던 흔적이라고 보아야 순리일 것이다.

18) 주석내용의 대조

1)「新式 辭典」(1912)
家丁(…)(名)めしつかひ男。家奴。下男。
家弟(…)(名)おとうと。昆弟
訶梨勒(…)【梵語 Haritakei】(名)水毒を解し、痢に効ありといふ藥。
かく【角】(名)一つの。二かど。…五〔數〕二直線が相會してなす形。…七 二十八の一。すぼし。八 五音の一。……十……
擱筆(…)(名)筆をさしおいて、書きやめること。閣筆。

かつ【褐】(名)わたいれ。…○こげちゃいろ。褐色。
褐藻(…)(名)【植】褐色又は褐色を帶びたもめ。
褐色火藥(…)(名)黑色火藥よりも、低度の熱で發火する有煙火藥。
褐色人種(…)(名)皮膚が褐色で、黑髮低鼻、顎の突出した特性のある人種。

2)「朝鮮語辭典」(1920)
家丁(가뎡)(名)自家の下男。
家弟(가뎨)(名)他人に對して自己の弟を稱する
訶黎勒(가려륵)(名)(藥)喬木に屬する一種の樹の實、形梔子に似て六稜を具へ苦酸にして溫味あり藥材に用ふ。(訶子)。
角星(각셩)(名)二十八宿의 一。角星(すぼし)。
閣筆(각필)(名)筆を擱くこと(相會して詩文を作る時他人の作秀逸にして及ぶほざるため筆を投げる意)。
갈【褐】
褐色(갈ㅅ식)(名)烏色。

3)「말모이」 제1책(1914)
+가뎡〔家丁〕(제)크나큰집사랑에서부리는사람들。(※추가)
+가뎨〔家弟〕(제)아우。
+각〔角〕(제)ㄱ 뿔 ㄴ〔數〕두直線이相會하아成한形 ㄷ〔天〕별일홈이니二十八宿의一。ㄹ五音의一。(※ㄹ 추가)

+갈식【褐色】(제)누르감으리한빛。茶色。ー화약【褐色火藥】(게)火藥의一種이니黑色火藥에比하면低度의熱으로發火하는利가有함。ー【褐色藻】(제)【植】「褐藻」에보임ー인종【褐色人種】(제)世界人種을五類에分別한것의ー이니。皮膚는濃褐色이오털은검고코는납작하며顎角은숙나온特性이有함(馬來人種)。
+갈조【褐藻】(제)〔植〕褐色又는帶褐色의水草니海中에生하며其繁殖法은有

感歎詞(…)(名)【語】喜怒哀樂等の感情を表はす無意味の聲。感動詞。間投詞。
かん【疳】食欲が增進して、體の痩せる小供の病。疳癆。
疳瘡(…)(名)梅毒のために、陰部の潰れる病。

かい【開】一 ひらける。開新… 二 ひらく。
開墾(…)(名) 荒地を耕し圃につくること。開發。一地(一ち)。

開明(…)(名) 文化が進んで、人智が開けた世態。開化。
開化(…)(名)人文の發達した狀況。開明。
開港(…)(名)一 貿易などを行ふために、外國船舶の出入碇泊を許した港。一場(一ば)。二 潮汐の如何に拘らず、船舶の出入の自由な港。

감【感】
感動(・감・동)(名)深く感すること。
感歎(감탄)(名)感心して歎賞すること。

감【疳】
疳瘡(감창)(名)〔醫〕小兒
疳病の一種、殊に皮膚に潰瘍を生する病症・結核性潰瘍・皮膚營養障礙等をいふ。
ㄱ【開】
開墾(ㄱㄱ)(名)荒地を耕して田畑をなすこと。
開墾地(ㄱㄱㄷㅣ)(名)開墾する土地。
開明(ㄱㅁㅇ)(名)「文明」(문명)に同じ。※文明(名)
光彩ありて分明たこと。(開明)。
開化(ㄱ・화)(名)文明の開發すること。
開港(ㄱ・항)(名)外國と通商するため港を開くこと。
開港場(ㄱ・항장)(名)外國通商を許可した港。

性 及無性의두가지가있으니昆布와 미역等。
+감동사〔感動詞〕(제)〔文〕品詞의一이니 喜怒哀樂等의情을發表하는소리 (「아·하」의따위들)。
+감탄ᄉᆞ【感歎詞】〔文〕「感動詞」에 보임。
+감【疳】(제)疳疾病。
+김창【疳瘡】(제)아이들이紅疫한뒤에입의안밖이히어지는病。

+ㄱ【開】(제)열음。
+개ㄱㄱ【開墾】(제)山野를開拓하아새로田水田을만들는것。一ㄷㅣ【開墾地】(제)ㄱ開墾한땅ㄴ開墾할땅。
+개명〔開明〕(제)사람의智識이늘어서文物이進步한것。野蠻의狀態를免한지오랜것。
+ㄱ화【開化】(제)開明。
+개항:〔開港〕(제)港口를開放하는것。
+개항장【開港場】(제)開港한곧。

3자의 주석을 좀더 비교한 결과, 첫째 家弟, 角, 褐色火藥, 褐色人類, 褐藻, 感動詞, 開明, 開化, 등 1)과 3)이 더 흡사하고, 둘째 家弟, 訶黎勒, 擱筆, 開明 등 1)과 다르고 2)의 독특한 주석이 적지 않다. 셋째 3자가 유사한 家丁, 開墾, 開港 등, 3자가 각기 다른 疳瘡 등이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지만, 독특한 3)의 주석으로 꼽힌 家丁, 開明 등은 다 1)이나 2)와 유사한 것들이다. 넷째 17) 稼穡, 凱旋, 18) 家丁, 角ㄹ 등 추가한 주석은 특히 2)보다 1)과 더 많은 유사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점은 3)의 주석이 1)를 직접 참조한 사실의 증거라고 하겠다. 원고에서 추가한 부분 거의가 유사한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1)과 다시 대조하며 필요한 것을 골라서 보충한 결과라고 해석될 것이다. 그러면, 1)과 2)의 관계는 이미 언급했지만, 한인 4명이 1913년 4월부터 2년간 우리말로 작성한 주석초고를 일본말로 번역하고 1915년 7월부터 배열순서를 정했다[14]. 따라서, 2)의 주석이 독특한 것은 그 초고가 1)과 무관하게 작성되고, 배열의 단계에서 1)을 참조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말하자면, 두 사전이 같이 1)을 대본으로 참조했으나, 3)은 처음부터 표제어의 배열보다 주석을 참조해서 편찬했고, 2)는 초고작성 이후에 주로 배열방식을 참조해서 완성했다. 그 개연성으로 본다면, 2)는 7할이 넘는 많은 한자어의 배열을 고민하다가 모방케 되고, 3)은 우리말 위주의 국어사전을 목표로 하니까 가나다순으로 귀착되었겠다는 것이다. 특히 3)은 崔南善이 실용소사전의 모형으로 제시한 1)을 받아서 저본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俗語辭海」의 참조도 같은 연유였을 것이다.

요컨대,「말모이」는「新式 辭典」의 체재구성 외에도 표제어의 설정과 주석의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新式 辭典」을 저본으로 하여 편찬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朝鮮語辭典」은「新式 辭典」의 체재구성이나 일부 표제어의 설정을 반영하고, 주석의 내용에서는 확실히 반영된 흔적을 많이 지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은「朝鮮語辭典」에서 주로「新式 辭典」을 도중에 체재구성과 어휘

배열상의 저본으로 하여 편찬을 끝낸 결과라고 견해를 낙착짓고 싶은 것이다.

실제로 「말모이」는 참조문헌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으나 양자의 대조에서 직접 실증되고, 「朝鮮語辭典」은 카드에 써서 배열순서를 정했다고만 하고 참조문헌을 밝히지 않았으나 역시 양자의 대조로 입증되었다. 생각컨대, 「말모이」편찬자는 일본어를 알아야 하고, 「朝鮮語辭典」에서는 몰라도 될 터였다. 그런데, 하나는 1911년 4월에 정부에서, 다른 것은 1914년 9월에 민간단체에서 각각 따로 시작했건만, 양자는 다 최초의 국어사전, 대사전 아닌 실용소사전으로 편찬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5. 結論 : 稿本들의 역사적 가치평가

1969년 6월에 홀연히 발굴된 朝鮮光文會 편찬 「말모이」고본 제1책 영본의 저본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하여 규명해 보았다. 즉, 「말모이」는 1910년 10월에 朝鮮光文會를 창립한 崔南善의 기획에 의하여 1913년 9월에 周時經 주관으로 金枓奉, 李奎榮 등이 芳賀矢一의 「新式 辭典」(1912)을 저본으로 편찬하기 시작했다는 귀결에 도달했다. 저본문제는 특히 광범한 참조로 편찬되는 사전에서는 규명하기 어려우나, 「말모이」는, 체재구성, 어휘설정, 주석내용 등의 대조로써 사실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1911년 4월에 朝鮮總督府 取調局(1912년 4월 參事官室로 이관)에서 착수한 「朝鮮語辭典」은 한인 4명에 의하여 최초의 국어사전으로 편찬된 초고를 1915년 7월에 「新式 辭典」의 배열을 모형으로 하여 일본어로 번역할 원고책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같은 사전을 구성체재와 주석상의 저본으로 한 민간단체의 「말모이」는 실패로 끝났고, 배열상의 저본으로 삼은 정부의 「朝鮮語辭典」은 10년만에 출판되었다. 그래서, 최초의 국어사전으로서는 양자가 다 원고로만 잔존한 결과가 되었다.

19) 최초의 국어사전과 저본과의 관계

「新式 辭典」(1912. 9)→①「말모이」(1913. 9~1914. 5)…③「俗語辭海」(1909. 3)
(六堂文庫 소장) 고본 제1책 (六堂文庫 소장)
②↘ ④:
「朝鮮語辭典」(1915. 7~1917. 12)고본 전61책

1910년대에 편찬된 최초의 국어사전 2종과 이에 관련된 저본과의 관계는 위와 같은데, 이들 관계는 대조의 방법으로 이미 규명되었다고 믿는다. 우선 ②나 ④의 관계는 이번에 의외로 대조를 통하여 처음으로 실증되었다. 다음, ①이나 ③의 관계는 심증만 갖고 있던 것을 역시 이번에 비로소 확인했다. 그 심증이란 六堂文庫에 소장된 실물 곳곳에 기입된 메모가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었다. 이것을 실마리로 대조를 하게 되었는데, 이 메모가 과연 무엇인가를 따져 보기로 한다.

20) 원고와 기입한 글의 필적

朝鮮光文會「말모이」고본 제1책(ㄱ~갸) 영본(1913~14) : 필적 a
朝鮮光文會「辭典」고본 제3책(ㅁ~ㅂ) 영본(1914) : 필적 b, 수정 d
啓明俱樂部「朝鮮語辭典」카드(1927~32) : c, 추가카드와 수정 d
芳賀矢一「新式 辭典」(1912) : 60면여의 공간에 기입한 글 : 필적 d
松平丹次郎 등「俗語辭海」(1909) : 8면 9곳에 기입한 글 : 필적 d

이들 사전의 메모는 편찬에 참조한 흔적임에 틀림이 없으나, 메모의 필적 d는「辭典」의 펜글씨 수정부분에 나타나고, 啓明俱樂部「朝鮮語辭典」카드에는 수없이 많다[15]. 그러면, 이 메모는「辭典」원고를 인계받은 啓明俱樂部에서 다시 수정하며 편찬을 계속하던 당시에도 역시「新式 辭典」과「俗語辭海」를 계속 참조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사전도 끝맺지 못했지만, 이 메모가「말모이」에서 참조한 증가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사실이 이미 귀결된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필적의 필자가 누구인지 판정되면 더 명확한 사실을 해명하게 되지만, 관련자가 다 작고한 지금 그들의 필적을 규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일본의 두 사전은 얼마나 오래 드다루었는지 앞 뒤가 수10장씩 떨어져 나갈 만큼 몹시 헐었다.「말모이」를 편찬할 적부터 사용한 탓이라면 유물의 하나로 치부하기에 족할 것이다. 동시에「말모이」를 편찬할 때,「俗語辭海」를 참조했을 가능성을 짙게 하나, 사전의 체재구성이나 배열형식 혹은 주석내용 등에서 당장 뚜렷한 영향은 지적하기 어렵다.

최초의 국어사전 하나는 1911~17년에 朝鮮總督府에서 한인 4명이 편찬한「朝鮮語辭典」이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유인본 61책과 서울대학교 奎章閣 소장 고본 37책 전질 2종이 전하고 있다. 최초의 국어사전 다른 하나는 민간단체인 朝鮮光文會에서 周時經, 金枓奉, 李奎榮 등에 의하여 1913~14년경에 편찬된「말모이」고본 제1책 영본 李秉根 소장본과 1914~19년경에 개고된「辭典」고본 제3책 영본 六堂文庫 소장본만이 현재 잔존할 뿐이며, 어느것도 유감스럽게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최초의 국어사전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최초라는 뜻에서 표기와 발음, 의미와 용법 등 맞춤법과 표준어의 규범을 나름대로 설성한 점이 주된 공통성이다[16]. 그러나, 사전편찬의 취지는 같지 않다. 하나는 식민지 통치자의 시작에서 韓日對譯辭典의 원고로 편찬했고, 다른 하나는 일제 강점하에 민족갱생의 기초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목표로 편찬했다. 따라서, 양자의 차이점은 그 시기에 민감한 어취의 취사나 주석내용 등에서 상반되거나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한편,「말모이」고본 제1책 영본은 이하의 유실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유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문은 고본에 첨부된 색인이다. 특히 한문자 총획수순의 字畫찾기

는 전체를 종합하지 않아서 쓸모가 없는데도 왜 만들어 넣어야 했는가? 그것도 ㄱ부의 4분 소량을 끊었는가? 군일이라도 책마다 만든 색인을 후에 통합하려고 했다기보다 우선 표본으로 형식을 갖추어 만든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 고문 이하는 「辭典」 고본이고, 「말모이」 고본의 유실은 없다는 추측이 될지도 모른다. (1994. 7. 28)

〈주〉

1)大한 覺念과 小한 事力으로 我光文會ㅣ兀立하니 修史와 理言과 立學은 實로 그 三大標幟며 辭典編纂과 文法整理는 理言의 兩大眼目이오…(이하 본문 11)인용문으로 계속)(朝鮮光文會, 1915. 叙 2)

2)이 「말모이」 稿本 제1책 영본은 1969년 6월 京畿道 廣州郡 中部面 南漢山城 고 秋明鎬씨 댁에서 찾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원고와 舊藏者와의 관계나 소장하게 된 경위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 원고가 光文會에서 흘러나왔을 것은 추측키 어렵지 않다.

3)「말모이」 제1책을 비롯하여 「온갖것」 둘, 「한글적새」 첫재떼 씨, 「ㄷ」(이상 제4권 수록), 「辭典」 1책 영본(제5권 수록), 「한글모죽보기」(제6권 수록)등, 최초로 공개된 회귀자료는 사실입증에도 한 몫을 하게 되었다.

4)고려대학교 六堂文庫에 소장된 「新式 辭典」은 권두 語首索引까지 30여장, 권말 60여장이 떨어져 나갔고, 목록에는 분류번호 738, 新式辭典 1冊 20cm라고 적혀 있다. 「俗語辭海」도 앞뒤가 떨어져 나갔고, 목록에는 분류번호 738, 俗語辭海 1130면 19cm라고 적혀 있다. 전자는 필자의 메모에 '大正元年九月 東京大倉書店 4×6단 1573년 2圓50錢'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메모의 출처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5)옥편이라는 명칭은 근대에 널리 보급된 「全韻玉篇」(1796), 그 重刊本(1850), 校正版(1898) 등에, 字典은 「한불ᄌᆞ전」(1880), 「韓英字典」(1890) 등에 연유한 것으로 보이며, 字典은 횡행하던 당시 일본어사전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6)국어확립을 자주독립의 토대로 인식했던 이념은 일제침략이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공고화되어 갔으며, 드디어 1942년 朝鮮語學會를 탄압한 10. 1사건으로 이어졌다. 당시 학회의 「朝鮮語大辭典」 원고가 일제 내란죄의 물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7)1914년 3월경에 인쇄한 원고지에 작성한 원고는 초고를 정서한 단계이며, 그 고본 제1책은 周時經 생전에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시기는 체재를 전환한 「辭典」의 1916년 4월 근간예고로 추측되는 수습단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8)이 「辭典」 稿本 영본은 제목과 범례가 없으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말모이」의 체재를 바꾸어 개고한 원고의 영본으로 확인되었다. 金敏洙(1983) 참조. 이 원고는 간간이 공란이 있어서 역시 미완성으로 끝났음을 보여 주고 있다.

9)10子音과 6母音이 周時經, 「말의 소리」(1914. 4) 홋닷소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ㅎ, 홋홀소리 ㅏ ㅓ ㅗ ㅜ ㅡ ㅣ 와 일치하고, 李奎榮, 「온갖것」 둘(1913) 씨묻음 여러듬의 소리자리 16자모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六堂文庫에 소장된 이 자료는 「말모이」와의 어떤 관련을 배제하기 어렵다.

10)사전의 창조성은 대개 독특한 구성체계로 평가된다. 주석을 예로 들면, 한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서적까지도 참조해야 하지만, 편찬자는 파악된 의

미를 소화하여 자신의 구성체계에 맞게 효과적인 의미정의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것 저것을 개위질하듯 옮겨 참조의 선을 넘는 것은 모방이나 표절이라고 할 것이다.

11)이런 색인은 표제어의 3단계 배열에 연유한 것이다. 특이한 이 字典式 배열은 '右のやうに、親語、子語と分けって排列したのが本辭書の新案で…'(芳賀矢一, 1912, 緒言 4면)라고 하여 이 사전이 최초임을 밝히고 있다. 이 사실은 저본관계의 중요한 실증이다.

12)「말모이」의 배열에서는 音順의 찾기는 필요가 없고, 한문자의 字劃찾기에서 면수로 표시한 찾아갈 곳은 한자음으로 표시해도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저본의 구성체계를 성급히 수용한 탓이 아닐는지? 맨끝에 가서 작성할 색인을 각책 끝에 만들어 넣는 방식도 의문이 쏠리는 부분이다. 「辭林」은 六堂文庫에 보이지 않으나, 참조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주석은 대조하지 못했지만, 참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13)판매하기 위한 이 사전의 재판(1920. 12. 5)에 수록된 主任 小田幹治郎의 "編纂の經過"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후 1년여의 심사와 1년간의 인쇄를 거쳐 출판되었다고 했다. 말미에는 漢字語 40, 743개, 諺文語 17, 178개, 吏讀 727개, 도합 58, 639개, 그림 474개라고 집계했다. 규모로 보아 3종의 사전이 엇비슷하다.

14)각주 10)에서 인용한 "朝鮮語辭典編纂の經過"에서 '大正二年(1913)四月から語辭の解說を始めたのである。語辭の解說は同じ囑託が分擔して、一先づ朝鮮文で書き、其れを邦文で書替えることにしたのであるが…(중략)全體の解說が一應結了したので大正四年(1915)の七月から…(중략)一方では語辭をカードに記入して排列の順序を定め(괄호 속 필자)、稿本を作って大正六年(1917)の十二月に先づ完結を告げた…' 라고 했다.

森田(1987. 137)에서는 '朝鮮文の解說を付した稿本二種が現存しており、一九一五年頃作成の『朝鮮語辭書原稿』(謄寫本六一冊、總枚數四三五〇枚)はソウルの國立中央圖書館にあり、一七年末までに作成されて審査委員の所見を付した『朝鮮語辭典』原稿(三七冊、總枚數四九三五枚)は奎章閣に所藏されている。'라고 하여 우리말 주석초고를 입증하는 고본이 2부나 서울에 잔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원고는 성격으로 보아 지금부터라도 출판륜되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15)啓明俱樂部에서 沈友燮, 林 圭, 尹定夏, 金振東 등이 1932년에 만들었다는 10만 카드는 1937년에 朝鮮語學硏究會로 인계되었으나 역시 출판되지 못했다. 金敏洙(1983) 참조. 그런데, 그 카드는 六堂文庫를 등록하고 남긴 폐기물 속에서 1977년 1월에 필자가 찾아냈다. 4개의 카드장에 일부 유실이 있었으나 文庫에 소중히 보관하게 되었다. 그후 1992년 1월 본고의 자료로 검토하려고 다시 六堂文庫를 찾았으나, 그 카드는 이미 폐기되고 없었다. 金敏洙(1983)를 집필할 적에 가져온 카드 3백장(모~모히) 가량이 겨우 잔존할 뿐이다.

16)「말모이」에서는 「朝鮮時語 五萬의 標準을 定하고 意義를 譯한것이니… (본문의 인용 12)참조, 「朝鮮語辭典」에서는 '諺文は漢字音を除くの外總べて다쟈는자, 뎌져는저, …슈は수とし、中聲「ㆍ」は「ㅏ」とせり。'(凡例 3항)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위의 意義를 譯한것은 주성을 풀이한 것이라는 단순한 뜻으로 이해된다.

〈참고문헌〉

리봉운. 1897「국문정리」목판, 경성 : 리봉운.

쥬샹호(시경). 1897. "국문론"「독립신문」2-114(1897. 9. 25), 1-2면. 2-115(1897.

9. 28), 1면.
李能和. 1906. "國文一定意見"「皇城新聞」2196(1906. 6. 2), 1면. 「大韓自强會月報」 6(1906. 7. 31), 62-65면.
周時經. 1906. 「대한국어문법(國文講義)」 저자유인.
朴太緖. 1907. "國語維持論"「夜雷」1(1907. 2. 5), 8-12면.
周時經. 1907. "必尙自國文言"「皇城新聞」2447(1907. 4. 6), 1면.
松平丹次郎, 山崎弓來, 堀籠美善. 1909. 「俗語辭海」 芳賀矢一 序, 明治四十二年三月一日 東京 : 集文館. 4×6 1132면.
金澤庄三郎 編. 1909. 「辭林」東京 : 三省堂.
周時經. 1910. 「國語文法」 京城 : 博文書館.
芳賀矢一. 1912. 「新式 辭典」 大正元年九月 日 東京 : 大倉書店. 4×6 1573면.
李奎瑩. 1913「온갖것」 필사본
周時經. 1914. 「말의 소리」 京城 : 新文館.
朝鮮光文會 편찬. 1915. 「新字典」京城 : 新文館.
김두봉. 1916. 「조선말본」京城 : 新文館.
李奎榮 편. 1917. 「한글모죽보기」 필사본.
朝鮮總督府 편. 1920. 「朝鮮語辭典」京城 : 朝鮮總督府
李秉根. 1977. "最初의 國語辭典 「말모이」(稿本) : 《알기》를 중심으로. "「언어」2-1(1977. 6), 67-84면.
金敏洙. 1983. "「말모이」의 編纂에 대하여"「東洋學」(檀國大東洋學硏究所), 13(1983. 10), 21-54면.
金敏洙, 河東鎬, 高永根 편. 1977-86. 「歷代韓國文法大系」102권 서울 : 塔出版社.
李秉根. 1986. "資料 : 朝鮮光文會 編《말모이》(辭典). "「韓國文化」(서울大韓國文化硏究所) 7(1986. 12), 177-220면.
森田芳夫. 1987. 「韓國における國語 · 國史敎育」東京 : 原書房.
金敏洙. 1992. 「周時經全書」6권 서울 : 塔出版社.

言語와 理念
-국어사전의 경우-

김 진 우

서론

국어는 남의 서울과 북의 평양에 두 문화 · 언어의 중심지를 둔 複心的(pluricentric)언어이다(김진우 1992a). 1945년이후 반세기동안, 남은 자본주의, 북은 공산주의라는 상반된 理念下에서 독자적인 언어정책을 상호격리된 상태에서 추구해 왔다. 이러한 현실은 반세기라는 시간의 흐름만에 의한 변화이상의 언어분화를 초래했고, 사전편찬에 있어서도 두 상반된 理念을 반영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었다.

실은, 뒤에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독자적인 언어정책 외에도, 국어분화의 밑둥지가 된 두가지 저층적 요인이 있었다(김진우 1992b).

그 첫째는, 이천년이라는 긴 漢文化의 영향 때문에 국어의 세련과 표준화에 큰 역할을 해 주었을 국문학이 그 전통을 세울 겨를이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하여 1945년 국토가 남북으로 양분되었을 때, 국어는 마치 아직 마르지 않은 진흙덩이처럼, 어떤 형상으로도 빚을 수 있는 유연(柔軟)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바로 이러한 유연성이 비교적 짧은 시간안에 큰 분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저층구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이것은 마치 두 조각가가 똑같은 주제의 작품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되지 않은 세목 때문에 쉬 다른 형상의 작품을 조각해낼 수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국어분화의 두번째 저층적 요인은, 남북 두 언어의 사회계층적 기반이 달랐다는 사실이다. 서울은 고려와 이조선 두 왕조의 수도로 문화의 중심지로서 무려 천년을 누렸다. 그리하여 서울말이 남의 표준어로 부전승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교양인이 쓰는 서울말"은 곧 "양반의 언어"에 뿌리를 둔 말을 지칭하게 되었다. 반면에 북의 표준말은 "서민의 언어"에 기반을 둔 지방어가 의도적으로 채택되어 이루어졌다. 공산국가의 理念은 言語의 사회화(대중화)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언어가 필연 표준어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독자적인 언어정책 이전에 분화의 저층적 요인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이다. 앞에 든 조각과의 비유를 연장하자면, 재료가 유연하고 不特定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처럼 재료자체가 달랐었다고 볼 수 있다. 자료의 차이는 똑같은 주제의 조각품을 달리 빚어내게 할 수 있는 요인을 그 자체에 안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촉매제(catalyst)는 조각가 자신이다. 그리하여 두 다른 장르(genre)에 속하는 조각가가 같은 주제의 위임을 받고도 다른 작품을 만들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언어분화의 촉매제는 언어정책이다. 이에 여기서 북의 언어정책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1. 북의 언어정책

언어의 기본적 기능은 통화의 수단이며, 그 부차적 기능이 교육이나 행정의 매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의 언어정책에서는 이러한 언어의 상대적인 기능이 순위를 바꾸어, 그 첫째가 교화이고, 둘째가 통화라고 볼 수 있다. 언어를 "사회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라고 정의하는 것부터가 이를 말해준다. 북에서는 당초부터 김일성자신이 언어정책을 수립하고 지휘하였다. 1946년 5월, 당원과 교육자와 기자와 예술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일성은 언어의 사회화(="공산화")를 제창하고, 한자(漢字)의 지식은 일반 대중에게는 없는 소수만의 특권으로써 봉건적이고 반혁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자고 "교시"하였다.

공산국가의 理念인 사회평등은 언어의 사회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었고, 이 理念의 실현을 위해선 온 대중의 문맹퇴치, 교육 및 교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4년 1월에 있은 언어학자와의 대화에서 김일성은, 언어학자의 임무는 한자어와 외래어를 정리하여, 버릴 것과 쓸 것을 가리고, 버릴 것을 대치할 고유어를 만들고, 과학용어와 기술용어를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버릴 한자어는 교과서에서 뿐만 아니라 사전에서도 제거하라고 지시하였다. 또 1960~62년에 평양에서 출판된 여섯권 짜리 「조선말사전」은 국어사전보다는 한자사전(玉篇)같다고 탄식하였다. 이 결과로 나온 것이 1968년의 「현대조선말사전」(초판)이다.

김일성은 이러한 규범적 언어정책을 1966년 5월에도 되풀이하고 갓난 애들과 마을 이름들을 고유어로 지으라고 지시하면서, "표준어"라는 말은 "서울말"을 지칭하기 때문에 평양말에 기준한 북의 표준말은 "문화어"라고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여기서 문화어운동(=말다듬기 운동)이 시작되었고 1973년에는 「조선문화어사전」이 발간되었다(김진우 1978a, 1978b).

2. 남북사전의 비교

이 항에서는 남북의 대표적인 사전들을 비교, 검토해 보기로 한다. 상반된 理念에 의한 언어정책에 부수하는 사전의 다른 성격은 다음의 세가지:(1)편찬자, (2)수록어휘, (3)어휘의 정의 등에서 엿볼 수 있다.

2.1. 편찬자

이 글에서 검토한 사전은 남과 북에서 대표적인 것 셋씩인데 다음과 같다.

남:「큰 사전」여섯권. 한글학회 지음. 1947~57.

수록어휘:16만 4천. 한글학회.

「국어대사전」이희승 지음. 초판 1961,수록어휘:23만.

수정중보판 1982, 수록어휘 42만. 민중서관

「새우리말 큰사전」신기철 · 신용철 지음. 초판 1974, 수록어휘:31만.
제7판:1986, 삼성출판사.
북:「조선말사전」사회과학원 어문연구소지음. 여섯권.
1960~1962, 수록어휘:17만.
「현대조선말사전」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지음.
초판 1968, 수록어휘:5만. 제이판:1981, 수록어휘:13만
「조선문화어사전」사회과학원 언어연구실 지음. 1973, 수록어휘:6만7천.

위에 열거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한국사전의 편찬자는 개인이거나 민간단체임에 비해, 조선사전의 편찬자는 정부산하기관인 사회과학원의 언어연구소거나 그 전신인 어문연구소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것은 기대되는 현상이지만, 이 때문에 조선의 사전은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참고서 이상으로, 수록어휘로서의 선택여부와 어휘의 형태 및 의미, 더 나아가 그 용법까지도 규정하는 규범적 지침서의 성격을 필연적으로 띄게 된다. 이 점은 다음 항에서 예시될 것이다.

2.2. 수록어휘의 성격

남과 북의 사전에 수록된 어휘의 성격의 차이에 세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남의 사전에 비해서 북의 사전은 보다 "국수적"(國粹的)이라는 사실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북은 김일성의 언어순화에 대한 교시에 따라, 「말다듬기」작업을 해왔었다. 그리하여 한자(漢字)를 폐지하고,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고,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쓰고, 지방어를 표준어화시키고, 때로는 사어(死語)나 고어(古語)를 부활시키는 등등으로 국어의 "사회화" 운동을 꾸준히 벌려 왔었고, 이것이 북의 사전에 "국수적"내지 "순화(純化)된" 모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는 자유개방주의의 물결을 타고 외래어가 무제한 들어 왔다. 일부 국수적인 국어학자와 국민이 반발을 할만큼. 또 북의 「현대조선말사전」(1981년판)이 "서울말"을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잃어버리고 서양말, 한자말, 일본말들이 마구 들어와 섞인 잡탕말로 된 오늘 남조선에서 쓰는 말(p. 1424)"이라고 정의할 만큼. 남의 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북의 다듬은 "문화어"의 例들을 몇종류로 분류해서 아래에 든다.

(ㄱ)고유어로 바꾼 한자어
해초(海草)→바다나물, 바다풀
관절(關節)→뼈마디
추수(秋收)→가을걷이
대화(對話)→서로말
침식(浸食)→녹여깎이

(ㄴ)고쳐쓴 서양 외래어
파마→보끔머리
헤리콥타→직승비행기

콜 세 트→몸매띠
악 센 트→소리마루, 력점
쁠란→계획
템포→속도
코 너 킥→구석차기

(ㄷ)표준어(문화어)화 시킨 지방어(괄호안은 남의 표준어)
남새(채소)
봉창(보충, 메꿈)
에미나이(계집애)
여가리(가장자리)
방치돌(다듬이돌)

(ㄹ)부활시킨 사어 · 고어
둥구리(껍질베낀 통나무)
민충하다(철없고 어리석다)
버럭(광산에서 나온 쓰레기)
눈석이(봄눈녹이)
발구(마소가 끄는 짐썰매)

(ㅁ)고유어로 만든 합성어
가랑파(비교:가랑비)
애젊은(비교:애늙은)
높뛰다(비교:높이 뛰다)
문다지다(비교:문지르다+다지다)
봄풀싹(비교:봄+풀+싹)
손북춤(비교:손+북+춤)

남북사전 수록어휘의 두번째 성격차이는 북의 사전이 일상통용어만 수록한데 비하여, 남의 사전은, 사어, 고어, 방언, 속어, 은어, 吏讀, 지명, 인명, 관용구, 속담, 전문용어 등등을 수록한 "백과서전적"성격을 띄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희승의 「국어대사전」(1982년판)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어휘들이 북의 사전에는 없다.

쏘크라테스(p.2023)
이성계(p.2908)
평양(p.3981)
북경(p.1600)
부희다("뿌옇다"의 사어. p.1600)
소태(식물명, p.2063)
박지
박주
박주기
박쥐이 ("박쥐"의 지방방언들, p.1616)

남북사전 수록어휘의 세번째 성격차이는 북의 사전의 수록어휘 전부가 글말(文語)이

라는데 있다. 예를 들면 「조선말대사전」의 올림말의 원천이 다섯가지인데, 모두가 문헌이다. 즉

ㄱ. 김일성과 김정일의 고전적 문헌
ㄴ. 기술도서, 잡지, 교과서
ㄷ. 혁명적 문예작품, 일반잡지 및 신문
ㄹ. 해방전의 고전소설과 자료
ㅁ. 해방후에 나온 사전들(전문용어사전 포함)

문헌들이 산 말을 충실히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여기서 우리는 「다듬은말」들이 얼마만큼이나 대중의 입김에서 숨을 쉬고 있는가 하는데 대한 호기심 내지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게 된다.

남북어휘의 정의(뜻풀이)비교

수록어휘	남의뜻풀이 (이희승「국어대사전」1982)	북의 뜻풀이(「현대조선말사전」1981)
노동/로동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p.694)	물질적,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육체적 및 정신적 활동. …착취사회에서 로동은 천하고 무거운 고역으로 되어있으나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은 가장 영예롭고 즐거운 일로 되고있다. (p.817)
동무	친하게 늘 어울려 노는 사람(p.938)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 (p.764)
부자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p.1589)	낡은 사회에서: 착취와 협잡으로 긁어모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호화롭게 진탕치며 살아가는 자. (p.1229)
민족주의	국가의 자율과 통일에 제일 중요성을 두는 주의(p.1328)	부르죠아사회에서: 착취계급의 리익을 민족전체의 리익인듯이 속이면서 다른 민족을 침해하고 민족들사이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는 반동적인 사상. (p.1050)
세포	유기체의 기본구성단위(p.1988)	당원들을 교양하고 당원들의 사상을 단련하며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기본조직(p.1628)
착취	우유같은 것을 누르고 비틀어서 짜내는 것(p.3556)	낡은 사회에서: 생산수단이나 자본을 가진 자가 근로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로동생산물을 독점하거나 략탈하여가지는것(p.2006)

2.3. 어휘의 정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다른 理念을 토대로 한 정치체제가 理念과 직접 관련된 용어라던가 체제 특유의 어휘를 산출할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남북어휘의 차이는 이러한 신조어(新造語)의 차이에 보담은, 기존어휘의 의미변화에 더 현저히 나타나 있다. 그 理由는 북에서의 언어의 사회주의화과정에서 여러 단어들의 의미가 교훈적이고 규범적인 방향으로 뜻좁힘(意味狹搾, narrowing)을 겪었기 때문이다. 아래에 그 例를 몇 비교해서 들겠는데, 남의 것은 이희승의 「국어대사전」(1982년 개정판)에서, 북의 것은 「현대조선말사전」(1981년 제2판)에서 지배적인 의미 즉 해당수록어휘의 첫번 정의만을 인용한 것이다.

위의 例들에서 보듯, 북에서는 여러 어휘들이 의미의 특수화 내지 망원조명(望遠照明)을 받고 정치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다. 위에 든 例들 이외에도 "고문"(拷問), "고용자", "감옥", "검사", "경찰", "강간"등의 많은 어휘들이 "부자", "민족주의", "착취"의 북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낡은 사회에서"라던가 "부르죠아사회에서"라는 머리표를 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용례(用例)를 김일성의 발언에서 굵은 활자로 인용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용이 바로 어휘의 정의가 되고 있다. 위에 든 "세포"의 북의 정의가 그 한 例이다.

3. 사전학

해방후 오십년의 한국의 언어학사를 시대 구분해 본다면 다음의 세 기(期)로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일기는 「歷史언어학시기」인 1946년에서 1965까지의 20년으로 이 기간동안 국어학자들은 한글 창제당시의 15세기 중세국어와 그 이후의 국어의 발전 · 변화과정을 주로 연구하였다. 제이기는 「理論언어학시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다음의 이십년(1966~1985)으로, 이 시기에 구미에서 현대언어학으로 학위를 받고 귀국한 소장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주로 촘스키(Chomsky)의 이른바 변형생성문법(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理論을 도입하여 국어를 정밀분석하는데 주력을 기우렸다. 1975년에 한국 언어학회가 창설되고 이 학회가 단시일내에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한 사실이 이 시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제삼기는 1986년부터 지금까지로, 나는 이 시기를 「응용언어학시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지금까지 理論언어학에 전념했던 학자들이 남북의 언어 이질화문제, 언어교육, 사전편찬학, 문체론 등의 실질적인 언어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대구분이란 대개 부정확하기 마련이다. 한 시기의 추세가 다음 시기까지 한동안 계속되고 공존할 수도 있어서, 두 시기의 경계점이 불확실하고 모호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나의 시대구분도 例外일 수가 없다. 그런대로 1966년과 1986년을 시대의 구분점으로 잡은데는 나름대로의 理由가 있다. 그것은 1946~65과 1966~85라는 꼭 20년씩의 기간을 의식하고 도모한 것이 아니고,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의 최초의 언

어학박사가 1966년에 나왔다는 사실과, 1986년에 한국사전편찬학회가 창설되었다는 두 歷史的 사실에 기인한다. 이는, 특히 후자의 경우는 단순한 상징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1986년 이전에는 한글학회의 「큰사전」(1947~57)을 편찬한 학자들의 회고록 몇편외에는 사전 편찬학에 대한 論文을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는데, 1986, 87년에는 여러학자들이 마치 공모라도 한 듯, 그리고 Ilson(1986)의 저서명: Lexicography: An Emerging Intenational Profession(새 국제과업으로 등장하는 사전학)을 공동지원이라도 하려한 듯, 사전학에 관한 論文 십여편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는 놀라운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예:조재수 1986; 홍재성 1987; 김현권 1987; 김민수 1986; 이병근 1986a, 1986b; 이병근 외 1987; 심재기 1987)

80년대 후반의 이러한 남에서의 사전 편찬학에 대한 활발한 운동은 그러나 1984년 북에서 출간된 단행본 : 정순기 · 리기원저 「사전편찬학리론연구」에 뒤지며 그 업적의 빛이 이 단행본에 그늘지게 된다. 이 저서의 내용을 대강 훑어 봄으로써 그 理由를 찾아보자.

남의 사전편찬자들은, 수록어휘, 어휘의 정의, 문법 설명, 사용례 등의 선정에서 어떤 원리나 규범이 없이, 아무 것이나 주어 모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들은 "많을수록 좋다"는 함축적 원리아래, 사어, 고어, 방언, 속어, 의성의태어, 속담, 吏讀, 전문용어, 외래어, 은어, 심지어는 외국의 인명과 지명까지 모아 수록하고, 어휘의 정의 외에도 용례, 어원, 동의어, 반의어, 문법기능 등까지 포함시켜, 마치 백과사전과 같은 사전을 편찬했던 것이다.

이러한 무원리적인 한국의 사전편찬에 비해, 1984년의 정순기와 리기원의 「사전편찬학리론연구」에는 (ㄱ)어휘수록, (ㄴ)어휘정의, (ㄷ)특수어휘, 및 (ㄹ)문법설명의 네 항목에 대한 理論이 뚜렷이 전개되어 있다. 남북을 통튼 사전학에서의 이 선구적인 업적에 구태여 초를 치자면, 이 단행본이 북의 주요사전들이 출간된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 전개된 理論들은 사전편찬에 대한 순수한 理論的 모델로 제시된 것이라기 보다는 과거의 사전편찬의 경험에서 얻은 복안과 문제점들을 모아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정순기는 사회과학원의 언어연구소장으로서 「현대조선말사전」(1981년 수정판)의 주필이었다. 또 한가지 눈에 거슬리는 것은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마다 볼 수 있는 정치색이지만,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인 책인만큼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理解할 수 밖에 없다.

이 책은 머릿말에서 (1)주체성의 원리, (2)당과 로동계급인민의 원리, (3)현대성의 원리, 및 (4)과학성과 규범성의 원리 등, 사전편찬에서의 네원리를 열거하고 있는데, 처음 두 원리는 理念的인 것이고 나중 두 원리는 언어학적인 원리임을 쉬 알 수 있다. 첫째 원리로 문화어운동에 의해 다듬어진 어휘의 수록과 외래어의 빠트림을 정당화 하고, 둘째 원리로 김일성 · 김정일의 발언에서의 인용과 발언자체로써의 정의, 그리고 지방 고유어의 수록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셋째 원리로 사어와 고어가 수록에서 제거된 理由를 합리화하고, 넷째 원리로 과학적인 정의와 규범적인 정의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제일장에서 이 책은 사전의 수록어휘는 언어혁명의 목적과 결과에 부합되는 것이어야한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선택원리에 의하여 고유어와 "문화어"가 들어가고 한자어와 외래어가 빠진다. 더 나아가 이 장은 어휘를 분류하고, 이 분류에 따른 수록여부, 수록의 단위, 수록 방법, 수록 순서 등을 검토한다.

제이장은 어휘의 정의에 관한 것인데, 첫째로 정의(의미)의 종류를 기본의미, 어원적의미, 대표의미, 파생의미, 문맥의미, 상위(上位)의미 등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의미들의 배열순이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져야 하는가를 토론한다. 둘째로 정의를 제시함에 있어, 직접적 대 간접적, 설명적 대 지시적, 언어학적 대 백과사전적인 방법이 있음을 지적, 例示하고 각 방법의 타당성을 論議한다. 마지막으로 어휘의 용례를 제시함에 있어, 용례의 형태와 내용의 적합성을 論한다. "특수어휘"라고 제목을 부친 제삼장에선 관용구, 속담, 전문용어, 의성의태어 등의 정의 문제를 論하고 있고, 제사장은 문법정보의 종류, 분량, 제시방법 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품사, 어휘의 의미와 문법 정보와의 관계, 문법 기능을 띄게 된 어휘, 접사, 어휘형성 형태소, 발음 등등의 수록여부와 제시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理念에 물든 겉옷을 베껴버린다면, 이 책은 남북을 망라해서 최초의 사전학에 관한 저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할 만한 것이 남에 있다면 이것은 조재수의 「국어사전 편찬론」(서울 과학사, 1984)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한국에서의 사전편찬歷史와 한국에서 출판된 사전들의 개관에 불과할 뿐, 사전편찬에 대한 理論書라고 할 수가 없다. 실상, 1986년에 서울에서 열린 사전 편찬학에 관한 토론회의 서두에서 그 사회자 이병근 교수는 "현재상황에선 한국에서 사전편찬학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이병근 외 1987:101). 그런대로 주목할만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 1986년 무려 290명의 학자가 창립회원이 되어 조직한 한국사전편찬학회의 창립이래, 「사전편찬학연구」라는 학회지를 비롯해서, 앞에 든 1986 · 7년에 쏟아져 나온 論文들 외에 조재수(1988), 남기심(1988), 이상복(1988), 이상섭(1990) 등이 보여주듯, 단시일내에 남에서의 활동이 북을 능가할만큼 활발해졌다는 사실이다.

4. 결론

남북 언어차 중에서 가장 많이 이질화된 부분은 철자법과 어휘이다. 이러한 차이를 사전이 가장 잘 반영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북의 사전은 당책인 주체성과 언어의 사회화 정책으로 인해 고유어휘와 규범적 정의가 지배적인데 비해, 남의 사전은 보다 개방적인 사회제도와 방임(放任)적인 언어정책을 반영해서 다종다양한 수록어휘와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북의 사전이 "채를 친"(淨化된)모습을 띄고 있는 반면, 남의 사전은 "잡동사니"같은 인상을 줌은 이 때문이다.

국토의 통일은 언어의 통일이 필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어의 통일은 국토의 통일만큼이나 遼遠하고 어려울 지도 모른다. 오십년의 분단,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언어정책 그리고 처음부터 서로 달랐던 언어의 밑둥지(김진우 1992a, 1992b 참조)때문에 남북의 두 국어는 철자법에서 어휘, 발음에서 화법, 자모순에서 자판배열에 까지 여러가지 차이를 낳고 굳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表面的으로는 문자, 음운, 통사문법, 화법 등이 아직도 같거나 아주 비슷해서 상호통화가 쉽게 되고, 특정어휘나 문체를 제외하면 문장(글말)도 같을 뿐만 아니라, 남북양국의 관리와 학자들이 이질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큰 이질화를 제어하기 위해 때로는 "역행"(逆行)的인 언어정책을 채택함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돋구어 준다. 북에서 풀어쓰기를 보류했다던가 한자전폐를 저지(포기?)했다던가, 남에서 무제한의 한자사용과 외래어 범람을 제지하고, 공동 로마자화 표기법, 공동 컴퓨터자판, 통일 사전편찬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그 例이다.

그리하여 아직은 경종을 울리지 않아도, 911번호를 돌리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남에서는 북의 "문화어"가 "문둥어"도 "적화어"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언어혁명의 필수적 부산물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북에서는 서울말을 "미제국주의 앞잡이들이 쓰는 잡탕말" 등으로 정의하는 식의 냉소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서서히 자라는 치명적인 병처럼, 실제적인 위험은 초기의 등한이나 낙관에 있기 보다는 병의 치명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확산을 저지하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민수(1986). 국어사전:수록어휘와 수록순서의 선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국어생활」7.pp.36-57.

김현전(1987). 언어사전에 있어서의 정의와 문법에 관한 문제. 「한글」96.pp.455-476.

남기심(1988). 국어사전과 그 편찬방법의 현황. 「사전편찬학연구」1.pp.7-34.

박금자(1989). 북한에서의 사전편찬. 고영근 편:「북한의 말과 글」(서울을유문화사), pp.173-196.

심재기(1987). 국어사전에서의 어휘정의에 대하여. 「언어연구」23.pp.133-144.

이병근(1986a). 국어사전 편찬사. 「국어생활」7.pp.8-35.

이병근(1986b). 국어사전과 파생어. 「언어연구」22.pp.389-408.

이병근(1990). 사전과 사전학. 「국어학 어디까지 왔나」(서울 동아 출판사), pp.554-567.

이병근 외(1987). 국어사전학의 문제점. 「언어연구」23 · pp.101-102;pp.145-158.

이상복(1988). 국어사전편찬과 문법형태소의 처리. 「사전편찬학연구」1.pp.63-92.

이상섭(1990). 현대사전학: 이론과 실제. 「사전편찬학연구」3.pp.77-117.

이지영(1990). 북한의 사전학: 정순기 · 리기원의 「사전편찬학리론연구」를 중심으로. 자하어문학회편: 「북한의 국어학」(서울 한신문화

사)pp.225-275.
전수태 · 최호철(1989). 「남북한 언어의 비교」(서울 녹진출판사).
정순기 · 리기원(1984). 「사전편찬학리론 연구」(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조재수(1984). 「국어사전편찬연구」(서울 과학사)
조재수(1986). 「북한의 말과 글: 사전편찬을 중심으로」(서울 한글학회)
조재수(1988). 북한에 있어서의 사전편찬에 관한 일고. 「국어생활」15.pp.91-106.
최기호(1990). 현대국어사전과 북한의 언어정책. 자하어문학회편:「북한의 국어학」(서울 한신문화사), pp.277-289.
한국사전학회(1992). 국어사전편찬 참고문헌, 「사전편찬학연구」4.pp.187-231
홍재성(1987). 국어사전편찬과 문법정보. 「언어연구」23.pp.113-132.

Ilson, Robert. 1986. Lexicography: An Emerging International Profession. manchester Great Britai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Kim, Chin W. 1978a. Divergence in language policies in Korea. In Chin W. Kim ed.: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pp. 245-257. Columbia, SC: Hornbeam Press.

----. 1978b. Linguisitcs and language policies in North Korea. Korean Studies 2.159-175.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 1991. Linguistic divergence in Korea.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Abroad, pp. 415-433. New York, NY: Research Institute of World Affairs.

----. 1992a. Korean as a pluricentric language. In Michael Clyne ed.: Plucirentric Languages, pp. 239-260. Berlin and New York: Mouton de Gruyter.

----. 1992b. Some underlying causes of linguistic divergence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44th Annual Meeting of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pril 1992, Washington, D. C.

* 태도변화의 기미가 보이는 듯도하다. 최근에 출판된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을 잠시 훑어보니, "서울말"이 올림말에서 빠졌고, 위에 인용한 "세포"의 정의가 둘째의미로 바꿨으며(첫의미는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구조적 및 기능적 단위'. p.1981), "민족주의"의 정의도 셋째의미로 밀려나 있었다(첫의미는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 p.1231). 수록어휘(올림말)도 그 채택기준을 대폭 넓혀,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 사회정치용어, 학술용어…, 력사적 사변, 사건, … 고장이름, 력사어, 고어, 리두, 방언 등을 널리 올리였다". 또 "오늘날 쓰이고있거나 지난날 쓰이였던 단어와 공고한 단어결합 및 성구와 속담들을 폭넓게 올리였다"라고 머리말 일러두기에서 쓰고 있다. 따라서 수록 어휘수도 「현대조선말사전」(제이판 1981)의 13만에서 무려 20만이나 더 는 33만이다(쪽수는 일 · 이권 합해서 4천여). 이는 신기철 · 신용철의 31만, 이희승의 42만에 비교되는 숫자이다. 필자가 「조선말 대사전」을 최근에야 입수할 수 있어서 이 사전의 성격을 이 論文에서 자세히 검토해 보지 못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끝으로 이 사전을 구입해준 오오사까 경법대학의 김성수 교수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료동에서의 조선민족의 활동에 대하여

엄 성 흠

중국은 자고로부터 다민족 국가였다. 매개 민족은 모두 자기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있으며 위대한 조국에 자기의 공헌을 하였다. 1991년 제4차 전국 인구조사에 근거하면 중국의 조선족은 192만명을 초과하였는데 그중 23만명이상이 료녕성에 거주하고있다[1]. 기타 형제민족과 마찬가지로 조선족도 자기의 유구한 력사와 자랑할만한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있으며 위대한 조국에 자기의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교과서 혹은 론문들에서는 중국의 조선족은 19세기 중엽이후 조선반도에서 이주하여 온 다만 백여년 력사밖에 없는것으로 되였다. 이런 론점은 력사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필자는 명조시기 조선족을 중심으로 중국 조선족과 그 선인들의 오랜 력사와 우리들이 심각히 사고하여야 할 문제를 론술하려고한다.

1

중국의 료동지방은 오랜 이전부터 조선족 선인들이 활동한 주요한 지방의 하나였다. 중국 고적에 자주 나오는 동이(东夷)는 좁은 의미에서 보면 흔히 조선민족의 선조를 가르킨다 하여 동이조선이란 말도 있다. 고조선 말기에 그의 령역은 대체로 료녕성 서쪽 대릉하(大凌河)류역으로부터 북쪽은 서료하(西辽河)와 백두산, 함경북도 서북계선을 련결하는 선과 동쪽은 동해, 남쪽은 례성강 일대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있었다. 료녕성 대련시 감정자구(甘井子区)에서 발굴된 강상무덤과 출토된 문화유물들은 벌써 고조선 시기부터 료동지방은 조선족 선조들이 활동한 주요한 지방의 하나였다라는것을 잘 증명해주고있다[2].

한무제가 기원전 108년(元封三年)에 수륙대군을 파견하여 위씨조선을 멸망시킨후에 설치한 4군의 하나였던 현도군(玄菟郡)도 역시 료동지방에 있었다. 한소제 시원 5년(汉昭帝始元五年, 公元前八十二年)에 현도군은 조선함흥에서 고구려현(高句骊县, 今辽宁新宾县兴京老城附近)으로 옮겼다[3].

고구려시기 조선족 선인들이 료동에서의 활동은 더욱 활발하였다. 기원전 37년(汉元帝建昭二年)시조 주몽이 건립한 고구려 첫 수도 졸본[卒本, 혹은 홀본(忽本), 홀승골성(纥升骨城)이라 한다]은 료동지방에 있었다. 고증에 의하면 졸본성은 료녕성 환인(桓仁)부근에 있었다. 환인부근 오녀산(五女山)에 고구려 산성이 있는데 남북길이 약 1000m, 동서너비 약 300m인 비교적 큰 산성이라 부근에 또 수 많은 고구려 무덤떼가 있는데 많은것은 한 무덤떼가 200~300기이고 적은것은 10~20기이다. 떼를 이룬 무덤들가운데는 좌우로 또는 앞뒤로 줄을 지어있는것이 있다. 그것은 선조

의 무덤에 잇대여서 그 자손들이 무덤을 만든 결과에 이루어진것이다. 1986년 료녕성, 시, 현, 고고학자들이 오녀산성에서 발굴을 하였다. 석기, 도기, 철기, 동기, 자기, 옥기, 금은기등 극히 풍부한 유물들이 출토되였는데 대부분은 고구려 초기의 유물이었다[4].

기원 3년(汉平帝元始三年, 高句丽琉璃王二十二年) 국내성〔国内城, 혹은 尉那岩城, 不耐城이라한다. 지금의 길림성 집안(吉林省集安)〕에 수도를 옮긴 고구려는 료동지방에 설치한 한의 군, 현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105년(汉和帝元兴元年, 高句丽太祖王五十三年)에 고구려는 료동군〔辽东郡－지금의 료녕성 료양의 로성(辽宁辽阳老城)임〕을 공격하여 6개 현을 탈취하고[5] 111년(汉安帝永初五年, 高句丽太祖王五十九年)과 118년(汉安帝元初五年, 高句丽太祖王六十六年) 두차례 현도군을 진공하였다[6]. 결과 4세기초에 료동지방은 기본상, 고구려에 병합되였다. 그후에 또 연나라를 반대하는 투쟁을 료동지방에서 진행하였다.

고고조사에 의하면 압록강 이북에 분포되여있는 고구려성이 무려 35개나 된다. 이를테면 해성의 안시성(安市城), 료양의 료양성(辽阳城)과 백암성(白岩城, 혹은 燕州城, 태자하기슭에 있음), 수암현의 오골성(乌骨城), 봉성현의 고려문(高丽门) 등등이 유명하다. 그중 백암성은 아직도 그 당시의 면목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다. 이런 성들의 존재는 료동지방은 조선족선조들의 중요한 활동지방이였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고구려가 멸망된후 압록강 이북에 투항하지 않은 성만해도 11개가 있었다고 한다[7].

료동지방은 또 고구려인민들이 수나라와 당나라의 진공을 반대하는 주요한 전쟁터였다. 고구려는 령토의 확장에 따라 료동군의 중심지였던 료동성을 서부지방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598년(隋文帝开皇十八年, 高句丽婴阳王九年) 30만 수나라 군사는 고구려군민들의 완강한 반격과 질병에 부딛쳐 참패를 당하고《9월에 돌아왔는데 죽은자가 십중팔구였다》[8].

612년(隋炀帝大业八年, 高句丽婴阳王二十三年) 수양제는 백만이상 군대와 그 배가되는 운수부대를 동원하여 고구려에 대한 대규모의 전쟁을 발동하였다[9]. 고구려군민들은 애국명장 을지문덕(乙支文德)의 지휘하에 적군들의《속전속결》전법을 분쇄하고 료하전선의 료동성에서 수나라 군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10]. 고구려군민의 맹렬한 공격과 반항으로 수나라의 제2차 원정은 실패하고말았다.

613년과 614년 수나라의 제3, 4차 침공도 료동지방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618년 수나라가 멸망되고 당나라가 건립되였다. 당나라 통치자들도 수나라 통치자들과 마찬가지로 고구려에 대해 무력침공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고구려를 진공하기 위하여 전쟁준비를 다그쳤다. 고구려에서는 당나라의 무력침공을 미리 막아내기 위하여 631년(唐太宗贞观五年, 高句丽荣留王十四年)부터 645년(唐太宗贞观十九年, 高句丽宝藏王四年)까지 16년동안에 부여성〔扶余城－지금의 길림성 사평시의 일면성(一面城)임〕으로부터 발해연안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았다. [11]645년 당태종은

끝내 고구려에 대한 대규모의 전쟁을 발동하였다. 고구려 애국국민들은 료동지방에서 적들에 대하여 완강히 저항하였다. 특히 안시성 전후에서 빛나는 승리를 얻었다[12]. 647~648년 고구려인민들은 료동지방에서 또 당나라의 진공을 격퇴하였다.

상술한바와 같이 료동지방은 고구려군민이 수당군대의 무력진공을 반대하고 또 빛나는 승리를 얻은 주요한 전투장이였다.

668년(唐高宗总章元年, 高句丽宝藏王二十七年)고구려는 라당련합군에 의해 멸망되였다. 그러나 료동지방의 고구려인민들은 도처에서 강점자들을 반대하여 일어나 싸웠다. 고구려유민들의 투쟁은 그이후에도 더욱 세차게 벌어졌다. 이에 당황해진 당나라 통치자들은 고구려유민들의 력량을 분산시키고 쇠약시키기 위하여 669년 5월에 강박적으로 고구려유민 2만8천호를 차 1천80대, 소 3천3백마리, 말 2천9백필, 락타 60마리와 함께 이민하여 강회(江淮)이남 및 산남, 병〔并－지금이 산서(山西)임〕, 량〔凉－지금의 감숙(甘肃)임〕주이서의 여러주에 안치하여 당지의 부족한 로동력을 보충하였다[13].

696년(唐武则天万岁通天元年) 거란 송막도록 리진충(松漠都督李尽忠)이 반당기의를 발동하였다. 당시 료동지구에 있던 고구려유민들과 말갈인들도 이 기의에 참가하였다. 698년 기의에 참가하였던 고구려유민들과 말갈인들은 료수(辽水, 今辽河)를 건너 지금의 길림성 돈화부근에 가서 진국(震国, 혹은 振国)을 건립하였는데 713년부터는 발해(渤海)라고 불렀다. 발해국이 건립된후에도 료동지구는 여전히 고구려유민들의 주요한 활동지구였다[14]. 발해국이 존재한 229년간 중국왕조에 143차의 조공사(朝贡使)를 파견하였는데 대부분이 조공도(朝贡道)와 료동지구를 거쳐 중원으로 들어갔다. 발해는 사신을 파견하는 동시에 수많은 학생들을 장안태학에 파견하여 중원의 《고금제도》를 배우게 하였다[15].

926년 료태조 아보기(阿保机)는 무력으로 발해국을 멸망시키고 동단국(东丹国)으로 고친후 장자 배(倍)를 동단국왕으로 책봉하였다. 930년 동단왕은 료태종 덕광(德光, 阿保机次子, 倍弟)의 핍박에 못이겨 중원으로 도주하였다[16].

발해국이 멸망된후 발해유민들은 료동지방에서 료나라 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1029년 (辽圣宗太平九年)발해왕족의 후예인 대연림(大延琳)은 료양에서 반료기의를 일으켜 료의 호부사 한소훈(韩绍勋), 부사 왕가(王嘉)등을 잡아죽이고 부마도위 소효선(萧孝先)과 남양공주(南阳公主)를 감금하고 흥료국(兴辽国)을 건립한후 년호를 천경(天庆, 혹은 天兴)이라고 하였다[17]. 1116년(辽天祚帝天庆六年)료양의 발해유민들은 고영창(高永昌)이 지휘밑에서 규모가 더욱 큰 반료기의를 단행하여 승리한 다음 대발해국(大渤海国)을 건립하고 년호를 륭기(隆基, 혹은 应顺)라고 하였다. 황제로 자칭한 고영창은 매우 빨리 료동의 50여개주를 공제하였다[18].

금나라(金)시조 함보(函普)는 고려사람이였다. 때문에 태조 아골타(阿骨打)는 《녀진과 발해는 한집안이라》고 말하였다[19].

고영창의 기의는 아골타에게 진압되였는데 마지막에 장송도(长松岛, 今长兴岛)에서 실패하였다. 여기에서도 조선족선조들이 금나라시기에 료동에서 진행한 활동을 가히 짐작할수 있다.

그후 송나라와 원나라 시기에도 조선족선인들은 료동지방에서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심양 주민중에 홍씨성(洪氏)을 가진 오랜 호가 적지 않는데 이는 원나라때 심양 등지에서 살던 조선족 홍씨후예들이다》[20] 료동지구는 조선과 중원지구의 륙로로서 반드시 거쳐야할 지방이다. 료동지방의 적지 않은 곳에 지금까지도 《고려(高丽)》이름을 가진 지명이 존재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을 증명할뿐만 아니라 그런곳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있었다는것을 설명한다. 근년의 발견에 의하면 료동지방에 아직도 《고구려왕씨족보》가 존재할뿐만 아니라 장수왕의 59~60대 후손인 고씨성(高氏)을 가진 사람들이 료양과 해성부근에서 살고있다[21].

상술한바와 같이 조선족선조들은 료동지구에서 일관적으로 활동하고있었다. 다시 말하면 대대로 료동지방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하였다.

2

1368년 주원장(朱元璋)이 명나라(明)를 건립하였다. 명조시기 조선족 선조들이 료동지구에서의 활동은 더욱 다채롭고 활발하였다. 당시 료동지구의 조선족 인구는 매우 많았다. 《료동 38만여명중 조선족인구가 11만 4천여명이였다》[22]《동녕위〔东宁卫, 지금의 료녕성 료양의 로성구(辽宁辽阳老城区)임〕에 소속된 고려인의 홍무년(洪武年间, 1368~1398)에 3만여명, 영락때(永乐年间, 1403~1424)만산군 역시 4만여명이였다. 지금 료동호구에서 고려인이 십분의 3을 차지하는데 서쪽으로 료양, 동쪽으로 개주〔开州, 지금의 봉성(凤城)임〕, 남쪽으로 해주〔海州, 지금의 해성(海城)임〕, 개주〔盖州, 지금의 개현(盖县)임〕등 여러 주에 모여살고있다. 》[23]여기에는 명나라 이전부터 료동지방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있고 전쟁포로가 있는가 하면 장군이 있고 농민이 있는가 하면 또 통관(즉 번역관)이 있었다.

료동총병관 리성량(李成梁)은 료동지구통치집단의 대표인물이였다. 그의 고조부 리영(李英)은 조선에서 료동지방에 와서 철령위지휘첨사(铁岭卫指挥检事)의 벼슬을 받고 철령에 거주하고있었다. 1567년(明穆宗隆庆元年) 리성량은 부총병(副总兵)으로, 1574년(明神宗万历二年) 좌도독총병관(左都督总兵官)으로, 1576년에는 녕원백(宁远伯)을 봉받았다. 그의 장자 리영송(李如松)은 조선 임진전쟁시기(1592~1598)에 조정의 명령을 받고 제독(提督)의 신분으로 4만여명의 명나라 대군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넘어 왜적을 물리치는 전쟁에서 대공을 세운 중외에 이름을 떨친 유명한 장군이였다. 그의 동생 여백(如柏), 여정(如梃), 여장(如璋), 여매(如梅)들도 모두 유명한 장군이였으며 총병관 벼슬을 하였다[24].

리성량일가는 직무에 근면하여 고위에 오르고 위세가 국외에까지 떨치였다. 그로

부터 위망이 높아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교만하여 진데다 사치스럽기가 그지없었다. 매년 료동지구 백성의것을 긁어모아 사복을 채웠다. 또 조정의 벼슬아치들과 결탁하여 료동지구에서 만사를 좌우지하게 되였다. 다시 말하면 료동왕과 같은것이였다.

명나라 봉건통치자들은 료동지구의 조선족과 이민에 대하여 비교적 령활한 정책을 썼다. 결코 리조정부의 요구대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는 명조시기 료동 조선족이 증가된 중요한 한개 원인이다. 1443년(明英宗正统八年, 李朝世宗二十五年)에 만하여도 평안도 주민 591호가 료동지방에 와서 살았다. 1448년 조선사신 리사임(李思任)이 북경에 가는 도중 료동동녕위에서 중국인 복장을 입은 조선족농민을 발견하였다[25].

명나라 말기에 전쟁포로와 살길을 찾아 압록강을 건너 료동지방에 와서 영농하는 조선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1619년(明神宗万历四十七年, 后金天命四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후금의 생사존망을 결정하는 유명한 싸얼후전역(萨尔浒之战)이 폭발되였다. 싸얼후는 지금 료녕 무순시 혼하(浑河)남안에 있는 전략상 아주 중요한 곳이였다. 명나라는 양호(楊镐)를 료동경략으로 임명하고 8만8천여명의 대군을 집결하여 네갈래 길로 나누어 후금을 진공하였다. 조선 리조정부에서는 명나라의 요구에 응하여 도원수 강공렬(姜功烈)에게 명령하여 조선군대 만여명을 거느리고 명나라를 지원하기 위하여 압록강을 넘어 관전(宽甸)을 지나 혼강중류를 거쳐 흥경로성〔兴京老城, 지금의 료녕성 신빈(辽宁新宾)임〕에 와서 참전하였다. 후금의 누르하치(努尔哈赤)는 자기의 군사 천재와 8기병(八旗兵)의 고도의 기동성과 규률성을 발휘하여 력량을 집중하여 하나하나 격파하는 전술로 명나라 군대를 크게 패하고 완전한 승리를 취득하였다. 이렇게 되자 조선 도원수 강공렬은 싸우지도 않고 만여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누르하치에게 투항하였다. 누르하치는 투항한 조선군대를 8기에 편입시켰다[26]. 《료동문헌징략(辽东文献征略)》에 의하면 만주 8기에 김씨, 한씨, 리씨, 박씨, 장씨 등 고려백성이 모두 42개성이 있었다. 이들의 선조는 모두 조선 역주(易州), 평양 등지에 거주하였는데 명말청초에 포로되여 내무부뽀이(包衣, 즉가노)로 되였다. 후에 조선사람 인수가 증가됨에 따라 조선좌령(朝鲜佐领)을 설치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27].

압록강남안에 거주하는 조선사람(주요하게는 평안도사람)들은 각종 원인으로 하여 료동지방에 천이하는 현상이 경상적으로 발생하였다. 동시에 월경개간하는 일도 부단히 발생하였다. 1409년(明成祖永乐七年, 李朝太宗九年) 의주(义州)로부터 강계(江界)에 이르는 강연안 주민들이 아침에 대안에 가서 경종하고 저녁에 돌아오는것을 허락하였다[28]. 조선사람들은 봄과 여름에 압록강을 건너와서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한후 남쪽으로 강을 건너 원래 거주지역에 운반하여갔다. 후에 수확물이 풍부해짐에 따라 운수가 시끄러워 아예 집을 짓고 중국인과 잡거하여 살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치 토착인과 다름없었다[29].

명말청초에 비록 압록강을 분계선으로 하였지만 남안의 조선사람들이 도강하여 벌목하고 인삼을 캐고 개간하는등 일을 두나라 인민들이 마음대로 하게하고 간섭하지 않았다[30]. 이리하여 료동에 들어오는 조선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

3

상술한바와 같이 명조시기 료동지방의 조선족은 그 인수가 많았을뿐만 아니라 또 그 활동이 아주 활약적이고 다채로웠다. 그렇다면 그들의 후대들은 모두 어떻게 되였는가? 각종 원인으로 하여 대다수가 다른 민족으로 동화되였다. 아래에 몇가지 정황을 소개한다.

리성량의 후손들

리사충(李思忠) : 리성량의 손자, 1644년(清顺治元年) 예친왕 다탁(豫亲王多铎)의 휘하에서 여러차례 전공을 세워 1646년에는 섬서제독(陕西提督)으로 임명되였다. 그의 차자 음조(荫祖)는 병부상서로, 3자 현조(显祖)는 광동수사제독(提督)으로 발탁되였다. 손자 병(炳)은 1698년(清康熙三十七年)에 산동순무(山东巡抚)로 후에는 안휘순무로 되였다[31].

리씨족보에는 그들의 원적은 조선이고 명나라 초기에는 철령에 왔다고 똑똑히 씌여있다. 지금도 료녕성 북진현(北镇县)현성에는 리성량의 패방(牌坊)이 있는데 《진수료동총병관겸태자태보녕원백리성량(镇守辽东总兵管兼太子太保宁远伯李成梁)》이라고 씌여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리씨 후손들은 비록 높은 벼슬을 하였지만 모두 한족으로 동화되고말았다.

봉성현의 문씨와 서씨를

료녕 봉성현에 문씨부락과 서씨부락이 있다. 그들은 모두 명나라말기 청나라초기에 조선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문가씨보서(文佳氏谱书)》에 의하면 문씨 선조 문서(文瑞)는 명말청초에 번역관으로 중국에 들어왔다. 족보에 의하면 그는 원래 조선국민이였는데 30세되는 해(顺治年间, 1644~1661)에 대대로 살고있던 압록강에서 120리 떨어진 옥상좌동(玉尚左洞)에서 중국에 들어와 만주상백기에 편입되였다. 후에 4역관(四译馆)에 급제되여 봉황성〔凤凰城, 지금의 봉성(凤城)임〕에 와서 6품 조선통관으로 되였다[32]. 1983년 필자가 봉성에서 조사할때까지 그들은 이미 15대가 련속되였다. 1대를 20년으로 계산해도 그들은 약 3백여년 력사를 가지고있다. 자손들이 많이 퍼졌으나 후에는 모두 만족화(满族化)되여 조선족 풍속습관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어떤 집에서는 조선 놋그릇, 화로등을 보존하고 있으나 조선족이란 민족의식은 찾아볼수없다. 결국 만족으로 동화되였다.

《봉성현지(凤城县志)》에 근거하면 서씨(徐氏)는 대대로 성남 봉황산(凤凰山) 아래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2백여년 력사를 가지고있는 당지에서 명망이 높은 가문이였다. 만주상백기에 편입되여 4역관에서 통관벼슬을 하였다. 그들도 모두 만족으로

동화되였다[33].

아래에 박가촌의 박씨정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료동조선족 후손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1982년 제3차 전국인구조사를 할때 료녕 개현 박가구촌(盖县朴家沟村)에서 86호 285명 조선족이《돌연히》나타났다(믿을만한 소식에 의하면 지금은 천명을 초과하였다고 한다). 이렇게《돌연히》나타난 사람들은 모두 박씨(朴氏)들이다. 조선족인가?아닌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는 1983년 박가촌에 가서 간부, 노동자, 농민, 조선족, 만족, 한족을 망라한 30여명의 사람들을 선후로 방문조사하였다. 또 몇차례 좌담회도 열였다. 그들은 물질문화와 정신문화 여러방면에서 증거를 제기하면서 자기를은 조선족이란 것을 설명하였다.

전하는바에 의하면 그들의 제1대 선조 박의부(朴义部)는 명말청초에 장군 상가희(尚可喜)밑에서 싸웠다. 만주정홍기에 편입되여 박가촌에 와서 량세관(粮税官)으로 있었다. 후대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이곳을 박가구촌(朴家沟村)이라 이름지었다. 1983년 필자가 방문조사할때까지 이미 15대 련속되였다. 다시 말하면 박씨들의 력사가 3백여년이 된다. 이전에 박씨들은 집집마다 족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화대혁명기간에《네가지 낡은 것을 쓸어버릴 때》없어지고 다만 박경청(朴景清)로인이《박씨력대종조(朴氏历代宗祖)》를 보존하고있었다. 로인들의 회억에 의하면 족보에서 조선옷을 입은 제1대 선조 박의부의 화상(画像)을 보았다고 한다. 본계현의 박씨부락(本溪县朴堡)을 방문할때 그들의 족보에서 필자는 조선옷을 입은 제1대선조의 화상을 보았다. 이것은 박씨들의 제1대 선조가 확실히 조선족이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른 한가지 전설에 의하면 이곳 박가촌의 박씨 후손들은 고구려유민의 후대들이라고 한다. 당지 만족, 한족들은 박씨성을 가진 사람들을《고리뤄즈(高丽漏子)》혹은《고리싸즈(高丽沙子)》라고 불렀다. 그 뜻인즉 빠져남은 고구려사람이라는것이다. 또 그들의 거주하는 골짜기를 박가구촌이라고 이름지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진공할때 료동의 일부 고구려사람들은 전란을 피하여 사처로 흩어졌다. 그중 박의부 3형제는 이 골짜기에 와서 잠시 동굴에서 전란을 피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박씨 3형제는 동굴에서 내려와 이 골짜기에서 살았다고 한다. 우리는 동굴에서 재, 개하악골, 도자기잔편들을 발견하였는데 유관부문의 감정에 의하면 모두 원나라 시기의 유물이라고 한다.《개평현지(盖平县志)》에 아주 심각히 사고하여야할 기재가 있다. 민족정황을 소개할때 이현에는 한, 만, 몽고, 시버(锡伯), 회(回)등 민족을 제외하고 또《고려유민(高丽遗民)》(移民이라고 쓰지 않았다)이 약 5천5백명이 있는데 전현 인구의 1%를 차지한다고 썼다[34]. 이 뜻은 아주 명백하다 즉 이들은 오래전부터 거주하여온 토착민이지 결코 근대에 비로서 이민하여온 사람이 아니라는것이다. 이《고려유민》이란 즉《고구려유민》인데 주요하게는 박가촌의 박씨들을 가르킨다. 박가촌의 만족, 한족로인들도 박씨들은 이곳의 토착민이라는것을 승인하고 있다. 만족 오씨(昊

氏)로인의 회억에 의하면 자기들의 선조들이 1712년(清康熙五十一年) 북경에서 이곳에 이주하여 왔을때 벌써 박가촌이란 이름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보게되면 박씨들이 고구려유민의 후대란 가능성도 있는것이다. 상술한바와 같이 료양, 해성지구에 아직도 고구려왕실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고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선색이며 증명이다.

조사방문과정에서 박씨 제7대 자손 박존인(朴存仁), 박존화(朴存华), 박존지(朴存智), 박존례(朴存礼), 4형제가 부친 박동국(朴栋国)과 모친 송씨(宋氏)를 위해 세운 묘비를 발견하였다. 비석을 세운 년대는 1809년(嘉庆十四年)이다. 이것은 박씨 제1대 선조 박의부가 확실히 3백여년전 즉 명말청초에 박가촌에 왔다는것을 아주 유력하게 론증해주고있다.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박씨들은 제5대로부터(족보에 의하면 득(得)자 항렬인데 모두 7남이 있었다) 박가촌에서 분리되여 영구, 료양, 본계 부근에 가서 각각 새로운 박씨부락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력사과정에서 객관조건의 영향으로 조선족의 공동한 언어와 문자를 모두 상실하였다. 기타 적지 않은 조선족고유의 풍속습관도 상실하였다. 그렇지만《우리 선조는 조선사람이다. 때문에 우리는 조선족이다》라는 민족의식이 비교적 강하다. 특히 본계현 박씨부락 사람들은 이 방면의 민족의식이 더욱 강하다. 필자가 방문할 때까지 모종원인으로 그들은 아직도 조선족으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들은 여기에 불만이 있었으며 빨리 조선족으로 고쳐줄것을 요구하였다. 박가촌을 방문할때《조선족으로 하면 소수민족대우를 받기 때문에 고치지 않았는가》고 물었을때 그들은 서슴없이《만족으로 있어도 조선족과 같은 소수민족대우를 받는다. 아직도 원래 면목대로 조선족으로 회복되는것이 좋다》고 답복한다. 그들은 부근의 서해농장(西海农场)조선족마을과 자매관계를 맺고 서로 래왕하고있다. 련환만회에서 그들은 조선족으로 회복되고 본 민족의 품에 들어오니 아주 기쁘다고 하면서 지어는 눈물까지 흘린 사람도 있었다. 또 가능하면 유관부문에서 교원을 파견하여 민족언어와 문자를 가르쳐 달라는 요구도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민족의식》이란 그 얼마나 끈질기게 자기의 존재를 유지해주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그들은 비록 언어와 문자를 상실하였지만 어떤 풍속습관은 아직도 여전히 보존하고있다. 이는 특히 물질문화방면에서 표현되고있다. 이들은 개고기, 고추를 즐겨하고 남자들은 백주(白酒)를 좋아한다. 겨울에는 개털모자를 썼다. 물론 지금은 생활이 제고되여 개털모자는 이미 그 자취를 감추었다. 이전에 동북지방의 만족, 한족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고 개털모자도 쓰지 않았다. 혼인에서 동성 박씨들은 절대 통혼하지 않았다. 이것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엄격히 준수하는 습관이다. 녀인들은 모두 천족(天足)이고 종발을 하지 않았다.

이런 습관은 조선족습관과 모두 일치하다. 조사과정에서 박씨들이 사용했던 방아확도 하나 발견하였다. 큰돌로 만든 이 방아확은 깊이 32cm, 직경 37cm이다. 이는 조선족이 사용한 공구임에 틀림없다. 당지의 기타 민족 즉 만족, 한족들은 이런 방아

를 사용하는 습관이 없었다.

민족언어와 문자를 상실하였지만 기타 풍속습관을 여전히 보존하고있는 이런 정황은 민족동화에서 언어와 문자상실이 아마 제1보란것을 보여주는것 같다. 이것은 만족이 한족화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청나라, 만족통치자들은 수렵민족이 특점을 계승하며 자기들의통치를 공고히 하고 만족이 한족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626년(后金天命十一年)에《국어기사》(国语骑射)를 근본방침으로 결정하고 8기자제들에서 엄격히 준수할것을 명령하였다. 1636년(后金天聪十年) 황태극(皇太极)이국호를 청(清)으로 고치고 황제로 된후에도 계속 이 방침을 견지하고 변하지 않았다. 1644년(顺治元年) 청군이 입관한후 청나라 여러 황제들도 계속 이것을 기본국책으로 하였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만족이 전국 각지에 흘어져 상대적으로 절대 다수인 한족에게《포위》된 객관조건하에서《국어기사》는 점차 소실되고 민족언어와 문자를 상실하고 말았다. 봉성현의 문씨정황도 이것을 설명해주고있다. 문씨들은 제9대까지 통관이 있었는데 그 후대들 부터는 하나도 없었다. 다시말하면 문씨들은 약 2백년간 민족언어와 문자를 가지고있었다. 하지만 객관조건의 영향으로 끝내 언어와 문자를 상실하고 점차적으로 다른 민족으로 동화되어 지금은 만족으로 되였다[35].

청나라 시기에 료동지방에서 유명한 조선족 인물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건륭시기(乾隆年间, 1736~1795) 유명한 대신, 리부상서, 학자, 총관내무부대신(总管内务部大臣) 김간(金简)은 무영전(武英殿)에서 책을 내는것을 책임지고《4고전서》(四库全书)부총재로 되여 문화방면에서 큰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4고전서회요(四库全书汇要)》를 편찬하였다. 유명한 화가 리세탁(李世倬？~1770)은 총독 리여룡(李如龙)의 아들이였다. 그는 인물화와 산수화에 능란하였는데 80세가 넘어서도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유명한 시인 리개(李锴, 1686~1775)는 시단에서 이름을 떨쳤는데《원역(原易)》,《춘추통의(春秋通义)》등 수많은 작품을 남긴 "료동3로(辽东三老)"의 한사람이였다[36]. 이들도 모두 8기에 편입되여 후대들은 역시 다른 민족으로 동화되고 말았다.

상술한바와 같이 료동의 조선족은 오랜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결코 19세기 중엽이후부터 있은것이 아니다. 때문에 중국 조선족 력사를 쓸때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면적으로 써야한다.

료동조선족의 변화의 력사는 우리에게 심각히 고려하여야할 문제를 제기하고 또 많은 계발을 주고있다. 인구가 절대적으로 우세를 차지한 한족에게 립체적으로《포위》된 정황하에서 기타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흡수하는 동시에 어떻게 본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겠는가？공동한 언어가 상실되는 날에는 문화방면에서 표현되는 공동한 심리소질도 따라서 소실된다. 박가촌의 조선족력사는 민족동화의 길을 걷고있는 생생한 표본이다. 료동지방의 적지 않은 잡거지구에는 조선족의 공동한 거주지역이 없다. 이런 지방에서는 조선족학교를 꾸리기가 아주 곤난하다. 학교를 꾸렸다해도 학생래원이 적다. 어떤 곳에서는 각종 원인으로 학생들을 한

족학교에 보내게 된다. 이리하여 이런곳에서는 본 민족의 문화와 풍속습관은 점차 소실되고 저도모르게 박가촌 조선족의 력사를 되풀이 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이다. 현대화를 촉진하고 상품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어떻게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겠는가? 이것은 력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주〉

1)中国统计出版社:《中国第四次人口普查的主要数据》

2)《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1966년,《조선 전사》고조선사.

3)《后议书》85卷 东夷传

4)《考古》1960年 第一期,《桓仁满族自治县文物志》古遗址

5)《资治通鉴》卷48汉 纪和帝元兴元年,《后议书》卷 85东夷传

6)《资治通鉴》卷49汉 纪安帝永初五年,《资治通鉴》卷50汉 纪安帝元初五年《后议书》卷85东夷传

7)《三国史记》卷37 杂志第六地理四

8)《资治通鉴》卷178 隋纪文帝升皇十八年,《隋书》卷2 高祖下

9)10)《资治通鉴》卷181 隋纪炀帝大业八年,《隋书》卷4 炀帝业大八年

11)《旧唐书》卷199 上东夷传高丽,《三国史记》卷20 高句丽本纪第八建武王十四年

12)《资治通鉴》卷198 唐纪太宗贞观十九年,《旧唐书》卷199 上东夷传高丽

13)《旧唐书》卷5 高宗本纪下

14)《旧唐书》卷199 下渤海传"靺鞨羯之众及高丽余烬,稍稍归之。"《类聚国史》卷193 渤海上"其百姓者,靺鞨多,土人少,皆以土人为村长"。参见 渤海国志长编 卷 丛考 关于渤海,国内外

学术界有不同看法。不管怎样,在渤海国内有靺鞨羯人的活动,有高句丽遗民的活动,也有其他民族的活动。但是,因资料所限,很难区别哪些人是靺鞨羯人或高句丽遗民,也很难确定哪些事情是靺鞨羯人或高句丽人所为。

15)《新唐书》卷219 北狄渤海传

16)《辽史》卷72 倍传(义宗倍)

17)《辽史》卷17 圣宗本纪八

18)《契丹国志》卷10 天祚皇帝上

19)《金史》卷2本纪第二太祖,卷1本纪第一世纪

20)稻叶岩吉《满洲国史通论》五 沈阳路

21)《흑룡강신문》1989년 4월 20일

22)矢野仁一:《满洲国历史》第83页

23)《李朝实录》,世祖实录 卷34 十年八月壬午

24)《明史》卷238 李成梁传

25)《李朝实录》世宗实录 卷121 三十年七月戊戌

26)《东三省纪略》卷7边塞纪略下

27)《辽东文献征略》卷8 八旗

28)《李朝实录 太宗实录》卷17 九年正月辛酉

29)30)《东三省纪略》卷7 边塞纪略下

31)《清史稿》卷231 李思忠传

32)《文佳氏谱书》序

33)《凤城县志》卷9人物、民族

34)《盖平县志 卷4 政治志 户口，民族《盖平县乡土志》卷下 人类

35)参见《文佳氏谱书》

36)《辽东文献征略》卷8八旗，清代作者，《清史稿》卷321 金简传，卷504 李世倬传，卷485 李锴传

KOREAN DUMPING IN THE UNITED STATES: A FICTITIOUS CRIME?

Yeomin Yoon

1. Introduction

In recent years, several industries in South Korea have been accused of "dumping" their products on the U.S. market at lower than "fair value" prices. Allegedly, Korean companies have dumped an array of products on the U.S. market, which include ball bearings, brass sheet and strip, cast iron pipe fittings, cold-rolled carbon steel, color picture tubes, computer chips, flat-rolled carbon steel, industrial belts, nitrocellulose, offshore platform and piles, photo albums,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sheet and strip, stainless steel butt-weld pipe fittings, steel pipes and tubes, sweaters, telephone systems and subassemblies, tubular goods, and welded stainless and steel pipes. The number of antidumping actions against Korea is the cause of concern. Exhibit 1 summarizes the antidumping actions that were brought against Korean firms by the U.S. Commerce Department and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n the last ten years.

In this paper we take a dual perspective — both economic and legal — on the complex of issues surrounding the United States antidumping policy. In Part II we address the problems and uncertainties surrounding the notion of "fair value", which in turn determines the antidumping margin. Part III examines the antidumping laws and the practice of antidumping conducted in the U.S. from a "utilitarian" perspective (which is the usual methodology employed by economists and legal theorists). Part III also expands the analysis by incorporating philosophical and ethical insights concerning property and contract rights. In Part IV, the paper concludes that using the antidumping law to restrict competition is a perversion of the law and that the law, in and of itself, is unjust, harming American consumers in the end.

2. Antidumping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 Background

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ntidumping Duty Act of 1916, United States statutes (laws, regulations) have contained antidumping laws. This first Act, however, fell under criminal statutes and thus included an intent requirement, making conviction rather on the

difficult side. In order to mitigate the level of required proof and therefore facilitate conviction, the Antidumping Act of 1921, civil in nature, was passed. Under the new Act, an offsetting duty was levied on the product officially recognized as having been dumped on the U.S. market. In addition, the 1921 Act set up a loosely bicameral system: the first agency (then the Treasury Department, now Commerce) ascertained whether or not a product had indeed been dumped, and the second agency (then the Tariff Commission, now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was left to decide whether a U.S. industry or firm had suffered injury as a result of the dumping (Knoll, 1987). The Antidumping Act of 1921 was subsequently amended by the Trade Act of 1974, which was later superseded by the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This Act of 1979 added sections 731-740 to the Tariff Act of 1930, also known as the Smoot-Hawley Tariff. Most provisions of the Antidumping Act of 1921 was later merged into the Tariff Act of 1930[1].

B. Administration of the Antidumping Laws

All the antidumping actions cited above (see Exhibit 1) have one thing in common; they were all started by private parties. In each case, some private party or group of private parties (domestic producers) filed a petition with the U.S. Commerce Department (and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nder the Tariff Act of 1930, asking the latter to start an investigation of dumping.

The Commerce Department then serves a massive discovery request, consisting interrogatories and requests for production of documents. The serving party (the Commerce Department) has the sole authority to prescribe the time within which reply must be made and the format. The serving party is the sole judge of the adequacy of the reply and of the merits of all objections as to relevancy or burdensomeness of the request. The serving party also is the imposer of sanctions for failure to comply, and the ultimate decision-maker in the underlying matter for which the information is sought[2].

The information demanded by the Commerce Department can be highly burdensome. Foreign exporters that refuse to supply it do so at their own risk. Should the respondent involved not supply the information, the Commerce Department would not hesitate to pull numbers out of the air to construct estimated figures. The Commerce Department can demand practically an infinite amount of information, and any refusal to comply is regarded as a confession of guilt, resulting in the imposition of the highest possible dumping margins. The Commerce Department collects vast amounts of confidential information from foreign firms and has often permitted this information to slip into the hands of American competitors (Bovard, 1990).

The law calls for the Commerce Department to make a preliminary determination within 160 days from the time the petition is filed and to reach a final determination 75 days after that, for a total of 235 days from the date the petition is filed until the matter is finally determined[3]. The Commerce Department may extend a preliminary antidumping investigation for 50 more days and the final determination for 60 days, under certain circumstances[4].

The Commerce Department initiates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determines whether there has been dumping (or subsidization), and publishes whatever orders result.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determines whether a U.S. domestic industry has been materially injured or threatened with injury, or whether the growth of a domestic industry has been materially retarded. It is not clear, however, which agency has the authority to decide whether a petitioner has standing to petition for relief. This issue arises when it comes time to decide whether an investigation should be terminated for lack of standing[5].

C. Problems with U.S. Antidumping Policy

1. Determining "Fair Value"

Dumping is determined when the price of the foreign product sold in the U.S . market is lower than "fair value. " The Commerce Department determines fair value based on the foreign exporter's average home market price (or the average third country price) or on a constructed value of full production cost (Bovard, 1991).

(a) Using Average Foreign Market Price

The Korean computer chip case,[6] the latest antidumping case against Samsung Electronics Co., Goldstar Electronics Co. and Hyundai Electronic Industries, stands as an example of the antidumping cases against Korean firms. The Commerce Department compared prices charged by Korean companies versus those charged by U.S. companies in one hundred cases. It was found that in 47 of these cases, Korean products had a lower price than equivalent U.S. products by between 0.3% and 28%. In 48 out of 100 cases, Korean companies charged prices higher than those of U.S. companies by 0.3% to 69.2%. Korean and U.S. prices were found to be identical in the remaining five price comparisons.

Virtually 50% of the cases demonstrate that the Korean firm charged more than its domestic competitor. These statistics would lead one to conclude that, rather than dumping their products, Korean companies are behaving in a fair, competitive manner. But the Commerce Department does not agree. The Commerce Department can impose a dumping margin if the foreign company sells any units in the U.S. market at a price lower than the average foreign price for the period being investigated. So if the foreign exporter charges a range of prices over some relevant period of time, it is likely that some of the prices will be

below average and some will be above average, which means that some of the sales could be charged for dumping. This approach does not make sense and is inherently unfair. The use of average price has in fact been criticized by the General Accounting Office, who cites that it results in the creation of new dumping margins as well as the increasing of existing ones. This method of price comparison has also come under critique by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When Congress amended the 1979 provision to authorize Commerce under § 1677f-1 to average both U.S. price and foreign market value in making comparisons, Congress did not direct Commerce to apply a stricter set of prerequisites when ascertaining the U.S. price. Legislative history discloses that by extending the use of averaging with respect to the U.S. price, the lawmakers wanted to "expand the instances in which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use sampling and averaging techniques." H. Rep. No. 725, 98th Cong. 2d Sess. 45, reprinted in 1984 U.S. Code Cong. & Admin. News 5127, 5172 (1984). Despite this, it appears that Commerce almost universally averages only the foreign market value. The Court questions whether the impact of Commerce's current averaging policy relieves administrative burden to the extent that it leads to "loss of reasonable fairness in the results." [7]

Foreign companies suffer from an inherent bias against them through the Commerce Department's current method of computing antidumping margins. The Commerce Department compares the average foreign price with the price at which each sale is made in the U.S. market. When the U.S. price is less than the average foreign price (fair value), it assigns a "less than fair value" (LTFV) equal to the amount the average foreign price exceeds the U.S. price. However, if the average foreign market value is less than the U.S. price, the Commerce Department assigns a LTFV amount of zero rather than a negative value, as if the sale in the U.S. were made at the average foreign price. Since the calculation of an antidumping margin is based on the average LTFV, the Commerce Department's methodology skews the statistical result in favor of a higher dumping margin. In some cases, a dumping margin is imposed where none should exist.

For example, assume that a Korean firm sold 50 units of computer chips in its home market (Korea) for $30 each on January 15. It sold an equal number of units in the U.S. market on the same day for the same price. On June 15, the same Korean company sold 100 more units in the home market for $ 15, and 100 units in the U.S. for the same price. The

weighted average foreign market price (fair value) is calculated to be $20[8]. A LTFV of $0 and a LTFV of $5 are assigned to the January sale and the June sale, respectively, thus resulting in a antidumping margin of 16.67%[9]. A statistician who tried to justify this methodology would be laughed out of the profession, but such methodology is perfectly acceptable at the Commerce Department. It is questionable to compare the actual price charged for particular U.S. sales to the average foreign price. Individual U.S. prices should be compared with individual foreign prices, or average U.S. prices should be compared with average foreign prices.

(b) Using Full Production Cost

About two-thirds of all dumping investigations involve estimating a respondent company's cost of production or "constructed value" analyses (Kaplan et al., 1988). To construct the full cost of production, the Commerce Department begins by estimating the material production cost, then it adds 10% for administrative overhead and 8% profit margin. It then adds the cost of containers and coverings, and all other expenses that are incidental to placing the product in condition, packed ready for shipment to the United States. Should the resulting total were higher than the price the company actually charged for its product in the U.S., the company would be punished selling at a loss and therefore at an unfair price.

This methodology can be criticized for a number of reasons. First, the 10% statutory overhead cost is totally arbitrary and has nothing to do with the actual overhead cost a particular firm incurs. Any efficiently-run firm whose overhead cost is less than 10% could be in trouble. In effect, the more efficiently a firm is managed, the greater its chances of being imposed of antidumping margins. Second, the statutory 8% margin is also totally arbitrary and unrealistic. Profit margins are different for different industries. For example, in the above Korean chip case, industry sources doubted that "any maker — Japanese or U.S. included — is making an 8% profit off current prices for the 1m or even the 4m DRAM". (Crane, 1992).

The Commerce Department sometimes includes other unlikely items into the cost of production. For example, it included in production costs the donations that two Korean sweater manufacturers made to local charities, claiming that it was part of the cost of making sweaters[10]. No reasonably well-trained accountant would make such classifications.

Aside from unreasonable cost assumptions used by the Commerce Department, we encounter problems stemming from the differences between U.S. and Korean accounting practices. On the one hand, U.S. companies are held to strictly defined depreciation schedules and are required to claim any other costs, such as R&D, only in the fiscal year during which these costs were incurred. Korean firms, on the other hand, are accustomed to considerable leeway in the spreading of such costs over several years. Korean costs of production as defined by the U.S. Commerce Department would therefore rise considerably if U.S. accounting standards were applied to such costs (Crane, 1992). Another set of complications

arises from the question of how to determine which costs accurately and justifiably go into the production of which products. Over the last three fiscal years, the makers of Korean computer chips incurred costs of $1.7 billion in the purchase of new production equipment, but in addition to the production of computer chips, some of the equipment went into R&D and into other semiconductor devices. This situation often leads to arbitrary cost classifications (Crane, 1992).

2. Adverse Effects of Antidumping Policy

(a) Subverting Competition

More antidumping penalties on low-priced imported products have been imposed in the United States than any other country[1]. The U.S. rules are so biased that nearly all the foreign exporters that were investigated for dumping between 1980 and 1989 were found guilty.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tween when the petition is filed and the foreign firm is found guilty[2]. Even if a foreign exporter is ultimately acquitted, the time and money involved in settling the case can bankrupt a small or medium-size firm. Even a large firm would think twice about exporting to the U.S., so the U.S. antidumping laws have a significant dampening effect on foreign competitors. The antidumping laws subvert competition rather promoting it. Moreover, the possibility of being burdened with large unknown liabilities somewhere down the road also reduces U.S. importers' ability to make new business commitment (Caine, 1981). The U.S. antidumping laws penalize U.S. importers for doing business with foreign suppliers.

(b) Higher Prices

In order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being accused of dumping, foreign producers have a tremendous incentive to increase their prices. Also, due to the reduced competition resulting from the dampening effect that antidumping policy inflicts on competition, there are higher prices. In effect, antidumping actions let U.S. domestic producers raise their own prices and profit margins.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estimate by Dataquest, a California-based information service firm for computer industry, the U.S. computer industry will have to pay 10-15% more for DRAMs as a result of the recent antidumping ruling against the Korean manufacturers (*Korea Economic Report*, Dec. 1992). American firms that use computer chips to produce their products will have to either pass on this additional cost to their customers or absorb the additional cost in their profit margins. Firms that use products containing computer chips will be hurt because they must pay more for computer products, which will either reduce their profit margins or force them to raise price. Ultimately, American consumers will be losers because they have to pay higher prices for the goods they buy. The antidumping action will also make a wide range of American industries less competitive in the world market

because of the increased cost structure.

(c) The Effect on Employment

Imposing antidumping duties has similar effects as imposing a tariff or an import quota. The foreign manufacturer that decides to sell its products in the U.S. market even in the face of the biased U.S. antidumping policy will have to raise its price, which has the same effect on American users of its product as if the government imposed a tariff. But unlike the case of a tariff, the U.S. government will not get the money. If the foreign manufacturer decides to avoid selling to the U.S. market rather than risking the possibility of an antidumping action, the effect will be similar to an import quota, in the sense that fewer units of the product are imported into the U.S.

Several studies have found that the number of jobs lost by imposing tariffs or quotas exceeds the number of jobs saved. One study of a particular trade restraint in the apparel industry estimated that the policy, implemented, would save 36,000 apparel manufacturing jobs but destroy 58,000 apparel retailing jobs, for a net loss/gain ratio of 1.6 to 1[13]. A study of the imposition of voluntary restraints on steel in 1984 shows that 16,900 steel production jobs were saved but 52,400 jobs were lost in industries that use steel, for a loss/gain ratio of 3.1 to 1 (Denzau, 1987). Another study of the proposed 15% import quota in the steel industry estimated the number of jobs lost in the steel-using industries at 93,000 and the number of jobs saved in the steel industry at 26,000, resulting in a loss/gain ratio of 3.6 to 1 (Denzau, 1985).

A study of 21 heavily-protected industries (including luggage, ceramic tile, corn brooms, and apparel) also says that tariffs and other trade barriers save relatively few jobs at great cost to consumers in the form of higher prices. For example, American consumers pay $211 million more every year for luggage than they would otherwise have to, save about 200 jobs, implying an effective cost per job saved amounting to $ 1 million a year. The study estimates the annual cost to American consumers per job saved in these 21 industries at $ 170,000. Even after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U.S. government increases revenues by collecting the tariffs and American companies earn extra profits, the net cost to the nation is still $54,000 per job — several times what workers in the protected industries earn[14].

Although no studies have apparently been made on the number of jobs that would be saved or lost by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Korean products, it seems reasonable to expect, in the light of the studies cited above, that the jobs saved in the protected domestic industries would be far fewer than the jobs lost in the industries that use Korean products.

3. Philosophical, Ethical and Economic Issues of U.S. Antidumping Policy

A. The Public Interest Issue

Antidumping policies are often rationalized in the name of "public interest". There are those thinkers, such as Ayn Rand, who would argue against the very existence of such a thing:

> Since there is such entity as "the public," since the public is merely a number of individuals, any claimed or implied conflict of "the public interest" with private interests means that the interests of some men are to be sacrificed to the interests and wishes of others. Since the concept is so conveniently undefinable, its use rests only on any given gang's ability to proclaim that "The public, c'est moi" — and to maintain the claim at the point of a gun (Rand, 1964).

Michael Novak (1979) puts under scrutiny the notion of a "common good" in the context of a pluralistic society. In the case of antidumping policies, it becomes clear that the situation is one of the "good" of domestic firms undergoing foreign competition being at odds with the "good" of domestic consumers who must swallow the resulting higher prices. Rather than a simple case of common good or public interest, it is one of conflicting interests within the same pluralistic society.

The enforcement of the antidumping law results in wealth being forcibly transferred from consumers to producers, which Frederic Bastiat[15] calls legalized plunder. Bastiat has the following point to make in this regard:

> See if the law takes from some persons what belongs to them, and gives it to other persons to whom it does not belong. See if the law benefits one citizen at the expense of another by doing what the citizen himself cannot do without committing a crime.
>
> Then abolish this law without delay, for it is not only an evil itself, but also it is a fertile source for further evils because it invites reprisals. If such a law — which may be an isolated case — is not abolished immediately, it will spread, multiply, and develop into a system.[16]

Based on this view, it appears that antidumping laws are illegitimate because they transfer

property from some (consumers) to others (producers) in a manner that would be illegal if the producers attempted to make the transfer themselves. If domestic producers of computer chips tried to extract a 15% or 50% levy from domestic consumers of foreign-made chips at the point of a gun, they would be committing a crime; yet when the government does the job for them, it is called an antidumping duty, a tariff or a quota. Thus, such laws seem to fit Bastiat's definition of legalized plunder.

B. The Issue of Material Injury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nder the legal standards of investigating antidumping allegations and using the best available data at the time of investigation, must determine whether there is fair evidence that the accused imported product is cause of material injury or constitutes a threat of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Loosely applied, every time a foreign company competes successfully against a domestic one in the sale of a product, the domestic firm can be said to have sustained injury. Taken to the logical extreme, the only way then to avoid all possible injury would be to do away with international free enterprise altogether. In order to confirm an allegation of dumping and move to protect a domestic industry, the Commission in its current policy need only determine whether imports contribute to, rather than being the sole cause of, material injury.

There is a deeper issue embedded in the concept of material injury, relating to the fact that what causes material injury does not necessarily violate anyone's rights. If Mr. Kim opens deli on the same block as Mr. Smith's deli, Mr. Smith may sustain material injury from the competition without his rights having been violated. The same conditions can be applied on a larger scale to the sale of foreign manufactured chips in the American market: American chip manufacturers might suffer losses, but no one may have literally violated their rights. Unfortunately, the current Commerce Department policy bypasses this basic question entirely and justifies sanctions against the foreign manufacturer. Since no one's property rights have necessarily been violated, this policy in and of itself potentially, and actually, condones the violation of certain basic Constitutional rights.

Domestic producers have no right to prevent American consumers (or users) and foreign suppliers from exchanging their property. Domestic producers can prevent such transactions from taking place only if they use the force of government to violate the rights of American consumers and foreign suppliers to trade their property with whomever they see fit.

C. The Concept of Fair Value

"Fair value," as determined by the Commerce Department, is based on any one of the following: the home market prices of the foreign supplier, third country prices, or, in the absence of these, constructed value of total production cost. The Commerce Department found the Korean firms guilty of selling their products on the U.S. market below fair value; we can infer, therefore, that the Korean firms were selling at prices unfair to their U.S. competitors. The conclusion that selling below fair value in and of itself constitutes unfair competition does not stand up to reason: The export price of the foreign supplier depends not on their home market or third market price, nor on constructed value, but solely on marginal (delivered) cost and on the U.S. market demand curve (Knoll, 1987). The very determination of "fair value" reveals itself to be neither fair nor accurate. Even constructed value is arrived at through calculations "fraught with pitfalls" (Knoll, 1987), let alone the obvious flaw in using home or third market prices. By inversion, under this system of fair value, a foreign supplier can hypothetically lower home or third market prices in order to make their U.S. market prices appear more fair.

The Commerce Department's concept of fair value is silly. Fair value is whatever the price a willing buyer and a willing seller agree on in a free, competitive market. In other words, the selling price cannot be less than fair value if a willing buyer and a willing seller agree on the price. In order to prove that a product was sold for less than fair value, one should have to prove that the seller was forced to sell at a lower than agreeable price.

But the main flaw with the idea that a foreign seller should be punished for selling at "less than fair value" is that American consumers benefit by the practice. Why should a Korean or any foreign company be penalized for selling its products to willing American consumers for a low price? Should some government agency step in and protect consumers from low prices? Does doing so really represent the public interest?

Dumping is merely an exercise in price discrimination, selling the same product in different markets at different prices, which is rational economic behavior. It is a business policy that maximizes a company's profits. Yet when it is done across national borders, it is considered sinister or evil. Antidumping laws reward firms that sell 100 units at an 8% profit and punishes firms that sell 10,000 units at a 4% profit margin. It is better to sell many units at a lower unit profit than a few units at a higher unit profit. Antidumping laws reward firms for raising consumer prices.

Moreover, price discrimination can actually enhance competition. One reason a firm may engage in price discrimination is that it can gain a beachhead in a new market. It can facilitate entry by dropping its profit margin. Price discrimination can also stimulate competition by

eroding the cohesiveness of collusive pricing arrangements (Dale, 1981). Yet this pro-competitive feature of price discrimination seems conveniently overlooked by antidumping enthusiasts.

Proponents of antidumping policies are also prone to invoke the spectre of "predatory pricing. " Let us examine how such a scenario would actually work: If, by selling below production cost, a foreign supplier actually managed to remove a domestic competitor from the playing field, it would have to do so while losing money on each and every sales transaction. And in selling at such a low price, it would follow that this company would increase its market share, sell greater numbers of units at below production cost and ultimately bankrupt itself. Even if the firm attempted to bring its prices back up immediately after the demise of its competition, they would be opening themselves up to new competitors who would, predictably, step in to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that the higher prices would open up in the market. It is clear, both in the predatory pricing literature and to mere common sense, that predatory pricing is a self-defeating practice and is rarely attempted — and, obviously, never attempted successfully.

D. Utilitarian vs. Rights Approaches

It can be said that economists, being a utilitarian lot, strive to create policies that have as their end goal "the greatest amount of good for the greatest number. " Unfortunately, there is no accurate or foolproof way to measure the "good" resulting from any given policy, nor is there a reliable way of determining precisely what number ultimately benefit from such a policy. The results of policies are rarely, if ever, black and white or easily quantifiable. For example, our discussion of the antidumping issue to this point has neglected to consider that the penalties sanctioned against companies determined to be dumping computer chips on the U.S. market results in higher prices for domestic firms who must purchase computer chips for the production of, say, home computers or medical equipment. These higher production costs translate then into higher prices for domestic consumers of these products. Higher costs for consumers, in turn, affect all aspects of the domestic economy, including rates of unemployment. Therefore, it is highly ambiguous exactly which parties are ultimately helped or hindered by antidumping policies, though some of the more negative implications become obvious upon examination.

Utilitarianism not only proves too simplistic to apply to the above complex scenario, but, more importantly, completely disregards the adverse effect on individual rights. Regardless of what numbers of parties may or may not benefit from antidumping legislation (which we have found to be indeterminate in any case), the fact remains that when one levies penalties against

a foreign manufacturer who has not violated the rights of its competition(i.e., domestic producers), one has violated the right to contract of that manufacturer as well as those of the domestic consumers who must pay for the penalties in the form of higher prices. Any approach to policymaking must therefore take the aspect of individual rights into consideration.

E. The Ethics of Antidumping Actions

U.S. domestic companies that are feeling the pressure of foreign competition may abuse antidumping laws by using them to restrict competition at the expense of American consumers. Using antidumping laws to restrict competition is a perversion of the law. Yet such perversions are often advocated in the name of protecting the public interest. In effect, companies that bring antidumping actions are using the law to batter the competition, since enforcement of such laws makes it more difficult for foreign companies to compete, to the detriment of American consumers. Such "rent-seeking"[17] behavior is likely to appear whenever the costs are low and the potential returns are high, which is the case of antidumping laws. All that a domestic producer need to do is write a letter to the Commerce Department to complain about some foreign firm dumping its products on the domestic market. the Commerce Department (i.e., American taxpayers) will pick up the costs of the investigation from there. The petitioning company incurs practically no further costs, although the accused foreign company may have to incur millions of dollars of leg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to satisfy the Commerce Department that no dumping has occurred. Causing any company to incur such costs to defend against frivolous charges is unethical because it deprives that company's shareholders of a portion of their wealth. Corporate resources that could otherwise be used to either pay dividends or reinvest in the company must be diverted to defending the company against charges that have no philosophical, economic, and legal justifications. Thus, the accused foreign company's shareholders are being deprived of their property because U.S. domestic producers are abusing the legal process. Furthermore, American taxpayers finance any and all of these antidumping investigations, none of which lead to benefits of American consumers.

Several years ago, two American economists wrote an article explaining how this abuse works. Although their article concerned abuse of the antitrust laws, the same could easily be said for antidumping laws. To illustrate this point, just substitute "antidumping" for "antitrust" in the following quote:

> There is a specter that haunts our antitrust institutions. Its threat is that, far

from serving as the bulwark of competition, these institutions will become the most powerful instrument in the hands of those who wish to subvert it. More than that, it threatens to draw great quantities of resources into the struggle to prevent effective competition, thereby more than offsetting the contributions to economic efficiency promised by antitrust activities. This is a specter that may well dwarf any other concern about the antitrust processes. We ignore it at our peril and would do well to take steps to exorcise it (Baumol & Ordover, 1985).

4. Conclusion

The U.S. antidumping laws protect inefficient American producers from foreign competition. American firms are aware of this situation, and often use the antidumping laws to punish or intimidate foreign competitors. According to a General Accounting Office study,[18] 96% of all the dumping petitions that U.S. firms filed with the Commerce Department result in an investigation. Petitioning domestic companies are not even penalized for submitting incorrect or false information (Bovard, 1991).

It cannot be said that U.S. domestic producers that stand to be harmed by competition from Korean or any foreign producers are victims. There is an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being hurt by competition and being a victim. Since being a victim involves having one's rights violated, U.S. domestic producers that are harmed by competition are not victims. In a free enterprise economic system, it is not logical to say that a "right" to be protected from domestic or foreign competition exists, and material injury that stems from loss of sales to a competitor does not constitute the violation of rights.

Antidumping laws should be abolished, the sooner the better. Rights will continue to be violated as long as these laws exist. Ideally, statutes follow and support the rights of individuals in a given society. In the case of the antidumping law, outdated (and harmful) statutes have been appropriated, interpreted, and extrapolated to imply a right (i.e., protection from foreign competition) that is antithetical to a free enterprise economic system. U.S. domestic producers have no inherent claim on the funds of American consumers. The only ethical way that domestic producers can obtain the funds of American consumers is through voluntary trade. Using the force of government to obtain funds (by prohibiting foreign suppliers from competing) puts domestic producers in the role of the aggressor, and American consumers as the real victims.

ENDNOTES

1) See H.Rep. No. 249, 96th Cong., 1st Sess. at 60-61, reprinted in 1979 U.S. Code Cong. & Admin. News at 446-47.

2) Such a system as described above would not be tolerated in the state or federa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It would raise serious questions of due process in a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that separates the investigative from the judicial function within a single agency. But this is the inquisitional system that was prescribed by U. S. Congres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provisions of T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

3) 1930 Tariff Act, §§ 733 and 735, 19 U.S.C. § 1673b (1980 & 1992 Supp.).

4) The final determination by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may be made as late as 420 days after the petition is filed. Se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Summary of Statutory Provisions Related to Import Relief 8-16* (Washington: U. 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no date).

5) At least two commentators take the position that the Commerce Department has the sole statutory authority to make standing determinations. See Edwin J. Madaj and Charles H. Nalls, "Bifurcation Without Directio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nd the Question of Petitioner Standing i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Cases," 22 *Law &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673-88 (1991).

6) DRAMS of One Magabit and Above from the Republic of Korea, USITC Publication 2519, Investigation No. 731-TA-556 (June 1992) and USITC Publication 2629 (Final) (May 1993)

7) NAR, S.p.A. v. United States, 707 F. Supp. 553, 559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1989).

8) $30 x (50 units/150 units) + $15 x (100 units/150 units) = $20

9) $\frac{\$0(50/150) + \$5(100/150)}{\$20}$

10) Sweaters Wholly or in Chief Weight of Manmade Fibers from Hong Kong, The Republic of Korea, and Taiwan, USITC Pub. 2577, November 1992 (Views on Remand in Investigations Nos. 731-TA-448-450).

11)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Use of the GATT Antidumping Code" (1990), at 3-4; cited in Bovard (1991) at 107.

12) Only six percent of the investigations the Commerce Department conducted between 1980 and 1986 found the accused to be innocent of dumping. See James Bovard, "No Justice in Antidumping," *New York Times*, Jan. 28,1990, sec. 3, at 13.

13) Laura M. Baughman and Thomas Emrich,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Textile and Apparel Trade Enforcement Act of 1985,"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Corporation, June 1985, table 4, cited in I. M. Destler and John S. Odell, *Anti-Protection: ChangingForces in United States Trade Politics* (1987), at 54, n.40 and 56, n.43.

14) A study by Gary Hufbauer and Kim Elliott cited by Savlia Nasar, "The High Price of Protectionism," *New York Times*, Nov. 12, 1993, at D3.

15) A 19th century French economist, best known for his writing in favor of free trade and the economics of Adam Smith. In a well-known satirical parable that appeared in *Sophismes Economiques* (1845; *Economic Sophisms*, 1968) he concocted a petition brought by candlemakers who asked for protection against the sun, suggesting that candlemaking and related industries would greatly profit if the sun were eliminated as a competitor in furnishing light.

16) Frederic Bastiat, *The Law* (1961), originally published in 1850 as a pamphlet, *La Loi, reprinted in Sophismes Economiques*, Vol. 1, *Oeuvres Completes de Frederic Bastiat*, 4th ed. 343-394 (1878).

17) This is the term economists use to describe situations where individuals or special interest groups seek from government special privileges or protection, or get someone else to pay for their benefits. For more on the theory of rent-seeking, see Charles K. Rowley, Robert D. Tollison and Gordon Tullock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nt-Seeking* (1988); Gordon Tullock, *The Economics of Special Privilege and Rent Seeking* (1989).

18)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Comparison of U.S. and Foreign Antidumping Practices," (1990). The GAO statistics cover the period 1986-89, cited in Bovard (1991) at 140 and 165, n. 136.

REFERENCES

Bastiat, Frederic, *The Law*, New York, NY,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Inc. (1961)

_____, *Economic Sophisms*, New York, NY,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Inc.(1968)

Baumol, William J. and Janusz A. Ordover, "Use of Antitrust to Subvert Competition," 28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65)

Bovard, James, "No Justice in Anti-Dumping," *The New York Times*, Jan. 28, 1990, p. F13.

_____, *The Fair Trade Fraud*, New York, NY, St. Martin Press, 1991.

Caine, Wesley K., "A Case for Repealing the Antidumping Provisions of the Tariff Act of 1930, 13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1981)

Crane, Geoff, "Micron Technologies' Dram Dunk, " *Korea Economic Report*, June 1992

Dale, Richard, *Anti-dumping Law in a Liberal Trade Order*, New York, NY, St. Martin Press (1981)

Destler, I. M., *American Trade Politics*, 2nd e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1992)

Kaplan, Gilbert B., L. G. Karmark and M. Parker, "Cost Analysis under the Antidumping Law," 21 *George Washing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Economics*, 1988.

Knoll, Michael S., "United States Antidumping Law: The Case for Reconsideration", 22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1987

Korea Economic Report, "DRAM Dumping: A Sudden Blockade?," Dec. 1992.

Madaj, Edwin J. and Charles H. Nalls, "Bifurcation Without Directio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nd the Question of Petitioner Standing i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Cases," 22 *Law and Policy for International Business*, 1991

Nasar, Savlia, "The High Price of Protectionism," *New York Times*, Nov. 12, 1993, at D3.

Novak, Michael, *Free Persons and the Common Good*,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79)

Rand, Ayn, *The Virtue of Selfishness*, New York, NY, NAL-Dutton (1964)

Rowley, Charles K., Robert D. Tollison and Gordon Tullock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nt-Seeking*, Norwell, MA, Kluwer Academic Pubs. (1988)

Tullock, Gordon, *The Economics of Special Privilege and Rent Seeking*, Norwell, MA, Kluwer Academic Pubs. (1989)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Comparison of U.S. and Foreign Antidumping Practices, Washington*, D.C.,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Exhibit 1: A Summary of Antidumping Investigations against Korean Firms (1983-1993)

Product	Date initiated	Initiator (Petitioner)	Action taken
Lightweight polyester filament fabric (731 -TA- 119)	1/4/83	American Textile Mfrs. Institute	Affirmative preliminary injury and SLFV determinations, duty 0.5% ad valorem (8/8/83); negative final injury determination 12/5/83.
Circ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731-TA-131)	4/21/83	The Committee on Pipes and Tubes	Affirmative final SLFV and injury determinations, average duty 1% (4/25/84)
Color TV receivers (731-TA-134)	5/2/83	Six American producers	Affirmative final SLFV and injury determinations, average duty 6% (4/984)
Tubes for tires, other than for bicycle tires (731-TA-137)	7/11/83	Seven US tire and rubber manufacturers	Affirmative preliminary injury determination (8/25/83); negative final SLFV determination, case terminated 6/29/84.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 tubes (731-TA-138)	7/14/83	Committee on Pipe and Tube Imports	Affirmative final SLFV and injury determinations, average duty 2% (4/27/84)
Hot-rolled carbon steel plate (731-TA-151)	10/31/83	Gilmore Steel Corp.	Affirmative final SLFV and injury determinations, cash deposit 5% f.o.b value (8/9/84)
Oil country tubular goods (731-TA-193)	6113184	Lone Star Steel Co.	Negative preliminary SLFV determination (1/16/85); petition withdrawn, case terminated 6/7/85.
Radial ply tires for passenger cars (731-TA-200)	7/20/84	Armstrong Rubber Co.	Negative preliminary injury determination (9/19/84)

Product	Date initiated	Initiator (Petitioner)	Action taken
Grand and upright pianos (731-TA-204)	8/21/84	Aeolian Pianos, Inc.	Affirmative preliminary injury determination (11/5/84); negative final SLFV determinations (9/16/85)
Photo albums and photo album fillers (731-TA-241)	1/30/85	Esselte Pendaflex Inc.	Affirmative final injury and SLFV determinations, average duty 65% (12/6/85)
Offshore platform jackets and piles (731-TA-259)	4/18/85	Kaiser Steel Corp.	Affirmative preliminary and final injury and SLFV determinations, average duty 25% ad valorem (5/14/86)
12-volt lead-acid type automotive storage batteries (731-TA-261)	5/8/85	General Battery International Corp.	Negative preliminary injury determination (6/24/85)
Cast iron pipe fittings (731-TA-279)	7/31/85	Cast Iron Pipe Fittings Committee	Affirmative preliminary and final injury and SLFV determinations, average duty 12.5% ad valorem (5/12/86)
Top-of-the-stove stainless steel cookingware (731-TA-304)	1/22/86	Fair Trade Committee of Cookware Manufacturers	Affirmative final injury and SLFV determinations, cash deposit on case-by-case basis (1/7/87)
Brass sheets and strips (731-TA-315)	3/10/86	Several brass companies	Affirmative final injury and SLFV determinations, weighted average margin 7.17% (12/22/86)
Portland hydraulic cement clinker (731-TA-361)	10/30/86	American Cement Trade Alliance	Negative preliminary injury determination (12/15/86)
Color picture tubes (731-TA-369)	11/26/86	International Association	Affirmative final injury and SLFV determinations, weighted average margin 1.91% (12/22/87)

Product	Date initiated	Initiator (Petitioner)	Action taken
Industrial belts (731-TA-416)	6/30/88	Gates Rubber Co.	Affirmative final SLFV determination, average duty 64.37% (4/18189)
Small business telephone systems and subassemblies thereof (731-TA-427)	12/28/88	AT&T Co. and Comdial, Inc.	Affirmative final injury and SLFV determinations, cash deposit on case-by-case basis (1/22/90)
12-volt motorcycle batteries (731-TA-434)	5/17/89	Yuasa Exide Battery Corporation	Negative preliminary injury determination (7/3/89)
Industrial nitrocellulose (731-TA-442)	9/19/89	Hercules, Inc.	Affirmative final injury and SLFV determinations, weighted average margin 66.3% (6/28/90)
Sweaters wholly or in chief weight of manmade fibers (731-TA-449)	9/22/89	National Knitwear and Sportswear Association	Affirmative final injury and SLFV determinations, dumping margins ranged from 0.73% for Young Woo & Co. to 3.17% for Hanil Synthetic Fiber Industry (8/2/90). On remand, negative injury determination (11/92)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sheet and strip (731-TA-459)	4/27/90	E.I. Dupont de Nemours & Co.; Hoecht Celanese Corp.; ICI Americas, Inc.	Affirmative final injury and SLFV determinations, cash deposit on case-by-case basis (5/29/91)
Ball bearings, mounted or unmounted, and parts thereof (731-TA-498-511)	2/13/91	Torrington Company	Negative preliminary injury determination (4/1/91)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s and tubes (731-TA-532-537)	9/24/91	Allied Tube & Conduit Corp. and 9 others	Affirmative final injury and SLFV determinations, weighted average margins of 5.60% for Hyundai, 6.21% for Korea Steel Pipe, 11.63% for Masan Steel Tube Works, 4.97% for Pusan Steel Pipe, and 5.97% for all others (9/17/92)

Product	Date initiated	Initiator (Petitioner)	Action taken
Welded stainless steel pipes (731-TA-540-541)	11/18/91	Avesta Sandvik Tube, Inc. and 4 others	Affirmative final injury and SLFV determinations, 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s of 7.75% for Sammil Metal Products Co., 2.55% for Pusan Steel Pipe Co., and 6.83% or all others (11/4/92)
Stainless steel butt-weld pipe fittings (731-TA-563-564)	5/20/92	Flowline Division of Markovitz Enterprises, Inc.	Affirmative preliminary injury determination (7/16/92)
Flat-rolled carbon steel products (731-TA-573-620)	6/30/92	12 steel companies including USX Corp.	Negative final injury determination (3/12/193)
DRAMs of one megabit and above (731-TA-556)	4/22/92	Micron Technology, Inc.	Affirmative final injury and SLFV determinations, dumping margins of 4.97% for Goldstar, 11.45% for Hyundai, 0.82% for Samsung, and 3.89% for all others (4/21/93)

Notes

Sources of data: For the data from 1983 to 1990, I. M. Destler, *American Trade Politics*, 2nd ed. (1992), at 341-403; for the data after 1990, various publications of the U. S .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SLFV stands for sales at less than fair value.

INTERDEPENDENCE IN NORTHEAST ASIA:

The Role of North Korea 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K.A. Namkung

In the past several years, two strands or perhaps even schools of thinking about the future of the Korean revolution that might be termed "conservative" and "reformist" have cropped up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1]. But their banners are rarely unfurled publicly, and when contrasts are drawn between differing perspectives and points of view at all, their purpose is usually to draw attention to the absence of division in North Korea, such as when the Rodong Sinmun (Workers' Daily, the orga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recently explained how the party has "cemented the singlehearted unity of the whole society" when other socialist ruling parties had degenerated and collapsed amidst a lot of "vociferating about 'political pluralism' and 'multi-party systems," and how the Korean Workers' Party has successfully "pervaded the whole society with working class and communist traits" while other socialist states were introducing "corrupt and degenerated bourgeois ideology and culture under the motto 'liberalization of thought.[2]"' The problem with this kind of formulation, however, is that the author is probably correct to a large extent about the extent of penetration of unwanted ideas but also diverts attention away from the real differences that do exist at another deeper level.

One remarkable change in the new socialist constitution adopted in April 1992 appears to have curtailed the powers of the President of the DPRK himself in some fashion. Under the old constitution adopted two decades earlier, the President is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armed forces of the DPRK and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nd commands all the armed forces of the country."[3] Under the new,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of the DPRK continues to command all of the armed forces, but he is now appointed and dismissed by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is no longer the President. The Supreme People's Assembly's status as "the highest organ of state power in the DPRK... composed of deputies elected by secret ballot on the principle of universal, equal, and direct suffrage" remains unchanged, while the chairmanship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continues to be an elective post. But not only is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now appointed by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powers to appoint or remove high-ranking officers, to confer military titles of generals, and to declare a state of war

and issue mobilization orders in case of emergency, formerly invested in the Central People's Committee headed by the President of the DPRK, now reside in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4]. In other words, it would appear at least on paper that there now exist two centers of power in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the President (currently Kim Il Sung, known as the Great Leader) and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currently Kim Jong Il, his son, known as the Dear Leader) and that in the future these posts will continue to be occupied by two different individuals, at least so long as the new constitution remains valid.

Will the Dear Leader then abandon his chairmanship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o assume the post of President when the Great Leader finally passes the torch of succession to his son? This is not likely because control of the military will be crucial to the maintenance of political power. Instead, a more satisfying explanation is that the succession has already taken place, the Dear Leader is performing a role not unlike that of Deng Xiaoping who was paramount leader but as Dennis and Ching Ping Bloodworth put it, quoting Han Fei Tzu, was "so still that he seems to dwell nowhere, so empty that no one can see him[5]." Who will then become President when that moment comes? It is worthwhile to speculate that the decision to return Kim Yong Ju, the Great Leader's younger brother, to the Politburo and Vice-Presidency of the DPRK late last year is a prelude to his assuming the position. Known as a reformer and knowledgeable about North-South Korean issues, we might expect to see him exercise new lines of authority in connection with the decision to open up economically and the hope that a rapprochement with the South can be reached. (Incidentally, the new constitution also revises the term of office of the President from four to five years. This may provide a clue as to when President Kim is thinking of retirement. He was last elected to the Presidency in March 1990.)

The purpose of this speculative exercise is not to titillate the senses but merely to suggest that an entirely new political system may be in the making in North Korea today, one in which the powerful charisma of the Great Leader, which cannot be simply passed on as is through some process of symbiosis, is dissolving into two separate kinds of authority, one in which the exercise of military might and the potency of invisibility are indivisible, on the one hand, and functional and bureaucratic competence go hand in hand with the trappings of state power, on the other.

Beyond these two loci of power, the power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have been expanded under the new constitution. Mention has already been made of the power to appoint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Its Standing Committee is also empowered to deliberate upon and adopt new as well as revise existing legislation when the Assembly is not in session and to submit such legislation for approval by the full body when it does meet[6]. (Under the old constitution, its legislative functions were more vaguely stated, "to examine

and decide on bills.") Other "reforms" are in place. The Assembly may now elect or recall all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including its first Vice Chairman (currently O Jin U), its Vice Chairman (currently Choe Kwang), and the seven regular members,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hairman[7].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rime Minister, all members of the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the cabinet) including Vice Premiers, Ministers, and Commission Chairmen are to be appointed by the Assembly[8]. Finally, no longer does the President ratify and abrogate treaties concluded with foreign countries; this power belongs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9].

The new constitution is "reformist" also in the sense that virtually all traces of ideological fervor and militancy have disappeared at the same time that a new tone of moderation and gradualism has set in. Articles such as "the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Marxism-Leninism and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unites with the socialist countries, unites with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opposed to imperialism, and actively supports and encourages their struggles for national liberation and their revolutionary struggles,"[10] are out. In their place is a "softer" and more subdued, even religious, understanding of the juche (self-reliance) ideology which is no longer "a creative application of Marxism-Leninism to the specific conditions of the DPRK" but a brilliant idea "to realize self-reliance by the masses of the people and a world-view that is centered on man."[11] The masses are no longer pressed like the legendary Chinese flying horse to gallop the phenomenal distance of a thousand ri (2,440 miles) in a single day through mass mobilization campaigns. The famed Chollima movement is no longer the general line of socialist construction, in its place are the "three revolutions of culture, technology, and ideology" which suggest not fervor and phenomenal feats but self-discipline, training, and sheer hard work. By strengthening the three revolutions, the success of socialism "in the northern half of the peninsula" will be assured and the basis for a peaceful reunification based upon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peaceful means, and national unity will be laid. Interestingly, the new constitution deletes the phrase, "to drive out foreign forces on a nationwide scale."[12]

Naturally, the "reformist" impulses can be expected to be felt most strongly in the economy of North Korea. One might not expect to find the following kinds of guarantees in the constitution of 1992, but they are there: Article 37 states that "the state encourages equity and contractual joint ventures between our agencie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and foreigners both as corporate persons and as individuals;" Article 16 "guarantees the legal rights and commercial profits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the DPRK[13]." The inclusion of such language in the constitution of the DPRK was certainly unprecedented, but so have many other actions taken observers by surprise, going back at least to November 1990 when then-Prime Minister Yon Hyong Muk visited the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in

China.

There Secretary General Jiang Zemi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waited him, the first North Korean premier to visit a Chinese SEZ. According to Xinhua reports, Jiang introduced Shenzhen as a prosperous special economic zone that only a decade ago had been a deserted village. He then made essentially two broad points. First, in China's opening, it has been possible to maintain the policies of working with the outside world and following the path of socialism simultaneously. For reform and opening to succeed, the strengthening of political thought is vital; if the latter work succeeds, reform and opening will progress smoothly. If the opening succeeds, this will be beneficial to the work of strengthening political thought. Second, if the economy develops, the fact of the superiority of socialism will be plain for all to see. In a world that changes at a dizzying pace, we must work out ways to reconcile Marxism-Leninism with contemporary world conditions. Along with our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causes, we must construct our national economies[14].

Faced with the loss of its traditional socialist allies, the special trading relationships and benefits that came with those alliances, an aggressive policy of wooing these allies by the Koreans to the south, and a decreasing overall trade volume, the DPRK decided that it must change its ways with respect to trading and doing business with the outside world. In July 1991, the government requeste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to conduct a feasibility study of the region surrounding the northeastern port city of Chongjin in North Hamgyong Province. In the same month a North Korean participant in a symposium held in Niigata, Japan revealed for the first time the government's plans to develop the ports in the northeast. By October of that year, when the UNDP sponsored in Pyongyang the first of a series of planning meetings to discuss multilateral cooperation in developing the Tumen River area, the specific plans for opening the Rajin-Sonbong Free Trade and Economic Zone had been announced.

On December 28, 1991, the DPRK's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revealed that the new free trade zone would encompass some 621 square kilometers of territory surrounding the ports of Rajin and Sonbong in the northeasternmost corner of the country close to the Tumen River delta separating the riparian countries of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Foreigners would be permitted to engage in a wide range of investment activity including contractual joint ventures, equity joint ventures, and even 100% wholly foreign-owned ventures. In addition to the ports of Rajin and Sonbong inside the zone, the larger principal North Korean port of Chongjin would be declared a free trade port. The state would guarantee by law both invested capital and the profits earned therefrom. A variety of incentives ranging from lower customs duties to tax holidays would be provided.

Since then, the DPRK has issued a spate of legislation spelling out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foreign investments both inside the zone and within the general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On October 20, 1992, the state-run Korean Central News Agency reported that on October 5, 1992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had adopted three laws pertaining to this issue, the Foreigners' Investment Law of the DPRK, the Contractual Joint Venture Law of the DPRK, and the Law of the DPRK on Foreign Enterprises[15]. On January 31, 1993, the Assembly adopted three additional pieces of legislation: the Law of the DPRK on the Free Trade and Economic Zone, the Foreign Exchange Control Law, and the Law on Foreign Enterprises and Taxes. In recent months, yet another set has been issued: the Land Lease Law (October 27, 1993); the Foreign Investment Banking Law (November 24, 1993); the Law on Foreigners' Entry into the Free Trade and Economic Zone (November 29, 1993); Labor Regulations Governing Foreign-invested Enterprises (December 30, 1993); and the Equity Joint Venture Law (January 20, 1994)[16].

Will it work? Does economic opening have a future in North Korea? Collectively, the new legislation represents a radical improvement over North Korea's first attempt at doing business with foreigners, the Joint Venture Law of 1984, which contained many vague provisions such as "Joint venture enterprises may be exempted from income tax for a certain period after production commences[17]." This time the priorities for investment are stated clearly ("The state encourages investments especially in sectors that employ high and advanced technologies, those which produce internationally competitive goods, sectors involving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and building of infrastructure, and 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scientific research fields" [18] and the benefits are spelled out. If such Joint ventures decided to locate in the Rajin-Sonbong Free Trade and Economic Zone, the incentives are considerable. For example, the state will levy no customs duties on both imported and exported materials and goods except in certain special situations. Such firms will have no income tax to pay for three years from the year they turn profitable. During the following two years, such taxes can be reduced up to 50% of liability. Beyond the fifth year, the income tax rate will be 14%, a concessionary rate for the special zone and a considerable improvement over the rate of 27% under the old law.

Investment is possible in a broad range of industries including manufacturing, agriculture, construction, transportation, telecommunic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tourism, trading, and financial services. Repatriation of profits is assured. Foreignfunded enterprises and assets cannot be seized by the state; if ever necessary, fair compensation is promis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nagerial secrets") are to be protected. Land may be leased for up to fifty years; during this period such property may be both traded and inherited. On paper, the North Korean market may turn out to be one of the most open and liberal among all such markets in Asia.

If these are some of the manifestations of what I have called "reformist impulses" in North Korea today, what is the character of the "conservatism" I have suggested stands in contrast to this? In the economic sphere, conservatism is the effort to strengthen the top-down, centrally-planned, command-type economy that has lain at the bas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for decades, originally inspired by the Soviet model. It also seeks to suppress all use of material incentives to bolster performance; any suggestion that self-interest on the part of either the individual worker or the enterprise of which he is part can add to productivity is anathema. If so, reformism then is the effort to give greater play to the locality versus the center, the enterprise versus the state, the production locale versus the economic management agency. Similarly, a greater rein is given to the use of material incentives and the workings of the market to assign value and prices.

In ideological terms, the "communistic" aspects of North Korea's socialist system as well as the effort to hasten the day when socialism will turn to communism represents the conservative enterprise. The realization that socialism represents a "transitional stage" that for the time being cannot be overcome is reformist.

Politically, conservatism is the worship of the Great Leader and now, the Dear Leader,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the party over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and the emphasis upon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aspect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people are expected to display selfless loyalty to the leader and obey and follow the dictates of the party and government. Reformism is the valuation placed upon the government as distinct from the party (the two are not considered the same), upon the effort to reflect the people's collective wishes in decision-mak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policymaking, and upon "the rule of law" as opposed to "personal rule," upon institutions and regulations as opposed to personal whimsy.

That reformism has managed to hold its own and may have a future as well can be seen in the ability of the collective farms of North Korea to avoid nationalization, one of North Korea's most cherished and longstanding goals. At the Sixth Korean Workers Party Congress in 1980, Kim Il Sung stressed the need to move from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system to total state ownership. By the mid-1980s, the tempo had clearly picked up. At the First Session of the Eighth Supreme People's Assembly in December 1986, he announced that "the basic conditions have arrived, we are now approaching the epoch-making boundary line that is the complete victory of socialism[19]." It was his belief then that the time had come to discuss the nationalization of the collective farms of the nation, long targeted for eventual abolition.

By 1988 or so, however, he was forced to continue to recognize "the transitional character" of the property of cooperative organizations in the countryside. "In a completely victorious socialist society," read one tract, "the property of the whole people alone forms the

economic foundations of the state[20]." But it had become clear that that day was still far off. He admitted: "As the material-technical foundations of agriculture are strengthened and the ideological and cultural level of the peasants enhanced, the property of cooperative organizations will gradually be assimilated to the property of the whole people in our country." The urgency of the task had clearly diminished.

From this time on, except for some rhetorical flourishes about "the complete victory of socialism," the notion that the time had come to move to some final stage of development has not found expression in print, much less in specific policy measures. One might have expected to see this issue addressed on the occasion of the Great Leader's speech commemorating the fortie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DPRK in 1988, yet no mention was made. Thus in the 1992 constitution, the state not only "consolidates and develops the socialist cooperative economic system and gradually turns the property of cooperative organizations into the property of all the people according to the voluntariness of the whole membership of cooperative organizations,"[21] as stipulated in the original constitution, It "organically fuses the two different types of ownership as it elevates the ideological consciousness and material-technical standards of the peasantry and strengthens the leading role of state property vis-a-vis cooperative forms of property." "Organic fusion" is a misnomer for separateness.

Thus, as the thirtieth anniversary of the famous "rural theses" (Theses on the Socialist Rural Question in our Country, February 25, 1964) approaches, the Central People's Committee of the DPRK on January 5, 1994 issued a decree that contained no references to the centerpiece of that original argument, the nationalization of cooperative forms of property: "With the three revolutions, ideological, technical and cultural, powerfully accelerated in the rural communities, our agricultural working people have become the true masters of the countryside enjoying an independent and creative life, freeing themselves from outdated ideas and customs left behind by the exploiter society. Irrigation and electrification have been completed and comprehensive mechanization and application of chemlcals have reached a high level and agricultural production has made a fast progress on the basis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the juche method of farming[22]." This is a statement that could easily be confused with the tracts that celebrated the initial successes of the so-called New Village (Saemaul) Movement in South Korea, which helped to make rapid industrialization possible there.

What, then, is the future of reformism in North Korea, and what are its implications for U.S. policy vis-a-vis North Korea as well as for North Korea's own prospects for economic integration in the region as well as global economy?

To interpret the reformist impulses now plainly visible in North Korean society as the sign of the existence of a serious factionalism, two camps opposed to one another (Red versus

expert, for example), or conflicting ideologies would be a serious mistake and lies at the heart of all simplistic attempts to comprehend such signs, especially in Asian societies, in terms of a set of "principles" such as "democracy," "human rights," and "market economics."

For in reality it is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that carries within itself both sets of impulses simultaneously. On the one side is the fundamental notion of juche as it applies to the three principal players of leader, party, and people. The notion is liberating, much as "rugged individualism" meant to an America just growing up. The three entities in this shceme constitute a "socio-political organism" of which the individual is the fundamental unit. What keeps it all together is the great benevolence and love of the leader like that of one's parents. The follower's great duty then is to display unconditional and absolute loyalty as the "supreme expression" of "a revolutionary faith." This might be called the "sacred" aspect of North Korean politics.

The other side of the same structure, the "profane," is the "administrative" and "routine" aspects of North Korean political life. In this world, the party is not an undifferentiated part of some ecstatic whole going beyond conventional notions of party membership to include virtually the whole of society, but an institution charged with overseeing the government's functions. The government in turn is entrusted with the task of managing society properly and well. The triad in this case is not the leader, the party and the people, but the party,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in the latter case "the people" referring not to some mystic entity but social collectivities and organizations. There are no personal bonds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leader in this scheme. In this world,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centralism" and "socialistic democracy" prevail, and within those frameworks, there is room for a certain kind of individual freedom and equality.

The future of reformism in North Korea is by no means clear, since it is not autonomous from the rest of society. It exists part and parcel with the rest. If it is to be given wider scope, the whole system must move together towards change. (Perhaps this was what Jiang Zemin was trying to say to Yon Hyong Muk.) There is no such thing as appealing to the "moderates" and the "doves" versus the "hardliners" and the "hawks" in this case, for they are more often than not one and the same people. This raises the issue of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ere can be no solution to the current nuclear impasse that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complex character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All of the appeals that we have issued (the lure of economic benefits, the promise of a new regional security and economic order, the respectability that comes from diplomatic recognition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hedding of "rogue state" status, and so forth) cannot work and are doomed to failure. They make no sense to the North Korean leadership because they appeal to only one side of their character. If the region is to be truly free of nuclear weapons, as it should be, the legitimacy of the North

Korean system, as vastly different as it is from our own, must be recognized.

One North Korean representative stated recently, "If only they would not demand to see the two (undeclared) sites, we might cordially invite them to see them." This captures in one line the current dualistic structure of North Korean thinking with respect to the outside world. Our policymakers would have a much easier time if this fact were recognized early.

What of economic interdependence in the region? In the end, this will depend upon whether North Korea is invited to integrate itself into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as a full-fledged functioning member. Can either China or Japan mediate the current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Both have their problems with the United States now. Neither is willing to step out in front to help settle the dispute, in part because neither wishes to antagonize South Korea. South Korea for its part cannot move without being assured of victory in some sense over its longtime rival to the north, which is why North-South Korean relations have improved only slightly.

Only the United States is unencumbered to act, especially now that its erstwhile enemy in the Pacific theater is gone. For the first time in this century, America's relations with both Asian giants, China and Japan, are strained at the same time, and the sense of rivalry is bound to increase over time, which may promote a certain three-way strategic equilibrium in the Asia-Pacific region that maintains the peace. When this happens, all of the current bilateral security alliances which the United States enjoys in the region may have to take a back seat to the China-U.S.-Japan equilibrium. An America that encourages good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with an eye towards eventual reunification is an America that can both enhance its strategic position in the region and play a historic role in turning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to the engine of the world economy that it has the potential to be.

Indeed, American leadership in reduc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moving the one persistent source of military conflict that can damage everyone's economic hopes can give the United States the moral authority to move towards a collective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under American leadership, a regional security order that includes North Korea as an active, contributing member.

FOOTNOTES

1) Sakai Takashi, "Kita Chôsen no shakaishugi rosen, 1984-92: hoshu to kaikaku no hazama de," Kan Taiheiyo Mondai Kenkyujô, Kankoku Kita Chôsen Sôran (Auqust 1993).
2)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FBIS), East Asia, #94-020 (31 January 1994), p.19.
3) Tai Sung An, North Korea: A Political Handbook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Inc., 1983), p.232.
4) Kita Chôsen seisaku dôkô, No.200, February 27, 1993, p.2.
5) Cited in Lucian W. Pye, "Deng Xiaoping and China's Political Culture," The China Quarterly, No.135 (September 1993), p.416.

6) See footnote 4.

7) Ibid.

8) Ibid.

9) Ibid.

10) Tai Sung An, North Korea, p.216.

11) See footnote 4.

12) Ibid.

13) Ibid.

14) Ibid.

15) Kita Chôsen seisaku dôkô, No.197, November 30, 1992, pp.9-18.

16) These can all be found in FBIS under the dates of their announcements to the media.

17) See footnote 15.

18) Ibid.

19) Sakai Takashi, "Shakaishugi kensetsu rosen no hensen," in Tamaki Motoi and Watanabe Toshio, eds., Kita Chosen: horaku ka, sabaibaru ka (Tokyo: Simul Press, 1993), p.233.

20) Ibid.

21) Ibid.

22) FBIS, East Asia, #94-001 (5 January 1994).

한국공업화에 있어서의 국가 · 재벌관계와 '민주화'

고 용 수

1. 한국에서의 국가 · 재벌관계의 변화

1960년대 이후의 한국의 공업화는 발전도상국 공업화의 다양한 경험중에서도 주목을 모아왔다. 이 한국의 공업화에 대하여 비교우위에 의거한 자유무역정책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신고전파적 설명은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고, 국가 · 외국자본 · 국내자본의 삼자동맹에 의한 공업화라는 시각이 유력해지고 있다[1].

예컨대, 김영호는 제2차세계대전 후 식민지체제붕괴기(post colonial age)의 발전도상국 공업화를 산업주의(industrialism)에 세계화 과정에 있어서 제4세대공업화로 파악한다. 말하자면 공업화의 세계사에 있어서 전후의 발전도상국 공업화를 그 이전의 선진국공업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고 국가 · 외국자본 · 국내자본의 삼자동맹이 추진력이 되어 전개된 제4세대공업화라고 파악하는 시각이다[2]. 20세기 중반까지 식민지 · 반식민지로서 후진성을 강요당하여 민족자본이 거의 파괴되어 버린 발전도상국에 있어서 대전 후의 공업화는 국가와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특히 아시아에서는 국가의 영도적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흔히 민중배제형 군부개발독재체제와 그에 의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해 왔다. 또 이 제4세대공업화는 제3세대공업화까지 볼 수 있었던 제국주의적 팽창에 의거한 발전의 길을 이미 추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오늘의 선진공업제국과는 단계적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의 경제개입의 역할을 중시하는 시각으로서 암스덴(Amsden)은 한국을 '후발공업화(late industrialization)' 이론의 경험적 기초로서 분석했다. 그는 후발공업화의 핵심에 대해 외국기업의 경험을 학습하는 능력, 외국의 기술과 전문가를 자기의 생산적 목적에 적용하는 능력, 기존의 세계경제구조에서 초래되는 후발자의 제한(후발성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광범한 "보조"와 지도의 필요성으로 파악했다[3]. 또한 헨더슨(Henderson)도 한국을 비롯한 NIEs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국가에 의해 지도를 받은 계획합리적인 정치경제체제"로 지적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4].

이 삼자동맹론, 특히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중시하는 시각은 국가와 국내자본(재벌) 그리고 외자의 이해 일치에 기초를 둔 동맹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특히 국가와 재벌 사이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 사태가 나타났다. 1985년 한국의 재벌중에서 상위 8위에 위치하고 20개 이상의 계열회사와 3만 8천명의 종업원이 근무했던 국제그룹이 전두환정권에 의해 해체되었다. 당시 금융

지원을 요청한 국제그룹에 대하여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김만제 재무부장관이 지원의 의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대통령이 해체를 지시한 것이다. 이는 국제그룹의 양정모회장이 새마을 성금에 소극적이었고, 85년 2월의 총선거 때에 여당에 비협력적이었던 점에 대해 전대통령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해체되었다고 일컬어 지고 있다[5]. 이 사건은 재벌의 생사여탈에 관하여 국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7년후에는 새로운 사태가 일어났다. 한국에서 최정상을 겨루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노태우정권과 알력이 쌓인 끝에 야당으로서 정계에 진출하였고 1992년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여 호되게 여당 · 정권비판을 전개한 것이다. 현대그룹과 노태우정권 사이의 알력은 1980년대말부터 정부가 재벌규제정책을 강화하여 1991년말에 국세청이 1,361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이에 격노한 정주영은 92년초에 정계에 진출하여 신당을 설립한다고 표명하고 90년말만해도 노정권에 100억원의 헌금을 했다고 폭탄발언을 했다. 그리고 정주영은 국민당을 창당하여 3월의 국회의원선거에서 31명의 국민당원을 당선시켰고, 년말의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것이다[6].

한국에서 정상을 겨루는 현대그룹이 이렇게 당시의 정권과 심각한 대립관계에 섰던 것은 재벌과 국가의 관계가 지금까지의 동맹관계 일반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모든 재벌이 국가와 대립관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친TK(대구 · 경북)재벌이라고 지적되는 삼성 · 선경 · 한국화약 등이 노태우정권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에 대해 현대등 비TK재벌은 국가의 편의제공도 줄어지자 비판을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7]. 덧붙여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권위적인 개성도 이 사태에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벌전반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상위에 위치한 국가에 대하여 재벌은 수직관계에서의 하위의 지위를 받아들였는데, 그 간의 경제력집중에 의해 1980년대말 이후 재벌이 자기의 통제력을 강화하여 국가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게 되어 재벌과 국가의 이해가 대립하는 국면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8].

따라서 본고에서는 1980년대 이후의 정부의 재벌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와 재벌의 관계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암스덴(Amsden)은 국가의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체제'를 강조했으나, 한국에서 1970년대까지 지원정책중심이었던 대재벌정책은 80년대에 들어와 규제의 측면도 부가되게 되었다. 여기에는 한국관료의 역할이라는 변수도 작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정부의 재벌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국가 · 재벌간의 각축관계를 재검토하려고 한다.

둘째로, 국가 · 재벌 관계에서 이와같은 알력이 나타난 시기는 한국에서 '민주화'가 진전되던 시기와 겹치고 있다. 1987년 6월의 민중항쟁을 비롯하여 군정을 거부하는 광범한 민중운동은 사실상 전두환정권을 붕괴시켰다. 그후 1988년에 성립한 노태우정권에 있어서도 체제중추세력의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과거의 군부개발독재형의 통치양식이 후퇴되어 선거와 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불충분하지만 '민주화'

과정이 진전되었다. 그리고 1993년 김영삼정권의 출범으로 삼십수년만에 문민정권이 성립되어 그 때까지 권력의 중추에 영향력을 가졌던 군부의 역할이 저하되었다. 본고의 두번째 과제는 이러한 '민주화'과정이 앞서 지적한 국가 · 재벌간 관계의 변화나 다른 사회변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동시기에 진전된 다른 아시아 제국의 '민주화' 과정과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2. 1980년대 이후의 정부의 재벌정책

(1)제5공화국기의 재벌정책

한국경제는 1979년부터 경기후퇴에 들어가, 80년에 성장률이 −3.7%까지 내려가는 심각한 시기를 맞이했다. 73년에 정부가 추진한 중화학공업화정책에 의하여 조선, 기계, 전자 등 중화학부문의 성장을 이끌어 온 재벌들은 정부의 특혜금융이나 정부가 지배력을 가지는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하는 취약성을 지녔고 생산설비 · 기술 · 소재 · 부품을 해외자본에 의존하면서 국가의 차관배정을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하여 설비확장을 다투어 결국 과잉중복투자가 되었다[9]. 나아가 73년부터의 중화학공업화정책에 의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이행함으로써 두번에 걸친 오일 쇼크의 영향을 크게 받아 70년대말에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경상수지적자확대라는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경기침체의 원인을 구명하여 그 극복책을 검토한 바 이에 관련하여 1982년부터의 제5차 5개년계획 이후부터는 "민간주도경제로의 이행"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 민간주도경제에 관해서는 재벌과 정부의 생각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10]. 먼저 정부는 이제까지의 정부의 과도한 경제개입이 재벌의 특정중화학부문에서의 중복투자와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인식하여 수출지원 금융 · 정책금융의 축소와 경쟁제한적제도의 철폐, 시장기능활성화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경제정책결정에 있어서 발언력을 강화한 경제관료들이 80년을 전후하여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시장메카니즘을 왜곡하여 비효율을 가져왔다고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뉴욕 대학교 교수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을 거쳐 82년부터 86년까지 대통령경제담당수석 비서관을 역임한 사공일이 80년의 논문 "경제성장과 경제력집중"에서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비판한 것을 비롯하여 관변연구기관에서 비슷한 비판이 표면화되었다[11]. 이와 같이 정부의 재벌정책은 70년대까지의 직접적인 지원 · 육성 중심의 형태로부터 80년대에는 선별지원에 규제의 측면을 부가한 것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12].

1980년대 전반에 내세운 재벌정책으로서 먼저 들 수 있는 것으로는 79년의 안정화정책에 이어[13], 80년 12월말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있다[14]. 이것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기업결합을 사전신고하게 하는 등 독점적 시장행동의 규제(특히 중소자본과 소비자에 대한 시장행동의 규제)

에 한정되었지만, 재벌의 유통과정에서의 지배력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성과가 있어서, 재벌의 제조업 출하액 비중이 80년대 중반까지는 상승하였으나 80년대 후반에 이르면 하락하게 되는 효과를 초래했다〈표1 참조〉. 말하자면 정부는 재벌의 과도한 시장지배가 시장기구에 폐해를 가져온다는 인식하에 재벌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에 나선 것이다.

〈표1〉상위 대기업의 출하액 · 고용 점유율

(%)

연도	출하액 기준		고용기준	
	50대 기업	100대 기업	50대 기업	100대 기업
1970	17.8	28.7	15.4	22.8
1977	35.0	44.9	16.9	23.9
1982	37.5	46.8	16.0	21.9
1987	30.9	38.9	14.5	19.8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개발연구원 『공정거래 10년』 1991년, 124쪽.

둘째로 정부가 내세운 재벌정책으로는 중화학공업 재편을 통한 재벌재편정책을 들 수 있다. 1970년대에 재벌기업에 의한 중화학공업부문의 투자가 과열기미를 보여 중복투자에 따른 막대한 과잉시설이 발생한 것은 80년 불황의 하나의 배경적 요인이 되었다. 이 과잉투자를 정리하기 위하여 80년에 등장한 전두환정권은 중화학공업 재편조치를 취했다. 자동차부문에서 현대자동차와 새한자동차(현재의 대우자동차)의 2개사체제를 선택하여 기아산업은 트럭생산에 한정시켰다. 발전시설부문에서도 2개사 이외의 진출에 규제가 취해지는 등 기존기업의 정리 · 통합, 신규진입규제조치가 행해졌다. 또한 70년대에 계열기업을 팽창시킨 재벌에 대해 80년의 "기업체질강화조치(9 · 27 조치)"에 의하여 14개사 이상의 계열기업을 거느린 22개 재벌과 은행차입금이 많은 4개 재벌에 대하여 계열기업의 자주정리를 통고하는 등 "외형적 팽창을 위주로 한 안이한 기업경영방식"[15]의 시정을 촉구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재벌은 자유주의 논리에 입각하여 정부규제의 전반적 완화를 요구하여 대항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정부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대책은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는 불필요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정부의 제규제를 완화하도록 요구하였고 동시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면서 재벌에 대한 여신관리의 철폐와 특혜금융지원의 유지, 나아가서는 시중은행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의 민영화 · 자율화를 요구하였다[16]. 즉, 재벌기업은 "재벌주도"야말로 "민간주도"라는 인식하에 동족지배 · 상호출자 등에 의한 계열사간 결합을 온존한 채 규모의 대형화를 계속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기도했다. 이와 같은 정부와 재벌의 견해차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80년대 후반에 들어 정부와 재벌간의 알력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이후 정부의 관리하에 놓였던 시중은행을 81년부터 민영화한 것은 이들 정부 · 재벌의 이해가 일치한 가운데 전개된 것이다. 정부는 금융부문에서도 시장메카니즘에 기초한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금융자율화 · 은행민영화를 진전시키려고 했다. 한편 재벌도 외화조달은 국가의 차관배경에 의존하고 내자는 정부의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이제까지의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였다. 이런 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벌은 80년대부터 외자조달원을 해외현지조달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이용등으로 다각화시키고 내자조달을 위해서는 제2금융권에 진출했는데, 시중은행 민영화에 의한 시중은행의 주식확보는 금융기반 확충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것이었다. 81년 이후의 은행민영화에 대하여 정부는 은행주식의 소유집중을 막기 위해 동일인과 그 친족 및 이들이 지배하는 법인을 포함한 하나의 그룹이 발행주식총액의 8%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특정재벌이 이 규정범위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재벌은 국가의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국가에 대한 상대적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획득하게 되었다.

(2) 제6공화국기의 재벌정책

각축 기미를 보이던 정부와 재벌의 관계는 1988년부터 시작된 노태우정권하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87년 6월 민중항쟁에서 나타난 거대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전두환정권을 사실상 붕괴시켰다. 변화된 시대상황 속에서 출범한 노태우정권은 "탈 권위주의화"에 의해 국민들의 민주화와 경제적 공정 · 재벌규제에 대한 요구를 일정 정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노정권 성립과 시기를 같이 하여 "삼고현상"과 경상수지의 적자 등 경제난국이 나타나고 국제경쟁력저하문제가 심각하게 되자, 재벌의 비효율성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이 난국을 극복하여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이 강해져 재벌규제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노태우정권 초기에 재벌을 포함한 산업개편책과 사회정책차원에서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제도가 제기되었으나 재벌의 저항으로 인해 연기 · 변질되어 재벌의 영향력이 확대되자[17], 경제관료들은 소유 · 경영구조까지 포함한 본격적인 "재벌개편론"을 주장했다. 재벌체제가 비효율적이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최각규경제기획원장관의 "재벌 기업의 소유 분산과 기업경영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경영제도로 전환할 것이 필수적"[18]이라는 인식에서 볼 수 있듯이 위기타개를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으로서 재벌개편 정책이 제기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 세가지에서 볼 수 있다.

첫째로, 토지투기등 비정상적인 투기활동을 규제함과 아울러 과도한 다각경영체질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업종전문화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먼저 1990년 5 · 8 조치를 통해 부동산 투기 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을 발표하여 49개 재벌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강제매각을 명하고, 그후 91년 3 · 14조치에서는 제조업경

쟁력강화 대책으로서 "주력기업제도"를 내세웠다. 이것은 상위 30대 재벌에 3개사 이내의 주력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한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우대제도로서, 이전의 문어발식 다각경영을 억제하여 주력부문에 대한 집중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뒤에서 보듯이 93년 김영삼정권기에 "주력업종제도"로 전환되어 재벌체제를 3개 이내의 전문업종 중심의 체제로 개편하려고 하는 정책이 되었다. 이 정책에 따라 재벌들은 계열기업의 매각 · 정리를 하여 특정전략업종으로 전문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19]. 이런 조치에 의해 재벌의 토지투기등 비생산적 축적이나 과도한 다각화 등의 경영방식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게 되었다.

둘째로 소유와 경영의 집중문제를 극복하여 소유분산을 촉구하는 재벌규제정책이 있다. 한국재벌은 동족에 의해 소유와 경영이 지배되는 전근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30대 재벌의 경우 1980년대 중반에 재벌가족과 계열사의 소유가 56%를 차지하여, 동족에 의한 주식소유집중을 계열기업간 상호출자가 보강하고 있다. 이 소유집중에 기초하여 경영도 동족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20]. 또 동족의 높은 주식소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열기업의 주식공개가 회피되어 왔다. 자금수요에 대하여 증자등으로 자기자본을 확대하면 동족의 소유비율이 저하되므로 자기자본을 확대하는 방법보다는 외부자금의 차입에 의존하여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해 왔다[21].

〈표2〉 30대 재벌의 주식보유분포

연도	재벌가족소유	계열사소유	재벌 내부지분합계
1983	17.2	40.4	57.2
1987	15.8	40.4	56.2
1990	13.9	33.0	46.9

자료 : 홍장표 「한국자본주의와 독점재벌」 (주16)

이러한 재벌의 소유문제는 오랫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1차 개정에서 처음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과 계열기업간의 직접 상호출자를 금지하였고, 간접 상호출자(행열형, 환상형 상호출자)를 규제하기 위하여 타기업에 대한 출자 총액이 당해기업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재벌소유의 금융 ·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공정거래법은 87년부터 실시되어 재벌의 상호출자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낳았으나, 가장 중요한 동족에 의한 주식소유집중 대책에 관해서는 과제를 남겼다. 이 점에 대해서는 90년의 상속 · 증여세법 개정을 통하여 고액 상속자의 신고내용공시, 재산변동사항관리, 상속세 무신고 · 허위신고의 시효기간 연장, 문화재단에 특정회사의 20% 이상 주식기증시 증여세 부

과, 불균등 감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이는 재벌의 가족적 소유구조 그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그것의 세습에 대한 규제라는 간접적인 대책이었다. 또는 91년에 발표된 제7차 5개년계획(1992~96년)에서 포괄적인 대책이 제시되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조직의 효율화'를 10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정하여 소유집중분산,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한 전문·독립경영체제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여기서는 기업공개·주식시장을 통한 점진적인 소유분산을 촉진하려고 한다.

셋째로 전문독립 경영체제로 유도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말하자면 창업자 일족을 중심으로 "계열기업내의 모든 자금, 인력, 내부거래 등을 종합관리하는 방식"에서 점차 "개별기업별 독립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경영체제로 전환"[22]시켜 간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제7차 5개년계획에서 계열사간 상호지급 보증과 불공정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재벌들은 이제까지는 계열사간 상호지급 보증에 의해 특정기업의 부실화가 전체기업에 파급하는 것을 방지해 왔다. 이것에 대해 92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계열사간의 상호지급 보증을 92년 7월로 동결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현재 자기자본의 3~5배에 달하는 상호지급 보증을 96년까지 두배 이하로 낮추기로 하였다[23]. 또 재벌계열사간의 불공정한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93년 4월부터 실시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서 비주력 부실기업과 주력기업간의 내부거래를 규제하여 후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가능케 해서 사양기업의 도태와 성장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시장원리에 따른 산업구조조정 과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재벌정책은 ①과도한 다각경영체질을 개선하여 전문업종으로 집중화를 촉구하고 ②재벌일족에의 소유집중을 완화하고 주식공개를 촉진함으로써 재벌의 전근대적 특질을 개선하고 ③금융기관에 의한 재벌기업 주식소유를 유도하여 형식적으로는 일본형 법인적 소유구조에 접근시키고, 실질적으로는 재벌주식을 은행이 소유하고 그 은행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정부의 재벌에 대한 통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는 점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24].

(3)김영삼정권기의 재벌정책

1990년 3당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을 결성하여 6공세력과 결합한 김영삼씨는 1992년 민자당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에 승리하여 1993년 김영삼정권이 출범했다. "변화와 개혁"을 내세운 김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몇 가지의 개혁정책을 실행했다. 취임직후의 공직자 자산공개와 공직자 윤리법 개정, 93년 8월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금융실명제, 94년의 통합선거법을 통한 선거부정에 대한 벌칙강화 등은 국민이 바라왔던 개혁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후속조치에 의해 벌칙이 크게 완화되는 등, 여전히 강력한 저항을 꾀하는 기득권 세력과 타협함으로써 개혁이 한계에 부딪쳐 "금융실명제 실시 선언을 끝으로 개혁은 사실상 마감되었다[25]"

라는 지적도 있다. 사실 93년 후반 이후는 개혁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격도 있었고 개혁조치의 후퇴도 나타났다. 노동정책에 관해서 이전에 인정되지 않았던 노조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려고 한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재계의 큰 반발을 사자, 93년말의 내각 개조 때 경질돼 버렸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재벌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가 연기되거나 중앙은행 독립성문제도 배제되는 등 개혁의 후퇴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과제로 지적되어 온 노동정책이나 공정한 분배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김영삼정권의 대응은 불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6].

김정권 출범 직전의 경제상황은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1991년 후반부터 조순 한은총재가 긴축정책을 취하여 80년대말 거품경제하에서 상승한 물가를 침정시켰으나 92년 이후에는 내수가 정체되어 동년 성장률은 4.7%로 저하했다. 나아가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정체되고, 무역수지는 적자가 계속되자 기업의 생산의욕이 떨어져 92년부터 93년 전반기까지 설비투자가 마이나스로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김정권은 당초 이경식 경제기획원 장관, 박재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강봉균 경제기획원 대외경제 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팀 밑에서 당면한 경기부양에 힘을 기울였다. 경기부양 정책은 먼저 3월 22일에 발표된 신경제 100일 계획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설비투자자금 공급의 확대, 공금리 인하에 의한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규제완화 · 자유화 정책을 내세웠다[27]. 이어서 7월에 신경제 5개년계획(1993~97년)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경제정책을 정부주도형으로부터 민간자율형(자유화에 의한 효율향상)으로 전환한다는 기조하에 개혁정책으로서 ①96년까지 금리를 자유화하고 금융기관의 인사 · 자금운용의 자율화, 정책금융의 축소, 은행민영화등 금융자율화를 추진하고, 정부의 쌀수매에 의한 이중곡가정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공시지가와 일치시키는 등 재정개혁을 실시하고 ②기업활동의 제약 완화, 수출입 통관 절차의 간소화, 토지이용 제도의 규제완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③재벌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들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침체되는 경제를 부양하는 점에 역점이 놓여져 재벌 기업들의 압력하에 그 요구를 상당히 받아들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재벌개혁정책은 이전의 문어발식 비효율 경영을 개혁하기 위한 "업종전문화 정책"으로서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1991년에 실시된 "주력기업제도"를 "주력업종제도"로 변경한 것으로, 상위 10대 재벌에 대해 3개 이내, 11위부터 30위까지의 재벌에 대해서는 2개 이내의 주력업종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해당업종에 속하는 계열기업 중에서 주식소유 분단상황 · 주식공개 · 재무구조 등이 건전한 기업을 주력기업으로서 신고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규제의 해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 총액제한 한도의 특례적 인상, 기술개발자금, 공업용지 확보와 관련된 규제의 완화 등 전반적 지원을 받게하였다. 이 정책의 배경으로서 개방화 경제의 치열한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일류 기업

화를 지향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재벌정책은 애초 이전의 정권과의 유착이나, 주식비공개, 일족에 의한 소유·경영지배 등 전근대적 경영에 의한 비정상적인 축적체제를 시정하여, 기업체제의 "합리적 재편"과 경쟁력 향상을 꾀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 정책은 과연 그 의도대로 관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업종 전문화 정책에 따라 30대재벌의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이 1994년 1월 18일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30대 재벌에서 총 112개 기업이 주력기업으로 신고되었다. 그러나 상위 10대 재벌에서는 〈 표3 〉에 예시하듯이 전기·전자, 자동차, 에너지 부문에 주력업종이 집중되어 "전문화보다는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나, 삼성종합화학을 비롯한 화학부문에서는 이미 과당경쟁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각 회사가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력기업에 지정되었다는 점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28].

〈 표3 〉10大그룹 주력업종·기업

그룹명	주력업종	주력기업
현대	전기전자 자동차 에너지	현대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차써비스 현대정유 세일석유(5)
삼성	전기전자 기계 화학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항공 삼성종합화학 삼성석유화학(5)
대우	기계 자동차 유통운수	대우조선공업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대우(4)
럭키금성	전기전자 화학 에너지	금성사 금성일렉트론 럭키 럭키석유화학 호남정유 세방석유(6)
선경	에너지 화학 유통운수	유공 흥국상사 SKI SKC 선경 유공해운(6)
한진	기계 유통운수 건설	한진중공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일개방 한진종합건설(5)
쌍용	에너지 비금속 자동차	쌍용정유 범아석유 쌍용양회 쌍용자동차(4)
기아	자동차 철강	기아 자동차 아시아 자동차 기아기공 기아특수강(4)
한환	에너지 화학 유통운수	경인에너지 한양화학 한화 한양유통 골든벨상사(5)
롯데	식료품 화학 유통운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햄롯데우유 호남석유화학 롯데쇼핑 롯데역사(6)

주 : ( )는 주력기업수

자료 : 『매일경제신문』 1994년 1월 19일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주력업종제도가 그 정책 결정과정에서 애초의 기본취지나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크게 벗어나 변질된 점이다[29]. 요컨대 1993년 10월에 상공자원부가 확정한 시책에서는 주력기업의 선정기준으로서 당초 제기된 "소유의 분산·주식공개·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이라는 기준이 재벌의 저항을 받고 제외되어 "해당업종 중 매출액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으로 변질되었고 비주력기업의 정리를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규제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라면 재벌의 과도한 다각화 경영을 시정할 수단은 포기되고 이미 매출액 비중이 큰 독점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그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내용이 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특히 상위재벌들은 이렇게 지원이 강화된 주력업종정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문어발식 다각경영을 원하여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김영삼정권하의 경제정책은 재벌의 강력한 압력을 받아 재벌우대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부에 대한 재벌의 견제력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점이다. 즉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김영삼정권하에서 재벌의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어 그 경제정책에서 재벌의 의향이 더욱 반영되는 역설적인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3절에서는 이 문제를 다른 아시아 제국에서의 민주화 문제와도 연관시켜 검토해 보기로 한다.

3. 한국에서의 군부개발독재와 '민주화'

제2차세계대전 후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공업화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이 컸고, 이에 대해 개발독재론, 관료적 권위주의론 등이 여러 논자에 의하여 논의되어 왔다. 구해근과 김은미는 이를 '개발형 국가'라고 부르고 그 특징으로서 다음 두가지를 지적했다. 즉 ①국가가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특히 경제관료들이 민간의 이해관계에 간섭받지 않고 장기적 경제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것. ②국가가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에 충분한 강력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30]. 예컨대 대만의 경우에도 전전의 중국본토에서의 국민당 정부의 존속과 그 행정경험, 관료독점자본의 축적과 그 경영경험이 전후의 대만에서 활용되어 대만의 자본주의적 재건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 김영호는 개발독재가 다음 네가지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①식민지 붕괴 후 남은 반봉건적 생산양식이 잔존하여 이종(異種)혼합적 하부구조 속에서 하나의 사회구성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강력한 상부구조가 요구된 것. ②근대적 거대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한된 국내자본의 집중적 배분이나 중점적 정책지원이 재벌육성을 초래하여 정경유착 관계가 독재체제를 강화한 것. ③외자도입이나 개발원조에 따른 노동 3권의 규제와 환경 규제 완화를 위해 개발독재가 요구된 것. ④기술 이중 갭과의 연관. 즉 도입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저임금과 결합하지 않으면 가격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광범한 비숙련

노동자를 저임금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개발독재가 요구된 것이다[31]. 말하자면 식민지체제 붕괴직후에 민족자본이 철저히 파괴된 상황에서 자본을 대신하여 새로 탄생된 국가가 하부구조를 재구축해야 할 상황에 처해 이후의 급속한 대외지향형 공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큰 역할이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동아시아에서의 개발독재에 대해서는 동서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영향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한국, 대만은 동서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하는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엄격한 반공정책을 취하였고, 특히 한국에서는 1950년의 조선전쟁등을 통하여 군부의 영향력 강화, 군사기구의 비대화가 진전되어 군사 쿠데타를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 이후 군부개발 독재체제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대만을 비롯하여 여러나라에서 '민주화'가 진전되어 불안정하지만 이른바 '신흥민주주의국가(Newly Democratizing Countries)'로의 변화가 보였다. 이 동아시아의 '민주화'에 관해서 최근 흥미있는 몇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다. 먼저 나카무라 마사노리(中村政則)는 "2000달러의 장벽과 1만달러의 올가미"라는 분석을 했다[32]. 그는 동구와 동아시아에서의 1980년대말의 민주화에 관하여, 필리핀, 미얀마처럼 1인당 GNP가 2000달러의 장벽을 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으나, 이 장벽을 넘은 나라에서는 시민사회적 상황과 중산계급이 형성되어 권위주의 체제가 약화되고 그런대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한다고 본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양적으로는 '2000달러의 장벽'이 필요조건이며 질적으로는 민주화세력의 운동(사상 · 정치 · 경제투쟁)이 필요한데, 이 두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정착된다는 약간 도식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또 후지와라 키이치(藤原帰一)는 1980년대에 세계각지에서 일어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적했다[33].

첫째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나라에서 일어난 점. 즉 1980년 페루에서의 군정붕괴로부터 10년 동안에 파나마 이남의 중남미에서 군정이 사라지고 필리핀, 한국, 대만 등에서 민주화가 이어져 1991년에는 권위주의가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에서만 남게 되었다.

둘째도 그러나 사회혁명의 요소는 전혀 없었던 점, 즉 복수정당제의 승인, 자유선거, 정치적 자유의 부활은 볼 수 있으나 사회경제적 평등을 우선하는 체제는 볼 수가 없다. 또한 역사적으로 좌익세력이 존재하는 나라들에서는 이들 세력을 도외시하며 민주화가 진전되었다. 그리고 민주화를 전후하여 경제정책에 단절 · 변화가 없어 민주화가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이르지 않고 있다.

셋째로 정치조직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체제를 거부하는 광범한 대중행동이 일어나는 등 대중들이 민주화의 주역이 되었다.

넷째로 이상 세가지 이외에는 공통된 요소를 보기가 힘들다. 즉 민주화는 경제성장을 이룬 대만 · 한국에서도 일어났고, 경제가 정체된 아르헨티나 · 필리핀 등에서도

일어났다는 점이다.

특히 후지와라는 권위주의 체제 내부의 정치대립과 분열을 주목하고 있다. 권위주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군부에 있어서는 정치군인과 병영에 머무는 군인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재계는 공업화에 의한 자본축적을 통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립하여 민주화 후에 정치적 역할이 증대되게 된다. 이들 권위주의 내부의 정치대립에 의해 '위로부터의 민주화'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또 후지와라는 권위주의는 단순한 독재자 지배와는 달리 '지배의 제도화'를 필요로 하여, 권위주위가 더욱 제도화를 진전시키면 정치권력은 제도적으로 다원화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하면서 '민주화'는 권위주의에서의 지배의 제도화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체제내부의 요인을 강조하는 후지와라의 관점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러나 체제 내부의 요인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사회세력과의 역학관계도 포함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주화의 주도세력은 누구이며 '위로부터의 민주화'인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인지 하는 점과, 권위주의가 어느 정도나 무너진 단계에서 민주화가 일어났는가라는 관점에서 최근 아시아제국의 민주화를 분석할 수 있다. 필리핀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군부의 분열, 기업 · 테크노크라트의 반목 등 체제내부의 모순이 드러나고 83년 아키노 전 상원의원이 암살된 단계에서 이미 마르코스체제는 권력상실 상태에 들어가 마침내 미조직의 대중행동에 의해 86년 붕괴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반체제 세력의 연합이 실패로 끝나 포스트 · 마르코스의 정치공간은 전통적 정당정치가의 이익정치에 의해 채워졌다. 이렇게 필리핀에서는 한국 · 대만에 비해서도 구체제의 붕괴정도가 가장 크고 정치위기로부터 권력상실까지 진전됐지만, 그 후의 '민주화'에 있어서는 구정치체제의 연속성은 유지된 것이다.

한국의 사례를 보면 1987년 6월 민중항쟁에서 민주화를 주도한 세력은 그 간의 공업화 과정에서 양적으로 증대하여 그 정치성과 조직성을 강화한 노동자 계급 등의 기층민중과 80년대에 증대하여 시민적 자유를 구하며 권위주의를 거부한 '중산계급'과의 연합이었다. 그러나 체제내부에서도 1970년대 이후 강력한 자본축적을 통하여 경제력을 집중한 재벌들이 앞에서 봤듯이 80년대부터 정부의 여러 재벌규제정책에 반발해서 국가 · 재벌간의 알력이 생기고 재벌들은 자기의 이익을 더욱 관철할 수 있는 체제를 원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재벌을 중심으로 발전을 이룬 하부구조가 그에 조응한 안정적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상부구조를 구하게 된 것이다[34]. 또 군부에 있어서도 정치군인에 의한 통치가 장기화하는 속에서 군내부의 모순도 축적되어 왔다.

지배 세력은 1987년 민중항쟁 직후의 '6 · 29선언'을 통하여 대통령 직접선거와 일정한 민주화를 약속함으로써 양 김씨의 대립을 조장하여 야당세력을 분열시키고 '중산계급'을 포섭하여 반군부세력에 균열을 초래하여 정치위기가 권력상실에 이르기 전에 권력이양에 성공하였다. 또한 93년 김영삼정권의 성립은 정치위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정된 선거를 통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구온건 야당세력과 기존의 지배집단의

타협적 결합을 통하여 구체제가 거의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위로부터의 민주화'는 제한된 제도개혁에 의해 중산계급의 정치적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대신 기층민중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외와 배제로 일관하여 기본적으로는 종래의 지배체제를 합리화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이 '민주화'과정에서 군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특히 93년 김영삼정권하에서는 군의 영향력 저하가 두드러진 반면에 공업화 과정에서 경제력을 집중해 온 재벌이 통제력을 강화하여 체제내부의 역학관계에 변화가 일어나 앞에서 보았듯이 재벌의 이해가 더욱 반영되는 체제로 합리적 재편이 기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의 사회에 있어서 사회경제적으로는 종래의 상황과 연속성을 볼 수 있고 김정권하에서도 '고통분담론'등을 통하여 근로계급의 처우개선의 과제는 경시되고 있다. 말하자면 그간에 경제력을 집중해 온 재벌을 중심으로 지배체제가 새로운 '지배의 합리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평등을 과제로 한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끝)

〈주〉

1) NIEs의 발전에 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平川均『NIEs－世界システムと開発－』(東京 : 同文館, 1992)의 제1장을 참조.

2) 奥村茂次편, 『アジア新工業化の展望』(東京 : 東京大学出版会, 1987)에 실린 논문들을 참조. 특히 金泳鎬, 「序説－アジア新工業化の政治経済学」에서는 이 신공업화를 단지 NIEs형에 한정하지 않고, 태국의 NAIC(신흥농업관련공업국)형, 인도형, 사회주의형 등 다양한 발전유형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金泳鎬『東アジア工業化と世界資本主義－第4世代工業化論－』(東京 : 東洋経済新報社, 1988)도 참조.

3) Amsden, A. H., *Asia's Next Giant,* Oxford Univ. Press, 1989.; do., "Third World Industrialization: 'Global Fordism' or a New Model?", *New Left Review,* 182, 1990.

4) Henderson, J., "Against the Economic Orthodoxy: on the Making of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y and Society,* 22-2, May 1993.; do.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East Asia", Dixon, C. & Drakakis-Smith, D.(ed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Pacific Asia,* Routledge, 1993
또 Chang도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Chang Ha-Joon,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 in Korea"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7-2, June 1993.

5) 이 국제그룹 해체문제에 대하여 1993년 7월 헌법재판소는 전두환 전대통령의 권력남용을 지적하여 불법을 인정하였다. 이는 앞으로 양정모 회장이 빼앗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한겨레신문』 1993년 7월 30일

6) 현대그룹은 지금까지 가족소유의 비중이 컸으나, 현대중공업의 경우 정주영의 대통령 출마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인지 주식매각이 급증하여 1992년말 가족소유비율이 19.5%로 급격히 떨어졌다. 정주영의 정계진출이 현대그룹의 주식소유분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 흥미롭다. 『주간매경』 매일경제신문사, 서울, 709호, 1993년 6월 9일.

7) 손호철 「6공－현대격돌, 여덟가지가설」『사회평론』서울, 1992년 3월호, 이세정 「독자노선의 목소리 높이는 6공의 재벌들」『말』서울, 1991년 12월호.

8) 이세정(1991), 구해근과 김은미도 같은 분석을 하고 있다. Hagen Koo & Eun Mee Kim, "The Developmental State and Capital Accumulation in South Korea", Appelbaum, R.P. & Henderson, J.(eds.), *States and Development in the Asian Pacific Rim*, Sage, 1992.

9) 졸고 「韓国資本主義における『財閥』の発展過程」本多健吉 監修『韓国資本主義論争』(東京 : 世界書院, 1990)

10) 한국의 민간주도론에 관해서 박일은 미국의 Supply Side 경제학의 영향을 받고 많은 정부브레인을 배출한 서강학파와 분배의 공정을 주장하며 민중주도의 경제운영을 강조한 재야민족파의 두가지 계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朴一『韓国 NIEs化の苦悩』(東京 : 同文館, 1992), p.178 참조.

11) 사공일 「경제성장과 경제력집중」 KDI『한국개발연구』서울, 제2권 제1호, 1980년. 이규억 · 이성순『기업결합과 경제력 집중』KDI, 서울, 1985년등 참조.
또 谷浦孝雄는 한국의 경제관료가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하에 있어 재계등 이익단체의 압력을 받지 않아 일정한 초연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흥미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谷浦孝雄『韓国の工業化と開発体制』(東京 : アジア経済研究所, 1989), pp.4-18 참조.

12) 이재희 「재벌정책의 인식과 대안」 한국사회경제학회편『정치경제학과 한국사회－사회경제평론 5집－』한울, 서울, 1992년, p.108참조.

13) 高橋哲郎는 고인플레 수반형 성장전략을 추구해 온 박정권이 그 말기에 안정화 정책을 내세워, 스스로 추진해 온 개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高橋哲郎「高度経済成長政策から経済安定化政策へ－1979. 4. 17. 経済安定化総合施策を起点として－」小林謙一 · 川上忠雄편『韓国の経済開発と労使関係－計画と政策－』(東京 : 法政大学出版局, 1991)

14) 공정거래법초안(또는 독점규제법안)은 경제기획원에 의해 1964년에서 71년까지 다섯번 작성되어 네번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폐기되었다. 경제기획원『공정거래백서』1984년, pp.5-22. 또 75년 12월에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독과점 사업사 · 품목을 지정하고 최고가격지정등을 통해 독점가격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했으나, 이는 물가안정을 위한 부차적 정책으로서 본래적인 의미의 독점규제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 76년부터 79년 사이에 지정독과점 품목은 148개에서 35개로, 독과점사업사는 247개에서 58개로 축소되고 70년대에 재벌의 소유집중 ·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등 실질적 효과는 작았다. 이재희, (주12), p.108 참조.

15) 한국경제기획원『경제백서』1981년판, p.86.

16) 홍장표 「한국자본주의와 독점재벌」 서울대학교 민교협『제2회학술토론회－한국경제에서의 독점과 종속－』1992년, pp.26-27.

17) 결국 금융실명제는 노태우정권하에서는 실시될 수 없었고, 김영삼정권에 의해 93년 8월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토지공개념제도는 지가가 88년에는 28%, 89년에는 32%나 뛰어 올랐기 때문에 절박한 과제로 인식되어 90년에 법제화되었으나 애초의 초안보다 온건한 내용으로 되었다.

18) 최각규 「제7차 5개년계획과 기업의 역할」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서울, 1991년 8월

19)이 주력기업제도는 KIET(한국산업연구원)이 『21세기를 향한 산업정책방향』에서 지적했듯이 ①주력기업을 보완하는 기업이 제외되고, ②여신확보를 위해 계열기업 간에 무리한 결합을 하거나, 장래성 있는 기업보다 실제 많은 융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지정해서 차입금 확보를 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영삼정권은 '주력업종제도'로 전환했다.
이 제도에 따라 삼성그룹에서는 93년에 제일정당등 10사를 매각하고 제일모직등 4사를 다른 계열사로 흡수하여 산하기업을 48사에서 34사로 축소했다.

20)현대그룹의 가족소유 · 경영지배에 관해서는 졸고(주9)참조. 또 강철규 외 『재벌－경실련문고 2－』비봉출판사, 서울, 1991년, 참조.

21)경제기획원의 국회국정감사제출자료에 의하면 91년에 총자산 4000억원 이상의 61대 재벌 중에서 주식공개기업비율은 25%이며, 재벌내부소유비율은 47%이다. 한편 제조업의 91년 자기자본비율은 24.4%로, 89년 28.2%에서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22)홍장표 「한국자본주의와 독점재벌」(주16), pp.28-29.

23)은행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93년 4월, 30대 재벌의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3.4배로 92년의 5.4배보다 저하되었으나 여전히 규제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

24)금융기관의 주식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재벌기업의 주식소유분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유가증권보유한도를 현재의 요구불예금의 25%(5조원) 이내에서 자지자본의 100%(11조원)까지 확대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되었다. 경제기획원 『경제백서』 1992년, p.233. 또 92년에 비공개주력기업의 은행차입금의 일부(5천억원 정도)를 해당기업주식으로 전환하여 주거래은행이 인수해서 경영에 참가하게 하는 보다 직접적인 소유 · 경영집중완화방안도 발표되었다. 『한국일보』 1992년 1월 9일. 홍장표 「한국자본주의와 독점재벌」(주16), p.128.

25)정대화 「김영삼 정권의 개혁 : 성격, 한계,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흐름』 1994년 6월호 p.20.

26)「신경제정책비판」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정책연구』 제1호, 1993년 6월호.

27)신현만 「신경제 5개년계획 앞이 안보인다」 『월간 길』 1993년 7월.

28)『매일경제신문』 1994년 1월 19일.

29)박병규 「'재벌비대화'로 둔갑한 업종전문화」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흐름』 1993년 12월호. 주성준 「재벌에 밀린 산업구조의 효율화」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신경제정책과 한국경제의 미래』녹두, 1993년.

30)Hagen Koo & Eun Mee Kim, op. cit. p. 121.

31)金泳鎬 「脱植民地化と第4世代資本主義」 『近代日本と植民地 第8巻』(東京 : 岩波書店, 1993) p.154.

32)中村政則 『経済発展と民主主義』(東京 : 岩波書店, 1993)

33)藤原帰一 「『民主化』の政治経済学－東アジアにおける体制変動」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編 『現代日本社会 第3巻 国際比較 〔2〕』(東京 : 東京大学出版会, 1992).

34)조희연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이행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의 분화에 대하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1994년 겨울 · 봄 합본호(제21호), 녹두. 최장집 『한국민주주의 이론』 한길사, 서울, 1993년, 참조.

新東北亜時代의 韓國과 日本의 役割

金　鎭　炫

1. 東北亜의 새 모습

"新東北亞時代"라고 적고 보면 新東北亞 질서, 또는 新東北亞 체제가 이미 형성된 것 같은 語感이 든다. 그러나 그러한 새 時代, 질서, 체제가 형성 정립된 것은 없다. 과거와 다른 새모습이 들어나고 있을 뿐이다.

安保측면에서 흔히 西歐의 CSCE(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체제를 아시아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제기는 關係國 당국자가 아닌 전문가들에게서 또 舊蘇聯에서 브레즈네프, 후루시초프가 적극 제창했으나 미국, 중국, 일본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實體的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러시아간에 초보적 군사외교, 교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변화된 모습이다. 그것은 脫冷戰의 산물이다.

그러나 北韓의 核문제를 둘러싸고 아직도 東北亞는 冷戰의 原型이 가시지 않고 있음을 實感하고 있다.

경제에 있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아시아 · 태평양을 포괄하고 중국까지를 넣은 APEC(Asia-Pacific Economic Conference)이 정상회담까지 열었고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은 AFTA(Asia Free Trade Area)로 강화되고 EAEC(East Asian Economic Caucus)의 형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APEC이나 또 EAEC가 형성된다면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나) 그 EAEC의 가장 큰 中心과 動力이 될 東北亞는 그 스스로 경제협력체 또는 東北亞 경제질서나 체제를 그 어느나라도 심각히 제기하고 있지 않다.

東北亞는 그 만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共同體 또는 協力體, 共同의 價値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나눔에 따르는 이익이 분명치 않고, 나눔에 따르는 비용과 책임을 질 자세 태세가 되어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들어내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冷戰이 끝남에 따라 냉전의 반동으로서의 모습 즉 ①한국의 소련 · 중국과의 수교 ②중국과 臺灣, 홍콩 (그 반환에 따르는 문제) 관계의 변화 ③東北亞의 中國, 몽고, 北韓의 市場經濟體制 편입으로의 진통 ④소련 (러시아) 의 블라디보스톡港, 中國의 大聯港 개방으로 닫혔던 東海와 黃海의 되살아남으로 표현되는 새 모습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일련의 交流의 확대가 장래 어떤 정치적 이니셔티브가 주어지면 새東北亞질서, 체제, 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잠재력이요 가능성일 뿐 누가 무엇을 목표로 東北亞의 새 체제, 질서 시대를 "만들어"

볼 것인가 하는 비전, 政策의 次元에서는 의미있는 主導, 진전, 思想도 없다.

이러한 實體의 모습과 달리 "新東北亞時代"같은 뉘앙스를 쉽게 받아 들이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韓半島, 中國, 日本, 臺灣으로 구성되는 東北亞는 漢字를 共有하고 佛敎와 儒敎의 영향을 공통으로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文化적으로 同質性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文化史的으로 사실이다.

또한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은 각기 경제도약의 시기는 다르나 그 경제성장 패턴에서 공통된 몇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①정부介入의 축소와 民間主導의 추진 ②農地改革을 통하여 小作農의 폐지와 全農民의 農耕地所有化 ③輸出主導海外指向成長전략 ④輸入과 外換率 통제의 "점진적"완화 ⑤전략 선도산업육성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産業政策) ⑥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의 배분이 균등한 것등의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일본 1964~73, 대만 · 한국 1960~70년대, 중국 1977~88, ASEAN 1980년대) 이러한 공통점으로 해서 世界銀行조차 "東아시아의 기적" (1993) 을 특별히 분석하고 아시아 高度경제성장국(H.P.A.E)의 성장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정치, 군사적으로 韓 · 中 · 日은 끊임 없는 戰爭狀態의 연속인 역사를 경험하였다. 게다가 本質的으로 中華主義의 오만, 島國根性의 分離主義, 黑白論理의 我執이 土着化되어 自己를 넘는 共同協力, 共同體 구성의 객관적 조건은 보이지 않는다. 또 그런 시도도 없었다. 오직 한국만이 그 수많은 戰爭의 被害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침략하고 점령한 적이 없으니 東北亞의 共同體 논의를 한다면 한국만이 이를 주도할 도덕적, 지리적 正當性과 優越性을 갖고있다 하겠다. (참고, KIM Jin-Hyun, Korea and the world -Geopolitical & Geoeconomic Perspective in Asia-Pacific Dynamism,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in the U.S., Michigan State University, July 7-11, 1993)

文化的 경험의 部分的 共有와 경제성장 패턴의 공통점이라는 사실만으로 전쟁과 침략으로 얼룩진 정치 군사의 갈등의 역사가 가려 질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共同體 구성의 主體도 理念도 노력도 없이 새 時代, 새 질서, 새 체제, 새 共同體는 나올 수 없다.

둘째 東北亞가 세계 최대의 資本輸出市場이요 제조업제품 生産基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점은 확실히 서기 1500년 문예부흥 이후 전세계를 지배하던 白人의 세계지배 大西洋의 時代 植民帝國의 확장, 뉴톤적 物理學과 과학의 객관성의 종언과 더불어 하나의 代替 또는 代案으로서의 東洋, 아시아라고 했을 때의 東洋 또는 아시아의 구체적인 초점이 東北亞로 모이게 된다.

일본과 臺灣, 東南亞華僑의 資本輸出능력은 이제 독일마저 통일이후 새 자본수출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연 최대의 자본수출 즉 純債權국가요 (92년末 현재 純海外資産 日本 5136억달러, 臺灣 868억달러) 지역으로 변모했다. 이제 전세계의 자본수

요 국가나 기업들은 東京이나 홍콩, 싱가포르 시장을 거치지 않고는 자본동원이 어렵게 되었다.

뿐더러 電子, 造船, 自動車, 섬유, 의류 생산에 있어 세계최대의 생산 또는 수출기지로 변모했고 이것은 확실히 세계사적 변화이다. (표 1)

〈표 1〉 업종별 지역별 생산액 비준

단위 : %

구분	동남아 1)	EC	미국	기타	계
자동차 2)	31.0	26.1	22.3	20.6	100.0
조 선 3)	75.6	16.4	-	8.0	100.0
반도체 4)	47.7 (日本 : 40.4)	9.0	40.5	2.8	100.0
섬 유 5) (의류포함)	35.3	32.0	5.8	26.9	100.0
공작기계 6)	37.5	40.6	11.6	10.5	100.0

1) 일본, 중국, 한국, 대만, 홍콩, 기준
2) 93년도생산 대수기준 자료 : 한국자동화공업협회, "'93해외자동화 산업동향" (Source: SMNT, National Sources LMC Forecasts)
3) 93년도 건조량 (G/T) 기준 자료 : 한국조선공업협회, "조선자료집(1993)"
4) 93년도 매출액 기준 자료 : Data Quest(美조사통계誌)
5) 91년 수출액 기준 자료 : OECD
6) 93년 생산액 기준 자료 : American Machinist誌

풍부한 자본과 제조업의 활발한 성장으로 전세계의 不況에도 불구하고 東北亞지역은 歐美나 여타 후진국에 비하여 월등히 成長을 지속하고 있다. (표 2)

〈표 2〉 경상GNP 추이

단위 : 억달러

	1970	1980	1985	1990	1992
미국	10,168	27,421	40,536	55,246	60,458
일본	2,033(19.9)	10,589(38.6)	13,480(33.2)	29,523(53.4)	36,950(61.1)
한국	88(0.8)	605(2.2)	911(2.2)	2,518(4.5)	3,057(5.0)
대만	57(0.5)	414(1.5)	631(1.5)	1,609(2.9)	2,109(3.4)
중국	--	2,983(10.8)	2,914(7.1)	3,699(6.6)	4,350(7.1)

※괄호내는 미국에 비교한 他國들의 比率 %

자료 : 한국은행

日本, 韓國, 臺灣, 中國간의 順次的인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모두 域內貿易이 域外무역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 역내무역비중이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 〈표 3〉

〈표 3〉 무역거래에서의 對美 貿易依存度 추이

단위 : %

	1970	1980	1985	1990	1992
일본	30.3	20.8	30.2	27.5	26.7
한국	34.7	23.9	28.3	27.0	23.4
대만	30.9	28.9	38.4	28.2	25.6
중국	0.0	12.8	10.8	10.0	10.4
ASEAN	16.0	15.9	17.9	17.1	16.8

자료 : 한국은행

東北亞가 資本, 제조업, 무역에서 세계의 中心으로 重力을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은 東北亞제국 모두의 역사에서 새로운 경험이다. 새로운 舞臺를 펼칠 기초를 닦고 있다.

2. 冷戰 종식과 三角不均衡순환의 종언

東北亞의 역사 경험에서나 세계사적 관점에서나 資本, 제조업, 무역에서 東北亞가 새로운 中心 새로운 무대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정말 우리는 새 무대 새 中心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무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冷戰體制라는 무대였고 GATT체제라는 무대였다. 냉정히 따져보면 그 어느 것도 東北亞의 主役들이 만든 것은 아니었다.

GATT체제와 冷戰體制는 一次的으로는 日本, 2차적으로는 臺灣, 홍콩, 한국, 싱가포르에 그리고 3차적으로는 中國에게 對美市場접근의 기회를 제고했다. 또 이들에게 韓國戰과 越南戰의 "特需"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東北亞의 貿易循環은 다음과 같은 "三角不均衡"을 전제로 하고서의 善循環이었다.

즉 ①일본의 對美 對東北亞 지속적 흑자 ②미국의 對日, 對東北亞 지속적 적자 ③東北亞의 지속적 對美 흑자와 對日적자의 不均衡循環이다. 이러한 三角不均衡순환이 가능했던 것은 이념으로서의 自由무역을 내건 미국의 GATT체제의 지지와 현실로서의 冷戰이라는 對蘇安保體制 對蘇對決에서 日本, 臺灣,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NICS (新興工業國) 와 닉슨大統領 中國訪問이후 70年대에는 中國에게까지 美國市

場이 개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즉 미국의 一方的 무역적자 부담을 감수함으로서 가능했던 것이다. 表3에서 보듯이 東北亞나 ASEAN의 對美무역의존도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으나 무역흑자 중 對美흑자 비중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느는 경향마저 있다. 〈표 4〉

〈표 4〉일본, 중국(홍콩포함), 한국, 대만, 아세안의 무역흑자 중 對美비중

(단위 : 백만$)

구 분		1970	1980	1985	1990	1992
일 본	총흑자	437	△10,855	46,676	52,213	106,639
	대미흑자	1,588 (363%)	12,183	49,749 (106%)	44,485 (85.2%)	51,717 (48.5%)
대 만	총흑자	△99.5	21	10,665	12,308	9,592
	대미흑자	451(71년)	2,087 (9,938%)	10,027 (94.9%)	12,357 (100.39%)	10,601 (110.5%)
한 국	총흑자	△1,148.8	△4,787	△863	△4,828	△6,143
	대미흑자	△190	△267	4,235	2,500	△166
중 국 (홍콩포함)	총흑자	△607	△4,521	△14,720	8,432	245
	대미흑자	515	△343	3,623	11,887 (140.9%)	18,150 (7,408.2%)
아세안	총흑자	△1,246.9	7,328.2	7,351.75	△18,227.06	△8,133.2
	대미흑자	155	4,037 (55.1%)	7,534 (102.4%)	9,633	13,402

※자료 : 통계청(해외경제지표), IMF(The direction of trade) △는 赤字

냉전 종식후에도 부시대통령정권까지는 경제보다 安保우선의 정책선택 때문에 이러한 三角不均衡의 기본체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클린턴의 등장은 무대와 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安保보다 外交보다 경제와 무역, 부엇보다도 미국내 고용을 지키고 늘리겠다는 의지와 그의 취임사, 경제安保위원회의 설치, 산업정책주장자들의 重用 등에서 뚜렷이 볼 수 있다.

이제 ①三角不均衡구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미국을 대신하여 적자를 감내할 代理者가 등장하거나 (흔히 日本을 들먹인다) ②아니면 三角不均衡구조가 깨지고 미국을 뺀 새로운 東北亞균형구조를 형성하거나 ③또는 美國단독 적자가 아니라 美日共同적자 관리하의 東北亞성장 모델의 구상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분명한 사실은 미국의 一方的 對日, 對東北亞 무역적자 수용시대는 끝났고 그런 三

角不均衡은 이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三角不均衡관계의 종언에도 불구하고 東北亞는 三角不均衡구조 위에서 형성된 資本, 제조업, 무역의 세계 中心으로서의 動力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大西洋의 시대가 가고 太平洋시대가 온다는 뜻의 東北亞의 中心은 정말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東北亞의 제국과 미국, 러시아를 합친 지리적으로 확대된 東北亞의 主役들이 당면한 문제요 해답을 기다리는 과제이다.

3. 東北亞의 시나리오

東北亞가 특별히 平和구조 安定된 무역구조 균형된 산업구조 미래지향적 環境구조를 새로 만들려는 새로운 東北亞體制 구축의 노력없이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어떤 결과의 시나리오가 전개될까.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그린다면

①中國, 日本등 大型經濟마저 一國成長 지상주의 정책으로 치닫는 것이다.

미국과는 물론 中·日 양국간 또 中國과 東北亞 및 東南亞간 그리고 일본과 東北亞 및 東南亞간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이다. 이는 또한 中國과 日本이 패권 국가로 등장하는 시나리오이다.

이미 일본이 東北亞 ASEAN 및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캄보디아 지역에 확고한 자본, 산업, 기술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정도의 차이일 뿐 韓國과 臺灣의 경우도 비슷하다. 歷史의 부끄러움과 安保의 취역때문에 이런 자본, 산업,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패권국으로의 전환을 허락치 않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普通國家論"은 이러한 安保의 依存 덮개나 고리를 깨는 논리일 수 있다.

중국역시 東北亞의 資本 市場장악자인 華僑를 끌어 들여 大中華경제권을 기도하고 대만과 스패트리諸島에 대한 군사적 優位를 實力으로 과시하려 든다면 결국 體質化된 文化的 오만 그리고 政治的 쇼비니즘으로 해서 쉽게 패권주의를 지향할 수 있다.

②東北亞의 EAEC版으로 日本과 中國이 중심이 되어 文化적 同質性을 바탕으로 協力共同體를 추진해 보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그 중간에 미국 또는 소련에 대한 共同의 敵, 反發, 反擊, 反應이라는 매개변수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미국의 現代史家인 존 루칵스 교수의 洞察대로 20세기 후반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결국 러시아人은 白人이었다」고 결론이 (The End of 20th Century & The End of Modern Age, Houghton Milflin N.Y. 1993) 난다면 사뮤엘 헌팅 교수의 "文明의 衝突"이 불가피하다.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결국 東北亞는 黃人種의 세계였다」일 것이며 그 전형은 東北亞에서 儒教圈과 日本圈의 합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한국에게 앞서의 ①시나리오보다 더 큰 재앙일 수 있다.

③自律的 노력없이 예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日本이 UN安保理常任理事

國으로 격상되고 중국이 GATT加入으로 세계시장경제로 명실공히 편입되고 한국이 OECD加入으로 品位가 올라가고 UN安保理非常任理事國으로 格上되면서 UN, GATT, IMF, ILO, UNCED등 西方的 世界體制로 他律的 被動的으로 收斂되어 가는 것이다. 이는 東北亞의 주체적 노력보다는 세계적 地位, 品位의 格上에 만족하면서 歐美의 세력 또는 歐美體制의 吸引力 또는 重力에 受動的 非自發的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歐美中心의 普遍的 體制로 一元化되어 가는 시나리오이다.

이 과정이 순조로우려면 "開發獨裁"와 "정치 민주화"과정에 대한 東北亞와 歐美間의 이해와 인내 그리고 미국의 리더쉽 허용이 필요하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인권, 군사, 무역, 자본, 산업 문화적 차이에 대한 끊임 없는 微調整과 調律이 東北亞내부에서는 물론 東北亞와 歐美 특히 미국과의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인내를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과연 東北亞 내부나 歐美와의 관계에서 이런 성숙된 정치가 가능할까.

日本·韓國과 美·歐간에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도 있으나 中國과 美·歐간에는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

④네번째로 그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美歐의 主導가 東北亞가 자발적 능동적으로 "近代經濟成長", "民主主義", "文化적 多元性"이라는 歐美的 價値를 추진하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 인간주의, 개성주의, 평등, 産業開發이라는 歐美적 가치, 체제, 기구의 우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아시아적 가족주의적, 長期네트워크적 사회관계나 경영구조, 開發獨裁의 정치를 과도기적인 것으로 다루는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다룸에 있어 日本이 미국보다 더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미국의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무역에서의 目標値 설정을 반대하는 입장이 그런 것이다. 또한 중국이 인권문제와 연결하여 최혜국대우조항을 적용하려는 미국에 반발하며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관리무역에 반대하는 것은 일단 자유무역체제의 고전적 수호자가 歐美에서 日·中으로 바뀐 듯한 인상마저 준다. 이같은 무역에서의 자유화, 주장이 그에 앞서거나 연결된 여러 정치, 경제, 사회, 文化의 가치, 제도 기구와 일치된 상태 또는 그런 비전에서 주장되는 것이고 시기의 차이일 뿐 궁극적으로 또 장기적으로는 歐美가 믿는 바 普偏性과 일치되는 것이라면 일단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日, 中 주장의 實體에 있어서는 自由, 多元, 個性으로의 일치 수렴을 상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어서 虛構性을 들어 내고 있다.

日本만 해도 前後 부흥과 成長의 궁극적 動力은 "敗戰 反美"를 숨긴 反美 民族主義였으며 두 차례의 石油波動을 극복한 것도 역시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기반이었다. 이렇게 보면『東아시아의 기적』이란 것도 민주주의나 文化의 多元性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가장 첨예하게 들어 난 것이 中國의 人權문제를 둘러싼 美國과 日·中의 差異이다. 보편적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부하는 듯한 日·中이 人權문제에 있어서는 差別性, 特殊性을 강조한다. 이 같은 갈등적인 구조를 벗어 나지 못하는 한 東北亞가 능동적으

로 旣存의 歐美的 自由主義로 體制수렴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의 세 글을 음미해 보자

①中國人民日報 1994년 4月 1日字 社說

「미국은 다자간 무역메카니즘에서 해결책을 구하려 하지 않고 소위 "슈퍼 301條"를 부활시켜 일방적인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또한 차별없는 최혜국대우 부여 원칙을 고려치 않고 무역과는 무관한 정치적 조건, 예를 들어 人權을 문제로 우리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에도 손상을 끼쳤다……. 태평양경제협력이 가는 방향은 유럽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또 태평양지구의 대다수 국가는 유럽공동체와 같은 협력메카니즘에 반대해 왔다……. 」

②하타 쓰토무 (羽田孜) 日本外相의 UR협정서명 마라케시 GATT대표회의에서의 대표연설 (1994년 4월 14일)

「보호주의가 판을 칠 때 세계경제는 대공항으로 빠져 갈 것이다. ……반 덤핑의 남용과 일방적인 조치 및 지역주의에 의존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발상에 우려를 표한다. 」

③三星그룹 李健熙會長의 1994년 4월 14일 후쿠오카 (福岡) 에서 열린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에서의 발표 主題 —亞太時代 개막과 韓日經濟協力의 새 地平—「21세기는 첨단기술이 획기적 발달과 이로 인한 사회변혁, 無限競爭의 時代, 국경없는 경제, 서로 뺏고 開發獨裁, 重商主義적 輸出드라이브, 정부보호의 산업정책으로 일어난 東北亞가 지금까지의 논리와는 반대로 自由무역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는 논리적 귀결이나 적합성을 발견할 수 없다. 현재까지의 경제성장구도 속에서는 점진적인 自由開放체제로 가는 것을 段階論, 過程論으로서는 설명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세계무역체제 GATT체제의 수호자유지지자였던 미국, 유럽마저 보호주의로 비판하면서 세계 자유무역의 기수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일본, 한국, 중국 그 어느 성장 구조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더욱이 바로 그런 自由무역주의 세계적 수호자가 되기 위한 각 국가 내부의 정치 사회적 下部構造는 전혀 정비된 것이 없다. 한국이나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이니 그렇다치고 經濟大國이라는 日本에서 조차 세계무역질서 체제의 수호자가 되려는 의지와 그 의지를 실천 가능케 하는 국내 정치, 사회, 소비의 하부구조는 형성되지 않고 있다.

요컨데 自由무역 — (太平洋질서와는 다른) 新東北亞질서 — 自由무역 · 新東北亞질서간의 一致 수렴과 新東北亞질서 창출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의지나 하부구조간과의 調和, 순환, 발전을 발견할 수 없다.

4. 韓國과 日本의 새 역할
-15억 生命의 安全과 地球社會平和를 추구해야-

현재의 구조와 순환의 연장으로서의 東北亞가 능동적으로 의미있는 協力體, 共同體를 발전시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韓日中간의 補完關係가 자연스럽게"自動的"으로 밀도있는 共同體를 재촉하는 것도 아니다. 일본이 內需中心의 經常收支赤字로 전환하여 三角不均衡을 교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인다. 중국이 輸出주도 고도경제성장정책을 內需주도로 옮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한국은 갈수록 北韓문제와 소득격차 및 산업구조조정에 정력을 소비하게 되어 東北亞의 새 질서를 주도할 조정력을 발휘하기에는 힘이 벅찰 것이다.

韓·中·日이 주도하여 아시아 태평양의 安保질서를 共同體的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새로 "共同의 현재적 敵"이 등장하지 않는 한 韓·中·日의 역사 체험과 정치·사회구조는 자발적 능동적으로 新時代, 新秩序를 창조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經濟一元論, 經濟決定論에 서면 아무리 정치나 문화가 못따라 와도 ◆니이카다-블라디보스톡-淸津-浦港을 잇는 環東海圈 ◆오마에 (大前研一) 씨가 제시하는 釜山-九州경제권 ◆木浦-仁川-上海-山東半島-大聯의 環黃海圈 ◆臺灣-福建省경제권 ◆廣東-홍콩경제권 ◆두만강개발과 北韓-中國-러시아 경제권이라는 자연스러운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통합과정이 新東北亞질서의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東北亞 新질서가 冷戰의 종언에 따라 그 反動으로서 舊질서와 모습이 다르다는데 그치지 않고 善循環, 平和체제, 열린 共同體로 발전 昇化, 格上시키기 위해서는 新東北亞 新아시아 태평양에 관한 비전, 이념, 정책, 기구 상징을 창조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이 지역 리더쉽에서 주도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역, 경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의 진보적 자유주의적 지향으로 수렴하고 프랑스의 드골과 西獨의 아데나워 같은 지역통합의 적극적 정치리더쉽이 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韓日關係, 韓中關係, 日中關係에서 보듯이 그러한 바탕이나 노력이 없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내일에 걸쳐 그 바탕을 마련해야 하는 단계이다.

東北亞의 정치적 리더쉽이 이 지역을 平和, 安全, 연대의 지역협력체 또는 共同體로 발전,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知性的 하부구조" (Intellectual Infrastruture) 구축이 先行되어야 한다.

一國利己的, 重商主義的, 權力우선적, 中華主義的, 島國根性的, 黑白理論的, 現實主義的, 國家一政府 軸의 旣存파라다임으로는 外生的 三角不均衡구조가 유지되지 않는 한 東北亞의 새 平和, 새 安全, 새 協力의 새 질서는 불가능 하다.

Global하고 未來지향적이고 普遍的이고 民間－人類社會 軸의 파라다임에서 東北亞의 새 질서, 새 발전, 새 협력 체제를 찾아야 한다.

自由무역－大西洋과 다른 太平洋질서－보편적 人權 및 정치리더쉽－15억의 生命環境이 모순없이 일치 수렴되는 그러한 파라다임이다.

자유무역－開發獨裁－환경악화－Zero Sum게임이 아니라 自由무역－人權－民主政治－福祉－지속가능한 環境－平和가 일치 선순환 또는 作動가능한 새 질서, 보편적 표준을 창조해야 한다.

첫째는 東北亞의 역사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에 平等한 平和關係를 구축한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 創造作業이란 사실을 각국의 리더쉽이나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된다.

과거 역사의 어느 章에서도 東北亞의 평등한 평화관계를 가져 본 적이 없다. 전쟁에 의한 정복, 不平等外交라 할 수 있는 朝貢과 事大主義, 植民支配로 점철된 최근세에 이르기까지의 東北亞의 역사체험에서 東洋平和를 선도할 典範이나 경험을 추출할 수 없다. 따라서 東北亞의 관계구도가 平和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된다든가, 잘살기만 하면 된다든가 하는 접근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歷史에 대한 根治라는 신념 또는 확고한 未來지향, 平和지향의 意識改革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歷史창조의 의식과 자세가 리더쉽과 국민간에 확산되어야 한다. 이런 "知性적 정보적 下部構造구축"작업이 착수돼야 한다.

둘째 소련의 해체,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의 후퇴와 日本 · 韓國 · 臺灣 · 中國의 경제적 성공은 특히 그 전개과정의 對稱性과 對極性 때문에 21세기, 太平洋시대, 東洋의 價値優越性등의 생각이 自生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東北亞共通의 어떤 요소들이 近代經濟成長에 대단히 효율적이었다는 분석은 경험적으로도 특히 中東, 南美, 아프리카 印度洋제국에 비교하여 보면 옳은 것이다. 그러나 東洋의 어느 요소가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 文化, 社會기능에서까지 세계적 普遍性을 갖고 있거나 잠재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동양의 어제와 오늘을 西洋과 비교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과연 그 비교에서 東洋의 어느 요소가 서양까지 超越 또는 수렴하여 21세기가 PAX PACIFICA 또는 PAX ASIANA 또는 PAX BESETO (北京, 서울, 東京) 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O 슈펭글러의 『西洋의 沒落』서부터 존 루칵스 교수의 『20세기의 종언 近代의 종언』에 이르기까지 이제 歐美의 近代와 現代의 弱點과 모순은 충분히 적출되었다. 이런 歐美의 약점과 모순이 東洋, 東北亞의 어떤 가치, 어떤 비전, 어떤 체제, 어떤 기구, 어떤 리더쉽의 人格으로 해결할 수가 있으며 진정 동양의 무엇이 서양까지를 포함하는 새 時代 새 世界의 보편적 가치와 생활의 向導者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東北亞의 視覺과 歐美의 시각에 어떤 一致와 相異가 있을까.

東洋文化, 東北亞의 價値와 體制의 어느 요소가 세계화 국제화 세계평화 지역 평화에 合當하며 그 가능성과 제약성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東北亞의 知性은 이제 분명한 자기 목소리로 해야 한다. 東北亞와 歐美관계의 새 설정에 대한 知性적 정보적 下部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東北亞平和창조와 東北亞와 세계, 구체적으로 歐美와의 수렴 또는 세계화를 위한 知性적 情報的 下部구조구축 작업의 가장 可視的, 戰略的 부문은 東北亞近現代史에 대한 敎科書의 共同편찬이다.

자라나는 다음 世代의 共同體의식 형성과 이해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現世代리더쉽이 이 東北亞近代史 교과서를 東北亞제국 공동으로 착수하는 公約을 보임으로서만 불행한 非平和적이었던 東北亞의 過去淸算과 未來개척의 可能性을 여는 첫발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나 정치리더쉽이 앞장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만 이것이 어려우면 東北亞의 글로벌이스틱하고 자유주의적이고 미래지향적 知性人들 文化人들이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착수하자. 그 결과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東北亞 共同교과서 편찬을 위한 過程 그 자체도 東北亞 새 平和와 世界와의 관련 새 체제 탐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성적 정보적 분위기를 형성시킬 것이다. (拙稿, 韓中日 「3國でインフラ整備を.」 日本經濟新聞. 93. 10. 16)

넷째 경제성장 측면만 보면 東北亞지역『共同體』가 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三角不均衡의 새 善循環의 길을 찾지 못하면 東北亞지역내의 경제이해 충돌 가능성도 있다. 文化的체험의 共通性이 자동적으로 共同體를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東北亞가 共同體가 되어야 하고 共同體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환경, 東北亞의 생태학적 순환과 15억 生命의 東北보장 때문이다. 東北亞 특히 한국, 일본, 황해 및 남지나해 연안의 중국은 15억의 인구가 살고있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다.

경제성장율이 가장 빠른 지역이며 동시에 表2에서 보듯이 세계 최대의 공업제품생산기지로 변모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큰 제조업 생산 공급기지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최대의 에너지 소비지역이 될 것이다. 이미 작년으로 중국은 에너지 純輸入國으로 변질되었다. 앞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大國主義적 重化學공업을 성장시키며 12억의 인구가 1인당 소득에서 대만 수준에 이른다면 중국 단독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최대가 될 것이다. 이 세계최대의 公害분출 지역으로의 전락을 막기위해 중국을 어떻게 工業化 初期단계 경제성장 초기 단계부터 에너지, 환경, 국민복지, 生活樣式, 정치안정의 새 파라다임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 새 파라다임이 성공하지 못하면 東北亞 15억의 生命이 안전하고 재생가능한 환경, 자연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다.

지금의 연장이 계속되면서 중국의 공업화와 96.5% 化石연료 (석탄 77.5%, 석유 19%) 치중의 에너지 소비구조, 原子力의존 심화가 지속되면 黃海가 死海가 되고,

체르노빌의 原子力 재앙이 黃海와 東海에 미칠 것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한국과 일본의 다음세대 자식들도 맑은 물, 푸른 숲, 신선한 공기, 비옥한 땅, 안전한 먹거리, 생활의 질을 보장하려면 우리는 東北亞 15억의 生命의 次元으로 과제를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 東北亞共同體의 차원으로 격상하지 않고 一國주의적 개별 접근으로는 자기 국민의 生命도 안전도 지킬 수 없다.

지금 현재의 추세에 중요한 變革의 계기와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東北亞는 세계 최대의 都市化 지역으로 변질될 것이다. 도시화가 갖고 있는 범죄, 가족파괴, 청소년문제, 슬럼의 문제, 교통지옥과 공해악화의 문제등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東北亞의 새로운 文明적 도전이 될 것이다.

환경의 문제, 都市화의 문제들은 그 문제의 제기나 정책적 제안들도 歐美의 理想主義者들이 주도한 것이어서 마치 歐美적 현상이나 문제로 착각하거나 심지어 東北亞성장을 억제하려는『和平演變』의 歐美의 공작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15억 생명의 밀집도와 생활방식 그리고 경제성장 패턴과 에너지공급 소비구조 都市化의 속도 등을 고려하면 진정 긴급하고 충실한 환경도시대책이 필요한 지역은 歐美지역이 아니다. 人口, 에너지, 소득, 무역, 도시화, 成長의욕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열등적인 바로 東北亞임을 알 수 있다. (拙稿 : 21세기 한국의 선택. 조선일보창간 74주년기념심포지움『世界化時代와 한국민족주의』1994. 3. 2)

5. 結 語

-知性的 下部構造구축을-

한국과 일본은 각각 자기 역사에서는 물론 세계사적 의미에서도 가장 큰 변혁기를 맞이했다.

近代化 1백여년의 역사를 어떻게 消化하고 近代化 以後 100년을 즉 새 21세기를 설계하면서 세계주역의 중심으로 바뀔 수도 있는 東北亞의 力動性을 어떻게 새 世界의 보편적 체제로 수렴시킬 것이냐는 피할 수 없는 知性적, 정보적 도전을 맞고 있다.

韓日間에 세계인류공동체적, 자유주의적, 민간적, 미래지향적 知性들이 협력하여 이지역 리더쉽의 一國主義적, 현상유지적, 慣性을 깨야한다. 東北亞역사의 根治로서의 平和창조와 세계적 새 보편 價値, 체제, 정책 기구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 즉 知性적 정보적 下部構造를 구축해 환경 도시화에 대한 15억 生命共同體적 접근이 늦으면 이땅의 다음 세대의 生命이 위협받는다는 긴급성을 韓日리더쉽에게 공동으로 설득시키자.

韓日兩國 주민들이 봄에 배고파 죽지않고 겨울에 추워서 죽지않게 된 것은 두 나라 역사에서 오직 한 세대 또는 40년 이내에 첫경험이다.

한일 양국이 "전세계"를 무대로 장사하고 外交한 것도 現代의 産物이다. 한일 양국이 에너지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게 된 것도 오직 최근의 일이요 기술이나 자본에서

"세계적"으로 겨루게 된 것도 이 20년내의 일이다.

한일 양국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人權을 말하고 누구나 정치권력을 경쟁할 수 있게 된 것도 아주 최근의 새 현상이다.

이러한 外形的 변모에서 차원을 높여 15억의 東北亞共同體 平和창조와 세계 人類共同體의 "近代以後"의 새 생각, 새 生活의 틀, 代替生活樣式을 찾는데 앞장서야 한다.

받지만 말고 주는 것, 極大化의 추구 아닌 共生의 원리로 東北亞 15억 生命의 安全과 平和를 접근해야 한다.

세계인류공동체 지향의 미래지향적, 민간인적, 진보적 韓日의 知性들이 共同의 協力으로 東北亞 각국에 相互外厭을 행사하여야겠다. 궁극적으로 中國도 同參시켜 21세기 東北亞 새 平和체제의 책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中國의 知性적 下部구조 창출을 도와야 할 것이다.

Korea[1] 철학사 연구 제문제에 관한 몇 고찰

헬가 피히트

본인이 Korea 철학사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것은 약 20년전이다. 왜 그렇게 되였는가 하면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로 본인은 독일 즉 60년대초 그 당시 동독에서 조선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때문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협조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1959년에 겨우 대학을 졸업한후부터 통역원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렇게 동독과 조선 지도간부들간에 언어학적 중매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 사상적내용과 관련하여 그분들사이에 오해가 생긴 경우가 원래부터 드물지 않았다는것을 느꼈다. 특히 60년대후반기에 와서 조선로동당에서 주체의 개념과 주체사상의 정치적로선을 더욱더 철저히 강조하였을때에 그런 경우가 퍽 늘었다는것을 체험하였다.

본인은 첫시기에 그것은 익숙하지 못한 통역때문인줄로 알았지만 통역능력과 력사지식이 많아지고 그리고 독일말을 가장 훌륭하게 하는 조선통역원도 그런 오해를 피하지 못하였다는것을 목격한 다음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였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볼때 아마 동독정치가와 조선정치가들이 다른 력사적 및 사회적 조건하에 활동하면서 사상적근원과 사고방식발전도 상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70년대초에 주체사상의 계급적성격에 대한 준박사론문을 통과시킨 다음에[2] 1977년에 조선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전파, 보급, 구현에 대한 박사론문을 통과시켰으며[3] 이에 근거하여 1984년에 소책자를 발표하였다[4].

연구결과로서 조선로동당력사가 사실상 특출한것이며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 공산주의운동력사와 상이한 측면이 많아서 사상적토대의 발생발전도 전혀 다르다는것을 리해하게 되였다.

둘째로 그때에 즉 70년대말 전후하여 동독에서 정치적제한성이 많았지만 우리 Humboldt 종합대학 Korea 연구소는 한국에서 점차적으로 도서와 다른 과학연구자료를 받게 되였다.

본인은 이 도서를 읽으면서 조선에서 뿐만아니라 한국에서도 학자들이 Korea문화의 주체성문제 그리고 민족적특징, 독자성과 정통성을 광범하게 토론하고있다고 깨달았다.

이러한 연구과정과 결과를 총화하면서 본인은 간단하게 말하여 오늘의 남북 Korea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사상상태를 리해하려면 Korea 철학사상사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그래서 70년대말부터 평양에서 벌써 1960년에 출판된 조선철학사로부터 시작하여 70년대에 남북 Korea에서 발간된 여러 철학사(조선철학

사, 한국철학사라고 한것과 관계 없이)를 독해(讀解)하면서[5] Korea 철학사의 본성을 파악하기로 노력하여왔다.

이에 근거하여 80년대중순부터 Korea 철학이라는 개념을 동독잡지와 사전에서 소개하는데 착수하였다. 동시에 몇번이나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하면서 Korea 철학사상사의 개별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의견을 발표하였다[6].

이 모든 경험에 근거하여 1980년대말부터 Berlin Humboldt 종합대학에서 Korea 철학사에대한 강의를 하고있으며 Korea 철학사상사개요를 집필하는중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일에서는 물론 유럽에서 처음으로 Korea 사람이 아닌 외국학자가 쓴 Korea 철학사상사를 출판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책을 집필하는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1990년후부터 여러 학술토론회에서 미해결문제를 제기하고있었으며 이번 국제고려학회 학회지 창간호에서도 다시금 자기의 립장을 소개하며 앞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워 알고싶다.

우에서 벌써 언급한바와같이 자기의 모든 연구사업의 목적은 Korea 철학사상사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있다. 그 목적과 관련하여 철학사상분야에서 여전히 유럽중심주의가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독일과 유럽의 현재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럽에서 지금까지 Korea 철학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그 누구도 모르는것은 사실이다. 아세아의 철학이라고 하면 보통사람들뿐만아니라 관심을 가지고있는 학자들까지 인도의 불교와 중국의 유교 및 도교만 넘두에 두고있으며 약간 아는 철학자는 아마 근현대 일본의 신도와 20세기 부르죠아철학을 고려할수 있지만 Korea를 비롯한 다른 동아세아 나라들에는 인도의 불교와 중국의 유교 및 도교가 수용되였다는 사실만 들었을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은 Korea 사람들자신이 외래철학사상조류를 받아들이면서 독특한 철학사상을 발명시켰다는데 주의를 돌릴 용의까지 크지 않다고 똑바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본인은 다시 한번 자기의 립장을 밝히기 위하여 한국학자 유명종(劉明鐘)씨의 말을 인용하겠다.

"불교와 유학이 외래사상이라고 하지만 일단 한국의 土壤에 수용되고 우리의 두뇌로 새겨져, 다시 생산됨으로써 이미 우리의 불교요, 우리의 유학이 되고 있었다. 그것은 인도나 중국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뇌를 통과하여 전개되었을 때 벌써 우리의 哲學이며 나의 思考가 되어있었다. 그럼으로 혹자는 우리의 고유 철학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고, 그 것은 중국의 것이며 인도의 것이라 한다. 정 그렇다고 하면 獨逸哲學도 英美哲學 혹은 다른 나라의 哲學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것이다. 서양 철학은 단지 희랍철학만 있다 해야 하고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라 해야 할것이다."[7]

그렇지만 Korea 철학사상사에 존재하는 특수성을 학술적으로 찾아내고 유럽사람들에게 설득력있게 해설하려면 다른 주객관적인 애로가 있다. 여기서 객관적인것과 주

관적인것을 서로 분리하기가 어렵기때문에 구별없이 제기하겠다.

1. Korea 철학사상사를 쓰려면 처음으로 해결하여야할 문제는 제목문제 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들이 다 아는바와같이 철학이라는 단어는 Korea 고유어 아니고 일본을 통하여 수입된 희랍 유래의 수용어이면서 내용상으로 원래 유럽에서 들어오는 부르죠아 철학을 의미하였기때문이다. 본인이 알고있는바에 의하면 19세기전까지 Korea 뿐만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철학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며 유, 불, 도를 하나의 용어로 일반화한 일이 없었다. 물론 물질적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형이하학(形而下學)을 대치하여 정신적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형이상학(形而上學)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그것을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하면 metaphysics/Metaphysik과 련결되기때문에 새로운 혼란이 생길것이다.

그래서 출로를 찾으려면 아마 할수없이 독자들에게 우에서 언급한 특수성을 해설하면서 독일말로 Philosophie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2. Korea 철학사라는 제목자체도 문제가 생긴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료해하는바에 기초하여 Korea 력사에서 종교와 철학과 사상을 서로 엄격하게 분리하여 파악하기가 너무나 어렵기때문이다. 형이상학적 생각은 시초부터 사상적인 내용을 가졌으며 사람들에게 사회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본인은 자기의 연구과제를 Korea 철학사상사라고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독일말로 Geschichte des Denkens in Korea 라고 하려고 한다.

3. 가장 어려운 문제는 동아세아 철학사상사에서 Korea 철학사상발전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밝히는것이다. 본인은 이 특수성과 독자성이 존재하는데 대하여 결코 의심하지 않다. 그런데 인도에서나 중국에서 수용된 원형의 불교나 유교를 대체적으로나마 짐작하지 못하면 Korea 철학사상가들의 독자적인 업적을 밝히지 못할것이다. 례를 들면 퇴계 리황(退溪 李滉 1501~1570)과 률곡 리 이(栗谷 李珥 1536~1584)의 Korea적인 성리학(性理學)을 료해하려면 중국의 유명한 주자학(朱子學)의 창시자인 주희(朱熹 1130~1200)의 학설을 배우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것은 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려면 두 Korea 철학자들의 작품뿐만아니라 주자와 다른 송학(宋學)자들의 원문도 독해하게 되면 좋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혼자서 이러한 과업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수십년간이나 걸릴것이기때문에 Korea 철학사상사를 짧은 시일내에 유럽에서 소개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접수할수없는 방법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자기앞에 내세우는 과업을 결정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안되며 제한된 목적만 세울수 있을것이다. 그리하여 본인은 남북 Korea 학자들이 여러 철학사들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그들이 달성한 총화와 의견에 따라가면서 Korea 철학사상사의 생명선과 주요 조류를 소개하기로 노력하겠다. 이에 있어서 남북 Korea 학자들이 상이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고 론쟁을 하는 사실은 장애로 되지않고 반대로 도움으로 될수 있을것이다.

4. 마지막으로 여러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지정만 하겠다.

-건국신화의 철학사상사적내용
-유교가 수용되기전의 Korea식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존재 문제
-풍류(風流)사상과 화랑도(花郎道)의 독자성 문제
-삼국시대 불교론리 및 불교선종(禪宗) 전파보급 문제
-고려말 조선초의 배불론(排佛論)과 벽불론(闢佛論)의 역할 그리고 성리학(性理學) 발생발전
-성리학과 당쟁(黨爭)
-15세기부터 시작한 리기(理氣)와 사단칠정(四端七情)에 관한 론쟁
-실학(實學)의 발생발전과 그의 선진적 및 보수적 성격
-천주교(天主敎)수용 그리고 동학(東學)과 천도교(天道敎)의 독자성
-유럽 철학사상 수용, 일본유신(維新)과 민권(民權)사상 그리고 Korea의 개화(開化)사상과 문화계몽(文化啓蒙)사상
-중국 사상가 손중산(孫中山 1866~1925)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Korea 사상가 조소앙(趙素昻 1887~?)의 삼균주의(三均主義)
-현재 조선의 주체(主體)와 한국의 주체성(主體性), 차이점과 공통점, 선진성과 정통성 등등.

본인은 이와같은 문제들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창조(創造)적절충주의(折衷主義)=creative eclecticism은 Korea 철학사상사의 주요 특성으로 된다고 본다. 즉 Korea의 철학사상가들은 고대부터 오늘까지 가깝거나 먼 주변세계에서 새로운 사상조류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다음에 자기 나라의 현실을 보고 자기의 머리를 쓰고 자기의 특수조건에 맞는 Korea적인 철학사상을 발명하였다는 초보적인 명제를 세우려고 한다.

본인은 3년전에 우에서 소개한 방법론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북조선 주체(主體)개념을 분석하였으며 그것의 력사적뿌리, 국제적련관성과 한국 주체성(主體性)과의 공통점을 처음으로 파악하기 시도하였다[8]. 그것을 여기에 자기 연구과정 실례로써 함께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두개의 짧은 고찰을 하고싶다. 그것은 북조선의 주체개념뿐만아니라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그 어느 사회제도에서도 새로운 사상조류가 발생할때 그것을 평가하려는 학자가 응당 취하여야할 태도에 관한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그전까지 알지 못한 사상내용을 찬성, 칭찬하거나 판단, 규탄하기전에 이와 관련하여 발표된 진지한 과학적자료를 읽고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에 대하여 진짜 학자는 이것이 의심할바없는 학자다운 태도라고 전적으로 동의할것이다. 그러나 30여년전부터 조선로동당 사상정치사를 조사하여온 본인이 주체사상과 관련한 수많은 책과 론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지못한 저자가 적지않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주체사상을 학술적으로 비판 분석하지 않고 단기간적인 정치목적만 가지고 있는 칭찬선전물은 벌써 무수하게 많다. 북조선과 Korea 반도 사태발전에 대한 심중한 관심

을 가지는 사람은 이와같은 자료를 읽으면 깊은 유감성을 품게 된다. 왜냐하면 이와같이 주제넘는 선전은 역시 무수한 선입견과 무지한 분별없는 규탄을 도전하기때문이다.

최근의 례를 들면 80년대하반기에 평양에서 이전 동독대사로 있었던 Hans Maretzki씨는 1991년 독일에서 "북조선에서의 김주의(金主義)"(Kim-ismus in Nordkorea)라는 책을 발표하였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음의 두가지를 슬픈 마음으로 느꼈다.

1. 본인은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완전히 참패하였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몇년전까지 조선처럼 비민주주의적인 당독재를 실시한 동독국가를 높은 자리에서 대표한 필자가 자기비판을 조금도 하지 않고 조선의 발전을 너무나 교만하게 판단한다고 본다.

2. Maretzki씨는 조선말을 모르기때문에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물론 파악하지 못한 동시에 일반철학사상사를 모르기때문에 철학사상발전의 특수한 본성이 무엇인지, 맑스주의철학이 무엇인지를 전혀 리해하지 못하면서 조선의 신문, 선전물의 사실로 어리석은 몇토막만 가지고 주체사상을 정치적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판단한다. 이것은 이전 동독의 집권당이였던 독일사회통일당 중앙기관지인 "노이에스 도이췰란드"(Neues Deutschland)신문에서 80년대에 발표한 역시 어리석은 선전자료를 가지고 맑스의 학설을 비평하는것과 다름이 아닐뿐만아니라 절대적으로 비과학적인 태도라고 본다.

본인은 이외에도 최근년간에 한국에서 발행된 여러 책을 읽어보았다. 이중에는 심리학자 백상창씨가 쓴 책도 있었다[9]. 본인은 심리학자가 아니기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지만 독일의 재통일을 체험한 원래 동독지식인으로서 한 가지만 경고하고싶다. 백씨는 모든 북조선사람이 정신병자로 된다고 결론지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병든 김일성(金日成)과 병리화되고 이질화된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밑에 최선의 처방을 내려야할것이다. 남-북간의 대화는 어떠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사실은 '그들은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자의 입장'에 서야만 한다는 것이다."[10]

이러한 결론은 본인의 경험과 의견에 의하면 아주 위험한것이다. 왜냐하면 일부 서독정치가들은 동독사람들에게 대하여 우와 비슷한 태도를 취하기때문에 동독주민들의 인간적존엄을 유린하며 통일직후에 가지게 되였던 권위를 잃어버렸다. 북조선사람들이 동독사람들처럼 최근에 사회주의적목적이 비사회주의적으로 왜곡되여서 복잡한 문제점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약 40년전부터 부지런히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공업국가를 건설한것은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정신병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것인지 모른다. 이 모든것을 고려하여 본인은 주체 개념과 사상의 발생, 발전과 변화 과정을 심중히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싶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여러 의견을 제기하는바이다.

본인이 처음으로 주체라는 단어를 들은것은 1960년대초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가들간의 어느 회담에서 북조선정치가들중의 한분이 "주체"라는 단어를 써서 통역하는 본인은 리해를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후에 물어보았는데 그분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조선민족은 오래동안 여러 대국(大國)들사이의 경쟁에서 대상(對象)(달리 말하여 객체(客體))의 역할을 놀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조선사람들이 대국들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이 대국의 원조에 의존하면서 조선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을 촉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특히 제2차세계대전후의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것은 조선인민에게 민족의 분렬, 동족상쟁과 인간적불행밖에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았다. 그렇기때문에 조선인민은 앞으로 그 누구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아야하며, 민족적자부심을 높이고, 자력갱생(自力更生)하여 자기의 힘,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로력적열성을 믿고 발휘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자립적으로 해결하여야한다. 물론 다른 나라들의 귀중한 경험과 특히 최신기술을 배워야하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접수하지 않고 조선의 구체적조건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인은 이 해설을 듣고 주체라는 개념을 독일말로 nationale Selbstbesinnung(즉 민족적자신(自身))이라고 통역하였다. 그때 유럽 정치용어를 아는 조선정치가가 통역을 잘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주체라는 개념에 national이라는 말을 강조하면 안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주체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반대로 매개나라는 주체를 세우면서 자기 민족의 경제력과 정치적권위를 강화발전시킬때에만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에 충실할수 있으며 전체 사회주의제도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기때문이다.

우에서 이야기된것이 1960년대초의 체험이였다는것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자들 다 아시다싶이 그 당시에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비롯한 진보적력량들속에서 중국사태발전과 관련하여 민족적특성과 세계사적일반성에 대한 날카로운 사상론쟁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쏘련공산당은 독일사회통일당과 기타 다수 공산당들의 지지하에 우선 정치사상분야에서 다른 공산당 및 로동당들을 독점적으로 지배하였다. 이로 인하여 본인도 다른 사회주의나라 학자들과 함께 1960년대에 주체의 개념을 부르죠아민족주의개념으로 오해하며 그의 철학적의의를 과소평가하였으며 심지어 반대하여 나섰다. 그러나 1970년후부터는 주체사상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였으며 이 개념의 의의를 소홀히 하지 않고 주체의 내용과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사상사업에서 주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쓰게 되였는가를 찾아내는 일부터 착수하였다. 지금까지 료해한바에 의하면 김일성은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주체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모든 문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체가 없는것이 사상사업의 가장 중요한 결함입니다…우리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있습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 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쏘련공산당의 력사를 연구하는것이나 중국혁명의 력사를 연구하는것이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연구하는것은 다 우리 혁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사상사업에서 주체가 똑똑히 서있지 않기 때문에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의 과오를 범하게 되며 우리 혁명사업에 많은 해를 끼치게 됩니다."[11]

조선로동당에서는 1960년대말부터 주체개념과 주체사상이 더욱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로동당계 정치가, 학자들은 오늘에 와서 북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와 과학적사회주의를 실현하는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결과라고 말한다[12]. 이것이 사실인지는 원래부터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최근의 사회주의 제도와 리론의 국제적위기를 보고 이에 대한 답변은 더 어려워졌다. 그렇기때문에 본인도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주체개념이 특히 1970년대부터 철학적으로 어떻게 발전풍부화되였는가에 대해서만 몇가지 고찰을 하겠다.

우에서 말한바와 같이 조선에서 첫시기 즉 50년대말부터 70년대말까지는 주체를 정치적인 개념으로써만 리해하고 주민들의 민족적의식을 높이며 옛날부터 내려온 사대주의(事大主義)잔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크게 선전하였다.

조선철학자들은 1975년후에만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대한 학술적인 토론을 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토론결과에 다음과 같은 테제들이 제기되였다.

첫째로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모든것을 사람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로 된다는것이다.

둘째로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것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셋째로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주인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번영하는 창조자로 된다는것이다.

넷째로 사회의 발전과정은 인간의 사회적본성을 참답게 체현하고있는 인민대중의 사회적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인민대중은 사회적운동의 담당자이며 력사의 주체라는것이다.

최근년간에 즉 1980년후부터 철학자들의 발언과 론문에는 사람과 외부세계간의 호상관계를 더욱더 변증법적으로 해설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례를 들면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고 하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지배해나가는 존재라는것이다."라고 주장한후에 "외부세계를 떠나서는 사람은 살아나갈수 없으며 발전할수도 없다. 그러나 사람은 외부세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여 살아나가는것이 아니라,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복종시키면서 살아나가는 가장 발전된 존재이다."[13]라는 설명을 보충한다. 이외에도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우리시대에 있어서처럼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요구가 강하며 력사적운동에 참가하는 대중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회발전에서 인민대중이 노는 역할이 커진때는 일찌기 없었다"고 주장한다[14].

동시에 학자들은 "자주성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살아나가려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이다."[15]고 말하면서 사람은 그 어떤 구속에서도 벗어나야한다고 요구한다.

본인은 여기서 오늘 북조선의 주체사상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였지만 사람과 인민대중의 역할에 대한 테제에서 주체의 개념이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담겨져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여러 테제의 내용에 대한 의견, 특히 사람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행동이 그 어느 시기에도, 또 모든 주객관적인 사회조건하에서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론하지 않겠다. 다만 이 네개의 테제내용은 오직 북조선에서만 발명되였거나, 토론되고있는가 혹은 현대일반철학사상발전과 더불어 발생하여왔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하고싶다.

본인은 1970/80년대에 국제적사상론쟁과정을 주시하는 동시에 Korea 민족해방투쟁사와 특히 맑스-레닌주의 전파보급실행문제를 연구하면서 Korea 민족해방운동 및 사회전진운동을 다른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의 발전도상과 비교하여 이 모든 나라들에서 민족적문제가 사상적중심고리로 되였으며 계급투쟁을 초월하였다는것을 알았다. 최근에 무너진 쏘련의 사태발전 즉 이전 련맹국들간의 갈등을 보고 쏘련공산당이 이 사실을 수십년동안 무시하였다는것이 얼마나 엄중한 결함이였는가를 그 어느때보다도 더 명백하게 알수있다. 조선식 주체개념의 근원을 해명하기 위하여 국제공산당 력사 그리고 일본공산당력사와 20세기 일본사상사에도 주의를 돌렸다. 간단하게 여러 재료를 조사한 결과 다음의 두가지를 발견하였다.

1. 20세기초에 일본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사이에서는 일본국민의 주체성(主體性 shutaisei)에 관한 론쟁이 벌어졌으며 그것은 주로 서방나라들에서 모든것을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려고하는 경향을 규탄하는것이였다[16].

2. 일제패망직후에 일본공산당에서도 주체성문제를 토론하였으며 일본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하려면 쏘련의 방도를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아야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와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반드시 일본의 구체적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자체의 길로 나가야한다는것을 요구하였다[17].

일본공산당은 오늘까지 이러한 립장을 견지하여왔으며 그것때문에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자주 비판을 받았다.

본인은 물론 김일성을 비롯한 북조선사람들이 주체의 개념을 일본에서 수용하였다고 말하고싶지 않다. 그러나 일본에서 주체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였다는것을 깨닫게 된후부터 아마 북조선에서뿐만아니라 해방전의 Korea와 한국에서도 주체 혹은 주체성의 개념을 찾아낼수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네가지를 료해하였다.

1. 늦어도 1970년대중순부터 한국 력사학과 정치학계에서 한민족이 력사의 주체로 되는것과 "역사앞에서 민족을 정확히 연결시킬수 있는 역사적인 주체의식(主體意識)"의 문제와 민족사의 정통성(正統性)이 민족의 주체성을 규정하는 문제를[18] 토의하고있는것을 보았다.

2. 한국 민중운동과 민중사상계에서도 민중개념과 함께 주체나 주체성개념이 토의되고있다. 민중사상가들은 민중에서의 주체성개념이 북조선사상가들의 주체개념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강조한다[19]. 그렇지만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외국 학자인 본인은 남과 북에서 민중을 력사의 주체로 보는것이 공통적인 원리로 된다는것을 재미있게 보았다.

3.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 1880~1936)를 비롯한 반일민족주의독립운동사상가들의 사고방식 및 내용을 살펴볼때도 반사대주의와 주체(성)이라는 개념을 찾아 볼수 있다. 례를 들면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를 비롯한 여러 저작들에서 조선지배세력의 사대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조선민족의 "주체정신"과 "자아의식(自我意識)"을 주장하고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특징지어진 조선인민의 력사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지켰다. 이와 동시에 신채호가 개인영웅주의를 믿고있다는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20].

4. 한국문학사상사나 한국철학사[21]를 연구하는 한국학자들이 Korea 민족력사의 자립성과 유일성을 강조하는것도 본인의 의견에 의하면 주체성과 "self identity"에 지향하는 현대국제철학사상발전추세를 반영하는것이며 학술적방법에서 차이가 적지 않지만 조선학자들의 과학연구사업과 동일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평양에서 1980년후부터 발간된 "조선전사"[22] 혹은 "조선철학사"[23]와 "철학사전"[24]을 읽었을때 주체성을 증명하려는 목적으로 필자들이 Korea 민족의 력사도 세계사의 구성부분이며 중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 발전이 응당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지만 과소평가하는 약점이 있다고 느꼈다.

연구사업과정에서 본인이 일반철학사 특히 동양 즉 중국과 일본 철학사상사를 초보적으로나마 료해하였지만 주체의 개념이 일반철학사상에서 무슨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앞으로 더 심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중국의 손중산식 삼민주의와 모택동식 자력갱생(自力更生)정신, 인도의 힌두교 및 불교식 인도주의, 아랍 나라들의 회교식 사상자주성과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의 "self identity"사상—이 모든것은 주체개념에 가깝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종합하면서 앞으로 밝혀져야할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싶다.

1. 봉건제도의 붕괴와 자본주의제도의 세계적발전번영과 함께 세계철학사상사에서 개인과 민중의 주체적력사지위에 대한 사고연구가 추세로서 개시되였다. 례를 들면 개인의 주체성과 자주성 문제는 19세기후반기부터 유럽철학계 즉 덴마크 철학자 Kierkegaard(1813~1855),독일 철학자 Jaspers(1883~1969)와 Heidegger(1889~1976)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이며 작가인 Sartre(1905~1980)등의 실존주의철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놀았다. 그것은 20세기에 일본 철학자들인 Nishida Kitaro(西田 幾多郎 1870~1945)와 Miki Kiyoshi(三木 清 1897~1945)의 생각 그리고 일본 30년대 shutaisei yuibutsuron(主體性 唯物論)토론에 큰 영향을 끼치였다. 동시에 한국 철학자 최민홍씨는 최제우(崔濟愚 1824~1864)의 동학(東學)사상을 유럽의 실존철학과 실존주의와 련결시키고있다[25].

이 모든것을 고려하여 본인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봉건제도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민족앞에서 개인과 민중의 주체성개념이 응당하게 제기되는가라는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한국에서 더욱더 많이 제기되는 한철학(韓哲學)Han Philosophy[26]라는 개념은 Korea 철학사상사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향을 변증법적으로 분석하면서 Korea 민족의 주체성을 발견하기 위한것인가? 20세기 Korea 사상가들중에 누가 언제부터 Korea에서 주체 혹은 주체성을 세워야한다는것을 요구하였는가? 민족주의독립운동가인가, 공산주의해방운동가인가, 두 운동가들 다 같이 병행하여 이 개념을 습득하였는가라는 문제를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3. 맑스주의를 접수, 전파, 보급하는 과정에서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다른 아세아나라들에서 한것처럼 Korea 사람들도 맑스를 경제규정자로서만 리해하고 맑스주의를 원래부터 객관적 조건을 초래하고 주체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는 학설로 오해하였는가? 북조선 철학사상가들은 오늘 이러한 립장을 견지하고 있는 모양이다[27].

4. 본인은 김일성주석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영웅주의가 전체사회생활을 지배하는 조건하에 조선학자들이 개인과 민중의 주체적역할을 주장하는것은 조선철학사상사에서 큰 진보로 된다고 생각한다. 남북 Korea 학자들은 이 분야에서 앞으로 합작할 기초가 있지 않는가 한다.

물론 이 내용을 학술적인 분위기속에서 토의하기 위하여 학자들은 우에서 말한 개인영웅주의와 관련한 너무나 비과학적인 선전 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관의 근본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준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창시하신것은 인류의 철학사상발전에서 불멸의 세계사적공헌으로 된다"[28]라는 것을 관대(寬大)하게 간파하거나 제쳐놓을 필요가 있을것이다. 왜냐하면 주체의 령도방법에 대한 해설 즉 "근로인민대중이…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29]라는 말은 력사적으로도 론리적으로도 우에서 언급한 주체의 철학적원리 특히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에 대한 원리와 절대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원칙에 어긋나게 비사회주의적으로 썩어빠진 사회주의제도하에 수십년동안 살아온 본인은 조선에서도 정치적체제가 존재하는한 학자들이 할수없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충분히 리해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 더 강조하고싶다. 그것은 철학적개념으로 될수 있는 주체와 조선에서 60년대부터 유일사상체로서 주장하는 주체사상간의 차이를 고려하여야한다는 의견이다. 왜냐하면 다른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에서 한것처럼 조선에서도 유일사상체를

설치한것은 중앙집권적역할을 노는 당의 로선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밖에 아무것도 되지 않기때문이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체험한 동독경험을 보고 발표되거나 발표되지 않는지간에 관계없이 철학자들을 비롯한 사회학계에 현대 사회학원리에 대한 광범한 론쟁이 벌어져왔다. 조선에서도 발표된 책들까지 서로 모순으로 되기때문에 론쟁을 증명하는 말씀을 찾아낼수 있다. 몇개의 실례를 들자.

1. 주체사상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군사에서 자위만 주장하는 동시에 철학자들이 세계가 하나로 통일체로 되기때문에 현대사회가 발전하는 20세기말에 와서 모든 나라들이 호상 련관속에서만 전진할수 있고 서로 고립되여 존재할수 없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바가 있다[30].

2. 력사적유물론교과서는 주체사상에 의하면 수령의 사상과 의도가 진리의 유일한 시금석으로 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같은 책에서 맑스의 명구 즉 실천이 진리의[31] 유일한 시금석으로 된다는것을 자세하게 해설한다[32].

3. 80년대에 그전보다 많이 발간된 철학서적, 주로 여러 철학사와 철학사전에서 주체사상의 정치적원리에 어긋나는 내용을 찾을수 있다. 북조선에서 인쇄되는 모든 선전자료는 수령의 사상이 영원히 변하지 않은 유일한 절대진리로 된다고 설교하는 동시에 우에서 말한 책들의 저자들은 영원한 변화, 영원한 발생발전과 멸망의 법령을 증명하는 유교 및 불교식 인식을 내세우고있다. 그것은 김정일씨가 최근 연설문에 보이는 "우리 식 사회주의가 필승불패"라고 하는 고집성을 비추어볼 때 더 재미있는 현상으로 된다고 본다.

4. 마지막으로 당의 선전자료들에서 탁월한 수령만 인류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는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철학자들은 여러 론문들에서도 국제학술토론회발표문들에서도 인민대중이 력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인간마다 주체로 되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강조한다.

본인은 끝으로 이상에서 제기한 의견들이 초보적연구의 결과임으로 편파적인 점이 있을것이고 오해점과 한계점이 많을것이라고 자각한다. 그래서 학자여러분이 귀중한 의견과 참고로 될 조언을 많이 주시기를 기대한다.

〈주〉

1) 본인은 조선이라는 단어도 한국이라는 단어도 쓰고싶지 않다. 왜냐하면 연구 사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나 대한민국에서나 발표한 도서를 동등하게 쓰고있으며 Korea의 철학사상사를 동질적인 연구대상으로 보기때문이다. 편리한 관계로 북에 대하여 말하면 조선이라고 할것이고 남에 대하여 말하면 한국이라고 할것이다.

2) Entwicklung und Probleme des Klassenstandpunktes der Partei der Arbeit Koreas, Dissertation, Humboldt-Universität Berlin 1973

3) Marxismus-Leninismus in Korea, Dissertation, Humboldt-Universität Berlin 1977

4) Asien-Wege zu Marx und Lenin, Dietz Verlag Berlin 1984

5) 실례로서:

조선철학사, 평양 1960

Choi Min-hong: A Modern History of Korean Philosophy, Seoul 1978

劉明鍾 : 韓國 哲學史, 서울 1982

최봉익 : 조선철학사 (1), 평양 1981

철학사전, 평양 1985

韓國 哲學史(上, 中, 下), 서울 1990

儒敎 大事典, 서울 1990

6)례를 들면:

The Poetry of Chong Yag-yong - An Expression of his Minbon 民本 Ethic, in: Association for Korea Studies in Europe, Proceedings of the 9th Annual Conference, Chantilly-France 1985

Koreabeitrag zu: Wie und warum entstand Philosophie?, in: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Berlin 1987/11

The Position, of Lee T'oe-gye in History of Korean Philosophy, 退溪 學術 討論會, Tsukuba-Japan 1985

7)참조 劉明鍾의 이상의 책 p.5

8)"발전하는 철학적 개념으로써의 주체(主體)와 주체성(主體性)"이라는 론문이 한국에서 부분적으로 발표되였으며(참조 : "北韓 體制의 變化 : 現況과 展望, 民族 統一硏究院, 國際 學術 討論會 發表 論文集, 1991. 10. 28-29, pp.533-547)후에는독일말 전문은 "Korea-Forum"이라는 잡지에서 인쇄되였다. (참조 : Osnabrück 1992/6 S.4-6, 1993/1 S. 13-15)

9)白 尙昌 : 맑스, 모택동, 김일성-그리고 한국사회, 서울 1989

10)이상 p.100

11)김일성 :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 평양 1970 pp.29-30

12)김정일 :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1982

13)김창원 : 주체사상이 기초하고 있는 원리, "근로자"(조선로동당 월간잡지), 1980/3 p.23

14)김창원 : 주체사상이 기초하고 있는 철학적원리, "근로자", 1980/5 p.13

15)우와같은 잡지, 1980/3 p.26

16)참조 : Ю. Ъ. КозловскийЬ Философия эксистендиализма в современной Ялонии, Москва 1975

Кодзай ЁсисгеЬ Современная философия+, Заметки о духе Ямато, Москва 1974

17)참조 : 전위(前衛 Zenei), 일본공산당 기관지, 1946

18)崔昌圭 : 韓民族 近代 政治論, 서울 1975 13 p.19

19)Minjung Theology - People as the Subjects of History, London 1983, 30, 185pp.

20)참조 : Michael Robinson: National Identity and the Thought of Sin Ch'aeho; Sadaejuui and Chuche'e in History and Politics, i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984/5 pp.121-142

21)참조 : 劉明鍾 : 韓國 哲學史, 서울 1984

Ch'oe Min-hong: A Modern History of Korean Philosophy, Seoul 1978

韓國 哲學史(上, 中, 下), 서울 1990

22)1-33권, 평양 1979-1982

23)최봉익 : 조선철학사 (1), 평양 1981

최봉익 : 조선철학사개요, 평양 1986
24)평양 1985
25)Ch'oe Minhong p.354
26)Ch'oe Min-hong: Han Philosophy and the 21st Century, seoul 1990
27)참조 : 1988년 평양 조선관계학자토론회에서 한 박승덕교수의 보고
28)"근로자", 1980/3 p.24
29)"근로자", 1980/5 p.13
30)참조 : 변증법유물론, 김일성종합대학용 교과서, 평양 1972
31)력사적유물론, 김일성종합대학용 교과서, 평양 1972
32)력사적유물론, 김일성종합대학용 교과서, 평양 1972

한국음악문화의 사회적 특성

이 병 원

1. 머리말

음악은 언어와 비슷한 점이 많다. 언어마다 각기 다른 단어와 문법이 있듯이 한 문화권의 전통음악도 그만이 갖는 독특한 음악적 단어와 문법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가지 음악적 언어만을 바탕으로 모든 음악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하고, 음악이 세계 공통언어라는 말은 근거없는 감상일 뿐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글의 목적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한국 음악문화의 전수과정에서의 음악사적 특징, 한국적 연주양식이 제시하는 음악의 사회적 기능의 가능성과 1960년대 이후 전개된 음악, 특히 전통음악의 사회적 특성을 조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의도는 한국음악이 지닌 소리 구조상의 특수성 규명보다는 음악을 통한 한국문화 이해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국음악"이라는 영역은 1948년 지리적, 이념적으로 남(대한민국 혹은 한국)과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갈라지기 전부터 한국에서만 보존, 연주되어온 전통음악과 1948년 이후에 한국에서 발생한 음악들로 한정했다. 가끔 한국음악이란 명칭을 포괄적으로 사용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연변 조선족 자치주, 일본의 민단과 조총련, 중앙아시아나 북미에 자리잡은 한인 이민집단의 음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거의 반세기동안 그들 나름대로 각기 다른 정치, 사회적 배경에서 형성된 음악문화를 한국의 음악과 같은 맥락에서 취급하기에는 그동안 발생한 다양성을 단순화시키는 무리한 점이 있어서 이 글에서는 그 지역들의 음악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1]. 그러나 이들 음악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의 연구는 범한민족의 음악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2. 한국음악의 역사적 특성

역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예술음악이나 대중음악은 이웃 동북아시아 국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 중국은 한국의 궁중 혹은 예술음악 발전에 원천적 역할과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 지역 음악의 소개에 중개역할을 해 왔었다. 한국은 중국이 한국에 기여했던 것처럼 10세기 이전 일본 상류층의 음악문화 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일본은 한국에 새로운 형식의 대중유행음악을 이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엔카(演歌) 혹은 카요교쿠(歌謠曲)의 영향을 받은 "뽕짝" 혹은 "국민가요"로 분류되는 유행가들이 한국의 방송, 버스, 다방 혹은 상가

등지에서 매일 울려 퍼지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 음악사에서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음악이 어떤 의도적 동기 혹은 시대상황의 이유로 그 형식이나 내용이 혁신적으로 개혁되기 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발생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하는, 이를테면, 소극적 변화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전통음악은 지금까지 현저한 개혁없이 전수되어 왔다. 또,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외국음악 역시 현저한 한국화나 수정없이, 또 기존 한국전통음악과 상호 결정적인 영향없이 나란히 보존되어 왔다. 12세기 초 중국 송(宋 960~1279)에서 수입된 아악중 하나인 문묘제례악이 중국에서는 청(淸 1644~1911)말기에 없어 졌으나, 한국에서는 큰 변화없이 보존, 연주되어 왔다는 것은 좋은 예다.

이러한 한국음악의 역사적 특징은 수 차례 현저한 개혁을 거친 중국이나 일본음악사와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이들 음악의 원형이나 고대양식을 규명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중국음악의 역사는 왕조의 변화, 혹은 외래문화의 수입에 따른 개혁과 변화의 연속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연주되는 소위 "중국악기"들도 대부분이 19세기말부터 서양악기에 바탕을 둔 현대화한 것들이다. 궁중의식 음악인 아악의 경우에도 그 음계 조직이 서기전 3세기부터 19세기말 사이에 서른 다섯번이나 바뀌었다[2]. 또 현재 중국이나 대만에서 부활시킨 문묘제례악도 현대감각을 많이 고려한 개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 천여년 동안 두 번의 큰 음악개혁이 있었다. 첫번째는 중국과 한국의 영향이 상류층에 범람하던 나라(奈良 553~794)시대가 끝나면서 주로 중국과 한국음악이 주류를 이룬 외국음악을 일본인의 취향에 맞게 고치거나 여러 종류의 음악을 체계화, 일본화의 정착이 헤이안(平安 794~1192)시대에 이루어 졌다. 메이지(明治 1868~1912)시대에는 서양고전음악에 기본을 둔 일본음악을 현대화하는 개혁이었다[3]. 이러한 개혁과정으로 인해 일본 궁중음악인 가가쿠(雅樂)의 원형이나 고대형을 추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가지 예로 한국의 삼국시대(-668)에 일본에 전해졌다는 코마가쿠(高麗樂)는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한국전통궁중음악과 많이 다른데, 일본에서 있었던 음악개혁에 따른 영향이 컸으리라 생각한다.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이웃나라의 음악사와 비교해 보면 한국음악은 중국과 일본사이의 교차로에 있으면서도 그들과는 다른 음악사적 특징을 지녔다. 즉, 중국, 일본음악의 역사가 개혁의 연속이었다면, 한국음악의 역사는 노골적인 개혁을 피하고, 전통음악과 수입된 외국음악을 뚜렷이 분리시키고 나란히 보존, 연주해온 바와 같이 보수적이었다고 하겠다.

3. 한국전통음악 연주양식의 특성

음악은 표현문화 중에서도 더 직선적이고 감각적인 면이 있다. 특히 어느 전통음악에서나 연주 혹은 연행양식은 언어의 토속적인 어휘와 문법과도 같은 것이어서 그 윤

곡을 미학적으로 기술하기가 쉽지 않다. 전통음악의 연주양식은 음색(timbre 혹은 tone color)과 함께 그 음악의 정수를 대표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음악의 연주양식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엄격하게 고정된 연주양식으로 서양고전음악이나 일본음악이 이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같은 곡목이라도 연주양식이 연주자에 따라, 연주 시간과 장소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양식인데 인도, 아프리카, 한국음악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통음악의 연주양식은 한국 음악역사가 중국,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음악연주양식과는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규명하는 것은 한국음악의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한국전통음악세계에서 기성 연주가로 인정받기까지는 대체로 세 단계를 거친다. 처음에는 스승에게서 구두로 배우거나 스승의 음악을 모방하는 과정을 거친다. 전통적으로 이 과정에서는 도제살이식 교육방법이 많다. 둘째 단계에서는 제자가 스승의 음악을 어느정도 익히고 난 후 다른 연주가들의 음악도 자기 취향에 따라 부분적으로 취하면서 성숙기에 접어든다. 마지막 단계는 한 스승의 음악을 주축으로 다른 연주가들의 음악과 다른 장르의 음악적 소재들을 섭렵해서 자신의 개성이 뚜렷한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 내고 다른 음악가들에게서도 인정받는 이른바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20세기 후반까지도 이러한 교육방법 때문에 여러 연주가들을 음악적 동질성에 의해 하나의 집단으로 묶고, 시간적으론 오래 지속되는 파(派) 혹은 류(流)의 개념이 희박했다. 한국전통음악세계에서는 모든 음악가들이 그들 나름대로 각각 개성있는 음악을 연주해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세대에서 끝나버리는 파(派)나 류(流)를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다. 좋은 예로 80년대 후반까지 몇 안되는 가야금산조 대가 중의 한 사람인 성금연(1923~1986)의 음악적 성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성금연은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7세 때부터 가야금산조 혹은 판소리를 호남지역의 여러 대가들에게서 배우고 난 후 박상근(1905~1949)의 이색적인 충청도 풍의 가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성금연 특유의 산조가락을 이루어 갔다[4]. 이러한 연유로 성금연의 음악을 1980년대 초까지로 "박상근류 가야금 산조"라고 불리어졌었다. 그러나 성금연 자신에 의하면 그가 박상근에게서 산조를 본격적으로 배운 것은 2, 3개월에 불과하고, 그가 80년대에 연주하던 한시간 짜리 산조에는 박상근의 가락이 10%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음악인들이 그의 가야금산조를 "성금연 가야금 산조"로 인정해 주지 않고 "박상근류 가야금산조"라고 부르는데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냈었다[5]. 이것은 바꿔말해서 산조의 대가로 성장한 1980년대 초의 성금연의 음악적 소재는 어느 한 스승의 음악이 절대적으로 두드러진 것이 아니라, 그가 수십년간 섭렵한 여러 스승들의 여러 가지 음악과 그 자신이 다듬어 창작된 것이 합쳐진 결과로서 성금연 가야금산조를 이룩한 것이다.

대체로 한국전통음악은 연주자 개인의 즉흥적 변주를 통해 독특한 음악적 개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장르나 연주자에 따라 즉흥적 변주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것

은 각 연주자의 음악적 특징을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음악 연주양식은 많은 융통성이 있어서 스승과 제자가 같은 음악을 함께 연주하는 과정에서 그들 사이의 음악적 표현이 다소 다르더라도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자가 자기와 똑같이 연주를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음악적 골격이 흐트러지지 않는 한, 스승은 그것을 그 제자의 음악적 개성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전통은 복사기로 찍어내듯 거의 똑같은 음악을 정확하게 반복하고 연주해야 되는 서양고전음악이나 일본전통음악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본전통음악 연주양식을 한국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일본 음악은 모방적이고 연주양식이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다. 가령 야마다류(山田流)의 코토(箏) 연주가가 되려면 스승에게서 배운 그대로 똑같이 충실하게 연주해야지 이쿠타류(生田流) 코토 음악이나 개인적 변주를 함부로 가미하면 그가 속한 류(流)에서 제명처분을 받고, 직업 음악가로서 그 사회에서 발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의 배경으로 종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에모토(家元) 세습제도의 고수, 류(流) 혹은 파(派)의 엄격한 구분, 모방을 주로하는 스즈키(鈴木)식 음악교육 방법, 반주음악이 고정되어 있는 카라오케의 발명 등은 당연한 것이고 일본 음악연주 양식을 대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국전통음악 중에서도 시나위, 산조, 판소리는 즉흥적 변주가 많고, 호남지역 음악의 대표적 장르들이다. 시나위 연주는 장고가 장단을 제공하고, 몇 명의 선율악기 연주자들이 제각기 다른 연주자들과는 다른 가락을 즉흥적으로 연주하는데, 어떤 가락이 언제 연주될 지 연주자 자신도 사전 준비 없이 연주가 진행되는 것이다. 시나위의 음악적 일체성을 제공하는 유일한 근거는 장단인데 장단을 맡은 장고 연주자 자신도 장고 가락을 끊임 없이 변주 시킨다. 이러한 연주양식의 음악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조화가 안된 인상을 줄 지 모르나 서로의 음악적 개성을 잘 감지하고 호흡이 잘 맞는 연주가들이 모여 연주할 때는 여러 악기의 가락이 복합적으로 잘 엮어 지면서 무한정으로 큰 줄기의 가락을 만들며 진정한 시나위 음악의 맛을 제공한다[6].

예측불허의 즉흥적 변주는 산조에도 흔히 있었던 일이다. 한 사람의 산조를 여러 제한된 연주시간에 맞추어 그 때 그 때 편곡하는 자체가 세련된 즉흥 연주의 기교가 요구되는 것이다[7]. 판소리는 음악적 구성 뿐아니라 가사의 시기적절한 즉흥적 꾸밈으로 청중의 갈채를 받는다. 풍물이나 민요, 심지어는 불교 의식음악에서 조차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연주양식을 한국전통음악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탈춤, 꼭두각시 같은 전통연극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시나위나 산조 같이 고도의 즉흥적 변주기교가 요구되는 음악은 다른 극동 아시아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한국음악의 전통적 연주양식은 연주할 때마다 변하는 창의적이고 개인의 음악적 개성이 뚜렷한 음악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또 융통성 있는 연주양식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민중의식의 표현에 이상적인 매개체 역할을 해 왔다.

4. 한국음악의 사회성

서양음악이 한국에 소개된 것은 100년 정도가 되었지만 한국의 서양음악 인구와 한국 출신 연주가들의 국제무대 활동을 감안할 때 그 위치는 대단하다. 서양음악 전공을 지향하는 인구는 한국전통음악보다 훨씬 더 많다. 1992년 당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과정에서 한국전통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수는 2,002명인데 비해 서양음악 전공 학생수는 18,844명이었다[8]. 많은 부유층이 일찍부터 그들 자녀들의 서양음악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왔다. 이의 실천에는 가족들의 상당한 헌신과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1994년 현재 미국의 Julliard Music School 학생 621명 가운데 37%인 99명이 한국 학생들이고, 특히 그 예비학교의 경우 총 331명의 학생 중 한국학생이 42%인 140명이나 된다고 한다[9].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많은 한국 출신 연주가들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은 아니다. 이들은 한국의 많은 음악학도들의 경원의 대상이 되는 role model들이기도 하다[10].

19세기말부터 서양음악이 한국에 소개되면서부터 한국전통음악은 국악(國樂)이라 했고, 음악이라는 명칭은 서양고전음악을 대신하게 될 정도로 서양음악은 지식층과 음악인 사이에 압도적 존경을 받는 반면, 전통음악은 사회에서 경시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양음악 수입 후 전통음악과 대비하는 명칭의 출현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양악(洋樂)과 민악(民樂)으로 구분하고, 자기네 전통음악을 중국에서는 민유에(民樂), 홍콩에서는 화유에(華樂), 대만에서는 궈유에(國樂), 일본은 호가쿠(邦樂)라고 부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서양음악을 무직(musik)이라 부르고 가멜란(gamelan)식 전통음악은 크라비탄(krawitan)이라 부른다.

한국에서 전통음악에 대한 사회적 경시 풍조는 1970년대 중반까지도 현저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젊은 층 사이에 더 심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1970년대 중반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로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부유층 자녀들이 명망있는 서양음악 전공 선생들에게서 개인지도를 받으려는 노력은 1960년대 이후 해가 갈수록 심해졌고 경쟁적이었다. 특히 음악대학 교수들에게서 개인지도를 받을 수 있었던 학생들은 경쟁이 심한 대학 입학시험에서 유리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학 사정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영향력 개입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몇몇 음악대학교수들의 형사처벌까지 이르게 되었다.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과 서양음악 지도 선생들은 경쟁적으로 개인지도비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엄청난 수준에까지 올려 놓아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개입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학부모들의 과열경쟁과 빈부차이로 인한 기회 불균등의 사회적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1980년부터 예능계 대학교수들의 공식적인 학교수업 외에 교내외에서의 개인지도를 일절 금지했다. 이 법령은 서양음악 뿐만 아니라 한국전통음악에도 적용되고, 지금까지도 실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

령 선포 후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학도들의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한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현재도 미국과 유럽의 유수한 음악학교에 1,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유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유능한 선생 밑에서 자유롭게 음악공부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오히려 외화 낭비와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내는 역기능을 초래했다. 이러한 부작용이 대두되자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한국종합예술학교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음악원을 1993년 개원하고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한국 출신 혹은 외국인 음악가들을 교수로 초빙해서 재능있는 학생들의 교육을 한국내에서 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했는데 그 성과는 후일 평가할 기회가 있겠다.

서양고전음악에 비해 한국전통음악의 1960년대 이후 사회적 특성은 예술사회학적 연구에 한가지 중요한 예를 제공한다. 19세기 이후 대두하는 비서양 문화의 특징 중의 하나는 그들이 서양문화의 영향을 받으므로써 자신들의 전통문화의 현대화 혹은 서양화하는 문화이식(acculturation)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민족들이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전통음악이 특히 많은 영향을 입었다고 판단된다.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대부분 민족들이 전통음악은 멀리하거나 현대화 시키는 데, 혹은 서양음악을 답습하는 데 노력을 경주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식층과 젊은층, 즉 대학생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60년대까지 한국의 형편도 별 다를 게 없었다.

군사혁명이 일어난 1961년부터 30여년 동안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대학생들의 반정부 데모는 거의 매일 있었다. 이 기간 동안, 특히 60년대와 70년대에 반정부적, 반사회적 공연예술에 대한 정부의 검열은 엄격했다. 예술음악이나 대중 유행음악도 모두 검열 대상에 포함되었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전통문화의 보존, 육성정책에 따라 전통공연예술은 반사회적 내용을 내재하더라도 검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60년대에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전통공연예술을 기피하는 추세였다. 겨우 몇몇 대학생 단체들이 풍물패를 구성하여 그들 모임에서나 행사장에서 연주했고 가끔 탈춤공연을 주선하기도 했다.

풍물은 주로 장고, 북, 소고, 꽹가리, 징 등 타악기와 태평소로 연주되는 타악기 위주의 리듬음악이므로, 선율악기가 중심이 되는 다른 전통음악과는 달리, 초보자들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접할 수 있는 옥외 합주음악이다. 또 음악적으로는 여러 가지 발랄한 민속장단을 엮어 연주하고, 그 음량(volume)이 압도적이고 다이나믹해서 대중을 움직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음악이다. 1960년대 초에는 소규모 풍물패가 한 두 개 대학에 조직되어 있었으나, 이와 비슷한 합주단이 폭발적인 대중의 호응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였다. 이 무렵 사물놀이의 출현은 전통음악의 대중화에 획기적인 기여라 할 수 있다.

1978년 2월 서울에 위치한 소극장 공간사랑주최로 장고에 김덕수(1952~), 꽹가리에 김용배(1955~86), 북에 이광수(1952~), 징에 최종실(1953~)로 구성된 네 명의 민속음악 연주가들이 「사물놀이」란 명칭아래 공연을 가졌다[12]. 이들의 연주는 두

가지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첫째, 이들은 직업적 민속음악연주가들로서 한 장르 혹은 한 지역의 음악 만을 전문적으로 연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민속 혹은 무속 장단과 음악을 편곡해서 연주했는데 이것은 범한국적 민속음악의 시도였고 처음부터 청중의 흥미를 끄는 데 성공했다. 둘째, 기존 풍물류의 음악은 토속적이고 거치른 맛이 있는 옥외음악으로 인식되어 왔었고, 전통음악 연주단의 극장 공연에서는 공연 말미를 요란하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피날레용으로 쓰여 왔었는데, 사물놀이의 공연은 풍물류 타악기 음악을 섬세하고 세련된 리듬음악으로 구성해서 실내악화 했다는 것이다. 사물놀이의 인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확대되었고, 그들의 문하생 혹은 사물놀이를 모방한 연주단들이 수없이 조직되면서 고유명사였던 "사물놀이"는 한국 전통음악의 새로운 장르로 인정받으면서 보통 명사로 바뀌었다[13]. 1993년 김덕수패 사물놀이는 "사물놀이 한울림"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현재 사물놀이류의 레퍼토리는 한국 전통음악 공연에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확고한 인기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는 궁중음악이나 정악을 주로 연주하는 국립 국악원의 공연에서도 사물놀이는 항상 포함될 정도다.

사물놀이의 성공적인 대중화는 대학가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각 파트의 악기를 복수로 구성한 타악기 연주단을 만들고 레퍼토리의 대부분은 사물놀이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학교, 직장, 혹은 노동조합 단위별로 구성되어 그들의 모임이나 시위 때는 항상 선발대로 나서므로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시위, 농성현장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 버렸다.

학생, 노동단체들과 같이 비직업적 연주가들이 조직한 연주단과 그들의 음악은 사물놀이라 하지 않고 풍물 혹은 두레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전자는 직업 음악인이 상업성을 목적으로 둔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와는 거리를 두려는 의도와 풍물이 전통적으로 한 집단자체를 위한 연행 매개체라는 의미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대학가의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학생단체들에 의해 처음으로 초청된 전통공연예술은 탈춤이라고 생각한다. 탈춤은 음악, 무용과 함께 연기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로 풍물보다는 더 복잡한 면이 있다. 대부분 전통탈춤의 극적 구성이 반사회적이고 상류 지배층을 해학적으로 풍자하는 장면들이 많아서, 엄격한 검열제도하에서 노골적으로 반체제적 현대의 공연예술을 무대에 올려 놓을 수 없던 시대상황에서 정부의 통제 없이 효과적으로 이용됐었다. 연주 양식과 관련해서 언급했듯이, 한국전통공연예술은 그 기본 틀이 흐트러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행자들 개인의 즉흥적 변주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직업적 탈춤꾼들의 조직인 사당패들이 대학 써클에 초청되어 공연할 때는 반정부 운동에 고무된 관객들이 추구하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즉흥적 변주로 관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활을 했다. 물론, 탈춤은 전통공연예술이기 때문에 검열에서는 항상 제외되었었다[14].

1960년대에는 불과 몇 안되는 학생 단체들에 의해 추진되던 탈춤공연행사는 급속히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초기에는 직업적 사당패들을 초청해서 공연시켰으나 여

러 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탈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학생들은 그것을 예술로서, 혹은 놀이로서, 혹은 자신들의 의식 표현의 매개체로서 좋아하기 시작했다. 또 그들은 탈춤을 배우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신들이 직접 탈춤반을 조직해서 배운 후 직접 공연하면서 전통적 연행양식의 이점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이용했던 것이다. 아마도 이 계기가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한국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에 불을 붙이는 시초가 아닌가 판단된다. 전통공연예술을 경시하던 젊은 세대는 그들이 그 것을 직접 배우면서 전통예술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게 됐고, 그들의 흥미가 높아가면서 판소리, 시조, 민요같은 좀더 차원 높은 예술적 표현이 요구되는 장르에까지도 그들의 관심이 확대되어 1970년대 중반부터는 전통공연예술이 대중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문예부흥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는 미적 예술적 추구에서라기 보다 정치, 사회적인 동기가 시작이었고, 그것이 대학생세대에 의해서 확산됐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1960년대까지도 판소리는 당시 서양고전음악에 젖어있던 대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던 전통음악 중 하나가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그 이유는 판소리가 과거 천한 계급신분인 광대들이 불렀었다는 점, "비과학적 발성방법"인 거치른 쉰 소리로 불러야 한다는 점, 그 가사를 알아듣기 힘들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판소리를 좀 더 가까이서 들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소리꾼들은 환경적응에 상당히 민감한 예술인들이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부터는 전통음악 중에서 풍물 다음으로 빠른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보통 30분 내외의 한 대목만을 선택해 공연하던 것이 70년대 이후 판소리 인구가 증가하면서 판소리 명창들은 4시간 내지 8시간 걸리는 판소리 한마당을 완창하는 시도를 가끔했는데, 이 때마다 공연장은 청중으로 만원이었고, 그 중에서는 젊은 층의 청중도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괄목 할만한 사실은 1993년 개봉된 판소리를 소재로 한 임권택 감독의 극영화 「서편제」가 한국 영화사상 관객 동원에서 최고의 기록을 냈을 뿐만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의 판소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데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서양음악만을 맹목적으로 편애하던 지식층도 그 영화를 관람한 후에는 스스로 판소리를 배울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컸다. 물론, 「서편제」의 흥행 성공은 그 전부터 꾸준히 계속되어 온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전통음악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젊은 층의 관심은 해가 갈수록 높아갔고, 연령층도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추세는 1970년대부터 일어난 전통문화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사회 분위기로 더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음악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문예부흥의 열기가 오르면서 전통음악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은 60년대에 비교해서 훨씬 향상되었다. 한국 정부는 1962년 문화공보부 산하에 문화재관리국을 설치하고[15], 1964년부터 많은 전통음악 연주가들을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로 지정하고 그들과 그들이 추천한 전

수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16]. 1974년에는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여 전통공연예술의 조직적인 기록, 보존, 연구, 보급, 공연 등을 지원해 왔다.

1993년 한국정부는 "예술의 전당"이라는 대규모의 종합예술관을 완공하고, 조선왕조시대(1392~1910)의 궁중음악을 관장하던 장악원의 후신인 국립국악원도 그 곳으로 옮겼다.

서양이나 중국, 일본 음악사에서 공통적인 점은 공연예술의 대중화 과정에서 자본가계급 혹은 중산층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한국에서는 1960년대까지도 뚜렷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회집단으로서의 자본가계급이 부재했던 까닭으로 그들의 전통음악 대중화에 대한 기여는 미흡했다. 제 1세대 재벌급 중산층은 1961년 군사혁명이후 정부의 보호하에 본격적으로 키워지기 시작했고, 이들은 사업확장이나 안정을 다지는 데 노력을 경주하느라 예술 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자본가 2세 혹은 3세 중에서 공연예술을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 데, 그나마 서양고전음악 지원이 대부분이고, 전통음악의 경우는 매우 미미한 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자본가계급이나 중산층의 전통음악 대중화에 끼칠 공헌을 예측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17].

5. 맺는말

20세기초를 전후해 한국전통음악은 서양음악의 영향으로 현대화 혹은 서양화의 결과를 초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 통신망의 발달로 가속화 되었다. 서양음악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생한 사회적 현상은 서양음악에 대한 맹목적인 우월감과 전통음악의 비하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전통음악은 1960년대까지는 대중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부터 불붙기 시작한 학생운동 혹은 민중운동의 한 도구로서 전통음악을 이용하면서 민족주의적 사회분위기 형성과 더불어 중산층의 전통음악 접촉이 가까워졌고, 그 인구는 1970년대 이후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그러므로 한국 전통음악의 영속적인 대중화는 학생, 민중운동의 부산물이었다는 특수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한국전통음악이 갖고 있는 연주양식은 직업적이거나 비전문 연주가들의 다양한 의도를 수용할 수 있는 즉흥적 변화가 융통성있게 이어갈 수 있다는 점때문에 음악의 사회적 기능이 더 분명하게 부각되었다.

1970년대 이후 음악적 부흥기를 맞으면서 전통음악인들의 사회적 지위도 오랫동안의 천박했던 인식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니고 있던 예술도 한층 더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정부도 전례에 없던 예술 부흥의 중흥에 여러면에서 공헌한 것을 인정할 때 전통음악의 영속적 보존과 보급은 오늘까지도 범국가적 관심이 주어졌던 것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그들의 전통음악 문화가 점점 없어지고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의 이러한 문예부흥은 특기할 만한 사회적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글을 위해 자료수집에 도움을 준 김경희, 이지선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주〉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재일본 민단과 조총련의 음악문화에 관한 간단한 소개는 李秉元, "朝鮮民族の音樂傳統"「日本の音樂, アジアの音樂」, (東京 : 岩波書店, 1989), 別卷 I , pp. 235-247과 Byongwon Lee, "Contemporary Korean Musical Cultures."*Korea Briefing, 1993* (New York:Westview Press and Asia Society, 1993), pp. 121-138 참조.

2)더 상세한 내용은 Bell Yung, "China Ⅳ:Theory,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6th edition, edited by S. Sadie(London: Macmillan, 1980),vol. 4. pp. 260-262 참조.

3)Robert Garfias, *Music of the One Thousand Autumns: The Togaku Style of Japanese Court Music,*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onia Press, 1975), p. 15-16; 27.

4)「성금연가야금산조」, (서울:성음, 1984. Stereo/SEL-RS 145). 황병기 해설.

5)이것은 성금연이 1982년 Honolulu에서 필자와의 회견에서 언급한 것임.

6)시나위의 음악적 구조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Patrick W. I. Kim, *Sinawi, An Improvisational Style of Korean Folk Music: An Analytical Study,* (University of Hawaii 석사학위 논문, 1980) 참조.

7)한가지 구체적인 예로서, 성금연 가야금 산조의 연주시간에 의한 여러가지 음악적 편집 방법의 연구는 Catherine Gjerdingen, *Selection and Substitution of Musical Material in the Kayagum Sanjo of Song Kum-yon,*(University of Hawaii 석사학위논문, 1980)참조.

8)이 통계는 1992년 대한민국 교육부「문교통계연보」에 의거한 것임.

9)「중앙일보」, 1994. 6. 15.

10)한 예로 "Chung, Kyung-Wha,"*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 4, p. 383 참조.

11)韓國藝術綜合學校산하에 1993년에 音樂院, 1994년에 演劇院이 개원 되었고, 순차적으로 舞踊院, 映像院, 傳統藝術院이 세워질 계획이다.

12)1992년 12월 20일 KBS-TV에서 방영된 "우리의 美: 사물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민속학자 심우성은 김덕수 일행이 그들의 첫공연 전 인사차 그를 방문했을 때 사물놀이란 명칭을 자신이 지어 주었다고 말했다.

13)1993년 8월 Honolulu에서 필자와의 회견에서 김덕수는 "사물놀이"는 원래 자기 연주단의 고유명사였지만 그들 음악의 국제적인 보급을 고려해서 상호등록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14)예를 들면, 臺詞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적절히 바꾸든가 풍자적인 면을 좀더 극적으로 강조하여 당시의 사회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다.

15)대한민국 문화공보부는 1990년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되었고, 韓國文化財管理局은 文化藝術振興院과 함께 문화부 산하 기관이 되었다.

16)1990년 당시 한국문화재관리국 문서인「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현황」에 의하면 60가지 공연예술 분야에 모두 221명의 보유자가 지정되어 있었다.

17)1980년 이후 기업의 예술활동 지원 상태에 관해서는 "기업과 예술지원, "「음악동아」, 1994년 1월호, pp. 55-61에 실린 김현미, 탁계석보고 참조.

리조전기과학기술사의 특징에 대하여

임 정 혁

1. 앞말

리조시대는 1392년의 건국으로부터 일본의 식민지로 되는 1910년까지의 약 500년간이며 우리 나라 력사에서도 오랜 기간을 차지한다. 시대사적구분은 중세말기로부터 근대이전에 해당되며 봉건사회제도밑에서 중앙집권적관료체제가 확립, 강화되고 그것이 붕괴되여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리조시대의 과학기술적전개를 밝히는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오랜 기간을 차지한다는 리유만이 아니라 그 사회력사적배경과의 관련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로 된다.

우리 나라 과학기술사에 대한 연구는 1944년에 출판된《조선과학사》[1]로부터 시작되며 현재까지 적지 않는 수의 전문적 혹은 입문적 서적이 출판되고[2-5] 각 분야마다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6-8]. 그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현시점에서는 과학기술사를 우리 나라의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과학기술자체의 발전법칙의 견지에서 검토하고 세계과학사에서 우리 나라 과학기술사의 위치를 밝히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여있다. 이 론문에서는 임진·정유 왜란까지 즉 15, 16세기를 리조전기로 규정하고 과학기술적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그 특징을 고찰하려고 한다.

2. 15세기전반

1392년의 리성계에 의한 건국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3대왕인 태종시대에는 정권도 안정되고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천문도《천상렬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図)》의 완성이나 1402년의 동활자(계미자)의 주조 등의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15세기 전반의 과학기술발전에서 특기해야 할 내용은 4대왕인 세종시대의 업적이다. 세종시대에는 천문기상학, 의학, 지리학 및 언어학의 과학분야 그리고 금속활자의 주조와 인쇄술, 제지, 화약과 무기의 제조, 정밀한 관측기계와 자동기계의 창안제작 등의 기술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세종은 과학기술관청《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여 우수한 인재를 모으고 국가적사업으로서 갖가지의 과학기술적정책을 추진시켰다.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의 특징은 첫째로 모든 분야에서 이전에 축적된 과학지식과 기술적경험을 검토, 정리하고 일정한 체계에로 리론화하는 노력이 기울여진것이며 그것들이 조선적인것으로 개선, 발전된것이다.

구체적인 례로서 우선 천문학에서 력서《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編)》의 편찬

을 들수 있다. 농업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천문력서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는바 이전까지 쓰던 중국의 력서는 위도의 차이 등에 인하여 실정에 맞지 않는 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세종은 정초(鄭招), 정린지(鄭麟趾), 정흠지(鄭欽之), 리순지(李純之), 김담(金淡) 등 집현전의 학자들에게 당나라의 《선명력(宣明歷)》, 원나라의 《수시력(授時曆)》등의 교정을 지시하고 또한 리천(李蕆), 장영실(蔣英實)을 비롯한 기술자들에게는 금속제의 대소의 간의(簡儀), 혼천의(渾天儀)등의 천문관측기계의 제작을 지시하였다. 그 기계들에 의한 서울의 위도를 비롯한 관측결과와 문헌들의 교정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력서가《칠정산 · 내편》이며 그 리론적기초를 확고한것으로 하기 위하여 이스람의《회회력(回回曆)》의 천문리론을 보충하여 전개된 천문서가《칠정산 · 외편》이다. 따라서《칠정산》은 당시의 최고수준의 천문학서라고 할수 있는데 1643년에 통신사의 제술관(製述官)으로 일본에 간 라산(螺山) · 박안기(朴安期)가《정형력(貞亨曆)》의 작성자인 시부까와 하루미(渋川春海)에게 전하던 내용도 바로 이《칠정산》이였다고 한다[9,10].

의학분야에서는 향약(鄕藥)에 관한 조사, 검토가 깊여지고 우리 나라의 고유한 의학의 확립을 지향한《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의 편찬간행과 그때까지의 동양의학을 종합, 정리한《의방류취(医方類聚)》의 편찬이 있었다. 향약이란 우리 나라에서 나는 생약인데 이전에는 중국의 약재도 많이 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입수는 쉽지 않으며 속에는 중국과 우리 나라에서 이름이 같으면서도 다른 종류이거나 또한 같은것이라도 산지의 차이에 의해 효력이 다를수가 있었다. 그래서 세종은 그 약재들을 검토시키면서 1424년부터 시작한《세종실록지리지》의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약재를 수집하였다. 결과《세종실록지리지》에는 식물성생약 243종, 동물성생약 46종, 광물성생약 14종의 분포가 수록되여있다. 1433년에는 로중례(盧重禮), 유효통(兪孝通)들에 의하여《향약집성방》이 편찬되는데 거기서는 10706종의 병증과 1479조의 침구법과 함께 693종의 우리 나라의 약재와 그 처방이 기술되여있다.《향약집성방》은 그때까지의 우리 나라의 의학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내용을 보다 풍부화한것으로서 후날《동의학(東医学)》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나라 고유의학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책이다. 그리고 1445년에는 역시 로중례가 중심으로 되여 우리 나라와 중국의 의학서 153종을 종합, 정리한《의방류취》가 편찬되였다. 이 책은 백과전서적의학서로서 이러한 성격의 의학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것이다. (편찬은 세종시대에 일단 끝났으나 그후에도 신중히 교정되여 실제로 출판된것은 1477년이다.)

농학분야서도 1429년에 우리 나라의 농업기술을 조사하여 정리한《농사직설 (農事直說)》이 간행되여있다. 그전에는 중국의 농서인《농상집요(農桑輯要)》,《사시찬요(四時纂要)》 등을 쓰고있었는데 우리 나라의 풍토적조건과 경종에서 맞지 않는것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영농방법과 기술을 체계화하고 일반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전국의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한 지방(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의 농법을 뒤떨어진 지방에 알릴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편찬된

책이《농사직설》이며 우리 나라 고유농법의 확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이후의 농업 서적의 기본문헌으로 되였다.

언어학분야에서는 정린지, 성삼문(成三問), 신숙주(申叔舟)들에 의한 우리 나라의 고유문자《훈민정음》의 창제가 있다. 그때까지 우리 나라에서는《리두(吏讀)》즉 한자의 의미와 음을 리용하여 문장을 쓰고있었는데 그것으로는 우리 말의 소리를 정확히 표기못한다는것과 수많은 한자를 알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창제된 문자가《훈민정음》이다.《훈민정음》은 표음문자인 동시에 모음과 자음으로 된 자모(字母)문자로 창안되였을 뿐만아니라 문자의 모양도 사람의 발음기관의 움직임과 위치를 본따서 간결하게 만들어진 가장 합리적인 문자이다. 이전까지의 지식의 정리와 체계화 그리고 조선적인것으로의 발전이라고 할 때《훈민정음》의 창제이야말로 그 전형적인 례라고 할수 있다.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의 특징은 둘째로 우량계《측우기》의 발명리용이나 인쇄기술의 발전 등 과학적지식의 축적과 분석에 필요한 기술이 발전한것이다. 측우기는 1444년에 장영실이 고안한 금속제의 원통인데 거기에 고인 비물의 량에 의해 강우량을 측정하는것으로서 오늘의 우량계와 거의 같은것이다. 또한 장영실은 강물의 량을 측정하는《수표(水標)》도 고안하였으며 리조정부는 그것들에 의한 전국에서의 관측과 보고를 제도화하여 그 기록을 축적해나갔다. 그 기록은《풍운기(風雲記)》라는 책에 수록이 되였는데 오늘까지 1740~1862년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는 과학으로서의 기상학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으며[11,12] 이러한 자연현상의 량적, 실험과학적 측정과 그 측정결과의 농업생산에서의 활용 즉 축적된 과학지식의 경제활동에로의 목적의식적인 적용은 이 시대의 과학기술의 질적발전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식의 수량화에 따라 그 기술의 높은 정교성이 요구되고 그것이 보장된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례컨데 금속제의 천문관측기계의 제작은 오래 쓸수 있다는 실용성만이 아니라 관측정도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또한 자동물시계《자격루(自擊漏)》는 본래 아라비아의 물시계가 원형으로 되여있으나 그 정밀성에 있어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다음으로 인쇄술을 보면 금속활자가 고려시대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세종시대에는 리천, 장영실, 남급(南汲)들이 보다 훌륭한 활자를 대량적으로 주조하였을뿐만아니라 제판기술이 확립됨으로써 하나의 판으로부터의 대량인쇄가 가능하게 되여 금속활자의 리점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제지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이 시기의 막대한 량의 서적의 출판은 이러한 인쇄기술에 의해 보장된것이며 그것은 리조의 출판문화의 기초로 되였다.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의 특징은 셋째로 그것들이 왕의 주도밑에 강력한 관료기구에 의해 발전되였다는것이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세종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모으고 그들을 집현전이라는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관료기관의 성원으로 등용하고 그 조직력에 의해 자신의 과학기술적정책을 실천에 옮겼다. 거기서는 국가적목적으로부터 대규모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막대한 량의 과학기술적지식이 축적되였다. 다만 그 국가적목

적이란 항상 실용적인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왕의 위신을 높인다는 정치적의도도 있었다. 례컨데 정확한 천문력서의 배포는《하느님》이라는 절대적인 지배자를 대신하여 왕이 정치를 한다는것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것이였으며 또한 의학을 발전시키는것도 민중에게《인정》을 베푼다는 위정자의 의도가 있었던것이다.

세종시대의 과학기술발전의 주된 요인의 하나가 그 관료제도와의 관련에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 즉 중세과학기술의 내용과 성격이 그 발전에 있어서는 관료제도가 효과적이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점을 과학의 활동면에서 확인하기로 한다. 과학을 활동면에서 보면 그것은 관찰, 조사, 실험 등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정리, 분석, 종합하여 개념이나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에서 검증하고 물질적세계의 본질적련관(법칙)을 밝히고 그 기본법칙에 의거하여 관련되는 제현상을 설명하는 리론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 과정의 초기적단계 즉 관찰, 조사, 실험 그리고 정리, 분석, 종합이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의 기본내용이였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활동이 중세과학기술의 기본과제로 제기되고 그 작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사회제도가 세종시대와 같은 중앙집권적관료제도였다는것이다. 반대로 그 기본과제와 봉건사회제도에 의거한 수행방식으로 하여 세종시기의 과학기술은 중세적인 성격을 띤다고 말할수 있다. 그에 이어서 진행되는 개념,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법칙을 밝힌다는 방법과 활동은 바로 근대과학에서 주된 과제로 제기된것이며 그것을 안받침한것이 당시 서양사회의 력사적배경과 사상 및 사회제도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한편 왕과 그 관료기구에 의한 과학기술은 몇가지 문제를 낳게 한다. 그것은 그때의 권력자에 의해 그 발전이 좌우된다는것이며 그 관료기구가 봉건적신분관계에 의해 성립되여있는 한 그 목적은 국가권력의 강화에 있고 과학기술이 지배층의 독점물로 되여 일반대중속에서 과학자, 기술자는 나오기 어렵다는것이다.

중세는 세계사적으로는 보통 5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장기간이며 동시에 사료의 부족으로 하여 그 기간의 과학기술적성격을 전반적으로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하나의 방법은 매 시기마다의 대표적인 업적에 대해서 고찰하고 종합하는것인데 세종시대로 말하면 그 내용과 사회제도와의 관련에 있어서 중세말기의 상징적인 특징을 가지고있었다.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은 근대과학으로 이행하는 마지막 단계의 양상을 보이고있었으며 그 문제점도 다음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가 되였다. 다만 이 론문에서 지적한 문제점은《제도로서의 과학》의 측면에서 본 문제로서 근대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속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과학》은 력사적으로 많이 변화되여왔으며 다른 사회적활동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음으로 그것을 내재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과학의 사회적기능》의 저자로 잘 알려진 J. D. 버날은《력사속의 과학》[13]에서《과학》의 정의는 외연적인 전개의 기술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과학은 하나의 제도로서, 방법으로서, 루적적으로 계승되는 지식으로서, 생산의 유지와 발전의 주요한 요인으로서, 우주와 인간에 대한 신조와 태도를 형성시키는 강한

영향력으로 볼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버날은 과학은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마련하는 제도이며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과학자들은 후원자(여기서 말하는 후원자는 개인이 아니라 주로는 국가나 어떤 사회적집단을 의미한다)와 동료, 일반대중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을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제도로서의 과학》은 사회적사실이며 사회에서의 어떤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일정한 유기적관계에 의해 맺어진 사람들의 조직이라고 하였다.《제도로서의 과학》은 당시의 사회제도와 신분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그 변화발전은 과학사의 주요내용으로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근대과학이 발전안되였다는 사실은 그 과제들을 해결못했다는것인데 그것은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근대과학의 수용과 이행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였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 문제의 비교, 검토는 리조후기의 과학기술의 특징을 고찰하는데서 중요한 과제로 될것이다.

3. 15세기후반

15세기후반은 기본적으로는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을 이어받았으나 왕위계승의 혼란과 권력투쟁에 의해 이전과 같은 화려한 전개는 없었다. 세종의 첫째아들이며 5대왕으로 된 문종은 2년후에 별세하고 뒤를 이어서 왕으로 된 어린 단종은 세종의 둘째아들인 세조에 의해 3년으로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성삼문을 비롯한 집현전의 학자들이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여 그들은 처형되였다.

이 사건에 의해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을 이끌던 집현전은 폐지되고 그 영향인지 세조시대에는 국가적규모의 과학기술적업적은 많지 않다. 이 시기의 과학기술적업적으로서는 세종시대에 이미 기초를 닦아놓은 금속활자의 주조와 이전부터 진행되여오던《고려사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의 완성과 1463년의 량성지들에 의한《동국지도》의 작성 등을 올릴수 있다.

세조 다음에 왕으로 된 예종은 1년으로 별세하였는데 9대왕인 성종시대는 비교적 오랜 기간이였다. 성종은 세종시대와 마찬가지로 유교를 장려하고 각종 문화사업을 촉진시켰으며 특히 1478년에는 폐지되였던 집현전을 대신하는 관청으로서《홍문관(弘文館)》을 새로 조직하였다[14]. 홍문관이란 이름을 가진 관청은 고려시대와 세조시대에도 있었으나 성종시대의 홍문관은 내용적으로 세종시대의 집현전을 계승하는 기구였다. 이 홍문관은 1504년에 폐지되였으나 1506년에 다시 복구되였다. 다만 그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시기마다 차이가 있다.

성종시대에는 과학기술적으로도 국가적인 사업이 추진되였으며 그 례로서 1477년의《의방류취》의 출판, 1484년의 금속활자(갑진자) 30만개의 주조 그리고 1481년의《동국여지승람(東国輿地勝覧)》의 편찬 등을 올릴수 있다.《동국여지승람》은 세종시대에 편찬된《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의 내용을 보다 풍부화한것인데 우리 나

라의 지명, 력사, 지리의 사전이라고 할수 있다. 그 다음의 10대왕인 연산군은 홍문관을 폐지하는 등 폭군으로 알려져있으며 현재까지 전해지는 과학기술적업적은 거의 없다. 앞에서 리조시대의 과학기술적전개는 그 때의 권력자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적하였는데 15세기후반은 바로 그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라고 할수 있다.

4. 16세기

15세기말기로부터 시작된《훈구파(勳旧派)》라고 불리운 리조건국 당시나 왕의 교대기의 공신 및 그 자손들과《사림파(士林派)》라고 불리운 지방의 중소지주계급, 사호(士豪)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료들의 정권쟁탈싸움은 일단 사림파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사림파끼리의 싸움이 벌어지고 처음에는《동인(東人)》,《서인(西人)》파로 갈라지다가 그 이후 분렬되면서 당쟁을 일삼았다.

이러한 권력투쟁은 지식인들에게 여러가지 영향을 주었다. 우선 관료체제가 약화되면서 봉건관료로서의 학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여 적극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이 어렵게 되였다. 인재의 등용에서도 본인들이 신중하게 되는것과 동시에 권력투쟁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은 재야에서 학문을 추구하는 의사를 갖게 된다. 또한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량반계층에서 영구몰락층이 불어나고 그들은 학문으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리조시대전반을 통한 지식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의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한 지식인들을 바로《선비》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리조후기의《실학(実学)》형성에서 큰 역할을 논다. 그리고 관료체제속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이 낮아지면서 의학, 산학, 역관 등 주어진 실무사업만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높아진다. 그들은《중인(中人)》이라고 불리우는 량반과 일반민중사이의 중간에 위치하는 독자적인 계층을 형성하였는데 그들의 활동은 리조시대의 과학기술전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되며 그것은 후기에 갈수록 더 강화되여간다. 이것도 리조과학기술사의 중요한 특징으로 될것이다.

16세기의 과학기술은 15세기후반과 마찬가지로 역시 세종시대에 이루어진 흐름의 계속이라고 할수 있는데 특히 천문학분야에서 일정한 전진이 있었다. 관측기구의 제작에서는 1525년에 리순(李純)이《목륜(目輪)》을 제작하였으며 1526년에는 간의, 혼상 등을 새로 제작하였다. 또한 1534~36년에는 보루각을 개축하고 물시계와 각종 관측기구를 설치하였으며 1549년에는《선기옥형》[15]을 제작하였다. 관측사업도 꾸준하게 진행되여 특히 1519년에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극광을 관측하고있으며 1571년에는《관상감(観象監)》에서 새로 120부의 천문도를 작성하였다.

기타 중요한 과학기술적업적으로서는 1527년의 최세진(崔世珍)에 의한 어학서《훈몽자회(訓蒙字会)》의 편찬, 1530년 리행(李荇)들에 의한《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 1566년경의 리장손(李長孫)에 의한《비격진천뢰(飛撃震天雷)》의 개발 등이 있다.《훈

몽자회》는《한학(漢学)》의 학습서인데 훈민정음의 창제이래 우리 말에 관하여 가장 상세하게 씌여진 책으로서 오늘도 우리 말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되고있다. 현재의 우리 글자의 배렬순서는 이 책에 따르고있다.

이 시기의 학술분야에서 특히 강조해야 할것은 주자학연구에서 전환을 맞이하고있었다는 사실이다[16]. 리조는 건국이래 유교를 장려하였는데 16세기의 서경덕(徐敬德), 리황(李滉), 기대승(奇大升), 리이(李珥)들에 의해 그 연구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가장 특징적인《사단칠정리기(四端七情理気)》론쟁은 물질개념으로서의《기》의 인식을 깊이는것과 함께 개념전반에 관한 정밀화와 개념의 리해에 대한 예민한 비판적감각을 키웠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 론쟁은 실천과 유리한 추상적인것으로 되고 조선주자학을 스콜라화시키고 동시에 당쟁에 리용되여 때로는 피를 흘리는 참극까지 벌어졌다. 리조후기의 과학기술사의 주요업적인 실학의 형성은 그 스콜라화한 주자학의 극복과 현실문제추구의 지향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된것이였다[17].

5. 임진·정유 왜란시기

16세기후반의 리조는 권력투쟁과 기타 몇가지 요인으로 국내의 정치는 혼란되여 나라의 힘도 약해지는데 임진왜란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일어났다. 이 비상사태속에서 무기제조기술과 배무이기술이 발전하였는데 특히 리순신장군이 건조한《거북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형식의 싸움배로 잘 알려지고있다. 또한 일종의 시한폭탄이라고 할수 있는《비격진천뢰(飛撃震天雷)》는 이 싸움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기타 상세하게는 알지 못하고있으나 비행선의 원시적형태라고 추측되여있는《비차(飛車)》가 사용되였다고 한다. 이 싸움을 통하여 화승총의 제조기술이 조선측으로 전해지고 그것이《조총(鳥銃)》이라고 불리우면서 리조말기까지 씌여졌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허준(許俊)이 우리 나라의 삼대의서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동의보감(東医宝鑑)》의 집필작업을 시작하였다. 14대왕 선조의 지의(侍医)로 있던 그는 피난하는 왕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민중들의 참상을 보고 우수한 의학서의 필요성을 통감했다고 한다. 그래서 1596년부터 몇명의 학자들과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1598년의 정유왜란에 의해 학자들은 흩어지고 그 이후는 혼자서 작업하여 드디어 1610년에 완성하였다.

이 싸움에 의해 그전까지 이룩해놓은 리조과학기술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그 복구사업이 우선적과제로 되여 그 다음 단계에로 넘어가지 못한것은 우리 나라 력사의 전반발전에 큰 지장을 주었다.

6. 맺음

이 론문에서는 15, 16세기를 리조전기로 하여 매 시기마다의 과학기술적업적을 보

면서 그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리조전기과학기술사의 기본성격은 중세적이다는 데에 있다. 특히 15세기전반의 세종시대는 리조문화의 황금시대로 알려지고있는바 그 중심에 있은것이 바로 과학기술이며 그것은 중세세계의 최고수준에 도달하고있었다. 따라서 세종시대는 세계중세과학기술사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이 론문에서 밝힌 특징과 문제점은 중세과학기술사를 파악하는데서 중요사항으로 된다.

중세는 세계사적으로는 보통 15세기까지인데 과학기술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16세기의 리조도 중세에 포함된다. 리조시대의 과학기술사를 전기, 후기로 구분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16세기의 리조는 국내외사정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억제되였으나 후기의 전개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 나타나던 시기였다. 그 요소들이 어떻게 현실화되고 전개되여가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한 리조후기의 과학기술사의 특징에 대한 고찰은 다음 과제로 하려고 한다.

〈참고문헌〉

여기서는 주로 일본에서 출판된 문헌을 올렸다.

1) 洪以変『朝鮮科学史』(三省堂, 1944).
2) 全相運『韓国科学技術史』(高麗書林, 1978).
3) 任正爀編著『朝鮮の科学と技術』(明石書店, 1993).
4) 孫済河『科学百話－文化遺産に見る朝鮮の智恵』(二月社, 1983).
5) 孫済河『古代ハイテク百話－朝鮮と日本の間』(啓明書房, 1991).
6) 송상용 "한국과학사연구략사" 《한국과학사학회지》제3권 (1981) p.133.
7) 任正爀"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における科学史研究"『科学史研究』185号(1991)p.48.
8) 任正爀"日本における朝鮮科学史研究"『科学史研究』174号(1990)p.121.
9) 中山茂『日本の天文学』(岩波書店, 1972)p.48.
10) 中山茂, 石山編『科学史研究入門』(東京大学出版会, 1987)p.108.
11)田村専之助"李朝気象学成立の客観的条件"『科学史研究』48号(1958)p.7.
12) 全相運"李朝時代における降雨量測定法について"『科学史研究』66号(1963)p.49.
13) J.D.バナール, 鎮目恭夫訳『歴史における科学』(みずず書房, 1967)pp.5-9.
14) 리진"홍문관에 대한 력사적고찰(2)"《력사과학》149호(1994) p.37.
15) 全相運輸"璇璣玉衡(天文時計)について"『科学史研究』62号(1962)p.137.
16) 金哲央『人物・朝鮮政治思想史』(雄山閣, 1984)pp.24-38.
17) 任正爀"学としての朝鮮実学の形成について"『実学史研究Ⅷ』(思想閣, 1992)p.3.

특 집

제2차 통일을 지향하는 철학

중국 · 북경 1994. 2.20~23

주체적민족관과 조국통일의 당면문제

박 승 덕

머리말

저는 먼저 북부조국에서 온《민족문제연구회》대표단의 이름으로 남부조국에서 오신 학자여러분을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가지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민족문제연구회》의 학자들과 남부조국의 철학자, 신학자들의 두번째모임을 마련하기 위하여 로고를 아끼지 않은 국제고려학회와 그 본부사무국 차장인 김성수선생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들은 북남관계에서 긴장과 대결이 고조되고 우리 나라 주변의 정치군사정세가 엄혹하게 변화하고있는 준엄한 시기에 한자리에 모여앉았습니다.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엄중한 국면에 접어들고있으며 화해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민족의 발걸음은 심각한 도전에 부딛치고있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조국통일에 대한 북남학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더욱 높이고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할것을 요청하고있으며 민족의 통일위업을 주동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우리학자들의 공동활동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번 모임이 우리 민족의 통일과 장래에 대한 북남학자들의 견해를 접근시키고 민족의 단결과 단합을 위한 공통한 기초를 확인하는 훌륭한 기회로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않습니다.

저는 북과 남의 철학자, 신학자들이 모인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주체적민족관과 조국통일의 당면문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1. 주체사상의 민족관

옳바른 민족관을 확립하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입니다. 민족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자기를 긍정하고 자신의 운명을 제손에 틀어쥘수 있으며 자기힘으로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새로운 민족관을 밝혀주고있습니다.

이 민족관은 선행한 사회주의사상인 맑스-레닌주의의 민족리론이 가지고있던 력사적제한성과 리론적미숙성을 극복하였습니다.

주체적민족관은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로선과 정책의 기초로 되고있으며 겨레의 단결과 단합을 지향하는 이북인민들의 사고와 행동의 지침으로 되고있습니다.

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북의 모든 방안과 조치들을 리해하고 평가하는데서는 주체적 민족관에 대한 파악이 기본열쇠로 됩니다.

지금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북남학자들사이에 각이한 시각과 대립되는 판단평가들이 있는것은 상대방의 민족관에 대한 편견과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습니다. 이남의 일부 학자들은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와 동일시하거나 그 다원론적변종으로 보는데로부터 두 사상의 민족관을 구별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에 대한 계급의 우위성을 내세운 맑스-레닌주의의 자를 가지고 주체적 민족관과 그에 기초한 북의 조국통일정책을 재단하고 거기에 계급주의라는 평가를 내리고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오해입니다.

주체사상은 세계관적기초와 리론적내용, 론리적구조에서 맑스-레닌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지도사상입니다. 따라서 두 사상의 민족관도 서로 다릅니다.

주체적민족관에는 민족을 우선시하는 립장이 관통되여있고 자주성이 민족의 생명이라는 진리가 과학적으로 천명되여있으며 사회적집단가운데서 민족이 차지하는 특출한 지위와 력사창조활동에서 민족이 노는 커다란 역할이 창조적으로 해명되여있습니다.

1. 민족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집단적생명체

지난시기 민족리론분야에서는 민족을 하나의 사회적집단으로 결합시키는 공통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탐구하여왔습니다.

민족은 력사적으로 존재하여온 사회적집단들과의 관계에서보면 씨족(부족)이나 종족과 구별되며 병존하는 집단들과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계급이나 인류와는 다릅니다. 생물학적집단인 인종과 민족이 구별된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을 다른 사회적집단과 구별하는 공통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옳게 밝히는것은 민족리론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맑스주의유물론자들은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첫째가는 징표로 하여 민족을 리해하였으며 관념론적경향의 연구자들은 심리적공통성을 기본으로 민족을 해석하였습니다. 전자의 경향은 레닌과 쓰딸린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후자의 경향은 바우에르에게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맑스주의민족리론은 경제생활의 공통성에 기초를 두는데로부터 민족의 발생을 자본주의시장의 형성과 결부시키면서 민족의 시점도 자본주의사회의 출현과 일치시켜보았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맑스주의학계에서는 심지어 민족의 심리적공통성마저 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견해와 주장은 력사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정확한것입니다.

관념론적경향의 민족리론연구자들은 심리적공통성을 절대화하면서 민족의 정신심리적특성에 대한 사회경제적요인의 영향을 무시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부정확한 립장입니다.

민족리론력역에서 맑스주의유물론자들과 관념론자들은 서로 대립하여 투쟁하였습니다. 전자는 후자를 심리학주의라고 비난하였으며 후자는 전자를 물질주의라고 매도하였습니다. 민족집단의 기초적인 공통성, 기본징표가 무엇인가를 놓고 맑스주의자들과 관념론적경향의 연구자들이 벌린 론쟁은 결국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문제를 둘러싼 유물론과 관념론의 력사적인 투쟁의 표현이었습니다.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에 출발점을 두고 민족을 연구하는 것은 민족의 물질경제생활과 정신문화생활가운데서 어느것이 1차적인것인가 하는것을 밝히는데는 일정한 의의가 있지만 민족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심화된 리해를 확립하는데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경제생활을 포함한 민족의 생활은 어디까지나 민족집단에 체현된 본질적속성의 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적실체의 구조와 속성을 알아야 그 운동에 대한 인식을 가질수 있는것처럼 민족집단의 본질적속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야 그 생활과 활동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집단의 본질적속성을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의 기본징표를 해명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민족연구에 림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주체사상은 민족리론분야에서 벌어진 선행한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을 비판적으로 총화하고 새로운 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우에서 민족에 대한 리해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초가 사회적인간의 생명에 관한 주체사상의 리론입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는 **김정일**비서님께서는 사회적인간의 생명에 관한 창조적리론을 내놓고 그것을 정연하게 체계화하시였습니다.

인간은 한편으로 육체적생명과 사회적생명을 가지고있으며 다른편으로 개인의 생명과 사회적집단의 생명을 지니고있습니다.

육체적생명과 사회적생명에 대한 리론은 인간생명에서 자연적인것과 사회적인것의 관계문제에 해답을 주며 개인의 생명과 집단의 생명에 대한 리론은 사람의 생명에서 개인적인것과 집단적인것의 관계문제에 대답을 줍니다. 생명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가운데서도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적생명이 더 귀중하며 개인적생명보다 집단적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산 존재입니다. 사회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내세우고 그것을 사회적인 생활력으로 실현해나가는것이 사회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생물학적생존의 필요를 제기하고 그것을 생물학적인 생활력으로 실현해나가는것이 자연적생명이라면 사회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내세우고 그것을 사회적인 생활력으로 실현해나가는것이 사회적생명입니다. 사회적인간은 사회적생명을 가진 존재, 간단히 말하여 사회적생명체입니다.

지난시기 관념론에서는《생의 철학》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간의 생명에 커다란 주의를 돌렸으나 생명을 비물질적인것으로 신비화하거나(베르그송) 육체적생명으로 리해하는데(쇼펜하우에르) 머물렀습니다. 생명을《단백체의 존재방식》(엥겔스)이라고 정

의하면서 생명에 대한 신비화를 반대해나선 맑스주의유물론도 생명을 생물학적생명으로 인식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철학사상 처음으로 사회적생명에 대한 리론을 내세운 주체사상은 육체적생명이 사회적생명의 자연적, 생물학적 지반으로 되며 사회적생명자체는 사회생활, 사회적실천의 요구이고 반영이라는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생명을 대표하는것은 자주성이라는데 대하여 창조적으로 해명하고있습니다.

자주성은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자유롭게 살려는 사람의 성질 다시말하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본질적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생존환경에 대한 동물의 종속성, 예속성에 대립합니다. 사회적인간은 집단에 결합되여 사는 집단적존재인것만큼 자주성은 사회적집단의 본질적속성, 집단적생명으로 존재합니다. 현실적인 사회와 구체적인 력사과정에서는 자주성이 사회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본질적속성으로 됩니다. 개인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집단의 요구에 자기의 요구를 일치시키고 집단과 조직적으로 결합될 때에 자주성을 지니게 되는것입니다.

사회적생명과 육체적생명, 집단적생명과 개인적생명, 사회적인간의 본질적속성으로서의 자주성에 관한 리론으로부터 민족을 사회정치적생명체로, 집단적생명체로 보며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규정하는 주체의 민족관이 흘러나옵니다.

사회적인간은 개인, 계급, 인민대중, 민족, 인류와 같은 여러가지 수준과 형태로 존재합니다. 민족은 계급이나 인민대중, 인류와는 구별되는 사회적집단인것만큼 그에 고유한 특성에 맞게 사회적생명과 집단적생명, 자주성을 체현하게 됩니다.

민족은 하나의 독자적인 사회적생명체입니다.

민족은 한편으로는 계급과 인민대중, 인류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회적생명체입니다.

민족이 그 구성부분인 계급이나 인민대중에 해소되지 않고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것은 명백합니다. 민족적차이가 없어지고 인류가 하나의 대가정으로 되기전까지는 민족이 의연히 인류에 대하여 독자적인 사회적생명체로 됩니다.

민족은 다른편으로는 다른 민족에 대하여 독자적인 사회적생명체로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바로 그러하기때문에 수많은 민족이 존재하고 민족들사이의 관계문제도 나서는것입니다.

민족의 사회적생명은 자주성입니다. 민족적자주성은 다른 민족에 대하여 독자적인 집단으로 살며 발전해나가려는 성질입니다.

민족의 자주성은 크게 두가지 내용을 가집니다.

그 하나는 다른 민족에 예속되거나 동화되는것을 반대하며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행사하는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민족의 힘에 의존하는것을 반대하며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것입니다.

민족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독자적인 생활의 공동체로 륭성번영하기 위해서는 민족적공통성을 유지보존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사회적생명에 상응하는 이러한 공통성이 언어와 심리의 공통성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언어의 공통성은 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민족어와 민족심리는 오랜 력사적과정을 거쳐 형성발전된것이기때문에 매우 공고하고 지속적으로 생활력을 나타냅니다.

우수하고 아름다운 우리 조선어는 민족이 분렬된속에서도 이질화되지 않고 동질성을 계속 유지하고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회제도아래서는 공통한 민족어가 이질화된다고 보는것은 언어의 민족적특성이 지니고있는 공고성과 생활력을 보지 않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기에 작년 8월 이 자리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학》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진행하였던 북남언어학자들은 앞으로 우리 민족어의 이질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합의하였던것입니다.

민족어와 마찬가지로 민족심리도 공고한 특성을 가지고 사회력사적으로 전승되며 발전됩니다. 지난시기 맑스주의학계의 철학자들과 력사학자들이 그랬던것처럼 계급심리의 공통성만 인정하고 민족심리의 공통성을 부정하는것은 잘못입니다.

민족의 사회적생명은 육체적생명을 생물학적기초로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생명에 상응하는 민족의 공통성이 피줄의 공통성입니다.

피줄을 같이하고 선조를 같이하는것은 민족의 자연적기초입니다. 원래 민족은 혈연적공통성에 뿌리를 두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민족의 기원을 밝힐 때에는 피줄을 따라 민족의 전신인 종족이나 씨족에까지 캐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있어도 북과 남의 겨레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서로 생각하며 해외교포들도 언제나 조국의 운명에 대하여 걱정하는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들모두가 피줄을 같이하는 동포라는 생각을 앞세우기때문입니다.

작년에 북부조국의 사회과학자들은 단군릉에 대한 치밀한 고고학적발굴과 유물에 대한 최신자연과학적감정, 다방면적인 력사학적분석을 통하여 단군이 신화적인물이 아니라 실재한 력사적인물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확증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동포는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유구한 단일민족이라는것이 력사적사실로 확인되였습니다.

피줄의 공통성, 언어와 심리에서 나타나는 문화적공통성과 함께 령토의 공통성은 민족적공통성을 특징짓는 기본징표입니다.

령토의 공통성은 민족의 사회적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환경의 공통성을 말합니다. 령토는 민족의 삶의 터전이며 생활의 보금자리인것만큼 민족의 자주적생명활동과 뗄수 없이 련결되여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고찰하고서야 인간의 활동과 생활을 론할수 있으며 그 다음에야 인간생활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하여 고찰할수 있는것처럼 민족의 기본징표와 공통성을 론하는데서도 먼저 민족집단자체의 특성인 피줄, 언어 및 심리를 고찰하고 다음에 민족생활의 환경을 이루는 령토에 대하여 론하는 것이 주체적인 고찰방법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출발점으로 하여 민족의 기본징표를 해석하는것은 불합리합니다.

민족은 집단적생명체입니다.

다른 민족에 대하여 독자적인 집단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가지고 그것을 민족공동의 집단적인 생활력으로 실현해 나가는것이 현실적인 산 민족입니다. 민족적자주성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생존하고 발전하려는 민족집단의 요구를 민족의 집단적인 창조력으로 실현해나가는 성질인것만큼 민족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집단적생명체입니다.

민족의 모든 성원들은 자주성으로 하여 하나의 집단적생명체에 결합되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자주성이 민족의 집단적생명을 이루기때문에 서로 구별되고 때로는 적대관계에 있는 계급과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단일하고 동질적인 민족공동체를 이루게 되는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적자주성은 민족적인 단일성과 동질성의 기초로 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민족안에 다양한 여러 계급들이 있고 계급적인 대립과 분렬이 존재한다고 하여 민족적인 단일성과 동질성의 의의를 경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자본주의제도에서 살고있는 모든 민족들에 계급적인 대립과 적대가 존재하고있지만 그것이 민족적인 동질성과 단일성을 파괴하는 요인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민족적인 단일성, 동질성과 계급적인 다양성, 대립성은 불상용적인 관계에 있는것이 아니라 상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계급적인 다양성과 대립성속에서도 민족적자주성에 기초하여 민족의 단일성과 동질성을 강화해나가야 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이룩할수 있고 민족의 공고발전을 도모할수 있습니다.

민족의 집단적생명을 이루는 자주성은 민족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적공통성을 이루는 기본징표를 체현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민족이라는 집단적생명체에 결합되여 생존하고 그 안에서 활동할 때 피줄의 공통성, 언어와 심리의 공통성을 체현하게 되며 민족의 성원으로 발전해나갈수 있습니다. 민족적자주성은 민족의 공통성을 이루는 징표들이 형성발전되고 공고화되는 기초로 됩니다.

민족의 집단적생명은 민족의 성원들이 지니는 개인적생명의 모체입니다. 사회적인간의 운명은 집단적으로만 개척되기때문에 민족의 집단적생명속에서만 민족의 성원으로 되는 개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발전할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족의 집단적생명이 있고서야 개인적생명이 있을수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민족을 이루는 개인들은 자기 생명의 모체가 민족의 집단적생명에 있기때문에 민족이 강력한 자주적생명체로 되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자기 민족과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자기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게 되는것입니다. 다른 한편 민족성원들의 개인적생명이 발전하여야 민족의 집단적생명이 발전확대되기때문에 민족은 그 성원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기에 민족의 집단적생명과 개인적생명의 변증법이 있습니다. 개

인들이 조국애과 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민족의 집단적생명의 요구인 동시에 개인적생명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민족의 운명이 개척되여야 개인의 운명도 개척되기때문입니다. 우리의 민족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여야 개별적사람들이 자주성도 실현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이 남에게 예속되면 누구든지 식민지노예의 처지를 면할수 없습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집단적생명체로 민족을 파악하는 주체적리해로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절박한 과제로 보는 관점이 흘러나옵니다.

민족을 분렬시킨다는것은 민족의 집단적생명의 전일성을 파괴한다는것을 말합니다. 분렬은 집단적생명체인 민족의 존립과 발전의 합법칙적경향에 어긋나는 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이며 민족전체의 커다란 불행입니다. 민족의 분렬을 극복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과제로 되는 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족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운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량분된 민족적생명의 전일성과 민족공동의 생명활동의 통일성을 회복하고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단결된 힘으로 민족의 자주성을 확대발전시켜 겨레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업이 바로 조국통일인것입니다.

2. 민족의 특출한 지위와 역할

지난시기 맑스－레닌주의에서는 사회적집단으로서의 민족을 계급에 종속시켜 해석하고 민족문제를 계급해방문제의 일환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사회적집단가운데서 민족이 차지하는 지위를 응당하게 보지 못하고 력사적진보에서 민족이 노는 역할을 경시한데 맑스－레닌주의적인 견해와 관점의 특성이 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가 민족을 계급에 종속시키면서 민족에 비한 계급의 우위를 내세운것은 그 사상사적전제와 시대적조건과 결부되여있습니다.

맑스와 엥겔스는 계급과 민족에 대한 리론을 확립하는데서 티에리, 기조, 미니에와 같은 19세기전반기 영국과 프랑스의 왕정복고기 력사가들의 견해를 사상사적전재로 삼았습니다. 왕정복고기의 력사가들은 서구라파에서 자본주의형성시기에 벌어진 정치투쟁의 근원이 민족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싼 부르죠아지와 토지소유귀족들의 계급적리해관계의 대립에 있다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로부터 출발하여 계급들사이의 투쟁과 그 발전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당시에 부르죠아경제학자들은 계급에 대한 경제적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민족이 부자들과 빈자들로 분렬된다는 사실에 주목을 돌렸습니다.

맑스와 엥겔스는 계급의 경제적기초와 계급투쟁에 대한 선행사상가들의 견해를 발전시키면서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을 력사적과정의 기초에 놓고 계급적요인의 결정적역할을 전면에 내세운 유물사관을 내놓았으며 그에 기초하여 계급과 민족의 관계를 밝혔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민족이 경제적리해관계로 하여 대립된 부르죠

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로 분렬되여있다는데로부터 민족적공통성보다도 계급적공통성에 주되는 주의를 돌렸으며 민족내의 계급적인 분렬과 대립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의 민족안에 부르죠아적민족과 프로레타리아적민족의 《두개민족》이 존재한다고까지 지적하였습니다.

민족의 위치와 역할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계급에 집착한 맑스와 엥겔스의 견해는 서구라파 중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치적 및 경제적 발전의 불균등성이 현저에 나타나지 않고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단결에 의하여 동시혁명이 가능하였던 당시의 시대적조건과 관련되여있습니다. 그들은 각국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단결에 의한 계급혁명에 주의를 집중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트가 민족적인것은 오직 자기의 계급적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급으로 조직되는 집과 직접적인 투쟁무기가 필요하기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맑스와 엥겔스의 이러한 립장은 그들이 《공산당선언》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이 내용상에서가 아니라 형식상에서만 민족적》이며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한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습니다.

맑스와 엥겔스는 민족문제, 민족자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도 철두철미 계급혁명에 리로운가, 불리한가 하는데 두었습니다. 맑스는 1870년에 독일의 반동정부를 전복하는데 유리하다는 견지로부터 로씨야사회주의자들에게 뽈스까(폴란드)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할것을 요구하였으나 1870년대후반기에는 로씨야에서 성숙되고 있는 혁명적분위기에 부정적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뽈스까사회주의자들에게 민족적독립에 대한 요구를 철회할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레닌은 민족과 계급에 대한 맑스주의의 견해를 그대로 계승하였습니다. 그는 민족의 리익을 프로레타리아트의 리익에 종속시키고 민족적 자결과 해방에 대한 문제를 사회주의를 위한 계급투쟁의 문제에 복종시켜 취급하였습니다. 레닌은 민족들의 정치적자결권을 계급투쟁의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레닌주의에서는 특히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민족해방혁명이 종주국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하여야 승리할수 있다는것이 공식으로 되여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족을 계급에 복종시키고 민족문제를 계급해방문제의 일환으로 본 맑스-레닌주의의 견해는 리론적으로 미숙하고 일면적인것이였으며 력사와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그 진리성을 립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쏘련을 비롯한 일련의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민족정책의 실패를 가져온 하나의 원인으로 되였습니다.

오늘 구미부르죠아학계에서는 세계주의의 영향밑에 민족과 그 역할을 강조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거부감을 나타내고있습니다. 이것은 20세기 부르죠아학계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한스 콘, 이 카아, 톰 네언 등의 주장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을 사상적으로 준비한 계몽주의리

론가들(루쏘, 시에이에스, 마이넥케등)이 민족의 역할에 관심을 돌리고 민족정신과 민족의지를 강조한것과는 상반되는 대조를 이루고있습니다.

지금 남조선과 해외교포사회의 일부 학자들은 민족과 계급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을 사회주의자들의 공인된 견해인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주체사상에 기계적으로 확장하고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이러한 리론을 그 사상사적전제와 시대적배경과 결부시킴이 없이 오늘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불변의 진리인것처럼 리해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북의 인식과 실천을 오해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맑스-레닌주의가 발생발전하던 시대에 비해 멀리 전진하였으며 사회적변혁운동의 대중적지반이 비상히 확대되고 민족적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입니다. 이에 상응하여 사회주의학설도 새롭게 혁신되고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학설인 주체사상은 사회적집단가운데서 민족이 차지하는 특출한 지위와 력사창조활동에서 민족이 노는 커다란 역할을 밝히고있으며 계급에 비한 민족의 우위를 내세우고있습니다.

민족은 가장 공고하며 계급에 비하여 우위를 차지하는 사회적집단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첫째로, 민족은 자기의 동질성을 변함없이 유지보존하는 가장 공고한 집단입니다.

매개 계급의 질적특성은 해당한 사회제도와 결부되여있으며 사회제도가 변하면 같은 피착취계급이나 착취계급이라도 질적특성을 달리하게 됩니다. 봉건사회의 농노와 자본주의사회의 프로레타리아트는 력사적견지에서 보면 다같이 피착취계급의 범주에 속하지만 서로 질적특성을 달리하는 계급이며 착취계급에 속하는 봉건지주와 자본가도 서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피줄의 공통성, 언어와 심리의 공통성, 령토의 공통성으로 표현되는 민족적동질성은 사회제도의 교체와는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보존됩니다. 력사의 발전과정속에서 볼 때 계급적동질성은 매우 가변적이지만 민족적동질성은 상대적으로 불변합니다.

사회제도가 다르면 민족적동질성이 변하거나 파괴된다고 보는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대립되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민족을 이질화시키는 요인으로 된다고 인식하게 되면 서로 다른 사회제도에서 살고있는 하나의 민족을 두개 민족으로 보게되며 이러한 견해는 민족정책에서 커다란 후과를 빚어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 동부독일의 리론가들과 위정자들이 동독과 서독은 서로 다른 사회제도를 가지고있기때문에 독일민족은 둘이라고 하면서 민족분렬로선을 취하다가 돌이킬수 없는 실패를 당한 사실이 뚜렷한 례증으로 됩니다.

둘째로 민족은 그 존재의 지속성이 오랜 가장 생활력있는 집단입니다.

봉건사회가 멸망하여 그 기본계급인 지주와 농노가 없어지듯이 사회의 기본계급이 생존하는 시간은 해당 사회제도의 존속기간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민족은 사회제도의 변혁에 따르는 사회의 기본계급의 출몰과 관계없이 계속 존재합니다. 앞으로 사회주의사회의 발전과정에 계급은 없어져도 민족은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민족이 계급에 비하여 그 존재의 지속성이 보다 오랜 사회적집단이며 민족적뉴대의 생활력이 매우 크다는것을 보여줍니다.

민족이 계급적으로 화해된 집단이 아니라고 하여 민족적뉴대의 견고성과 생활력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것은 잘못입니다. 랭전이후시기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민족분쟁들은 민족적뉴대의 견인력과 생활력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셋째로 민족은 계급적리익의 실현을 규제하는 집단입니다.

민족은 적대되는 계급들도 포함한 다양한 계급들의 전일체입니다. 민족이 형성된 다음에는 어떠한 계급도 민족안에서 생존하기 마련입니다. 민족밖에있는 계급이란 있을수 없다는 의미에서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을수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민족과 계급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속에 있습니다. 부분과 전체가 변증법적련관속에 있는것만큼 전자의 상대적독자성을 보지 않는것도 오유이며 후자의 전일성과 전자에 대한 규제적역할을 무시하는것도 잘못입니다. 민족전체의 리해관계를 떠난 계급의 리해관계란 있을수 없으며 민족공동의 리익이 실현되여야 계급의 리익도 실현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은 계급적리익과 실현을 규제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민족은 사회적집단가운데서 특출한 지위를 차지할뿐만아니라 사회발전과 력사창조활동에서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먼저 민족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이 영위되는 기본단위로서의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민족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거쳐 사람들의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기본단위로 존재하고 발전하여왔습니다. 민족국가의 테두리를 이루고살아가는것은 사회제도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사람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기본방식으로 되고있습니다. 현대문명의 발달로 민족들사이의 련계가 밀접해지고 생활의 여러 령역에서 국제화의 추세가 강화되고있는 오늘의 시대에도 의연히 민족은 사회생활이 영위되는 기본단위로서의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민족들의 발전에는 한편으로 민족의 독립과 자주권이 강화되며 다른편으로 민족들사이의 련계와 협력이 발전하는 두가지 경향이 동시에 작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전자를 기본으로 하여 두가지 경향이 작용한다고 보는것이 국제적현실에 부합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구라파통합을 실례로 들면서 이제는 민족이나 민족국가의 단위가 무의미하고 시대착오적인것처럼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에서 조차

매개 민족의 리익과 자주권을 더 잘 실현하는것이 목적으로 되여있고 통합은 수단으로 되여있다고 보는것이 옳을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족은 력사가 창조되는 기본단위로서의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사람들의 력사창조활동은 새 령역에서 벌어집니다.

그 하나는 사회개조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개조운동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연개조운동입니다. 사람들은 사회개조운동을 통하여 정치를 개변하고 인간개조운동을 통하여 문화적진보를 이룩하며 자연개조운동을 통하여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고있습니다. 력사창조의 모든 령역에서 민족적인것을 기본으로 하여 국제적인것이 이루어지며 민족자주적인것의 발전에 기초하여 세계공통적인것이 형성되여나는것은 무시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민족국가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개변에 기초하여 국제정치가 변화하며 매개 민족문화의 발전에 토대하여 인류문화의 보물고가 풍부화됩니다.

오늘 다국적기업이 발전하고 경제의 국제화과정이 전진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세계경제체계의 기본단위는 의연히 민족경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민족은 계급들의 활동에 대하여 규제적인 작용을 합니다.

계급은 민족의 구성부분이기때문에 계급들의 활동과 투쟁은 전반적인 민족활동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민족의 운명이 개척되여야 계급들의 운명도 개척되는것만큼 민족적자주성의 실현은 계급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됩니다. 민족이 남에게 예속되면 계급도 예속되기 마련이며 민족이 자주적으로 존립하고 창조적으로 발전하여야 계급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도 성과적으로 벌어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들의 전반적활동의 규제적 영향밑에 계급의 활동과 투쟁이 벌어진다면 다른 한편으로 진보적계급의 활동과 투쟁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창조적번영에 이바지하는것으로 되게 됩니다.

민족의 특출한 지위와 역할에 대한 주체사상의 견해로부터 계급에 비하여 민족을 우선시하고 우위에 놓는 관점과 립장이 흘러나옵니다.

민족안에 다양한 계급이 있고 매개 계급이 자기의 존재리유를 가지는 조건에서 계급적요구의 정당성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특정계급의 리익에 둘수 없습니다. 민족공동의 리익만이 매개 계급의 요구와 리익의 정당성을 판단평가하는 기준으로 될수 있습니다. 매개 계급은 자기의 요구와 리익을 내세우는데서 언제나 민족앞에 책임져야 합니다.

나라의 분렬을 극복하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이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있는 이때 협애한 리해관계에 사로잡혀 계급적리익을 민족공동의 리익우에 올려세우거나 계급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민족통일을 위한 투쟁에 대치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오늘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계급적리익에 앞서 민족공동의 리익을 도모하

여야 하며 민족의 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2. 조국통일의 당면문제

근 반세기에 걸치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대제를 하루빨리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합의를 이룩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특히 사회현실을 리론적으로 연구분석하고 대중의 여론을 선도하는 학자들사이의 협의와 토론이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저는 이 모임에서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북남 학계의 공동인식을 확립하는데서 관건적이라고 생각하는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련방국가안과 국가련합안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민족적통일과 제도상통일 문제입니다.

1. 련방국가안과 국가련합안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원칙과 로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신년사》 13페이지)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 련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것은 북의 원칙적립장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련방국가안입니다. 이와는 달리 이남당국은 국가련합안을 내세우고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들은 철학과 정치학을 비롯한 여러사회과학의 시각에서 두 안을 종합적으로 비교연구하고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합의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련방국가는 분리된 정치단위들을 하나의 국가에로 포괄통일하면서 포괄되는 정치단위들의 주요한 정치적속성을 보존하는 정치조직형식으로 그 개념이 정의되고있습니다.

국가련합은 독립국가들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련결되고 결합되는 정치조직형식으로 리해되고있습니다.

정치사에 존재한 련방국가와 국가련합의 실천이 다양하고 그 류형도 여러가지이지만 련방국가와 국가련합에 대한 이러한 리해는 정치학이나 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 기본적으로 공인되고있습니다.

련방국가와 국가련합사이에는 일정한 류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정치단위들을 보다 포괄적인 정치단위에 련결시키고 결합시키는 정치조직형식이라는 점과 중앙정치단위와 지방정치단위사이에 권력분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방정치단위들의 법적평등성과 균형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나타납

니다.

그런데 련방국가와 국가련합사이의 류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기본적이며 주되는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네가지로 정리해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련방국가에서는 하나의 통일적인 국가가 존재하지만 국가련합에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인 국가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련방국가에서는 통일국가가 유일한 국제법적주체로 되지만 국가련합에서는 포괄되는 국가들이 각각 국제법적대표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련방국가에서는 국가수준의 통일적인 중앙정부가 형성되지만 국가련합에서는 포괄되는 국가들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조정기구가 있을뿐이라는 점입니다.

넷째로, 련방국가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능이 크지만 국가련합에서는 중앙정치조직의 기능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련방국가와 국가련합의 이러한 차이를 념두에 둘 때 우리나라의 현실정에서는 련방국가를 창립하는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련방국가안과 국가련합안을 비교하는데서 정당성과 합리성의 기준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데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 리로운가 혹은 불리한가 하는데 있습니다.

련방국가를 창립하여야 무엇보다먼저 하나의 집단적생명체인 민족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공동의 생명활동, 공동의 삶을 누리려는 전민족적인 숙원을 빨리 실현할수 있습니다.

국토의 량단과 겨레의 분렬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하려는 민족의 요구는 단일국가안에서 공동의 삶을 누리려는 지향과 의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민족은 운명을 같이하는 집단적생명체인것만큼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생명활동을 하는것이 가장 리상적입니다.

나라의 분렬로 인한 쓰라린 고통과 가슴아픈 불행을 체험할대로 체험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서로 다른 두개의 독립국가가 아니라 민족적공통성에 기초한 단일국가를 지향하는것은 공통한 감정이며 의지입니다. 민족적인 자주성과 공통성에 기초한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나라의 분렬로 인한 온 민족의 고통을 하루빨리 가시고 조선땅우에 민족공동의 삶이 꽃펴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북과 남사이에 계급적대립으로 인한 오해와 불신이 루적되고 국제적여건도 복잡하다는 론거를 들면서 북과 남이 별개로 살아가는 국가련합이 더 바람직하며 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생활에서 계급적요인의 의의를 절대화하고 민족적요인의 의의를 경시하는 잘못된 견해라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사회적운동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면 객관적조건이 어려워도 얼마든지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보려 하지 않는 그릇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통일은 민족적주체의 운동인것만큼 북과 남이 다같이 받아들일수 있는 민족공

동의 리념,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기초로 하여 민족적주체를 형성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나간다면 내외적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련방국가를 창립하여 민족통일을 얼마든지 성취할수 있습니다.

련방국가를 창립하는것은 다음으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내부의 접촉과 교류, 합작을 통하여 민족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전면적으로 다그치게 합니다.

북과 남이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단일국가내의 지역적관계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면 민족의 통일적인 발전과 공동의 번영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것은 명백합니다. 원래 민족의 형성과 발전은 민족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의 분산성과 고립성이 극복되고 그것들사이의 련계와 통일이 강화되여나가는 과정입니다. 련방국가를 창립하여 북남지역들사이의 생활적인 련계와 통일을 회복하고 강화하는것은 민족공동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요구입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서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경우에도 제도상의 대립때문에 민족공동의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고 하면서 련방국가나 국가련합이나 다를바 없다고 하고있습니다. 제도상의 대립이 있으면 범민족통일국가안에서도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보는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북과 남의 정치제도가 대립되여도 민족적자주성에 기초하여 련방국가를 창립하면 그 안에서 민족주체적인 정치력량을 강화하고 민족자주적인 정치를 공동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북과 남의 경제제도, 소유제도가 달라도 련방국가내에서 북과 남의 분업과 협업을 발전시켜 민족공동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일수 있습니다. 분업과 협업은 소유제도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생산력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북과 남의 문화제도의 차이는 련방국가안에서 공동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과 교류에 지장으로 되지 않습니다.

련방국가를 창립하는것은 또한 오랜 력사에 걸쳐 단일국가를 이루고 살아온 우리 민족의 력사적전통과 그와 결부되여 형성된 강렬한 민족적일체감을 특성으로 하는 조선민족의 고유한 심리에 맞습니다.

우리 민족은 장구한 기간에 걸쳐 단일한 통일국가를 이루고 살아온 우수한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결부되여 우리 민족의 심리에도 민족적인 일체감과 동질감이 강렬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러한 우수한 전통과 고유한 심리를 중시한다면 마땅히 별개로 사는 정치조직형식이 아니라 하나가 되여 공동으로 살아가는 정치조직형태를 추구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를 창립하여야 또한 앞으로 제도상의 대립을 순탄하게 극복할수 있는 주객관적조건들을 충분히 성숙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리상은 민족적공통성에 기초한 민족적통일뿐만 아니라 민족안에 있는 제도상의 대립마저 없애는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분렬과 함께 민족내부의 제도상 차이까지 극복하여야 단합과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요구가 보다 원만히 실현될수 있기때문입니다.

북과 남이 별개의 독립국가로 되여 련합이나 형성해가지고서는 앞으로 사회제도의 단일화문제를 마찰과 충돌없이 해결할수 있는 조건들을 성숙시키기 어려우며 자칫하면 오히려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킬수 있습니다.

범민족적통일국가를 창설하여야 동포애와 민족적협력의 정신에서 북과 남의 갈등구조를 화해구조로 바꾸고 민족적립장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북과 남의 차이를 훨씬 줄여 앞으로 제도상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성숙시킬수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정치학적견지에서나 가치관적견지에서나 련방국가를 창립하는것이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고 조국의 운명과 장래를 개척하는데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이라는것을 보여줍니다.

2. 민족적통일과 제도상통일

오늘 조국통일의 방도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론의되는 문제는 민족적통일과 제도상통일 문제입니다.

민족적통일은 민족적인 동일성과 단일성에 기초한 조국의 통일입니다. 이 통일은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제도상통일은 하나의 정치제도, 경제제도, 문화제도에 의하여 계급적인 사회제도를 단일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조선민족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사회제도를 세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족적통일과 제도상통일은 서로 구분되면서도 일정한 련관을 가지고있습니다.

①무엇보다먼저 민족적통일은 단일한 민족국가의 창립에 의하여 민족의 량분을 극복하는 사업이며 제도상통일은 민족의 량분을 내부적으로 고착시키던 서로 다른 계급적인 체계와 기구를 단일화하는 사업인것만큼 다같이 민족안의 분렬, 갈등, 대립을 극복하는 사업으로서 련관되여있습니다.

민족의 량분이 내부적으로 고착되게 된것은 우선 북과 남의 대립되는 사회제도가 서로 다른 계급의 리익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적지위와 역할의 규제질서를 확립했기때문이며 또한 북과 남의 적대되는 두 정부가 나라의 일정한 령토와 주민들에 대한 관할권을 별개로 행사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 대립되는 사회제도와 정부를 하나로 단일화하는것은 민족적통일, 조국통일에 이어 민족안의 분렬과 대립을 극복하는 과정의 계속으로 됩니다.

②다음으로 민족적통일은 분렬을 반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숙원을 민족적수준에서 실현하는 사업이며 제도상의 통일은 그것을 계급적수준에서 실현하는 사업인것만큼 다같이 발전된 통일에로 나아가려는 인민들의 념원을 실현하려는 사업으로서 련관되여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일부 학자들은 통일국가는 하나의 계급적인 제도를 가져야 한다면서

련방제에 의한 민족적통일은 불완전하고 미완성된것이기에 큰 의의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른 일부 학자들은 북과 남의 두 제도, 두 정부의 정치적갈등이 심하기때문에 련방제에 의한 민족적통일은 불가능할것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한편으로는 국가를 계급과만 결부시키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편으로는 정치와 국가에 대한 맑스주의적견해를 주체사상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민족적통일에 대한 북의 립장에 대하여 오해하는데 있습니다.

정치와 국가를 계급과만 결부시켜보는것은 일면적이고 부정확한 견해입니다. 지난시기 맑스주의는 유물사관에 기초하여 정치와 국가의 발생을 계급의 발생과 결부시키고 계급의 소멸과 함께 정치와 국가는 조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맑스주의는 국가를 지배계급의 경제적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수단으로, 계급적정치조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생활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하고 계급적요인의 역할에만 주되는 의의를 부여한 맑스주의유물사관의 제한성으로부터 나온 일면적인것입니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정치는 사회가 존립하고 발전하기 위한 항구적인 요인입니다. 정치는 계급이 발생하기전에도 있었으며 계급이 소멸된 다음에도 존재합니다. 정치적 지휘권인 국가도 계급이 없어진다고 하여 조락하는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사회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권이기때문에 계급적인 정치조직으로만 아니라 민족적인 정치조직으로도 존재할수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국가는 계급적기능만이 아니라 민족적기능도 가지게 됩니다. 하나의 민족안에 서로 다른 계급적리익을 구현한 두개의 사회제도와 정부가 있는 경우에 그우에 서는 통일적인 국가는 필연적으로 민족적인 정치조직으로 되며 민족공동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적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북과 남의 대립되는 두 제도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모두에게 받아들여질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가 얼마든지 창설될수 있습니다. 민족적정치조직인 련방국가와 계급적인 사회제도가 민족적자주성을 공동기반으로 하여 병존할수 있으며 련방국가의 중앙정부의 민족적기능과 두개의 지역정부의 민족적기능이 통일될수 있습니다.

련방제에 의한 민족적통일은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민족의 재결합을 실현하는것으로 하여 거대한 민족사적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민족적통일의 실현은 앞으로 제도의 단일화문제를 순탄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때문에 민족의 장래를 개척해나가는데서 전환적인 사변으로 될것입니다.

북남학자들사이에 제도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과 방법, 시기에 대한 공동인식을 확립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민족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족전체의 자주성과 모든 민족성원들의 자주성을 더 잘 실현할수 있는 사회제도를 선택하는데 제도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두어야 할것입니다. 협소한 계급적리익에 기초하여 자기의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거나 계급적적대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체제하에 상대방을 흡수하려는것

은 잘못된 립장입니다. 사회제도는 일정한 사상을 구현하고 사상은 사람들의 자주성의 표현인것만큼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남에게 강요하는것은 상대방의 자주성을 무시하는것이며 결국 인간자체를 무시하는것입니다.

제도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말한다면 범민족통일국가안에서 정당, 단체들이 평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중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을 벌리며 그에 기초하여 모든 민족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하나의 사회제도를 선택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상의 통일을 실현하는 시기는 제도의 단일화문제를 순탄하게 풀어나갈수 있는 주객관적조건을 충분히 성숙시킬수 있는 일정한 력사적기간이 지난 다음의 시기, 후대들의 시기가 적당할것입니다. 민족적동질성에 기초한 련방국가가 마찰과 충돌없이 제도를 단일화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합리적인 정치조직형식인 조건에서 민족적통일을 거쳐 제도상 통일에로 나아가는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사발전의 현단계에서는 련방제에 의한 민족적통일을 주되는 과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민족주체적력량을 굳게 결속하고 적극 동원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전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하나로 뭉친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위업을 반드시 성취할것입니다.

조국통일과 인민대중의 주동적역할

강 명 철

머리말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연단에서《조국통일과 인민대중의 주동적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려고 한다.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인정하는것처럼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제 더는 미룰수 없는 당면한 최대의 과제이다.

존경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망이며 이것은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

하나의 피줄과 언어를 가지고 한 강토우에서 5천여년의 력사국으로 단란하게 살아오던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지도 어느덧 반세기가 가까워오고있다.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절감하는 인민대중은 이 이상 더는 조국통일을 끌어서는 안되며 더우기 분단 민족의 비운을 후대들에게 절대로 넘겨줄수 없다.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과업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진정 최대의 숙원이 아닐수 없다. 이 절박하고 성스러운 대제를 최단기간내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이 하나와 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특히 조국통일의 주도적력량인 전체 인민대중이 이 거족적인 투쟁에 적극 참여하는것은 통일을 앞당기는 최상의 방도가 될것이다.

1. 조국통일은 인민대중의 숙원을 실현하는 사업

일반적으로 인민대중은 민족을 대표하는 사회적집단으로서 그에 대한 리해는 력사적으로 변천되여왔다.

주체철학은 인민대중에 대한 새로운 리해를 확립하였다.

그것은 인민대중이 력사발전과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 계급, 계층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집단이라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철학은 력사의 주체를 인민대중으로 규정한다.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활동을 떠나서 그 어떤 사회적 진보와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통해서만 사회가 발전하고 력사가 전진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민대중은 언제나 력사의 담당자, 주체이다.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계급적구성은 사회력사발전과정에 따라 부단히 변

화되지만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고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려는 지향과 요구는 변하지 않는다.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것은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이며 력사적숙원이다.

인류사회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인민대중은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인간을 개조하는 모든 활동은 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사회가 발전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여 그들의 본성적요구가 실현되여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왔다. 여기에 사회적운동의 본질적특성의 하나가 있다.

인민대중과 사회적운동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주체적리해는 조국통일이 인민대중의 숙원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되는 근거를 옳게 파악할수 있게 하는 리론적기초이다.

조국통일이 인민대중의 숙원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되는것은 첫째로, 조국통일이 이룩되여야 인민대중이 가장 불행하고 고통받는 처지에서 벗어날수 있다는데 있다.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살아가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숙원, 자주성을 실현하는 사업은 민족문제해결을 전제로 한다.

민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이다. 민족이 자주성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데 따라 민족의 운명이 좌우된다. 자주성은 민족의 존재와 번영을 담보하는 민족의 생명이다.

조국통일은 그 본질적내용으로 보아 철저히 민족문제이다. 조국통일은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며 갈라졌던 민족의 재결합을 이루는 문제인것만큼 그것은 근본성격에 있어서 민족문제가 아닐수 없다.

민족문제해결의 본질로부터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지구상에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는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벌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운명은 그가 속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뗄수 없이 련관되게 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됨이 없이는 인민대중의 자주성도 도저히 실현될수 없다. 나라와 민족이 예속되면 인민대중은 노예의 처지를 면할수 없으며 자주성을 구속당하기 마련이다. 나라와 민족이 예속되면 민족의 운명이 제국주의자들에게 롱락당하며 인민대중은 상가집 개만도 못한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것은 여러 식민지 민족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인민대중은 민족문제인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자기 운명개척에서 막대한 지장을 받고있다.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은 그 누구보다도 민족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인민대중에게 커다란 불행으로 되고있으며 가장 큰 고통을 들씌우고있다. 전국적 판도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 인민은 아직도 외세의 의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혹심하게 유린당하고있다. 자주시대인 오늘의 력사적시점에서 나라의 절반땅에서 우리 민중에게 강요되고있는 정치적무권리와 착취, 말세기적생활풍조는 그 무슨 리유로도 정당화할수 없으며 이것은 더는 참을수 없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수치이다.

뿐만아니라 우리 인민은 나라의 분렬로 하여 대결과 긴장상태가 가셔지지 않는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서 불안을 안고 살고있으며 헤여진지 50년세월이 다 된 이 시각까지 그처럼 보고싶은 부모처자들과 친척친우들의 안부는커녕 생사조차 모르는 비통감과 안타까움을 달래우지 못하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분렬로 하여 그 누구보다도 인민대중이 감수하고있는 이와 같은 고통과 불행은 전적으로 민족의 자주성이 유린되고있는데서 비롯된것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러한 민족적 예속과 억압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것보다 더 절박하고 강렬한 요구는 없다.

조국이 통일되여 민족의 자주성이 전국적범위에서 완전히 실현될 때 우리 인민은 가장 불행하고 고통받는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며 따라서 자기의 자주성실현에서는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게 될것이다.

바로 여기에 조국통일이 인민대중의 숙원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조국통일의 인민대중의 숙원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되는것은 둘째로 조국통일이 이룩되여야 인민대중은 력사와 민족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수 있다는데 있다.

인민대중은 언제나 력사의 주체이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그의 지위와 역할이 같은것은 아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오래동안 자기의 사회계급적 처지와 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지지 못한 탓으로 소수 착취계급, 지배계급에게 무권리를 강요당하고 가혹한 착취를 받았으며 력사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여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역할에 상응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유린당하는 처지에서 력사의 무거운 부담만을 걸머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사회발전의 리익의 견지에서 본다면 력사와 사회발전의 주역을 담당한 사회적집단이 응당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여야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인민대중이 사회발전에서 주역을 담당하는것만큼 마땅히 그들이 자기의 요구에 맞게 력사를 발전시키자면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여야 한다.

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의 배리는 그 자체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유린의 집중적표현이며 그로부터 산생되는 모든 예속과 구속의 전제로 된다.

더우기 민족적예속이 가해지는 조건에서는 지위와 역할의 배리도 가증되였고 그로인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유린되는 참상은 더욱 비참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인민대중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 항쟁에서 무엇보다도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가장 절실한 요구로,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투쟁을 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장기간에 걸쳐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왔다.

그러나 외세의 의한 나라의 분렬로 말미암아 아직도 전국적판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히우고있다.

민족의 자주권유린으로 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전국적범위에서 력사와 민족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있으며 따라서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권리도 원만히 행사하지 못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외세의 간섭으로 우리 민중들이 력사와 민족의 주인의 지위에서 배제되고있는것은 더이상 용납되여서는 안될 민족적비운이다. 이것은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키는 주되는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절반땅에서 민족적자주권이 상실된것으로 하여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인민들은 다같이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지 못하고있으며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자신의 창조력도 통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있다.

민족의 자주권유린이야 말로 우리 인민의 사회정치적 지위와 창조력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가슴아픈 정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인민대중이 민족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은 다름아닌 조국통일이다.

민족의 어엿한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는 그 무엇으로써도 억제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것이다.

조국통일이 이룩되여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이 회복될때 우리 인민은 드디여 력사와 민족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높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될것이다.

바로 여기에 조국통일이 인민대중의 숙원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되는 다른 하나의 근거가 있다.

참으로 조국통일은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장기간에 걸친 투쟁을 승리적으로 매듭짓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의 민족적숙원을 실현시켜주며 명실공히 령토완정을 이룩한 자주독립국가로 우리 나라를 세계에 내세우는 력사적사변을 안아올것이다.

2. 인민대중은 조국통일의 주도세력이며 기본동력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 자신의 창조적힘,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추진되는 창조적운동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그것은 민족공동의 운명개척활동과 호상련관속에서 벌어진다. 민족의 운명개척활동에는 민족을 이루는 모든 계급, 계층이 다 참가한다. 민족의 운명개척활동에 그 구성원들 모두가 참가한다는것은 결코 그들이 속한 사회적집단들이 발휘하는 창조력의 크기가 같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족의 절대다수를 이루며 민족을 대표하는 사회적세력인 인민대중의 힘, 그들의 창조력이 민족의 운명개척활동에서 기본적이며 결정적인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운동에서 사람들, 사회적집단이 노는 역할은 그가 지닌 창조력에 의하여 규정된다.

조국통일운동에서 인민대중이 기본동력으로 되는 근거도 인민대중이 지닌 창조력에 대한 옳바른 리해에 기초해서만 정확히 인식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창조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이다.

인민대중의 창조력은 크게 자연을 개조하는 창조력으로서의 생산력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력으로서의 혁명적능력, 자기 자신을 개조하는 문화적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수 있다.

인민대중은 자연을 개조하는 적극적인 실천과정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에 토대한 생산력을 증대시켜왔으며 자주성을 유린하는 낡은 사회관계를 변혁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사회개조의 혁명적능력을 장성시켜왔다. 뿐만아니라 인민대중은 사회생활의 각이한 분야에서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자기자신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발전시킬수 있는 문화적능력을 축적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에 의하여 사회발전에 필요한 사상문화적 및 물질적 조건 그리고 사회정치적조건이 마련되고 리용된다.

인민대중이 체현하고있는 창조적힘은 그 분야의 다방면성에 있어서나 그 내용의 심오성과 진리성, 개조변혁의 효과성에 있어서 그 어느 사회적집단에 비할바없이 크다. 특히 사회정치적자주성을 구속하는 낡은 사회관계를 개조하는 인민대중의 혁명적능력은 사회개조의 원동력으로 된다. 사회개조의 창조력으로서의 인민대중의 혁명적능력은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목적과 리해관계, 처지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무한대의 위력이다.

이 위력은 사회개조, 사회관계발전에서 결정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모든 사회적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민의 자주성실현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올 조국통일운동에서도 인민대중이 지닌 창조력, 혁명적능력이 기본동력으로 된다.

인민대중이 조국통일의 주도세력으로 기본동력으로 되는 근거를 세가지로 고찰할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인민대중이 통일의식, 민족자주의식이 가장 높은 사회적집단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집단의 발전정도는 그가 지닌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의 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여기에서도 기본은 자주의식이다. 자주의식에 의하여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조절통제된다.

우리 인민이 지닌 통일의식은 민족적리념에 기초한 자주의식으로서 그 수준은 민족의 그 어느 계급, 계층보다 우위에 놓인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지닌 민족자주의식의 특성과 관련된다.

우리 인민이 지닌 민족자주의식은 우선 민족의 자주성실현이 자기 운명개척의 선결조건이라는 높은 자각에 기초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과정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됨이 없이는 자신의 자주성도 도저히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남조선 민중들속에서 반미없이 자주없고 자주없이 민주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것은 이에 대한 뚜렷한 례증이다.

우리 인민이 지닌 민족자주의식은 또한 그들의 사회계급적 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고있다. 조국의 분렬로 하여 받게 되는 온갖 구속과 고통을 제일 많이 감수하는 사회적집단이 바로 인민대중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그를 반영한 민족자주의식을 높이 체득하게 된다.

최근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인민들속에서 90년대통일열망이 끓어넘치고 특히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중이 주체가 되여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는《민중통일론》이 강하게 대두하고있는것은 인민대중이야 말로 조국통일에 대한 자각, 통일의식이 가장 높은 사회적집단이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인민대중이 지닌 높은 통일의식, 민족자주의식은 그들로 하여금 조국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게 하는 정신적요인이다.

인민대중이 조국통일의 주도세력으로 기본동력으로 되는것은 둘째로, 인민대중이 조국통일위업을 감당할수 있는 가장 위력한 통일력, 혁명적능력을 지니고있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이 지닌 높은 통일의식은 그가 지닌 위대한 통일력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현실화될수 있다.

인민대중은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할뿐아니라 자주의식에 기초한 통일단결을 이룩함으로써 그 강유력한 힘은 어떤 사회세력과도 견줄수 없이 크다.

조국통일문제의 중핵적내용이 어디까지나 민족적자주권을 되찾는 문제인것만큼 그것은 민족적예속을 청산하는 인민대중의 창조력, 혁명적능력에 의하여 수행되게 된다.

인민대중의 사회개조능력, 혁명적능력이란 본질에 있어서 통일단결의 위력이다. 조국통일운동에서 인민대중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사회적집단은 없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의 특성과 관련된다.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은 우선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다. 우리 인민은 온갖 예속과 구속을 청산하고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는 숭고한 목적과 자주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력량을 이루고있다.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은 또한 온갖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이다. 우리 인민은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장기간의 투쟁과정에 통일단결의 필연성과 생활력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높은 자각을 가지고 온갖 시련을 용감히 이겨냈다. 공통된 목적과 리해관계에 기초하고 온갖 풍파를 헤쳐오면서 억세게 단련된 우리 인민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이며 그 어떤 장벽도 뚫고나갈 강위력한것이다.

인민대중의 이러한 불패의 혁명적능력은 소수분렬세력에 비한 통일세력의 압도적 우세를 확고히 보장하며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성취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지난날 남조선에서 인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4. 19인민봉기와 5. 18광주인민봉기 그리고 6월인민항쟁을 비롯한 조선통일사에 찬연한 빛을 뿌리는 영웅적투쟁들은 모두가 다 인민대중의 단결의 힘, 혁명적능력의 자랑찬 시위였다.

참으로 인민대중이 지닌 혁명적능력, 단결의 위력은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보로 된다. 여기에 인민대중이 조국통일의 주도세력으로, 기본동력으로 되는 리유의 주요내용이 있다.

인민대중이 조국통일의 주도세력으로 기본동력으로 되는것은 셋째로, 인민대중이 조국통일운동이 벌어지는 객관적환경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측면을 이루기때문이다.

조국통일운동은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회제도와 해외의 객관적환경과의 관계에서 진행되고있다.

서로 다른 사회제도와 외부적환경은 우리 인민의 통일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있다. 이것들은 조국통일운동을 촉진시키거나 저애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객관적환경과 인민대중과의 호상관계에서 결코 객관적환경이 위주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주도적측면을 차지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이다.

그것은 우선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지닌 자주적존재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조국통일의 근본원인은 민족적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인민대중의 자주성, 자주적요구에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인민대중의 활동을 규제하는데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 자주성보다 더 기초로 되는 요인은 없다. 인민대중은 이러한 자주적요구를 지닌 자주적존재이므로 외부환경이나 객관적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주동적으로 통일운동을 벌려나간다.

인민대중이 조국통일운동이 벌어지는 객관적환경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측면을 차지하는것은 또한 인민대중이 목적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창조성을 지닌 창조적존재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통일운동발전에서 기본은 인민대중이 지닌 창조력, 혁명적 능력이다. 인민대중은

목적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창조적능력의 담당자이므로 자신의 힘뿐아니라 객관적환경의 작용을 자신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인민대중은 창조적존재이므로 객관적조건과의 호상작용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이 호상작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이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힘과 객관적환경과의 관계는 능동과 수동, 주동과 피동의 관계로서 여기서 주동적이고 능동적인것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이다. 객관적조건이 인민대중의 통일운동을 조절하는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이 객관적조건의 작용을 다스린다.

오늘 우리 인민은 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순응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국통일운동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면서 주동적으로 통일운동을 벌려나가고있다. 안팎의 분렬주의세력과 주변의 객관적환경이 아무리 불리하다 해도 거기에 구애됨이 없이 인민대중이 자체의 힘으로 성스로운 통일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이것을 중시하고도 남음이 있다. 실로 인민대중은 통일의식의 수준으로 보나 그 혁명적 능력과 객관적환경과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주도적위치로 보나 조국통일의 기본동력으로서의 당당한 자격을 지니게 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인민대중은 자신들이 조국통일의 기본동력이라는 높은 자각을 간직하고 통일성업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3. 조국통일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도

존경하는 김정일비서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사회적운동은 자연의 운동과는 달리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일어나고 발전한다. 사회적운동은 주체의 작용에 의하여 발단되며 추진되는 주체의 운동으로서 그 발전수준은 곧 주체의 발전수준에 상응한다.

조국통일의 기본동력, 주체가 다름아닌 인민대중인것만큼 통일운동을 발전시키자면 곧 인민대중을 하나의 강력한 통일력량으로 꾸리고 그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자면 무엇보다 먼저 인민대중이 조국통일의 주인이라는 자각에 기초한 민족자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자각, 그들의 목적의식성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의하여 담보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이다.

인민대중이 조국통일의 주체로서 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리려면 이러한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예속과 억압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오늘 우리 인민들이 지닌 가장 절절

한 념원과 요구가 조국통일인것만큼 그들이 지녀야 할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통일에 관한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사상의식으로 되여야 한다. 조국통일문제가 민족문제로 제기되는것만큼 조국통일에 관한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의식은 다름아닌 민족적리념으로서의 민족자주사상이다.

민족자주사상이야 말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인민들로 하여금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주동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추동하는 공동의 요인으로 된다.

사람의 모든 행동을 그가 지닌 사상의식이 규제하는것과 같이 민족의 운명은 그 구성원들의 공통된 민족의식의 역할에 의하여 좌우된다. 자기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민족의 힘을 굳게 확신하고 민족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자각이 높은 민족은 그 어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예속도 배격하고 제정신을 가지고 자주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갈수 있다. 뿐만아니라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떳떳하게 살아나갈수 있다.

민족자주사상으로 무장하는데서는 자기 민족이 남만 못지않다는 높은 민족적자긍심, 자기 민족이 위대하다는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니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은 우리 민족의 위대하다는 자각을 안고 우리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민족의 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철저한 민족자주정신이다.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배양하자면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을 잘 알고 그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여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민족제일주의정신과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숭미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는 민족의 생존과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해로운 사상독소이다.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일소하여야 우리 민족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외세의 사소한 간섭도 일거에 배격하고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지킬수 있고 남의 눈치가 아니라 자기의 주견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인민대중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공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중들이 숭미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를 일소하고 민족제일주의정신을 함양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을 목표로 하는 사회변혁운동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는것은 외세의존과 사대주의로 얼룩진 민족사를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고 민족의 운명을 민중주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려는 민족자주의식의 당연한 발양으로서 높이 평가되여야 한다.

조국통일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자면 다음으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인민대중이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강력한 통일력량으로 굳게 결속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힘은 단결의 힘, 조직의 위력이다. 인민대중이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결속되는 것은 통일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조직적결속이 보장되여야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통일위업실현에 집중시킬수 있으며 통일운동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

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을 하나로 결집하여 조직화하는것은 그들을 대중조직에 망라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전체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워 조국통일의 주체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힘있는 대중조직형태는 전인민적, 전민족적 통일전선 조직이다.

우리 인민을 하나의 통일력량으로 결속하는것은 조국통일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것이며 조국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을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통일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대중조직은 마땅히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인민대중을 망라하는 조직으로 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인민이 3위1체가 되는 전인민적조직보다 더 대중적이고 강력한 조직은 없으며 따라서 이것은 가장 적중한 조직형태로 될것이다.

전인민적, 전민족적 통일전선은 민족자주리념에 기초한 통일전선조직으로 되여야 한다.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조직이 통일문제의 근본성격에 부합되게 민족적리념,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는것은 응당한 리치이다.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대중조직으로서의 전인민적, 전민족적, 통일전선이 형성되여야 민족자주정신을 우리 인민모두가 수용하는 통일의식으로 되게 되며 전체 인민대중은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력량으로 굳게 결속되게 된다.

최근시기 남조선에서 여러 대중조직이 출범하여 통일운동이 범국민적운동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동포들을 대표하는《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결성되여 통일운동을 전례없이 활성화하고있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대중조직결성의 필연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인민대중이 하나의 통일전선조직에 망라되여 그 조직화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갈 때 인민대중은 조국통일의 기본동력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될것이다.

조국통일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자면 또한 대중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은 언제나 투쟁을 동반한다. 창조의 과정은 곧 투쟁과정이며 투쟁을 떠나서 새것의 창조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투쟁과정은 자기 자신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조국통일을 위한 대중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서 인민대중의 통일의식은 더욱 제고되고 그들의 조직적결속력도 일층 강화된다. 여기에 대중투쟁이 통일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 중요방도로 되는 리유가 있다. 인민대중은 조국통일을 위한 벅찬 투쟁과정에 평소보다 더 귀중한 진리를 터득하여 민족자주사상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지니게 되며 대중조직의 정당성과 단결의 위력을 깨닫고 더욱 조직적으로 결속되

여 통일운동을 벌려야 하겠다는 자각밑에 그 조직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조국통일을 위한 대중투쟁에서는 무엇보다도 반외세자주화투쟁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반외세자주화투쟁은 전체 조선인민이 주인이 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차적과제이다. 반외세자주화투쟁에서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본의 편협한 반통일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외세자주화투쟁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민족적단결을 도모하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대중투쟁에서는 또한 조국통일의 대전제인 평화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과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과 련방제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조국통일은 평화의 담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쟁의 위험이 무겁게 드리우고있는 현시점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조국의 통일은 고사하고 민족의 존재마저 위태롭게 된다. 평화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은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안녕을 위하여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인민들이 최우선 중시해야 할 투쟁과제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어렵고 복잡한 조국통일운동의 성과적발전과 그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과학적인 원칙이며 전체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일관하게 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련방제에 의한 조국통일방식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시인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조성된 주객관적정세를 다같이 고려한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인민들은 련방제에 의한 조국통일방식의 정당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당면하여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경주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대중투쟁을 힘있게 벌리자면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서로 지지하고 공동보조를 취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협애한 지역적리익이나 계급계층적리익이 아니라 조국통일이라는 지상의 민족사적과업을 전면에 놓고 주장과 행동을 일치시키면서 상호련대를 강화해 나갈 때 통일운동은 말그대로 전인민적운동으로 활성화될것이다.

맺음말

조국통일을 위한 인민대중의 역할은 높이는데서 동포학자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임무가 자못 크다. 과학과 진리를 탐구하는 직업상 특성으로 하여 그 누구보다 정의감

이 강하며 선진사상과 시대발전의 추이에 민감한 지식인들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인민대중을 민족자주사상과 조국통일에 대한 리론과 지식으로 계몽시키는 홍보활동을 적극 벌릴 때 인민대중의 통일운동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가속화될것이다.

애국애민의 숭고한 리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통일을 위해 애쓴 동포학자들의 노력을 인민들은 잊지 않을것이다.

조국통일의 주도세력인 전체 인민대중이 통일을 념원하며 완강히 투쟁하고있는 이상 조국통일은 필연적이다.

우리 모든 지식인들은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인민대중의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적극 편승함으로써 시대의 선각자들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전민족대단결은 우리 민족구원의 옳바른 길

리 천 수

북과 남, 해외의 동포학자들이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안고 한자리에 모여앉아 민족구원의 방도문제를 론의할수 있게된것은 실로 민족통일사적의의를 가진다.

전민족의 대단결은 랭전시대의 비극적산물인 우리 민족의 분단을 끝장내고 온 겨레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방도이다.

주체사상은 새로운 민족관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의 본질과 내용, 그 실현방도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준다.

1. 전민족대단결의 본질과 내용

전민족대단결에 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전면적으로 해명해주시였다. 주석님께서는《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전민족대단결의 본질과 내용, 그것이 민족구원의 방도로 되는 근거와 그 실현방도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민족대단결의 중요성을 밝히시면서《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1페 지 라 고 천명하시였다.

전민족대단결에 관한 이 사상은 온 겨레의 력사적인 숙원을 깊이 통찰하고 민족구원을 위한 성업에서 전민족대단결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주체적으로 해명한데 기초한 정당한 사상이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민족적 단결에 관한 주장이 적지 않게 제기되였다. 어떤 사람들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호군수황》을 위한 단결을 주장하였으며《척양척왜, 보국안민》을 지향하는 대단결을 강조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자산계급적민족주의를 지향하는《대동단결》을 웨쳤고 조국분단후에는《반공애국》,《승공통일》을 지향하여 대단결을 력설하였다.

이와 같은 대단결의 견해들은 그것이 내세운 시대적, 력사적 과제의 제한성과 의거

하는 철학적세계관의 미숙성으로 하여 전민족공동의 리념으로 접수될수 없었다.

그 주장의 제한성과 오류는 그것이 조국과 민족의 개념정립에서 민족주체성을 상실하고 민족공동의 리념보다는 특정한 계급, 계층의 요구와 리익만을 강조하였으며 랭전시대의 사고방식과 집권세력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유착된데 있었다.

전민족대단결에 관한 사상은 그것이 전민족의 공동리념이 되도록 정립되고 체계화되여야 완성될수 있는것이다.

전민족대단결의 본질과 내용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그에 대한 주체적견해를 세우는데서 출발적문제로 된다.

전민족대단결은 본질에 있어서 민족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을 기초로 하고 온갖 차이를 초월하는 원칙에서 전민족의 뜻과 힘을 합치고 행동을 하나로 일치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전민족대단결의 핵심적내용은 민족분단의 력사적비극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구원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단결이라는것이며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는 대단결이라는것이며 온갖 차이를 초월하는 원칙에서 전민족이 리념적, 조직적, 행동실천상 하나로 단합하는 대단결이라는데 있다.

전민족대단결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분단의 력사적비극을 극복하고 민족구원의 성업을 이룩하는것을 근본 사명과 목적으로 하는 단결이다.

전민족대단결의 본질과 성격은 그 근본 사명과 목적에 의하여 규제된다.

오늘날 우리 민족대단결의 근본사명과 목적은 오로지 민족분단의 력사적비극을 청산하고 민족구원의 성업을 실현하는데 있다.

전민족대단결의 이와 같은 근본사명과 목적은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으로 하여 생긴 력사적비극을 청산하자는데로부터 제기되고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우리 민족 스스로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선택한것이 아니라 랭전시대의 산물이며 외부렬강들에 의하여 강요된것이다.

분단때문에 동족사이에는 불신과 오해가 깊어지고 중상, 비방, 대결은 한 계선을 넘어서서 동족상쟁을 유발시켰으며 지금은 조국강토우에 민족을 멸살시킬수 있는 핵전쟁의 먹구름이 무겁게 되덮고있다. 민족분단이 극복되지 않는 한 우리겨레는 그 누구도 마음편안히 살아나갈수 없는것이다. 민족분단의 력사적비극을 극복하는것은 온 민족의 지상의 요청이다.

우리 민족의 분단이 지속되고있는것은 전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지 못한것과 관련되여있다.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일떠섰더라면 민족의 분단은 분단초시기에 이미 극복할수 있었을 것이다. 전민족이 대단결로 민족주체적힘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단의 비극을 제때에 청산하지 못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민족의 대단결은 민족분단의 력사적비극을 끝장내고 민족구원의 성업을 이룩하는것을 근본 사명과 목적으로 하는 단결인것이다.

전민족대단결은 또한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는 대단결이다.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는 단결이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은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을 출발점으로 하는 단결이라는 것이다.

전민족대단결은 민족애에서 출발하고 그것을 정신적바탕으로 하는 대단결이다.

민족애는 자기동족에 대한 열렬한 애정이다. 자기 겨레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자기 겨레의 아픔과 불행을 자기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을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자각이며 의지이다. 민족애는 동족 모두에 대한 자기희생과 헌신적 복무정신이다. 그것은 또한 인간적사랑의 최고 결정체이다.

민족애는 전민족대단결의 정신적구심력이며 추동력이다. 뜨거운 민족애는 사람들의 계급, 계층상 요구와 지향을 비롯한 온갖 차이를 쉽게 넘어설수 있게 하며 분단때문에 생긴 사람들사이의 오해와 불신, 대결감정을 가시게 하며 민족공동의 리념에 기초하여 화합하고 단합하게 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민족애는 민족자주의식에 기초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은 민족자주의식을 근본초석으로 하는 단결이다.

민족자주의식은 민족의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자각과 민족의 운명을 자기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풀어나가려는 의지를 말한다.

민족자주의식은 자주적민족의 본질적속성이며 민족의 창조적 활동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다.

민족자주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 자주적활동은 민족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의 기본방식이다.

민족자주정신이 강한 민족은 일심단결하여 민족주체성을 과시할수 있지만 그것이 없는 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이겨낼수 없다.

우리 민족이 지난날 분단의 비극을 강요당하지 않을수 없었던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민족자주정신이 온 겨레의 가슴속에 튼튼히 자리잡지 못한데 있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민족자주정신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생사운명을 결정하는 근본요인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민족의 대단결은 민족자주정신을 근본초석으로 하는 단결이여야 하는것이다.

전민족대단결은 또한 온 민족이 모든것을 초월하는 원칙에서 마음과 힘, 행동을 하나로 단합하는 대단결이다.

모든것을 초월하는 원칙에서 한다는것은 지역적차이, 리념상차이, 계급, 계층별 요구의 차이를 넘어 모든것을 민족대단결이라는 근본적인 요구에 복종시키는것을 달리할수 없는 철칙으로 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전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민족공동의 근본적인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내세우고 거기에 각자의 요구와 리익을 복종시킨다는것이다.

원래 민족은 서로 다른 요구와 힘을 가진 계급, 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이다.

민족공동체안에는 언제나 민족공동의 요구와 각이한 집단의 요구의 관계문제가 있다.

그런데 민족공동의 리익이 실현되여야 계급과 계층의 리익도 실현될수 있는만큼 량자는 뗄수 없는 유기적통일을 이루고 있다. 또한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은 포괄적이고 큰것이지만 각자의 요구와 리익은 협소하고 작은것이다.

그러므로 전민족대단결에서는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각자의 요구와 리익을 복종시켜야 하며 각자의 리해관계를 뒤로 미루고 민족의 근본적인 리익을 첫자리에 내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전민족대단결은 온갖 차이를 초월하는 원칙에서 이루어지는 대단결이다.

전민족의 대단결은 또한 전민족의 리념상단합, 조직상단합, 행동실천상단합이다.

전민족의 리념상단합은 북과 남, 해외에 7천만겨레가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는것이다.

전민족의 조직상단합은 각계동포들이 전민족대단결의 가치밑에 지역별, 계급, 계층별 조직체를 형성하며 나아가서 범민족 단체를 만들어 온 겨레가 하나의 힘으로 굳게 결속한다는것이다.

전민족의 행동실천상단합은 북과 남, 해외에서 사는 동포 모두가 민족구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서 서로 지지하고 련대하며 공동보조를 취한다는것이다.

전민족대단결이 명실공히 전민족의 리념상, 조직상, 행동실천상 단함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민족구원의 강력한 주체적힘으로 될 것이며 민족구원운동을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될것이다.

이상과 같이 민족분단의 력사적비극을 극복하고 민족구원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온 민족이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며 온갖 차이를 초월하는 원칙에서 단결하고 리념상, 조직상, 행동실천상 하나로 단합한다는데 전민족대단결의 본질과 핵심적내용이 있는것이다.

2. 전민족대단결은 민족구원방도의 가장 옳바른 선택

민족구원방도의 옳바른 선택이란 온 민족의 근본적인 요구와 리익에 맞게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방도를 선택한다는것을 말한다.

민족구원방도선택의 정당성여부를 규정하는것은 전민족의 근본적인 요구와 리익에 부합되는가 안되는가 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사람들속에서는 우리 민족의 구원방도문제를 놓고 각이한 견해들이 제기되였지만 그것은 정당한것이 아니였다고 본다.

어떤 사람들은 외제와 주변렬강들의 참여론리를 들고나왔다. 이 주장은 민족구원문제해결에서 사대성과 민족허무주의의 발상이고 민족주체성의 상실이며 민족공동의

근본적인 요구와 리익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체제통일》방식을 들고나왔다. 이 주장은 일정한 계급적집단의 요구와 리익만 절대시하는 주장이며 동족상쟁을 재발케하는 극히 위험한 민족멸살방식이고 민족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바라는 온 민족의 근본적인 요구와 지향을 외면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남과 북의《체제양보》방식을 들고나왔다. 이 주장은 남에서는《민주화》를, 북에서는《개방개혁》을 수용해야 한다는것을 핵심적내용으로 한것이다. 이 주장은 현상적으로 보면 초월적인 방도같이 보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는 체제통일방식과 북에 대한《흡수통일》의 변종으로서 현실성없는 주장이라고 본다.

또한 이북체제를《고립》,《봉쇄》한다는 방도를 들고나온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 주장은 북부조국을 정치적으로《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봉쇄》하고 군사적으로《위협》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주장은 반세기동안 지속되여오는 반공대결의 연장이며 민족분단을 영구화하고 온 겨레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는 주장이다.

이 모든 견해는 온 민족의 근본적인 요구와 지향에 맞지 않는것이며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며 현실성이 없는 견해이다.

분단때문에 산생된 민족적비극을 청산하고 민족구원의 성업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옳바른 방도는 주체적민족관에 기초하는 전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주체적민족관은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초석으로 하는 민족관이며 민족의 본질을 주체적으로 정립하며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며 자주적활동을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기본방식으로 보는 민족관이다. 주체적민족관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주체적립장에서 보고 대하는 견해와 관점이다.

전민족대단결의 방도선택은 민족구원의 방도를 주체적립장에서 고찰한데 기초하여 주어진것이다.

존경하는 김정일비서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해결한다는것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전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것은 무엇보다 먼저 민족자주적립장에서 민족구원방도문제를 풀어나가게 한다는것이다.

민족자주적립장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구현한것이며 온갖 민족적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나라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민족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민족자주의 립장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사람들이 생존하고 발전하게 되는 오늘의 여건에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로 구현된다.

민족자주의 립장은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자기민족의 힘을 믿지 않는 민

족허무주의와 대립된다.

민족자주의 립장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민족자주의 립장이 투철하면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수 있으며 민족공동의 근본요구와 리익을 보다 귀중히 여기고 각자의 협소한 요구를 뒤로 미룰수 있는 자세도 가질수 있다.

전민족대단결을 민족구원의 방도로 선태한것은 이와 같은 민족자주의 립장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전민족대단결은 또한 창조적립장을 구현한 민족구원의 방도이다.

창조적립장은 자주적립장과 함께 주체적립장의 다른 하나의 핵심적내용이다.

창조적립장은 사회적인간의 창조적본성을 구현한것이다.

민족공동체는 창조적존재로서의 사람들이 모인 포괄적인 사회적집단이므로 개인에 비할바없이 큰 창조적 능력과 힘을 가진 창조적인 공동체라고 볼수 있다.

민족집단은 창조적존재이므로 자기운명을 개척해나가자면 창조적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창조적방법은 인식과 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민중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자기나라의 구체적실정과 력사적조건, 민족적특성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려면 창조적방법의 요구대로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민족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에 의거하고 자기나라의 구체적실정과 력사적조건, 민족적특성에 부합되게 풀어나가야 하는것이다.

전민족대단결의 방도선택은 창조적방법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민족구원의 방도를 전민족대단결에서 선택한것이 창조적방법을 구현한것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기성의 리론과 남의 경험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 조국의 분단현실과 우리 민족의 요구와 지향을 기본으로 하여 전민족대단결문제를 설정한데 있다.

무엇보다 전민족대단결에 관한 방도문제는 민족과 계급의 상호관계를 기성리론에 구애되지 않고 창조적립장에서 해결한데 기초하여 선택한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기성리론에서는 민족의 형성과 민족의 징표를 유럽에서의 근대 자본주의적민족형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정립하였다. 맑스주의자들은 경제중심의 관점에 서서 민족의 동질성을 정립하였으며 민족문제, 식민지민족문제를 계급혁명, 계급투쟁 지상주의적립장에서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민족대단결을 자기들의 혁명리론체계와 내용으로 설정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기성리론의 견해는 그 시대적, 력사적 요구와 과제 그 세계관적인 기초로 보아 오늘날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의 방도로 선택될수 없는 일면성, 제한성을 가진

다.

오늘날 우리 민족의 분단현실과 비극적상황은 민족의 자주성실현을 최우선의 과제로 제기하고 여기에 계급, 계층의 요구와 리익을 복종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원래 민족과 계급은 사회의 집단이라는 면에서 공통성을 가질뿐 량자는 서로 다른 본질적특징을 가지고있다.

계급은 사회생활 특히는 정치 및 경제 생활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갈라지는 사회적집단이다.

이와는 달리 민족은 피줄과 언어, 령토, 문화의 공통성에 의하여 갈라지는 사회의 가장 포괄적인 집단이며 사람들이 생존하고 생활하며 발전하는 기본단위이다. 민족은 각이한 계급, 계층과 서로 다른 지향과 요구,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다. 민족문제는 민족적자주성을 옹호하며 실현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성실현문제가 초미의 과제로 제기되고있을때에 그것을 외면하고 협소한 계급적요구를 내세우고 계급적대립과 투쟁을 민족공동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대치시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태롭게 하는 부당한짓이 아닐수없다.

오늘 우리 민족 모두는 민족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제기하고있다. 민족통일은 북과 남, 해외의 각계동포들의 사활적요청이다.

그러므로 온 민족의 근본적인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내세우고 여기에 각이한 계급, 계층의 요구와 리익을 종속시키는것은 민족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의 근본방식으로 된다.

또한 전민족대단결의 방도선택이 창조적인것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우리 민족의 지역적, 계급적, 리념적, 제도적 차이를 초월하는것을 대단결의 원칙으로 정립한데 있다.

7천만겨레는 민족분단때문에 서로 다른 두제도와 두개정부 밑에서 살아가고있다. 그들속에는 민족주의자도 있고 주체주의자도 있으며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유산자도 있고 무산자도 있으며 유신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다. 그들의 구체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도 각이하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 민족의 실상이다.

이와 같은 실상에서 전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와 관련한 리론도, 공식도, 처방도 없으며 누가 해본 경험도 없다.

문제해결의 정로는 전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문제를 우리 민족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방법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오늘 우리 겨레들은 차이점과 동질성의 두면을 가지고있다. 이 두면 가운데에서 차이점은 비본질적인것이며 민족이라는 동질성은 본질적인것이다. 거주지역상차이, 리념상차이, 계급계층상차이, 신앙의 차이는 우리 겨레의 민족적동질성을 변경시키지 못한다. 구체적인 여러가지 차이성에도 불구하고 7천만겨레는 내동족일수밖에 없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므로 전민족 대단결에서는 비본질적차이점을 초월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기본으로 내세워야 한다.

이와 같이 전민족대단결의 방도선택문제는 우리 민족이 처한 구체적실정에 부합되게 창조적으로 해결한데 기초하여 주어진것이다.

다음으로 전민족대단결이 민족구원의 가장 옳바른 방도선택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능히 실현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이라는데 있다.

전민족대단결의 현실적가능성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에게는 전민족대단결의 력사적전통이 있으며 전민족대단결의 실천적경험도 가지고있다는데 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은 외래침략자들이 침략해왔을 때는 나라의 자주적존엄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신분상차이, 계급계층별차이, 지역상차이, 신앙상차이를 초월하여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쳐 싸움의 길에 일떠나섰다. 그리하여 단결된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민족과 나라의 존엄을 지켜냈었다.

일제침략자들이 3천리강토를 강점하고 온 민족을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 하였을 때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였다. 여기에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량심적인 종교인, 민족자산층 할것없이 온 겨레가 참가했다. 그들은 자신의 생사존망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시키면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광복을 위해 싸워 마침내 일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광복을 성취하였다. 이와 같은 전통은 오늘날 우리 민족대단결의 력사적원천으로 튼튼히 자리잡고있다.

전민족대단결의 방도는 또한 8. 15 해방후, 북남각계 정당, 단체 인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북남협상경험에 기초하고있다. 1948년 4월 북남련석회의의 실현은 그 실례로 된다.

력사적경험은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모든것을 초월하는 원칙에서 발벗고 나선다면 민족구원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이 능히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90년대에 들어선 오늘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애국동포들은 90년대를 민족통일의 시기로 맞이하려는 열망을 안고 마음과 힘을 하나로 단합하기 위한 운동을 줄기차게 벌리고 있다. 이것도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이다.

이와 같이 전민족대단결을 민족구원의 방도로 선택한것은 그것을 능히 실현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에 기초하여 제기된것이다. 여기에 그 선택의 정당성의 또 한 측면이 있다.

3. 전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

전민족대단결을 실현한다는것은 북과 남, 해외의 각계동포들이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리념상, 조직상, 행동상 단합을 이룩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조선민족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그리고 로동자, 농민, 지식인과 청년학생, 정치인, 종교인, 군인 할것없이 모두가 민족구원의 성업을 위하여 마음도 힘도 실천행동도 하나로 단합하게 한다는것이다.

전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온 민족의 리념상단합을 이룩하는것입니다.

온 민족의 리념상단합을 실현한다는것은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자기의 협소한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결합된다는것이다.

온 민족의 리념상단합을 실현하는것은 전민족대단결의 선결적요인이며 근본담보이다. 온 민족의 리념상단합을 실현하여야 전민족의 조직상단합도, 행동실천상공동투쟁도 실현할수 있다.

전민족의 리념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각계동포대중들을 민족자주정신으로 각성시켜야 한다.

민족자주정신은 온 민족의 사상의지적단합의 정신적구심점이며 민족대단결을 위한 온 겨레의 활동을 규제하는 결정적요인이다.

각계동포대중들이 민족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자기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그들이 전민족대단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애국애족의 열정을 가지며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바쳐 전민족대단결을 밀고나갈수 있다.

사람들을 민족자주의식으로 각성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민족제일주의정신을 심어주는것이다. 이와 함께 외세의존심과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를 극복하는것이다. 외세의정심과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는 뿌리깊이 자리잡고있는 반민족적사상의식이며 민족자주의식을 침식하는 장애요인이고 온 민족의 리념적단합실현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외세의존심과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 바로 여기에 전민족의 리념상단합실현의 기본방도가 있다.

온 민족의 리념상단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각계동포들속에 민족공동의 리념을 첫자리에 내세우고 여기에 각자의 요구와 리익을 복종시켜나가도록 하는 사업을 진지하게 벌려야한다.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는 각이한것이다. 각이한 요구와 리해관계를 전면에 제기한다면 언제가도 전민족의 리념상단합은 실현될수 없다고 본다.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가 전민족공동의 리념에 복종되여야 전민족의 리념상단합은 공고하게 실현될수 있다.

이 마당에서 중요한것은 각계동포대중들이 민족애, 조국애의 정신으로 각성하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것이다.

자기동족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온 몸에 차고넘쳐야 민족의 행복을 위해 자기자신을 헌신할수 있다. 자기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불타올라야 그를 위해 자기의 청춘

도, 재산도, 목숨도 주저함이 없이 바칠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애, 조국애로 각성시키는 사업은 전민족의 리념상단합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방도상 요구로 되는것이다.

온 민족의 리념상단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동포들 사이에 형제다운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고 화합을 이룩해 나가도록 깨우쳐야 한다고 본다.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모든것을 초월하여 마음과 힘, 행동실천을 하나로 단합하는데서 선결적조건은 상호형제다운 리해와 신뢰를 점차 두터이 하며 화합해나가는 것이다.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화합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오해와 불신, 대결 감정을 가시도록 하며 대결과 불신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하지 못하도록 선도하는것이다.

동족들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리해와 신뢰, 화합을 두터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동포들이 자유롭게 접촉하고 왕래하며 대화를 확대해나가도록 하며 통일에 대한 론의와 활동에서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전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조직상단합이 이룩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의 조직상단합이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그리고 로동자, 농민, 지식인과 청년학생, 정치인, 종교인, 군인 할것없이 우리 겨레 모두가 민족구원을 위하여 범민족적으로 결속된다는것이다.

전민족의 조직상단합은 전민족대단결의 골격이며 구심력이고 민족구원의 실력이다. 그리고 전민족의 리념상단합의 전진적발전이며 온 민족의 행동상단행의 토대이다. 그러므로 전민족의 조직상단합을 실현하여야 전민족대단결을 튼튼히 다질수 있으며 7천만겨레의 힘을 하나로 묶어 통일의 대문을 열어제끼고 민족구원의 성업을 이룩할수 있다.

전민족의 조직상단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늘 현재 전민족대단결을 지향해나서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에 붙이는 원칙에서 손잡고나가야 한다.

민족분단이 50년동안 지속되여온 과정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성업에 해를 끼쳐온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지난날 민족앞에 끼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오늘날 전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몸바쳐나선다면 과거를 묻지 않는 원칙에서 그런 사람들과도 손잡아야 하는것이다.

고와도 미워도 7천만 우리 겨레는 버릴수 없는 내동족이며 혈육들이고 조국이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따사로운 어머니품인것이다.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조직적단합이 이루어져야 명실공히 전민족의 대단결이 이루어지게 될것이다.

전민족의 조직상단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 해외의 동포대중이 범민족적

으로 결속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동포들의 조직상단합이 전일적인 범민족적조직으로 결속되는것은 전민족대단결운동의 필연적귀결이며 오늘날 온 겨레의 성숙된 요청으로 되고있다.

북의 동포대중들은 조국을 통일하고 민족구원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체들을 튼튼히 마련하고 그것을 공고발전시켜나가고있다.

남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선진적인 지식인, 진보적종교인들도 민족구원을 위한 계층별조직체를 꾸려놓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본다.

해외 각지의 동포들도 자기의 특성을 살리면서 민족구원을 위한 대중적조직체들을 형성해나가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동포단체들이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전일적인 범민족적조직으로 결속된다면 그것은 실로 민족구원의 위력한 힘으로 전변될것이다.

전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끝으로 전민족의 행동상단합을 이룩하는것이다.

전민족의 행동상단합을 실현한다는것은 북과 남, 해외의 통일지향적인 정당, 단체들과 각계동포들이 민족구원을 위한 운동실천에서 서로 지지하고 련대하며 공동보조를 취한다는것이다. 전민족의 행동상단합을 실현한다면 조국통일운동과 민족구원의 성업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으며 전민족대단결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여 그처럼 바라던 통일의 숙원은 거의 다된것이나 다름없게 될것이라고 본다.

전민족의 행동상단합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애국력량들이 민족구원을 위한 운동에서 련대와 공동보조를 취하는것이다. 민족구원을 위한 운동에서 북과 남, 해외의 애국력량이 상호련대하고 공동보조를 맞추며 서로 지지해나선다면 전민족대단결의 위력은 더욱 크게 과실될것이며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그 어떤 난국도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능히 극복할수 있다고 본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지식인, 종교인, 군인들이 민족구원사업에서 서로서로 지지하고 공동행동을 취하며 북과 남, 해외의 동포조직들이 또한 공동보조를 취하는 바로 여기에 전민족대단결의 생명선이 있는 것이다.

전민족의 행동상단합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민족구원의 성업을 위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특색있게 이바지하도록 하는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동포대중의 능력과 힘은 무궁무진하며 그 형태는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힘은 많지만 돈이 없으며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지만 돈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돈은 있지만 지식이 없는것이다. 사람들의 각이한 능력에 부합되게 민족구원사업을 위하여 역할분담을 잘하는것은 전민족의 행동실천상단합의 합리적인 방도라고 본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특색

있는 기여를 하면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겨레들이 민족구원사업에 떨쳐나선다면 전 민족의 행동상단합은 높은 차원에 올라서게 될것이며 조국통일성업은 그만큼 앞당겨 질것이다.

전민족의 행동상단합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조국통일과 민족구원사업을 방해하는 요인과 전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경향을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이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전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은 애국세력과 매국세력, 통일력량과 분렬세력 사이의 투쟁이며 민족자주력량과 사대세력 사이의 투쟁이라고 본다. 돌이켜 볼 때 전민족대단결이 지난날 완전히 실현될 수 없었던것은 전민족대단결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렬세력의 방해작용때문이였다.

오늘날 전민족대단결실현을 저애하는 요소와 경향은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본다.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은 랭전시대의 산물인 민족분단의 력사적비극을 지속하게 하며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을 이룩할수 없게 하는 저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적극 벌려야 하는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족자주의식과 민족애를 침식하는 외세의존자세와 사대적사고방식을 반대하며 민족멸살을 가져다 줄수 있는 핵전쟁위험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강토의 비핵화,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련대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고 분단장벽을 고정화하고 북남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저애하는 요소를 반대하는 공동행동도 진지하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뜻과 힘을 하나로 단합하고 공동행동을 진지하게 벌려나간다면 그 어떤 장애요인도 앞길을 가로막아나선다해도 민족구원의 성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며 민족통일의 숙원은 기어이 성취되고야 말것이다.

원불교의 상생철학과 통일관

金 永 斗

1. 머리말

20세기末에 인류는 그야말로 세기말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기말적 위기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는다면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계의 위기(ecologic crisis)와 전쟁의 위험을 들 수 있다. 각종 공해로 인한 생태계의 위기는 그 범위에 있어 대규모적으로 한번 위험수위를 넘었다 하면 원상태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환경오염은 고대나 중세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문제로써 20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부과된 과제이다.

현재 남한만 하더라도 전국의 산천에 산성비가 내리고 있는 실정이며, 낙동강물의 오염으로 경상도 지역의 수돗물에서 악취가 풍길 정도이다. 이같은 상황은 낙동강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하천이 대동소이한 상황에 처해있다. 물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도시의 대기에 포함된 중금속 오염치도 위험수치에 육박하고 있다. 사람의 목숨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물과 공기가 오염되어 생명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라면 우리의 문명 나아가 우리의 삶 그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 보아야하리라고 생각한다.

환경오염 다음으로 전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전쟁은 원시시대부터 있어온 일이지만, 인류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걸프전과 유고 보스니아 사태, 그리고 소말리아 내전 등을 보면 이러한 전망이 현실을 안이하게 본 지나친 낙관임을 상기시켜 준다.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는 그러한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 동양의 五行사상

동양사상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周易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상과 같은 위기를 일단 相剋의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상극이란 글자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이길려는 데서 초래된 불협화음의 상태'를 말한다. 불협화음이 심해지면 죽음의 상태로 귀결된다. 따라서 상극이란 곧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관계이다. 앞에서 말한 환경오염과 전쟁은 상극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상극의 반대에 相生이 있다. 상생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상태요 관계이다. 상극과 상생은 결과에 있어서는 서로 판이하게 다르지만 본질적 차원에서 보자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극의 상황을 어떻게 상생의 상황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동양의 哲人들이 추구했던 목표도 사실은 상극을 상생의 관계로 전환하는데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상생과 상극을 이야기할 때 五行, 즉 水, 火, 金, 木, 土를 가지고 설명한다. 水는 火를 剋하고 火는 金을 剋하는 관계가 상극이라면, 水는 木을 도와주고 木은 火를 도와주는 관계가 상생이다. 수, 화, 금, 목, 토가 지칭하는 대상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원소'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것 같다. 그러므로 오행은 우주의 총체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원소로 압축시켜 볼 수 있다. 서양에도 고대 희랍의 엠페도클레스가 주장한 地, 水, 火, 風의 4원소설이 있다. 얼핏볼 때 오행설과 4원소설은 기본 착상이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무엇이 다르냐하면 4원소설의 지, 수, 화, 풍은 서로 독자적 요소로 간주되는 반면, 오행설의 수, 화, 금, 목, 토는 각각 단절된 요소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 관계로 설정한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4원소설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고립적 세계관에 입각해 있다면, 오행설은 '너와 나는 한 배를 타고 있으므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유기체적 세계관에 입각해 있다. 서로 도와주고 살려주는 상생의 관계가 바로 조화의 세계관이다.

환경오염과 전쟁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상생의 철학은 많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그 한예로 남한의 낙동강 오염을 인류학자인 金京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낙동강 오염의 주요원인 가운데 하나가 수세식 화장실에 있다고 진단한다[1]. 수세식 화장실은 일반 가정의 인분이 모두 강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인분과 물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상극의 관계이다. 상극이 결과적으로 오염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비해 인분과 흙은 상생의 관계이다. 인분이 흙으로 들어가면 비료가 되는 것이다. 비료가 되어 채소와 식물을 키우는 자양분의 역할을 한다. 인분을 상생의 방향으로 처리해야만 오염문제가 풀린다는 주장은 여러가지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원불교의 상생철학

상생철학은 원불교사상에서 특히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는 '恩'의 사상이고[2], 둘째는 '돌리자'의 사상이고[3], 세째는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4]이다.

1)恩의 사상은 四恩이라고 해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을 이야기 한다. 원불교에서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를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은을 교리의 중요한 과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四恩가운데서 天地가 주는 은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하늘의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됨이요.
2. 땅의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됨이요.
3. 일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됨이요.
4. 바람, 구름, 비, 이슬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써 우리가 살게 됨이요.
5.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생명을 얻게 됨이라.

이러한 天地 背恩의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가 만일 천지에 배은을 한다면 곧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니, 알기 쉽게 그 내역을 말하자면 天道를 본받지 못함에 따라 응당 사리간에 무식할 것이며, 매사에 정성이 적을 것이며, 매사에 과불급한 일이 많을 것이며, 만물의 변태와 인간의 생, 노, 병, 사와 길, 흉, 화, 복을 모를 것이며, 덕을 써도 상에 집착하여 안으로 자만하고 밖으로 자랑할 것이니, 이러한 사람의 앞에 어찌 죄해가 없으리요. 천지는 또한 공적하다 하더라도 우연히 돌아오는 고통이나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통은 천지 背恩에서 받는 죄벌이니라.」라고 밝히고 있다.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 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됨이요.
2.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심이요.
3.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심이니라.

부모 배은의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가 만일 부모에게 배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배은을 하였건마는 세상은 자연히 나를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요, 당장 제가 낳은 제 자손도 그것을 본받아 직접 앙화를 끼칠 것은 물론이며, 또는 世世 生生 去來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동포의 은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만일 부모에게 배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배은을 하였건마는 세상은 자연히 나를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요 당장 제가 낳은 제 자손도 그것을 본받아 직접 앙화를 끼칠 것은 물론이며 또는 世世 生生 去來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동포 배은의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가 만일 동포에게 배은을 한다면, 모든 동포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며 서로 원수가 되어 개인과 개인끼리 싸움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싸움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반목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를 보지 못하고 전쟁의 세계가 되고 말 것이다.」

법률의 은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다.」

법률 배은의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가 만일 법률에 배은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아니하여, 부자유와 구속을 받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타락되며 세상도 질서가 문란하여 소란한 수라장이 될 것이니라.」등이다.

2) '돌리자'의 사상은「일상수행의 요법」에 나온다. '돌리자'라는 표현은 원불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독특한 말로써 '善用'의 뜻과 동일하다. 무엇이 잘못됐을 때 이를 버리거나 강압적으로 징벌하기 보다는 '돌려서 쓸'방도를 궁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극의 상황을 상생의 상황으로 전환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원불교 사상의 묘미가 있다. 이와 같은 항목들은 매일 매일의 수행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설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배울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근래에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핵문제도 이를 돌려서 쓰는, 善用이 필요하다. 원자력이 부작용을 지니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폐기할 것이 아니라 선용의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한다. 아직은 핵에너지를 대체할 별다른 에너지원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3)强者弱者 進化上의 요법

소태산에 의하면 '무슨 일을 막론하고 이기는 것은 强이요 지는 것은 弱'이라고 하여 포괄적 개념으로 표현한다. 강약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보면 강대국과 약소국, 침략과 비침략, 약탈과 피약탈, 선진국과 후진국,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말하는 진화는 진화론식의 약육강식, 즉 强弱이 투쟁하여 '약자가 도태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개념이 아니다. 투쟁보다는 일종의 共進化를 의미한다. 투쟁을 정당화하면 강약은 영원히 투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곧 영원한 불행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자의 준비가 필요하다.「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도 전체적인 경향은 강자보다는 약자의 준비쪽에 비중이 실려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약자는 원망만하지 말고 강자가 될 방법을 차분히 모색해야한다. 그 방법으로 원불교에서는「四要」를 제시한다. 사요는 '自力養成', '智者本位', '他子女教育', '公道者崇拜'이다.

자력양성－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는 자력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취지이다.

지자본위－班常의 차별, 嫡庶의 차별, 노소의 차별, 남녀의 차별, 종족의 차별이 철폐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가진 불합리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알아야 처방이 나온다. 모르면 당한다. 아는 것이야 말로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따라서 지성의 연마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타자녀 교육－남의 자녀도 내자녀처럼 잘 가르치자는 것이다.

공도자숭배－덕망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배출할 때 국가사회의 발전이 온다. 그러한 공도헌신자를 존중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四要는 결국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발전의 원리가 될 것이다.

4. 원불교의 통일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분단국가였던 월남을 비롯하여 독일, 예멘공화국 등이 무력 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각각 통일되었다. 또한 동구라파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말미암아 좌, 우의 이념적인 대립도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그런데 한반도는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념적인 대립과 함께 분단국가의 대치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에서 현재와 같이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한 相剋상태가 계속된다면 19세기말(舊韓末)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相生할 수 있는 통일의 준비작업이 시급하다. 준비작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사상적인 분야에 촛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상적인 분야의 동질성 회복은 통일이후에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통일을 위한 사상분야의 작업이라 한다면 원불교 사상과 북한 주체사상 사이의 비슷한 점과 상이한 점을 분석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중에서도 남북한의 대립을 해소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비슷한 점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본다. 그래야만 상극보다는 상생쪽으로 갈 수 있다. 만약 비슷한 점을 제쳐놓고 서로간의 차이점에만 주목하다 보면 이질감을 더욱 조성하는 쪽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비슷한 측면은 다음과 같다.

1. 원불교 교단의 처음 시작에서부터 이제까지의 성장과정이 오로지 민족자본에 의해서 운영되어온 점이다. 원불교 교단 초창기에 여러 선배들이 간척공사나 숯장사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외부세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수히 '자력양성'에 의지했다는 증표이다. 이에 비해 남한의 카톨릭, 개신교 등은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병원과 학교 등의 분야에 상당액의 외국자본의

도움이 있었음을 상기해보면 매우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선교사들도 처음 한국에 들어와 포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원불교의 초창기 선진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물질적 궁핍까지는 아마 겪지 않았을 것이다[5].

2. 원불교가 한국에서 시작된 점이다. 원불교는 물론 세계 종교로서의 보편성도 지니고 있지만 아울러 한민족의 정서에서 배태된 종교라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 어느 종교든지 처음 시작한 그 나라의 민족적 정서 내지, 문화적 환경이 그 종교의 교리와 의례의 기초가 됨은 공지의 사실이다. 기독교의 의례나 세례명 등을 보면 유대민족의 독특한 관습과 분위기가 물씬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원불교가 한국에서 시작됐다 함은 한국적인 풍습과 분위기를 간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원불교가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된다면 이러한 한국적 요소는 세계인들에게 오히려 하나의 매력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종교에 있어서 보편성과 함께 독자성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3. 원불교 신앙의 진리적 성격이다. 진리적이라 함은 신앙의 대상으로서 기독교의 '예수'나 이슬람의 '알라'와 같이 특정한 神的 對象을 설정하지 않고 一圓相이라고 하는 둥그런 원(0)을 모신 점이다[6]. 일원상을 모신 이유는 진리에 대한 갈망일뿐 특정神이나 혹은 도그마를 강요하여 형이상학적 독단을 주장하거나, 사람을 묶어 놓기 위함이 아니다. 원이 상징하는 보편적 진리 그 자체의 무규정적 성격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과 우주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특정한 신을 모시는 종교간에서 만나서 대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알라신의 이슬람과 예수님의 기독교는 만나기가 어렵지 않은가 본다. 아랍과 이스라엘, 레바논 내전 그리고 유고의 보스니아 내전 등은 그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원불교는 신없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다. 진리만을 신처럼 모시고 생활하기 때문에 진리의 열린 광장에 누구나 나와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4. 물질개벽을 인정하는 점이다. 儒, 佛, 道敎를 비롯한 동양의 전통종교들이 대부분 유심론적인 경향에 치우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자연과학을 비롯한 과학문명의 발달이 어려웠다고 본다. 19세기 西勢東漸의 시기에 동양세계가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한 원인도 따지고 보면 과학의 열세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과학문명의 밑바탕에는 물질적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다. 물질적 세계관이 지닌 위력은 유심론적 세계관에 익숙해 있던 동양인들에게는 일대 충격이었을 것이다. 원불교의 출발도 이러한 충격에 대한 하나의 대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어와 영육쌍전의 가치속에는 그러한 극복의 의지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원불교는 과학 내지 물질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善用하려는 입장이다[7].

5. 利他的인 심성을 함양할 수 있는 도덕적 수련을 중시하는 점이다. 이는 원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지만 원불교의 수련방법은 불교적 수련방법을 이어받으면서도 전통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현대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기

내면의 이기적 마음과 이타적 마음을 점검하는 「有無念 대조법」과 「상시일기법」등이다[8]. 그리고 근래에 유무념 대조를 체크할 수 있는 손목시계와 같은 일상용품의 개발도 현대화의 한 예라 할 것이다.

6. 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와 같은 대사회적인 이타행이다. 특히 타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볼 때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의 상황에서 교육의 불균등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음을 유의해야 한다. 타자녀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기회의 균등은 사회적 평등을 이루어내는데 제 일차적 관건이 된다고 본다. 원불교가 한국의 여러 신종교들과는 달리 일찍부터 초등교육기관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을 세운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이유에 바탕한다. 원불교가 한국사회에서 이정도까지 성장하는 데는 특히 원광대학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7. 四要가운데 '공도자 숭배'는 지도자의 역할을 중시한 것이다. 몇년전 걸프전쟁 때 이라크 국민이 참혹하게 당한 전쟁 발발의 원인은 미국의 이기적 패권주의도 작용하였지만, 상당부분 후세인이라는 지도자의 정책결정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대사회에서 지도자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케이스다. 지도자의 판단은 그 소속된 집단, 나아가서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 한반도에도 중국의 孫文과 같은 지도자가 요청된다. 그러한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애정어린 관심도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원불교에서 제시할 수 있는 통일관은 역시 恩사상과 상생철학에 바탕한 조화와 공존지향의 통일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남한 신정부가 통일 3단계 방안으로 제시한 남과 북의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案이나, 북한의 잠정적으로 연방제를 거친 후 통일국가로 나가자는 案[9]. 이 크게 볼 때 서로 상통성을 갖고 있다고도 보아지며, 통일 조국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 다만 앞으로 구체적 실천 방안까지도 이러한 恩과 相生의 원리에 입각했으면 한다.

이상으로 원불교의 상생철학과 이에 바탕한 통일사상 및 통일관을 간결히 정리해 보았다.

〈주〉

1)동아일보, 94.2.2日字
2)圓佛敎全書, 四恩, 원불교중앙총부, 1977, pp.27-46
3)위의책, p.54
4)위의책, pp.85-86
5)위의책, 원불교 교사, pp.1048-1056참조
6)위의책, 一圓相, pp.23-26 참조
7)위의책, 開敎의 動機, p.21
8)위의책, 日記法, pp.70-72 참조
9)統一白書, 국토통일원, 1993, p.37

민족문제에 관한 철학적 전망*
—생산양식의 변동과 문화적 생산력—

김 도 종

1. 민족문제에 다가서는 관점

민족에 관한 문제는 치열한 국제정치의 현실적 문제로서 이론적 논의의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또한 어느 민족이든 지간에 "사람다운 생활"을 위해 해결을 요하는 시급한 일이기도 하다.

"사람다운 생활"을 위해서 민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민족의 본질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민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한다면 "민족"은 우선 혈연적이며 자연적인 집단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 때의 혈연적이며 자연적인 집단이라는 말은 20세기 중엽 도이치 나치스당의 혈통주의와 같은 뜻은 아니다[1]. 특정한 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그것을 정치화하려는 혈통주의는 근본적으로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뜻의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민족"이 혈연적이며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 민족이 어떻게 다양한 고유성을 갖는가 하는 점의 기초가 된다. "민족"은 일단 생물학적 공통성을 가진다. 각 민족의 생물학적 공통성이 유전적으로 형성된 것이 어느 시기인지에 대해 누구나가 공인하는 정설은 없지만 공통의 유전적 형질을 가진 민족은 공통의 언어를 사용한다. 공통의 언어를 가진다는 것은 유사한 삶의 방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리와 풍토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2], 지리와 풍토의 기반은 삶의 방식을 넘어서서 하나의 "기질"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것을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삶의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적 기질과 민족성은 생물학적 유전형질과 함께 후세에 전해진다고 할 수 있다[3].

삶의 방식을 우리는 문화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민족의 문제는 동질의 문화를 소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찰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사람은 "자기다움"을 확인하고 세워가야만 하는데, 자기다움을 찾는 것은 단순한 혈통적 동질성이 아니라 문화적 동질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는 어떤 개인의 산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산물이다. 어떠한 가족은 가족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 특정한 지방이나 직업단체들도 그 나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문화는 그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며, 삶에 대한 일정한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 일정한 단위를 이루는 것은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인데, 그것은 바로 "민족"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민족은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동질의 문화를 형성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동질의 문화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결국 고유한 삶의 틀을 만든다. 이 때의 삶의 틀이란 삶의 방식, 삶의 지향성, 세계관 등을 포괄하는 말이다. 이러한 삶의 틀은 일시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이 삶의 틀은 여러 세대에 걸쳐 만들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체되거나 소멸되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의 틀, 문화적 환경 안에서 자기다움을 확인(identify)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내적이거나 외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민족 문제에 접근하는 출발점은 바로 자기다움을 확인하고 그것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과 결부될 수 있다고 본다.

2. 민족문화의 자율성과 국제주의

민족은 문화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 단일한 정치적 단위를 형성하는데 그것을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적 주체를 갖지 못한 민족이 그 문화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바이다. 민족은 내용이고 국가는 그것의 형식[4] 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를 세우고 정치적 주체를 확립한 민족은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을 확대하려고 함으로써 갈등을 일으켜 왔다. 민족들 사이의 침략전쟁은 기본적으로 자기민족중심의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업사회의 시기에는 주로 땅과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있었다. 예를 들어, 16세기 초엽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인구의 4/5는 농민이었다고[5] 하는데, 이러한 인구분포는 그 사회가 농업중심사회임을 쉽게 증명하는 것이다.

농업 중심사회의 주요한 생산수단은 토지와 육체노동력이었던 만큼 여러 민족국가들은 땅과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지속하였다.

유럽의 종교개혁 이후 교황권에 대한 민족국가왕들의 지배권강화와 더불어 민족의식은 근대적인 의미로 정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각 민족들의 동질적인 민족의식이 분열되었다. 그것은 생산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민족내부의 계급분열이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인데, 이 때의 개인들은 민족국가 내부에서 자기다움을 찾고 세울 수 있기 보다는 오히려 따돌려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나아가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시장의 국제화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근대의 제국주의라는 세계질서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막스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이러한 사실을 정당하게 지적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 동부 유럽에 대한 소비에트 국가의 사회주의 종주

권이 무너진 뒤에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민족간의 대결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역사적 진실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 있게 하였다[6].

소비에트 체제 붕괴 이후에 등장한 각 지역의 민족문제는 어떠한 성격의 국제사회에서든지 민족의 동질성 유지가 사람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평등의 이념을 표방한 소비에트 체제에서 실제로 민족 간의 평등은 지켜지지 않았다[7].

아메리카의 경우에도 그렇다. 자유주의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라고 하면서도 그 사회의 인종적 편견은 심각하다.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 인종간 갈등, 민족간 갈등은 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8].

이처럼 동일한 체제 안에서의 다민족 사회에서 실질적인 민족간 불화가 있으므로 하여 사람다운 삶의 조건에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민족문제는 정치적, 경제적인 단순한 절차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막스는 경제관계에서 생기는 계급분열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했는데 삶의 방식은 경제적인 내용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이미 문제제기를 한 터이다.

민족의식이 형성되는 것도 사실은 경제행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가치관, 인생관, 우주관, 종교적이거나 예술적 성향 등은 경제행위와 무관하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것인 만큼,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인 문화의 자율성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 민족의 문화적 자율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한에서 국제주의는 강대국의, 또는 헤게모니를 가진 민족의 폭력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생산양식의 변동과 민족의 주체성

근대 이후의 상공업사회는 그 성격상 국제화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강대국의 패권주의가 세계질서를 움직였다고 할 수 있다. 생산자원과 소비시장, 노동력과 자본의 국제화는 국가간 무역을 세계질서의 근본 내용으로 하도록까지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20세기 말엽의 이 시기에 전세계는 자국의 이익에 맞는 무역질서를 건설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근대 이후 공업화의 발전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자원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보하여, 노동인구를 찾아 다니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양적인 팽창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이후에야 공업화 대열에 참가한 나라들이 일정한 생산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종래의 공업화 선발국들과 새로운 긴장관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후발공업화국가와 선발공업화국가, 그리고 각 국가간의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현 시기 국제질서의 근본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도 아메리카 등 소수국가의 주도권이 주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민족간, 국가간에 평화와 안정을 확실하게 보장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9].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민족문제는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경제의 국제주의 속에서 요구되는 민족문화의 자율성에 관한 것이다. 경제의 국제주의는 시장의 세계적인 단일화를 말하는 것인데 교통과 통신의 첨단화는 세계적인 시장 단일화를 보증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토지와 인구가 생산수단의 중심이 되는 역사의 시기에는 영토확보전쟁의 살륙이 직접적인 공포를 주었고, 이를 지키려면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현대의 전쟁방법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토지나 천연자원이 아니라 기계기술이 주요한 생산수단이 된 사회에서는 경제력이 그 민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기계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화의 사회는 양적인 팽창을 지속하다가 새로운 질적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그것은 바로 정보화 사회인데, 주요생산 수단과 통신의 질적 전환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양식의 변동은 일차원적인 영토 중심의 국제질서로부터 무형의 문화적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로의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토나 천연자원, 일차적인 노동력이 국력을 말하던 시대에서 자동화를 포함한 기계기술 능력이 그 힘을 대변하던 시대를 지나 복합적인 정보의 생산과 수용능력이 그 국가나 민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시대로 접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복합적인 정보의 생산과 수용능력은 단순한 차원의 과학기술의 힘만이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과 예술의 능력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것을 문화적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적이며 도덕적인 힘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의 원천을 개발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며, 그것을 재생산하여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 문제가 있다. 과거의 통신이 전화나 전파를 이용한 대중전달매체, 서적과 같은 단순한 것이었고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것의 정보전달 능력은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정보통신은 초고속의 속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다량의 체계를 갖춘 정보가 특정한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의 정보통신을 복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정보통신은 산업에 대해서만 제어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 구조를 제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근대 공업화과정에서 볼 때 단순한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민족적 자율성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강대국의 문화적 종주권이 가능한가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

정보통신 시대에도 강대국은 패권주의 정책을 가질 수 있다. 군사적 패권주의 시기에서 경제적 패권주의의 시기로, 그리고 이제는 문화적 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적 패권주의의 시기는 대량생산체제가 아니고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

하므로 민족적, 지역적 특성을 생산체제에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지배를 시도하려는 세력도 종래의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관계하려는 대상지역과 민족의 사정을 고려하는 상품을 개발하여야만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라도 상호주의와 문화적 다원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발 공업화국가들이 자국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후발지역에 판매하던 관계에서 구매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는 상품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대의 국제주의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다원주의 위에 서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특정지역의 문화를 분석하고 재창출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강대국들이 소유하게 되는 형태로 문화적 패권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민족적 자율성은 자기문화의 재생산 능력이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의 재생산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동질성을 토대로 사회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나아가서 변화를 주체적으로 추동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4. 문화적 생산력과 민족적 동료애

문화적 재생산은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삶의 제반조건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어서 전통문화에 대한 패쇄적 보수는 현재적 삶에 알맞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적 재생산의 적극적인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소극적 의미의 문화적 재생산은 삶의 조건변화에 따른 무의식적인 대응이며 수동적인 것으로 이것은 누구나가 모두 하는 일이다. 그러나 적극적 의미의 문화적 재생산은 의식적인 대응이며, 능동적인 것으로서 자기 문화를 거듭생각하고, 예측하며 방향과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적극적인 주체가 문화적 지배권을 추구하는 국가가 된다면 그 대상이 되는 지역과 민족은 결과적으로 정보의 주도권을 가진 국가의 소비시장 이상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가축의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좋은 축사를 짓고 좋은 먹이를 마련해 주었다고 해서 그 가축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한 행위는 결코 아닌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재생산의 적극적인 주체는 자기 민족이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자기 문화의 재생산 주체가 자기 민족이 되지 못한다면 문화적 성장이 정지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민족적 문화의 재생산을 위한 원천은 무엇인가 아놀드 토인비는 도전에 직면하여 억제된 창조력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10], 창조력이 활성화 되어야만 문화생산의 힘도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면 그러한 창조력은 어떠한 계기에서 발휘되는가

무엇보다도 문화는 걸출한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문화는 집단의 보편적 일치

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치는 또한 무엇을 말하는가 우선 지적 능력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 지적 일치가 현실적 힘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일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추동하는 정서적 일치도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민족적 동료애가 있어야만 지적 탐구와 통찰 결과를 종합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적 재생산력이 가동된다고 보는 것이다. 민족적 동료애(Philia)는 민족구성원 사이에 정서적, 도덕적, 지적 거래와 교류가 평화롭게 이루어지게 되어서 가능한 것이다. 단순한 정치적 주도권이 문화적 생산력을 추동해 내는 것은 아니다. 다른 민족에 대한 자기 민족의 정치적 주도권은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민족 내부의 정치적 주도권은 민족적 동료애의 기반 위에서만 문화적 생산력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창출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민족적 동료애를 갖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민족 내부의 계급간 대립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직업으로 분화되었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과 같은 단선적 관점이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라도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계층적 분열은 부인할 수 없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분열은 경제적 관계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 영역에 걸쳐서 교차적으로 결정된다[11]. 그러니만큼 한 개인이 항상 절대적으로 분화된 계급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 계급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계층 상호간에 적대적인 태도를 갖기 보다는 "이웃사랑"즉 동료애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3차 산업이 주축이 되는 사회로의 변동은 이러한 조건을 더욱 성숙시켜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주체철학』에 따르면 민족과 계급은 질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이라고 한다. 계급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와 정권에 대한 장악관계의 공통성에 의하여 결합되지만 민족은 핏줄의 공통성, 언어와 심리에서 표현되는 문화적 공통성, 영토의 공통성에 의해 결합되었다는 것이다[12]. 그리하여 계급적인 다수성, 다양성, 적대성과 민족적인 단일성, 동질성은 불상불용적인 것이 아니라 상용적인 관계로서, 계급적인 다양성과 민족적인 단일성의 병존과 양립은 민족사회를 구조적으로 특징짓는 징표라는 것이다[13].

이러한 입장에서 민족적 동질성이 절대적으로 선행한다는 것인데, 그 동질성이 문화적 생산력을 추동케 하고자 한다면, 계급간 내지는 계층간의 동료애적인 평화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문화적 생산력을 높이는 조건인 민족통일

역사의 질적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양상을 보면 두 개의 모순이 병존하고 있다. 그 하나는 전체 지구적 규모의 시장의 단일화다. 국제주의의 이름 아래 자유무역과 개방, 보다 신속하고 자유스러운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

다. 이와 발맞추어 국제연합이 1993년을 세계 원주민의 해로 선포하는 등 전세계에 퍼져있는 소수민족과 약소민족들에 대해 아량과 관용이 베풀어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실질적 내용은 치열한 무역전쟁과 문화적 패권주의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간 분쟁이다. 옛 소비에트 영역에 속한 여러 독립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민족 갈등, 옛 체코, 유고 등의 동부 유럽에서 일어난 민족분쟁, 도이칠란트의 민족적 배타주의 등 민족적 긴장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도 개방과 화해, 그리고 여전히 평화의 이념은 포기하지 않는데, 이 때의 평화의 이념은 전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모순인 것 같지만 동일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생산양식의 변동에[14] 따른 세계화 과정에서 따돌려 지지 않으려는 각 민족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일차적인 경제의 성장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자기 삶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과제는 중첩되어 있다. 하나는 민족문화의 재생산 능력을 창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의 정치적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앞서도 말했거니와 문화적 생산력이란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규격화된 대량생산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과 물질의 특성에 맞추어 놓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보처리의 기술력으로써, 여기에는 정신적이며 물질적인 삶의 여러 영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지적, 도덕적, 정서적 힘의 통합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다. 힘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동료애적인 결합을 해야 하는데, 우리 민족은 전면적인 심각한 단절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정치적 통일은 민족 생존을 위한 시급한 과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 구성원간의 지적, 도덕적, 정서적 연대와 동지적 상황이 결여된 채 혈연적, 언어적, 영토적 동질성 만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통일은 문화적 생산력을 갖기에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족의 정치적 통일과정에서 민족적 연대를 반영하는 민족주의적 이념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의 개념에 대해서 남과 북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 규정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문헌고증적이며 교조적인 규정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논쟁은 실천에 힘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벗어나 역사와 사회변동의 시각에서 삶의 길과 민족의 장래를 전망할 때 우리는 개념논쟁에서 벗어나 실천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우리의 민족이념은 패쇄적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며, 패권주의가 아니고, 혈통적 배타주의도 아니다. 그것은 다른 민족의 존재를 존중하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으로 국제관계에 선다는 것으로 어느 의미에서 보면 지극히 소박한 것이고 평화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주체철학에서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15] 그 이념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민족적 다원주의를 존중해 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16].

우리 민족의 통일은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용능력이 풍부해진 문화적 토대 안에서 자기 동일성을 확립하는 사람다운 삶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의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족의 지향할 바의 것으로 적대적 관계를 산출하지 않는 보편적 민족주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하나의 실천적 전략

민족의 통일이 문화적 생산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초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권력 욕구를 가진 정치적 주도 집단의 형식적 통일논의나 형식적인 정치협상은 통일의 근본성격을 현저히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을 정치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에서도 국제사회 속에서 민족의 문화적 생산력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와 부분에서 지적, 정서적, 도덕적 일치를 실천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정치적 절차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통일은 민족의 동질성을 보증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문화적 동질성을 보증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문화적 생산, 재생산 능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분야의 교류와 거래가 남북간에 활성화되어야 한다. 대중보도매체가 개방되어야 하고 군비축소회담을 착수해야 한다.

남북의 정부는 공통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남북의 학제를 일치시켜 동일 내용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계적으로 볼 때 비정치적인 자연과학분야, 예술과 체육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통일교육을 두 지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실시하여[17] 민족의식의 동질성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초급교육의 교과과정 통일은 남북 두 정부의 통일의지를 상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정치적 대화가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각 부분의 대화마저 막히게 된다고 하면 문화적 생산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정치적 결정의 과정이 없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류가 지속되어야 한다. 체육경기, 음악, 미술, 무용의 교류, 학술토론회가 양쪽 정부의 포괄적인 승인 아래 첫 번째의 허가로 정례화되는 교류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남쪽 정부의 산하에 "21세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조직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가 양 쪽 정부의 합의 아래 구성되는 것은 우리나라 통일의 성격을 상징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성한 가칭 "한민족 21세기 위원회"는 생산양식의 질적 변동이 이루어지는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잠재력을 성찰하고 민족의 주체적 견지에서 국제사회를 탐구하며, 민족적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러

한 전략이 남과 북의 어느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북의 지성이 하나의 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그들이 나눈 의견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당분간은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민족 21세기 위원회"는 남과 북의 정부 견해를 대변하는 사람들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추천을 받았으나 자율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운영하는 특별한 기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민족 21세기 위원회"는 결과적으로 민족의 문화적 생산력을 높이려는 민족적 보편의지를 형성하는 촉매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7. 맺는말

민족은 결코 해소될 수 없는 혈연적 관계를 가진 집단이다. 또한 민족은 기후와 풍토가 다른 지역을 살아가는 유전적 형질과 기질, 그리고 사유방식이 전승되는 집단인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혈연적, 언어적 공동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의 문화 공동체인 것이다.

사람은 그 문화적 토대 안에서 자기다움을 찾음으로써 질 높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한편 세계는 역사적 국면으로 볼 때 생산양식의 질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대량생산체제에서 높은 부가가치 생산체제로의 전환이 그것인데 이 때 정보의 생산과 수용, 처리와 통신능력이 그 수단이 된다. 종래의 생산수단이 일차적인 또는 단편적인 과학기술이라면 이 시기의 생산수단은 삶의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의 생산과 수용능력이다. 이것을 문화적 생산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적 생산력은 민족적 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한다고 보는 것이다[18]. 민족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가장 역동적인 동질성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공동체적 동질성과 동료애를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민족 통일의 성격은 바로 문화적 생산력과 결부되어 규정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의 과정도 양쪽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른 형식적인 정치협상보다는 실질적인 군축, 교육과정과 내용의 통일, 비정치 분야 교류와 정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통일이 문화적 생산력을 높혀 새로운 국제사회의 질서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뜻에서 "한민족 21세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쪽 정부가 보장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문화적 생산력을 촉발하는 촉매로써의 역할을 부여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내용이 진행된다면 정치 협상의 형식적 절차는 뜻밖의 쉬운 문제일 수 있을 것이다. ***(4327년 1월31일)

〈주〉

*이 글은 1994년 2월20일~23일까지 중국 베이찡에서 열리는 국제고려학회 주최 "통일

을 지향하는 철학"학술토론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1)나치스는 역사는 아리아인 중에서도 우수한 독일인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독일인은 세계를 지배하는 운명을 가졌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면서 유태인을 적으로 규정하고 증오하였다. 이것은 18세기 철학자 헤르더의 유럽 우월주의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민족우월주의는 이 민족에 대하여 전투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이 일반적이다.

2)김도종, 통일을 위한 철학, pp.44-45, 채문연구소 출판부 참조

3)같은 책, pp.45-47 참조

4)홍우, 민족주의 입문, 일조각, p.1

5)Edith Simon, 한국일보 타임-라이트 편집부 역, The Reformation <Great Ages of Man>시리즈, 한국일보 타임-라이트사, p.21

6)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국가의 붕괴 이전에도 네오 막스주의의 여러 분파, 주체주의 이론가들은 민족적, 지역적 독자성을 갖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므로써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해 이미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7)유 게라씸, 재쏘조선사람들, 한국과 국제정치(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간), 제6권 제2호(1990년 가을), pp.259-280 참조

8)1993년의 아메리카 로스엔젤레스의 흑인폭동을 상기하여 볼 때 여전히 인종적 갈등 상황아래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다.

9)1993년 12월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내용과 그 타결 과정도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10)A. Toynbee,(세계사학회 역), A Study of History, Ⅲ권, 홍은출판사, pp.127-133 참조.

11)김도종, 송정산의 정치철학, (「한국종교사상의 재조명」수록논문), 한기두교수 회갑기념논문집, 원광사, pp.1638-1639 참조

12)박승덕, 주체적 견지에서 본 민족통일의 철학, (1993년 8월, 국제고려학회 주최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학술토론회 발표논문, p.10

13)박승덕, 같은 논문, p.11

14)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말하고, 허먼 메이너드와 수전 먼데스가 제4의 물결이라고 말하는 내용은 생산양식의 질적 변동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1994년 1월, 스위스의 「다보르 포럼」은 "세계 경제기본가설에 대한 재해석"을 주제로 내걸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도 생산양식의 질적 변동에 대한 학문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5)박승덕, 앞의 논문, p.28

16)*神理大全, 神事記, 참조(삼일철학의 문헌)

"-전략-그 자손이 나누어 다섯 빛깔의 겨레가 되니 곧 누룽이, 흰둥이, 껌둥이, 불긍이와 푸릉이다. -중략-아홉겨레가 사는데 풍속이 다르고, 사람끼리 직업이 다르니-이하생략"

**김도종, 역사이해의 기론(氣論)적 고찰,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pp.268-270의 논술 참조.

17)김도종, 통일을 위한 철학, pp.9-25. (통일교육의 실천철학적 의의)

18)민족이 세계사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헤겔의 말을 상기할 수 있다.

統一을 指向하는 哲學
-民族의 共同體 意識과 和諍思想-

오 형 근

1. 序論

우리 민족은 單一民族이고 單一文化를 지니고 있다. 민족의 성품이 착하고 화합을 잘하며 예의가 바르다고 해서 東方의 禮義之國이라는 찬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민족의 뜻과는 달리 조국이 분단되고 민족도 분단된 아픔을 겪고있다. 남북의 민족간에 대결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손실이 너무 많다. 우리는 조국을 통일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일시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三八線은 현존하고 있으며 분단된 조국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민족은 스스로 할 일을 못다한 것을 반성하면서 모든 지혜와 슬기를 동원하여 조국의 통일에 헌신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南韓과 北韓은 대화를 통하여 상호간의 不信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두터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佛典에 의하면 불신은 무지(無知)의 작용이고 신뢰심(信賴心)은 지혜의작용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지혜와 신뢰심으로 편견과 아집(我執)을 없애고 서로 화합하여 조국의 통일을 민족의 자력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남북한의 학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토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첫째로 민족은 한 몸과 같다는 공동체의식을 지녀야 하겠다. 둘째로 민족과 조국은 한 뿌리와 같다는 철학적인 사상을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로 민족간의 불신을 씻고 신뢰와 화합의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筆者는 이러한 제한들을 실천하는 데는 오직 우리민족의 슬기와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관계자료에 의거하여 본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2. 民族의 自覺과 共同體意識

해방 후 거의 50년간 조국이 분단된 채 민족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사는 동안 민족의식이 무디어진 것 같다. 우리는 다같이 檀君을 시조로 한 한민족이라는것을 상기하면서 확고한 민족의식을 회복할 때이다. 元曉大師는 三界의 虛妄한 것들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1]. (三界虛妄唯心所作)고 한 바와 같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민족의식에 배반되는 생각도 마음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元曉大師는 인

간의 本心에는 누구에게나 善心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는 것이므로 서로 불신하는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을 自覺하면 일시에 옳은 마음으로 되돌아오며 지혜의 本心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선각자의 가르침에 의하여 볼 때 우리 민족이 모두가 보다 대승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민족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통일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교철학의 同體大悲사상에 의하면 모든 민족은 내몸과 같다는 民族的 共同體意識을 갖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국을 건설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족의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는 바탕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들 수가 있다. 민족이란 ①피부 ②머리털의 색깔 ③눈의 빛깔 ④코의 형태 ⑤얼굴의 윤곽 ⑥머리의 형태 ⑦키 ⑧체격 ⑨衣食住의 생활 ⑩풍속 ⑫습관 ⑬종교 ⑭언어 등이 같아야 한다는 학설이 있다[2].

이상과 같은 특성을 구비하여야 한 민족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등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동포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지의 교포들이 외국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반갑고 쉽게 친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교포들은 모국어를 잘하고 전통적인 풍습을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나도 옛 친구처럼 친근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조건들에 의하여 민족의 공동체의식이 쉽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 불교의 業力說을 들 수 있다. 불교의 業力說에 의하면 업의 뜻은 몸의 행동 그리고 습관, 지식 등을 의미한다. 이들 업력을 세분하면 不共業과 共業의 뜻이 있다. 不共業은 정신문제등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수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이 수용할 수 있는 業力을 뜻한다[3]. 그러나 共業은 자연과 문화와 사회환경 등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는 業力을 뜻한다. 중국의 窺基大師(632-682)에 의하면 共業은 한 生命體가 한 지방에 태어날 때 그 地方에 사는 사람의 얼굴과 체격이 똑같이 태어나게 하고 자연과 사회를 함께 조성하는 업력이라고 하였다.

胎兒는 부모를 택할때도 업력이 같은 부모를 선택하게 되고 출생할때도 출생할 지방의 사람들과 업력이 같은 것을 목격하고 기뻐하면서 출생하게 된다고 한다[4]. 이와같은 학설은 인간은 업력이 같은 사람들끼리 民族이 되고 氏族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업력이 같은 무리들을 共業衆生이라 하고 衆同分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白人과 黑人이 있듯이 공동의 업력 가운데서도 서로 다른 면을 나타내는 업력을 共中不共業이라고 한다.

이상으로 몇가지 학설을 통하여 민족의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민족의 특성과 共業思想을 알아보았다. 민족이 될 수 있는 특성과 업력설을 알게 되면 민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서로 아끼고 도와주며 단결하게 되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업력사상은 너무나 종교적인 설명일지는 몰라도 현실에 맞는 것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의 공동체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여 민족간에 화합하고 단결하여 조국의 통일과업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지 않

으면 안된다.

3. 祖國과 民族의 同體性

조국은 자신이 출생한 나라를 의미하며 또 조상들이 살아온 나라를 의미한다. 그 조국은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자연의 혜택을 주면서 생존하도록 도와준 모체이기도 하다. 중국의 窺基大師(632-682)와 신라의 元曉대사의 학설에 의하면 민족은 함께 출생한 장소와 자연환경에 의거하여 生長할 수 있고 조국은 민족공동의 업력에 의하여 창조된다고 하였다. 그들의 학설에 의하면 자신만이 수용하는 업력을 不共業이라 하고 形色과 언어와 풍습 등이 서로 같은 것을 조성하는 업력을 不共中共業이라고 한다. 이 업설은 세계속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민족을 형성하는 업력을 말한다. 그러나 동일한 민족이 의거하여 살 수 있는 국가는 共中共業에 의하여 건설된다고 말한다[5]. 共中共業이란 인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질 가운데서도 가장 공동의 물질과 문화를 조성하는 업력을 말한다. 이와 같은 업력설에 의하여 볼 때 민족은 같은 업력에 의하여 살고 있고 조국도 민족과 더불어 공동의 업력에 의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민족과 조국은 존재하기 때문에 同體性이라고 할 수 있다.

원효대사에 의하면 인간의 몸을 正報라 하고 인간이 의거하여 사는 조국을 依報라고 한다[6]. 이들 업력은 전생에서부터 阿賴耶識이라는 마음에 보존해 오다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신의 몸(正報)도 태어나게 하고 자신이 사는 조국(器世間)도 건설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조국의 자연계는 민족의 업력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의하여 인간의 마음과 몸과 인간이 사는 조국을 동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7]. 그리고 조국의 자연은 민족 정신을 生長케하는 불가분의 인과관계가 있다[8]. 신라의 圓測法師(613-696)도 역시 인간의 阿賴耶識이라는 마음속에는 모든 업력을 보존하고 있으며 이들 업력이 집합하여 민족이 성립되고 조국도 존재케 된다고 하였다[9].

이와같이 불교의 업력설에 의하여 민족과 조국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원효대사는 물질의 성품은 空性이며 동시에 물질의 성질(色性)은 마음의 智身이 되며 智性은 물질의 體(色體)가 된다는 色心不二의 사상을 말하였다[10]. 色心不二는 국토와 정신이 하나라는 뜻이다. 元나라 普度和尙(1305)도 身土는 본래 두 모습이 아니다(身土本來無二相)[11]라고 하면서 身土不二思想을 주장하였다. 成唯識論에도 自性身과 法性土는 오직 하나의 경지다[12]라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身土不二는 민족과 조국은 하나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같이 옛 선각자들은 인간과 국토는 一體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학자들도 거의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 신라의 表員法師도 一如는 萬如이며 萬物은 一如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13]. 이러한 사상은 신라의 義湘대사가 法性은 圓融해서 두 가지 모습은 없다(法性圓融無二相)라고 한 사상[14]과도 상통한다. 그리하여

중국의 僧肇대사는 천지는 나와 뿌리가 같고(天地與我同根) 만물은 나와 한몸이다(萬物與我一體)라는 말을 하였던 것이다[15].

이상과 같이 민족과 조국이 둘이 아니라는 학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모든 本性은 서로 통하며 一如의 경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상은 성인들이 깨달은 一乘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범부들의 눈에는 엄연히 물질의 모습과 자신이 각각 개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形色만을 보고 사는 인간은 無明의 업장으로 말미암아 身土가 一體라는 도리를 알지 못한다. 동시에 민족과 조국이 일체라는 것도 모르게 된다.

그 반면에 지혜의 눈으로 관찰하면 삼라만상은 각기 독립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진리적으로는 一體이며 一如와 一乘의 경지에서 恒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에 입각하여 민족은 곧 조국과 둘이 아니라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갖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진리에 의하여 민족과 조국이 둘이 아닌 민족관과 조국관을 가지고 국내외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의 힘을 합쳐서 민족의 자력으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매진해야 할 것이다.

4. 大乘心과 直心의 信賴性

일찌기 신라의 元曉대사는 唯心思想을 깨닫고 마음이 생기면 여러 법이 생기고(心生卽種種法生)마음이 없어지면 여러 법도 없어진다(心滅卽種種法滅)라는 悟道의 게송을 남겼다[16]. 이 悟道頌은 모든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며 마음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된다는 사상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의하여 창조된다는 말이다. 小乘的인 마음은 자기이익만을 추구하고, 大乘的인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조국과 민족을 내몸과 같이 생각하면서 利他行을 실천하는 마음이다. 大乘의 大는 일체중생과 모든 것을 포용(包容)한다는 뜻이고 乘은 모든 사람들을 진리의 도량에 도달케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大乘은 허공과 같이 일체의 중생을 포용하고 재도한다는 뜻이다[17].

원효대사는 이러한 大乘心의 넓고 깊음을 바다에다 비교하기도 하였다. 바다는 첫째, 매우 깊으며(甚深) 둘째, 넓고 크며(廣大) 세째, 무궁한 보배를 갖고 있으며(白寶無窮) 네째, 모든 모습을 나타낸다(萬像影現)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18]. 이러한 바다의 뜻은 眞如心에도 비유를 해서 眞如海란 말을 쓰기도 한다. 眞如心에는 삿된 시비가 없는 것이며 만인을 포용하는 덕성을 구비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사상은 옛적부터 우리 민족에게 전해져서 정신문화의 뿌리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대승적인 마음과 바다와 같은 마음을 발휘하여 서로 포용하고 화합하며 신뢰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唯識學에 의하면 상대를 의심하거나 不信하는 마음은 煩惱의 작용이며 妄心의 無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19]. 의심을 제거하면 邪된 집착이 없어지고 상대를 믿는 대

승적인 正信을 갖게되며 이러한 마음을 大心이라고 한다[20]. 大心은 상대를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마음이며 善心 또는 智惠心이라고도 한다. 남을 신뢰하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이 청정한 것을 의미하며 有能하고 德性이 있는 마음을 뜻한다. 그리고 남을 믿는 마음은 곧은 마음(直心)이며 깊은 마음(深心)이고 남을 도와주고 이익을 주는 大悲心을 의미한다[21]. 이들 마음은 이기심과 邪心이 없는 空心과도 통하는 마음이다. 空心 역시 상대를 의심하지 않고 사심이 없으며 평등하게 대하는 바른 뜻(正意)과 화합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우리 민족은 大乘心과 直心 그리고 大慈心과 空心을 지녀온 문화민족이다. 無我의 空心으로 民族의 和合과 信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도 훌륭한 정신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和諍思想이다. 和諍思想은 쓸데없는 諍論을 삼가하고 서로 和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和諍思想은 원효대사가 당시에 분분했던 논쟁을 정지시키고 그 사회를 화합의 사회로 이끌어 가고자 十門和諍論[22]을 저술한 데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제 화쟁의 뜻을 쟁론과 화합의 뜻으로 분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諍論과 不和

구사론에 의하면 쟁론은 곧 번뇌심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善心을 충동하고 자신과 타인을 손해케하는 것을 뜻한다[23]. 이와같이 개인대 개인, 단체대 단체, 국가대 국가 등 서로가 화합하지 못하고 의견이 충돌하며 자기 쪽만 옳다고 주장하는 논쟁을 벌이는 것은 모두 번뇌심에서 발생하는 행동인 것이다. 신라의 圓測법사는 쟁론은 자신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논쟁을 하지 않고 화합하려면 먼저 마음을 비우고 아집과 소유욕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사리사욕을 없애고 모든사람과 화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측법사는 諍의 뜻을 煩惱諍과 蘊諍 그리고 鬪諍 등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24].

첫째, 煩惱諍은 百八煩惱가 생겨서 시비와 논쟁을 야기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蘊諍은 몸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하며 육체적 투쟁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을 자초하는 것을 뜻한다.

셋째, 鬪諍은 여러 有情들이 서로 투쟁하며 욕보이는 것을 뜻한다.

이와같이 諍論은 불화를 조성하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번뇌의 뿌리가되는 貪慾과 瞋心과 痴心의 體性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와같이 볼 때 쟁논은 진리에 배반하는 탐욕과, 상대방을 미워하는 진심과, 사리에 어둡고 지혜를 방해하는 무지에서 나타나는 번뇌의 작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민족은 불필요한 쟁론을 삼가해야 하고 민족의 대동단결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나. 和合과 平和

다음 和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화는 곧 화합을 의미하며 불화를 제거하는 마

음에서 발생한다. 화합의 본뜻은 두 사람 이상의 무리들이 모였을 때 의견이 일치되고 잘 화합한 것을 뜻한다. 우리 민족은 한사람의 개체를 지니고 있다 할 지라도 두사람 이상이 살고 있는 인연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는 사회를건설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민족은 피차간에 상대로서 집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견이 일치될 수 있는 화합의 경지에서 집합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둘 이상의 사람이 집합할 때 번뇌로운 마음으로 모이면 경계가 생기고 상대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러나 만약 지혜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피차간에 경계가 없는 경지에서 접하게된다. 참되고 곧은 마음(直心)은 경계가 없고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은 분별없는 지혜(無分別智)로서 대하게 된다. 이와같이 마음가짐에 따라 상대가 되고 절대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화합을 이루려고 한다면 먼저 이기적인 마음을 비우고 以心傳心의 경지에서 만나야한다. 원효대사는 十門和諍論서문에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하는 분쟁은 옳지 않으며 화쟁정신이 아니라고 하였다[26]. 그리고 원측법사는 大衆은 화합을 전재로 모이는 것이며 화합을 잘 이룬 대중을 和合衆이라고 하였으며 和合衆은 항상 화쟁정신을 잘 실현하는 민족을 의미한다[27].

민족적인 화합중은 理와 事가 함께 화합한 대중을 뜻한다. 신라의 勝莊法師도 大衆은 和合의 뜻이 있으며 事와 理를 논할때 乖諍이 없어야 하며 괴쟁이 없는 것을 和合衆이라고 한다고 하였다[28]. 法位大師는 몸과 입과 뜻이 자비로우면 괴쟁이 없는 것이며 학문도 함께하고 윤리와 도덕을 같이 실천하며 모든 견해를 함께 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和敬이라고 하였다[29]. 和敬을 실천하는 대중을 화합중이라 한다. 아함경에서도 長幼와 上下가 和同하고 敬順하며 서로 위배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安康하고 침략과 손해를 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30]. 이와같이 화쟁사상은 피차가 의견을 같이 하고 모든 언어와 행동도 마찰이 없는 것을 말하며 사회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사상을 말한다. 대중은 몸과 마음이 각각 다르지만 사상은 함께 할 수가 있으며 사상이 통일되는 마음을 화합의 마음이라고 한다.

원효대사는 화합의 경지가 성취하면 一乘의 경지가 열리며 일승의 경지는 곧 화합의 경지이며 절대의 경지로서 그 뜻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칼이 스스로를 절단할 수 없고(如刀自割) 둘째, 손가락이 스스로를 가리키지 못하며(指亦不自指) 셋째, 눈은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 (如目不自見)라는 비유를 들고 있다[31]. 이와같은 비유는 相對가 아니라 絶對의 경지를 일깨워주는 것이며 그 절대의 경지가 바로 일승의 경지인 것이다. 일승의 경지는 聲聞, 綠覺, 菩薩등 여러사람들의 마음이 합일된 경지이므로 절대로 분산되지 않으며 이것을 會三歸一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대화할때 민족 스스로 분단하거나 논쟁을 벌인다면 이는 상대적인 대면이며 일승적인 대면은 아니다.

원효대사는 모든 사람이 일승의 경지에서 화합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일체 경계하는 마음을 비우고(一切境空) 둘째, 일체 다투는 행동을 하지 않고(一切身空) 셋째, 일체 다투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一切識空) 넷

째, 일체의 잘못된 지식을 가져서는 안된다(覺亦應空)는 것이다. 그렇게 하게되면 百家의 諍論도 없어지고 화합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百家之諍無所不和). 원효는 또 민족의 화합을 여러 갈래의 도랑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한물로 합쳐지는 것과 같이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제 우리는 원효의 화합사상과 일승사상을 본받아 민족의 대화합을 이룩하고 조국의 통일에 초석이 되도록 정진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학자들은 민족의 정의를 얼굴과 체격과 풍속 등이 같은 씨족이어야 하며 시조도 같고 혈통도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민족은 학자들이 내세우는 모든 조건을 구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업력설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공동의업력에 의하여 태어났고 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군을 시조로한 한민족이라는 점에서 어떤 민족보다도 공동체의식이 강하고 상부상조하는 단결력이 강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는 각 민족의 국제화 시대로서 이제 우리민족은 한 몸이요 한 뿌리라는 민족관과 조국관을 뚜렷이 하여 협력과 단결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때라고 생각한다.

원효대사는 화합과 힘찬 정진을 강조할 때 두 바퀴가 수레를 힘차게 운반하듯(如車二輪)하라 하고 또 새의 두 날개가 새를 창공에 힘차게 날아가도록 하듯이(如鳥兩翼) 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32]. 만약 새의 한 날개나 수레의 한 바퀴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그 새와 수레를 정상적으로 날거나 굴러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비유인 것이다. 이러한 비유와 같이 남북의 민족이 쟁론을 삼가하고 조국을 통일하는데 서로 화합한다면 보다 행복하고 강력한 조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후 인위적으로 설치된 삼팔선을 하루빨리 거두고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화합된 힘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독사가 마시면 독을 만들고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든다는 말과 같이 독을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대승적인 마음을 열고 일승의 경지에서 남북의 이산가족도 만나게 하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무역도 하고 모든 예술문화도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로 불신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 하였고 서로 신뢰하며 공동체의식을 갖는 것은 지혜의 행위라 하였듯이 우리 민족의 지혜를 발휘하여 통일에 이바지할 때이다. 현재 우리민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분산되어 있고 국토도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왕래도 못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후손들에게 무능함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민족의 단결을 보여주고 후손들에 부끄럽지 않는 통일의 과업을 완수하도록 정진해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의 지도층은 물론 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자주 만나 대화를 통하여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1)元曉撰 起信論疏記會本卷三 p.759下(韓國佛教全書卷1)
2)學園社刊 哲學大辭典 p.358
3)窺基撰 成唯識論術記卷三本 p.321中(大正新修大藏經卷30)
4)彌勤說 瑜伽師地論卷 p.282
又於餘鬼傍生人等及欲色界天衆同分中 將受生時於當生處見已同類可意有情由此彼起欣欲卽往生處
5)窺基撰 成唯識論述記卷 p.3221中(新修藏經卷43)
6)元曉撰 無量壽經宗要 p.557中
7)五百阿羅漢造阿毘婆摩大毘婆沙論卷71p.367中(新修藏經卷27)
8)世親造 俱舍論卷一 p.5(新修藏經卷29)
9)圓測撰 解深蜜經疏卷三p.224中(韓國佛教全書卷一)9
10)元曉撰 起信論疏記會本卷五 p.772
11)普度編 盧山蓮宗寶鑑卷二 p.316下(新修藏經卷47)
12)護法造 成唯識論卷六 p.57下13)表員集 華嚴經文義要決問答卷一 p.71上
14)義湘撰 華嚴一乘法界圖 p.1上(韓國佛教全書卷一)
15)僧肇撰 肇論
16)元曉撰 大乘起信論疏記會本卷三 p.759下
17)元曉撰 起信論疏卷上 p.698下
18)元曉撰 大乘起信論疏記會本卷一 p.76上
19)護法等造 成唯識論卷六 p.31下
20)元曉撰 大乘起信論疏記會本卷一 p.737上
21)元曉撰 起信論疏記會本卷五 p.776下
22)元曉撰 十門和諍論 p.838
23)世親造 阿毘達摩 俱舍論卷一 p.2上(신수대장경권29)
24)圓測撰 解深密經疏卷三 p.188中
25)元曉撰 起信論卷下 p.725
26)元曉撰 十門和諍論 p.838上:或言我是言他不是 或說我然 說他不然 遂成阿羅漢牟
27)圓測撰 仁王經疏卷下末 p.122
28)勝莊撰 金光明最勝王經疏 p.186上
29)法位撰 無量壽經義疏卷下 p.15中(韓國佛教全書卷二)
30)佛說長阿含經卷二 p.11上(新修藏經卷一)
31)元曉撰 大乘起信論別記末 p.691中
32)元曉撰 起信論疏卷下 p.728上

天道敎의 平和觀
-造化思想과 관련하여-

노 태 구

1. 序論

東學의 平和觀을 비롯한 民族의 傳統思想을 다룬다는 것은 고도의 方法論(現象學的 方法, 解釋學的 方法 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대학을 비롯한 각급학교에서 교육되고 연구되는 지식은 西洋學問의 理念과 분류체계를 무비판적으로 모방한 것이며 우리의 傳統學問은 이미 學이 아니라 史로서 歷史學의 연구대상으로 전락하거나 재야학자들의 秘傳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1].

韓國學界는 西洋學界의 支部이고 韓國文化는 西洋文化의 亞流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학문과 사회의 발전은 자기문화에 대한 理解와 評價를 필수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哲學, 思想, 政治學, 經濟學등 모든 학문 분야에서 우리의 傳統學問에 대한 새로운 교육목표와 학문체계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人文學과 社會科學의 言述에 횡행하고 있는 '脫', '포스트'라는 관형어가 응축적으로 시사하듯이 知識世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혼돈의 징후로 미루어 볼 때 우리 時代는 분명 思惟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認識論의 危機는 인식론의 챔피언이자 産業革命의 화신이었던 '發展'개념에 치명적인 도전장으로 되었다. 이 認識은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이나 方法論이 이 시대 진리탐구행위에 적합한 도구로 기능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식추구활동에 무정부상태를 가져다주는 것이 이닌가 하는 회의와 비판에서 출발한다. 19세기 思想에 입각한 現代社會科學에 대한 회의는 內容面에서는 근대성과 합리성에 대한 회의이며, 方法論의 측면에서는 단순화, 법칙화, 이론화의 맹신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것이 오늘날 思惟의 위기이자 社會科學이 빠진 딜레마이다. 西歐(19C)思想의 認識論의 危機인 것이다[2].

해방이후 반세기동안 社會科學은 이렇게 歐美에서의 보편적 진리추구보다는 자신의 사회와 국가속에서 부딪치는 현실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생겨난 西歐社會를 배경으로 성립한 社會科學의 기본틀을 무원칙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基本理念과 學問體系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도래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基礎學問을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東·西洋의 古典들을 집중적으로 익히게 함으로써 大學의 學部 과정에서부터 폭넓은 지식과 종합적 판단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다음 世代에서는 우리 자신의 理論과 文化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晩時之歎의 感은 있지만 天道敎의 敎理를 平和觀이라는 측면에서 다룬다는 것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소론은 필자 자신의 길잡이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둔다.

東學은 東學革命이 일어나기 30여년전 崔濟愚(1824~1864)[3]가 창시한 종교이다. 당시는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東아시아에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西勢東漸이 더욱 노골화되던 시기이다. 이 때 서양의 천주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 세력을 떨쳐가고 있었는데 조선朝의 指導理念인 주자학은 이미 思想的으로 그에 대항할 수 없는 空理空論이었다. 힘으로나 사상적으로 민족적 위기를 느낀 水雲은 "마음을 바르게 갖는다"(守心正氣)는 말을 기본이념으로 한 東學을 창시한 것이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 (事人如天)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부르짖고 平等 · 平和의 思想을 실천해 나갔다. 이 自由 · 平等의 平和思想이 東學이란 종교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실천덕목이었다[4].

東學革命 당시에는 事人如天思想을 가장 중요하게 실천하였기 때문에 종이나 백정 등 천민들이 전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것이다.

조선왕조가 무너진 다음 일제통치로 들어가자 東學이 天道敎로 바뀌면서 "사람이 하늘"(人乃天)이라는 思想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게 된다.

이러한 東學이 조선반도에 있어서 平和理念 연구의 현안으로 되는 남북의 自由主義 이념과 社會主義이념을 통일할 수는 없는 것일까. 결론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自由競爭, 自由主義의 資本主義와 계급타파, 平等主義의 社會主義는 물체의 양면처럼 원래 하나의 思想的 뿌리에서 분화되어 나온 理念들인 것이다. 그 하나의 思想은 무엇인가. "人是天이니 事人如天하라"는 이러한 人乃天의 정신에는 自由가 스스로 내재되어 있고 또 사람마다 平等일 수 밖에 없는 내용을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乃天思想이야말로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정치이념을 평화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주요한 통일원리가 된다는 것이다[5].

東學은 우리 나라의 主體思想인 동시에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精神的 道德的 최고이념인 것이다. 이제 時運이 와서 다시 東學의 平和觀을 비롯하여 東學 본연의 목소리를 제창할 때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2. 平和의 哲學的 背景

平和란 무엇인가. 또 왜 오늘날 平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두고 특별히 東學의 平和觀을 注目하여 그 理解와 分析을 도모함은 각별한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平和'의 사전적 의미로는 "화합하고 고요함,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이 없이 세상이 잘 다스려짐"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平和共存'이라는 단어는 "이익이나 서로 반발하는 두개 이상의 세력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理論과 實踐을 현실적으로

보장해가는 운동"이라고 定義하고 있다[6].

20C에 들어와 西洋哲學은 唯物論과 觀念論의 대립, 理論과 實踐의 균열, 마음과 몸의 갈등등 산적한 人類의 平和와 福祉의 問題앞에 더 이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다.

이리하여 근대 서양철학의 구조적 모순(二元論)에서 파생된 우리 韓民族의 남북분단과 그리고 환경과 생태계의 위기를 두고 이제 대립과 갈등이 아닌 和解와 調和의 哲學(有機體哲學)이 요청되는 시기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平和의 연구가 世人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東學革命을 주도한 東學思想에 대한 學問的 탐구가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한다고 하겠다.

혹자는 화이트헤드(A.N. Whitehead, 1861~1947)의 有機體哲學을 東洋哲學을 통해 人間과 自然, 神의 統一을 파악하여 兩哲學의 유사성을 밝힌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유추하여 20C의 데카르트로 불리는 화이트헤드의 有機體哲學과 天道敎思想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한다[7]. 화이트헤드가 그의 思想을 哲學的으로 발전시켰다면 東學의 창도자 崔水雲(水雲은 號, 本名은 濟愚, 1824~1864)은 종교적으로 승화시켜 社會變革에 적용시켰다고 하는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哲學的 命題의 핵심은 "하나가 다수가 되고 다수가 하나가 되는"창조성으로 이는 韓國語의 '한'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유념할 것은 '한'의 槪念 속에는 하나(one)와 다수(many)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人格神인 '하느님'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어 兩哲學이 유사성을 뛰어넘어 東洋哲學이 西洋哲學을 보완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은 화이트헤드가 "모든 존재는 자기 창조적이며 전체가 완전하다면 또한 부분도 완전하다"는 명제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그의 存在論은 具體와 抽象이 연속적(續)으로 일어나(起) 분리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여기서 兩哲學의 유사성을 韓國思想에서 찾을 수 있다면 栗谷의 '理通氣局論'과 水雲의 '侍天主造化定'에서 東-西哲學의 만남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우선 "理는 하나이고 수만가지로 분별되는 것은 氣가 하는 일이다"(理=一者, 氣=多者). 이러한 논리의 理通氣局論은 화이트헤드의 '영원대상'과 '사실존재'와 같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理氣가 처음이 없으므로 끝이 없고 처음도 끝도 없으므로 다함이 없고, 밖이 없다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영원대상과 사실존재도 본래부터 이러한 개념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現代哲學 또는 神學課題는 絶對無(佛敎)와 人格神을 調和시키는 일인데, 지금까지 西洋의 기독교와 유태교가 전자의 無의 개념을 무시해온데 비해 東洋의 氣나 道思想은 人格神을 결여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8].

여기에 화이트헤드는 그의 思想을 哲學的으로 발전시키게 되고, 水雲은 이를 宗敎的으로 승화시켜 사회변혁에 적용시키게 된 것이다. 西洋哲學을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린 天道敎思想은 이리하여 이제 東-西哲學을 접목시키는 架橋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東學의 平和理念은 哲學的 背景의 근원을 이루는 '至氣'의 개념을 韓國의 傳統思想과 理念的 原理로 되는 '한'思想과 비교, 고찰해 보기로 하자.

우선 東學의 平和觀을 民族統一과 3·1정신과의 관계를 통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民族의 統一은 平和主義의 정신에 기초해야 한다. 3·1정신이 비폭력의 평화적 정신이었는데 이는 韓·中·日 3國이 東洋平和의 기초를 이루고, 나아가 世界平和의 디딤돌이 되자는 의미에서 平和主義를 기본으로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同胞간의 統一의 방법 역시 3·1정신처럼 어느 계층이나 집단의 한편이 다른 한편을 일방적으로 몰아내는 폭력이나 전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이고 비폭력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전쟁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멸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한마디로 統一과 平和는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民族統一과 平和의 추구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요, 동일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9].

韓國의 고유사상인 '한사상'은 崔孤雲의 鸞朗碑書에서 밝힌 것처럼 儒, 佛, 仙道思想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 源流는 그 檀君思想으로 그 思想에는 仙道的 색채가 강하다. 그 仙道的 색채는 中國老莊의 道敎思想 이전에 한국에 고유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檀君이 지었다고 하는 天符經에 담겨있는 思想은 一을 하나인 동시에 무궁하여 無始無終한 것으로 보아 (一始無始一 一終無終一)이른바 '한'思想을 밝히고 天地가 다 인간속에 들어가 하나가 된다고 하여 (人中天地一) 인간의 不老不死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神仙思想이다. 이와 같은 단군의 신선사상이 조선 때 선비道를 이루면서 이어져 내려왔는데, 조선말에 이르러 儒敎의 경직화와 西學의 유입으로 그것이 흐려지자 孤雲의 28代孫인 崔水雲에 의하여 다시 재현 東學思想이 되었다[10].

東學은 우주본체를 '至氣'로 설명하여 唯物論과 唯心論의 양극사상을 동시에 극복하는 통일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원래 東學哲學에서는 宇宙를 氣 또는 理로 생각하였다. 性理學에서도 우주의 정신적 본질을 氣 또는 理로 생각하였다. 性理學에서 '理'또는 '氣'를 우주의 원리로 생각하고 太極圖說로 우주생성을 도식화하여 太極圖說은 無極－太極－理·氣－陰·陽－五行－萬物化生으로 이루어져 '理' 또는 '氣'가 우주생성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東學의 宇宙觀은 理·氣 二元論을 극복한 새로운 '至氣'의 哲學思想을 보여주고 있다. 水雲은 '至氣'를 해석하여 말하기를

> "至라는 것은 지극한 것이요, 氣라는 것은 虛靈이 蒼蒼하여 모든 일에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모든 일에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형상하기 어렵고 들리기는 하나 보기는 어려우니 渾元한 한 기운이니라"[11]

고 하였다.

'至'는 극을 의미하며 그것은 無極 또는 太極의 뜻이므로 우주의 근원을 의미한 것이다. 그리고 '至氣'는 허링으로 우주에 편만하여 어느 일에든지 섭리작용을 안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東洋哲學에서 '氣'를 물질적 본체로 생각했지만 '至氣'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靈的 본체로서의 의미를 포함한 우주의 근원적 물질을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 '氣'와 '至氣'는 같으면서도 같지 않다.

말하자면, '至氣'는 객관화할 수 있는 관찰대상이 아니라 신령한 氣化의 '氣'로서 '한울님'의 기운을 의미하며 모든 創造와 進化의 근원으로서 우주만유와 사람에게 接靈接氣하는 신적 존재라는 것이다.

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강령주문의 해석에서 '지기'는 한울님의 靈氣로서 사람의 誠願에 接靈接氣하는 氣化의 神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至氣'는 '至化至氣至於至聖'이라고 한 점에서 우주만유의 생성진화과정에 無機物, 有機物, 生物, 人間, 超人間(聖人)에 이르는 모든 창조와 진화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이러하여 '至氣'는 우주만유와 접하고 사람에게 강림하여 접령하는 기운으로서 한울님과 표리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至氣'의 氣化之神이 사람에게 降臨한다는 것은 한울님의 靈이 사람에게 감응하여 侍天主의 경지에 들어가 聖人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며 이 점에서 한울님과 至氣는 二位一體임을 알 수 있다[12].

이렇게 東學思想에서 말하는 '至氣'는 단순한 宇宙生成圖式의 최상위개념에 머물지 않고 초월적 人格神의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東學의 宇宙觀은 理氣 二元論의 수용, 극복일 뿐아니라 초월적 唯一神에 의하여 宇宙萬物이 창조되었다는 創造論을 극복하고 나아가 進化論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한울님의 造化로 보고 造化는 곧 無爲而化라고 하여 道教的 無爲思想까지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東學의 至氣論은 性理學의 主理說과 主氣論, 또는 唯物論과 唯心論 그리고 創造論과 進化論 나아가서 無爲自然說까지도 수용, 극복하여 하나로 귀일시키고 통합한 새로운 원리를 보여준 것이다. 宇宙萬有와 萬象은 한울님의 신령한 기운인 '至氣'의 氣化로 대립을 포용하면서 盛衰의 변화와 萬化歸一의 순환으로 새로운 創造의 進化와 開闢을 이루어 나간다고 본다[13].

한편 東學의 神觀은 一神論과 汎神論의 양극의 神觀을 극복한 人乃天神觀이다. 東學은 신앙대상인 神을 '한울님'이라고 한다. '한울님'은 古來로부터 우리 민족이 믿어온 神에 대한 고유의 명사이다. '한울님'의 '한'은 민족전통관념의 '한'을 뜻한다. 그것은 하나를 뜻하는 동시에 큰 것을 뜻한다. 하나(一)와 큰(大) 것이 합하여 '한울님(天)'을 이룬다. 가장 작고 가장 큰 것의 反對·一致의 개념이 '한'이라는 한 말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한울'의 '울'은 '우리'를 뜻하고 무궁한 우주의 전체를 뜻하며 '님'은 神을 인격화한 존칭이다. 水雲은 "무궁한 이 울 속에 무궁한 나"라는 표현을 하였다. 이 말은 무궁무한의 '한울'과 나와의 合一을 뜻한다.

'한'의 서로 반대되는 뜻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辯證法的 思考와 意識이 韓民族에 있어서는 먼 옛날부터 있어왔다. 그것을 東學에서는 反對一致의 변증법적 사고로 본다. 그것은 全體와 個體의 합일로서 天一合一의 思想으로 그러한 사고방식이 東學에 있어서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人乃天의 神觀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14].

人乃天의 神觀은 종래의 外界에 따로 존재한다고 믿어온 超越的 唯一神의 觀念과 한울속에 내재한다고 보는 內在的 汎神의 觀念을 동시에 극복한 것이다. 그것은 초월적이면서도 또한 內在的인 神을 뜻한다. 말하자면 神은 內在的이면서 超越的이고 一神的이면서 汎神的이고 人格的이면서 동시에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反對·一致의 妙合을 보인 것이다. 이리하여 東學思想의 기본 입장은 神觀의 統一로서 一神論, 汎神論, 내지 無神論까지도 통일 극복한 것으로 思料된다[15].

한마디로 東學(天道敎)은 그의 哲學과 宇宙觀, 神觀에 있어서 상반되는 모든 모순을 포용하고 극복하는 高次元의 平和的 理念體系로 구성되었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3. 平和를 위한 政治理念

東學은 교세의 신장과 더불어 창도초기에 내포되어 있던 종교적 성격이 점차 탈각되어 나가면서 東學思想의 社會性이 한층 부각되어 갔다. 이러한 점은 교조인 水雲의 의도와 그에 충실히 따르고자 한 道統의 전수자인 海月(崔時亨, 1827~1898)의 희망과는 달리 당대의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일반 민중의 현실적 요청에 부응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16].

그러므로 東學은 일반 종교적 차원으로만 해명될 수 없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학은 믿음의 대상으로서 한울님 즉, 天主에 대한 신앙의 형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성격을 전면 부정할 수 없으나 그것의 궁극적 지향성은 결코 死後의 世界인 來世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등으로 해서 동학에 대한 이해는 흔히 종교적 성격으로만 접근되어질 수 없는 政治·社會思想의 포괄적인 의미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학에 대한 이해의 한 전제로서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에로 이행되는 전환기에 흔히 나타나는 신흥종교의 한 형태로 접근하기보다는 東學革命과 함께 東學에 함축된 政治·社會性의 의미와 내용을 포착하기 위한 하나의 政治理念·社會思想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더욱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

1. 造化思想에 대하여

造化理論[17]은 思想的으로는 周易의 논리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易은 우주의 영원한 순환논리로서 天地, 乾坤, 陰陽과 같은 상호 조화적이면서 불평등한 二元論的 宇宙觀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한 이원론적 우주관을 주역의 變易

과 관련하여서 보면 이것의 의미를 周易이 인간으로 하여금 개혁의 의지를 끝내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18]. 이런 점에서 東學의 後天開闢의 平和理念도 儒家思想의 운세관인 周易의 論理에서 차용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유가사상의 관념내에서 극복의 논리를 찾아내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理想化된 도덕적 존재인 '君子'라는 개념에서도 그 관련성을 볼 수 있다.

한편 佛敎와의 관련성은 창도에 이르기까지의 교조의 수행체험의 과정에 습윤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19].

東學은 또 仙思想 즉, 道家的 思惟와의 깊은 관련을 엿볼 수 있다. 長生과 현실초월의 지향성, 無爲而化의 사회변혁의 지향성 등 道家的 理想鄕의 方法과 수단에 대한 제 관념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水雲은 이 삼자의 관계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20].

> "우리 道는 원래 儒가 아니고, 佛이 아니고, 또한 仙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 道는 儒, 佛, 仙의 合一이다. 즉 天道는 유, 불, 선이 아니지만, 유, 불, 선은 天道의 일부이다. 儒의 윤리와 佛의 覺性과 仙의 養氣는 사람의 性과 自然의 品賦이며 天道의 고유한 부분이므로 우리 道는 그 無極大源을 파악한 것이다."

三敎合一은 天道의 고유한 부분으로 그 자체가 무극대원의 道로 즉 진리로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水雲은 부정과 긍정의 합일로써 진리에 이르는 길을 선언하고 있다[21]. '不然과 其然',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을 자기내부에 하나되게 한다는 논리는 사실 東學 이전의 古代的 사유방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三敎合一의 論理는 일찌기 韓民族의 文化와 精神史에 儒敎, 佛敎 그리고 道敎思想이 전래된 초기부터 다양한 여러 사상이 하나로 되는 '接化群生'의 논리로서 이른 바, 三敎合一의 調和思想으로 체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孤雲(崔致遠, 857~?)의 『鸞郎碑文』에서 나오는 '接化群生'의 의미는 '風流道'를 일단 주체로 본다면 儒, 佛, 道 三敎는 각기 이에 대해 부분집합이 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接化群生'을 '實은 바로 三敎를 포함하여 이들이 相接融化하여 同根叢生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22].

이렇게 東學의 三敎合一의 造化的 論理는 또한 접화군생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사물에 대한 분리와 대결적 부정의 논리를 스스로 억제하면서 調和와 混融的 一體感을 지향하는 自然主義的 平和主義를 강조하게 된다. 그런데 사물의 분화보다는 조화로운 합일의 상태를 지향하는 논리는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미분화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래적이고 이질적인 것에 대한 造化論的, 政治的 順應主義(conformism)的 관계를[23]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造化는 儒敎의 天命과 道敎의 無作爲的 자연과 그리고 佛敎의 圓融的 會通과 모두 어울어지는 관념이다. 이런 점에서 造化思想은 東洋의 본래의 관념형태로서 自然과 人間의 合一을 理想的인 상태로 상정한 論理라 하겠다.

東學은 이렇게 '不然其然'의 理論을 통해 하나로 통일하는 創造的 造化思想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政治理念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것이다. 創造的 造化思想은 三敎合一로써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봉건사회 내부에서 민중적 세계관에 기반한 다의적이고 전통적인 平和理念(弘益思想, 和諍思想, 理通氣局論 등)과도 같이 混融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24]. 바로 이 점이 오늘날 東學思想이 平和的 政治理念을 摸索해 보는데 큰 의미로 된다.

미래 韓國의 政治理念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民族主義, 民主主義, 社會福祉 그리고 文化主義의 종합형태가 될 것이 분명하다[25]. 그 명칭은 어떻게 불리워지든 간에 그 理念內容은 民族的 福祉民主主義 또는 民主的 福祉民族主義의 韓國民族主義로 될 것이다. 이러한 한국민족주의의 平和統一의 政治理念은 韓國의 傳統思想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창조적으로 통합된, 전통사상과 現代思想과의 관계는 體(原理)와 用(實踐)의 관계에 있으므로 東學思想에 담겨진 전통사상의 핵심을 고찰해 보는 것은 이 東學思想이 바로 傳統思想의 근대기적 집대성인 것을 두고 그만큼 그 意義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輔國安民(民族主義)

東學은 인류구제의 보편적 진리를 지니면서도 民族主義 理念에 철저하였다. 가장 韓國的인 것이 가장 世界的이라는 말이 있듯이 東學은 民族主義와 世界主義를 추구한 것이다.

水雲은 輔國安民, 布德天下, 廣濟蒼生의 大理想을 품은 우리 나라의 근대적 民族意識의 선각자였다. 民族의 선구적 지도자로서 愛國主義에 열렬하였다. 水雲은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여 『龍潭遺詞』에 이르기를

> "기험하다, 기험하다. 아국운수 기험하다. 개같은 왜적놈아 너희신명 돌아보라…… 개같은 왜적놈이 전세임진 왔다가서…… 개같은 왜적놈을 한울님께 조화받아 일야에 멸하고서"[26]

라고 하여, 임진란 때 침략하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여 다시 침략할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이는 斥洋斥倭의 민중의 반일감정의 토로일 뿐만 아니라 열렬한 愛國心에서 나온 반침략의식이다.

또 『東經大典』의 "布德文"에서 이르기를

>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하면 또한 순망지탄이 없지 않을 것이라, 보국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27]

라고 하였다. 또 "論學文"에

"서양사람은 도성입덕이 되어 그 조화로서 일을 이루지 못함이 없고 무기로 침공함에 당할 사람이 없다하니 중국이 소멸하면 어찌 순망의 한이 없겠는가"[28]

라고 하였다. 이는 西勢東漸에 즈음하여 경계하여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강한 民族主義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서양의 침략과 더불어 西學에 대하여도 비판을 기하고 있다.

"서양사람은 천주의 뜻이라고 하면서 부귀는 취하지 않고 천하를 쳐서 빼앗아 그 교당을 세우고 그 道를 행한다고 함으로 내 또한 그것이 그럴까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더라"[29]

西學(天主敎)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알아본 뒤 침략행위를 일삼기 때문에 이를 단호히 비판, 배격하였다.

이와 같이 水雲은 일본과 서양의 침략을 경계하고 동시에 청나라(中國)의 조선에 대한 침략과 지배에 대해서도 단호하여 "안심가"에서 이르기를

"得之無窮하여 놓고 大報檀에 맹세하고 汗의 원수 갚아보세, 重修한 汗의 碑閣 헐고나니 초개같고 붓고나니 撲散일세.[30]"

汗은 청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며 汗의 碑閣은 병자호란 때 仁祖가 청태종에게 항복한 치욕의 장소인 송파에 세운 '삼전도'라는 청나라 전승기념비를 말한다. 이는 청나라 지배하의 속국과 다름없던 당시에 있어서 事大主義를 배격한 民族全體意識의 발로인 것이다.

東學은 이와 같이 外勢의 침략을 배격하는 데서 民族意識이 싹트고 輔國安民을 부르짖게 됨으로써 東學革命이라는 근대적 民族主義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한편 이는 平和共存의 世界一家 정신으로 민중이 스스로 나라를 지켜 민중이 주인된다는 主權在民의 民族自主의 獨立國家 建設의 의식을 자각케 한 것이기도 하다.

東學의 政治思想은 東學의 前衛團體인 天道敎 靑友黨의 三大綱領에[31]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는 輔國安民에 관한 第一綱領을 여기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東學의 民族主義란 新民族主義를 말하는 것이다. 舊民族國家의 民族主義가 國粹的 侵略的 閉鎖的 이념에 근거한다면, 신민족주의는 橫으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世界共和를 위하여 자기 민족을 從으로 발전케 하는 主義라는 것이다. 따라서 각 민족은 世界共和에 기여하는 단위민족으로서의 고유한 의무와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그리고 新民族主義에 맞는 自主란 고립과 사대주의를 배제하면서도 相互扶助의 自然의 원리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고립은 자살을 의미하고 依他는 타살을 의미하기 때문에 自立

을 하고 獨立을 하되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더불어 平和的 共存과 協同體制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자연의 順應이자 造化의 원리라는 것이다.

비록 당시로서는 美·蘇를 등에 업은 세력에 의해 靑友黨의 주장이 좌절될 수 밖에 없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民族自主의 獨立國家"를 주장한다고 하여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東學의 民族自主의 정신을 반드시 계승, 실천해가야 할 때라고 확신하여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輔國安民은 우리의 自主精神이요, 侵略主義를 배격하는 平和主義의 정신이요, 侍天主는 自主思想이기 때문이다[32].

이제 南北韓은 모두 韓國民族主義에 입각하여 더 이상 국제적 대립과 긴장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고 세계평화를 증진하는 데 그 사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韓民族의 그간의 수동적 지위에서 능동적 지위로 그 위상을 전환해가야 하는데 노력을 더해가야 한다. 南北韓 쌍방 모두 이러한 능동적 입장에서 民族主體性의 원리에 충실하고 철저할 때 南北은 지금보다 더욱 더 친밀해져 이러한 상호접근을 통하여 融解, 統合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事人如天(民主主義)

民主主義는 民族主義와 雙生兒라고 말할 수 있다. 民族主義 운동의 담당자가 君主나 貴族 또는 軍部官僚階層이었을 때 民主主義는 民族主義의 그늘에 가려서 성장, 발전이 억제되거나 왜곡되기도 하였다[33]. 여기서는 군주나 귀족, 기득권층의 전제권력의 보호를 위한 허위의식적 民族主義로부터 프랑스혁명이념에서 볼 수 있듯이 민중의 生命, 財産, 權利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던 평화공존적 방어형 민족주의의 개념에서 民主主義의 관계를 설명하여 보고자 한다.

한국은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끊임없이 추구해온 근대적 민족운동은 '君主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바라는 民主主義를 잠재적으로 염원해 왔었다. 이리하여 3·1운동은 우리 歷史上 처음으로 民主共和制로서의 政治理念을 천명하여 上海臨政을 誕生시키기도 하였다.

오늘날 統一 또는 近代的 民族主義가 民族史的 정통성의 기반 위에 民主主義를 기본이념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專制政도 권위주의적 독재도 아닌 自由民主主義를 이념으로 실제로 민중의 참여가 보장되는 개혁, 개방체재를 실천할 투철한 정신적 의지가 요청된다. 民族의 平和統一과 民主主義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따라서 평화주의는 곧 民主化요, 민주적 발전은 평화공존의 추진으로 된다. 더욱이 민족구성원과 국민의 구성원이 동일한 때문에 民主化의 바탕없이는 평화는 성취될 수도 없다. 民主化가 되어야 국민주도의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34].

東學은 人乃天의 宗旨와 事人如天의 倫理를 가지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平和와 民主主義의 理念을 제시하고 있다. 義菴(孫秉熙, 1862~1922)은 水雲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中心思想을 '人乃天'이라 하여 天人合一, 神人一體의 원리를 차원높여 창조적으로 전개하였다.

東學이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재래의 神本位, 神中心의 思想에서 인간본위, 인간중심으로의 思想的 전환을 뜻하는 것이다.

東學의 인간주의는 모든 사람이 계층, 계급에 관계없이 각기 神을 내면화하게 한 것으로 사람의 존엄성을 신격화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양반, 서민, 빈부, 귀천 등의 차별없이 만민이 고귀한 君子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인간평등의 民主主義의 理念을 보이는데 있다.

水雲은『龍潭遺詞』에서 이르기를

> "입도한 세상사람 그날부터 君子되어 無爲而化될 것이니 地上神仙 네 아니냐"[35]
> "우습다 저 사람은 지벌이 무엇이게 君子를 비유하며 문필이 무엇이게 도덕을 의논하노"[36]

이렇게 수운의 제자중에는 地閥이 높은 사람도 있었고 문장높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들에게 사람의 높고 낮은 것, 賢人君子가 되고 못되는 것은 道德이 높고 낮은 데 있지 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함을 기르쳤다.

水雲은 이어 海月에게 사람을 한울님같이 섬기자는 事人如天의 실천윤리를 제창하였다.

> "사람은 한울이라 평등이요 차별이 없나니라. 사람이 인위로서 귀천을 가리는 것은 곧 天意에 어기는 것이니 제군은 일체 귀천의 차별을 철폐하여 先師의 뜻을 계승하기로 맹세하라"[37]

그리고 또 이르기를

> "우리나라 안에 두가지 큰 폐풍이 있는데, 칫째는 嫡庶의 구별이요, 다음은 班常의 구별이라, 적서의 구별은 집안을 망치는 근본이오 반상의 구별은 나라를 망치는 근본이니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질이니라"[38]

이렇게 사람의 인위적인 귀천의 차별을 모두 부정하고 봉건적 세습의 모든 신분과 차별에 철폐를 내세운 것이다. 남녀평등이나 근대적 인간평등의 사상적 근간이 여기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인간평등주의는 神에 종속된 평등이 아니라 인간을 神의 차원으로 높이는 神人一體의 脫近代化(postmoderism)의 보다 본질적인 미래의 民主主義로 인본주의사상을 보여준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계급타파의 近代的 民主主義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는 주체라는 인간주체사상의 自由 平等思想을 보인 것이다.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는 주체라는 인간주체사상은 사람을 한울같이 섬기자는 事人

如天의 倫理, 道德的인 신앙상의 가르침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민중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여 주체적인 자각을 불러 일으켜 민중 스스로가 歷史推進의 주역이 되게 하는 새로운 선구적 民主主義의 지도이념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東學의 人乃天의 眞理는 인간본위요 인간중심의 인본주의사상일 뿐 아니라 物心一元의 至氣論에 바탕을 둠으로써 종래의 精神本位, 정신위주의 觀念論(唯物論)또는 物質本位, 물질위주의 唯物論의 결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인간성 회복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이념이기도 하다. 모든 歷史創造와 사회발전현상의 원인은 神도 아니고 物質(經濟)도 아니요 한울님의 성품을 지진 인간자신의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주체의 가치관과 平和觀은 人類文化創造의 새로운 理念的 座標를 열어보이는 것이다[39].

여기서 天道敎 靑友黨의 三代綱領 가운데 事人如天의 강령을 民主主義 정치이념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살펴 보도록 하자. 第一綱領의 특징이 民族主義의 自主性의 회복에 있었다면 第二綱領의 특징은 事人如天의 民主的 새 道德의 수립에 있었다.

따라서 진정으로 民主主義를 하고자 한다면 精神問題를 중요시하고 이를 政黨의 政綱政策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敎政一致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종교는 단순히 신앙만 위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輔國安民을 함께 걱정해야 종교본연의 역할을 다하는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天道敎 靑友黨은 종교적으로 事人如天의 정신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데서 民主主義시대를 앞서가는 윤리적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술적인 통치수단만 가지고 社會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道德的인 平和主義가 뒷받침이 될 때 順理的인 통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40].

오늘날 南北韓이 서로가 民主主義政權임을 주장한다. 남한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서구민주주의,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類型이며 북한이 내세우는 민주주의는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이다. 전자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면 후자는 전체주의적, 동원적 민주주의이다. 전자가 간접적 의회민주주의라면 후자는 직접적 黨독재의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실제운영에 있어서 여러가지 여건과 政治文化의 제약 때문에, 남한은 그동안 행정부 주도의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로 바뀌었으며, 그리하여 후견적 민주주의 또는 근대화 寡頭體制 또는 新重商主義體制의 성격을 보여왔다. 한편 북한은 치음에는 東유럽이나 中共의 모범에 따라 노동자, 농민, 인테리, 민족부르죠아지의 聯合獨裁體制를 구성하여 人民民主主義를 실천해왔으나 外來思想(社會主義)의 본래의 意義를 유지하지 못한 채 상황에 따라 왜곡되어감을 볼 수 있다[41].

여기서 南北韓의 政治的 名分과 실천의 괴리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韓半島에서 民主主義를 본궤도에 올리는 길은 없을까. 그리하여 쌍방이 民主主義의 課題에 보다 더 충실하며 相互接近, 融合하게 하는 方法은 없을까.

결론하여 南北韓이 다같이 東學과 같은 전통사상의 造化論的 人乃天(主義)의 民主主義의 요구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硏鎖하여 그 理念에 충실할 때 남북한은 상호접근을

하게 되고 끝내 평화통일을 이루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 同歸一體(民生主義)

발전론자인 W.W.Rostow는 경제성장의 5단계설에서 최종단계를 高度大衆消費의 단계로 설정하였다. Cyril E.Black도 경제적 사회적 전환 끝에 社會統合의 단계가 도래한다고 하였다. 이 단계는 산업화로 인한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 제도권 안으로 흡수 통합되었을 때를 상정하게 된다. A.F.Organski는 산업화의 단계 다음에는 國民福祉의 단계로 들어선다고 보았다. G.A.Almond도 政治發展의 최종과제를 價値의 分配를 들었다. 그러니 한 나라가 산업화된 다음에는 社會主義의 理念을 통하여 모두가 社會福祉의 문제에 전념하게 됨을 알 수가 있다[42].

현대사회가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수단이 社會開發이다. 사회개발에는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의 사회개발이 있다. 소극적 의미란 임금인상과 福祉厚生 시설의 확충 등의 방법으로 자본주의의 內在的 矛盾을 완화 조정함으로써 모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적극적 의미란 자본주의 경제의 보완적 역할을 넘어서 보다 실질적인 民主主義와 社會主義를 실현함으로써 보다 理想的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43].

그런데 post-modernism의 時代를 맞이하여 福祉社會의 건설은 福祉의 물질적, 환경적 조건을 개선하는 西歐式 方法보다 정신적, 도덕적인 平和와 文化의 문제에 力點을 두는 東洋的 方法에 대한 의존이 앞으로는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44].

東學의 "同歸一體"라는 개념은 天人合一, 個全一體의 원리에서 個人主義와 全體主義의 양극의 理念을 통합, 극복하는 平和와 協同의 理念이기도 하다. 그것은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自由와 平等을 동시에 추구하는 民主的 社會主義의 理念인 것이다.

同歸一體는 사람과 한울이 하나임을 깨닫고 참된 하나의 진리로 돌아와 모든 사람이 하나로 귀일함을 뜻한다. 그것은 나와 모든 사람이, 나와 겨레와 인류가 하나가 됨을 말하며 모두가 하나의 진리로 돌아옴을 말한다. 투쟁과 분할의 역사에서 벗어나 平和와 合一의 길로 나아감을 말한다. 各自爲心에서 벗어나 吾心卽汝心이 되어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다양한 가운데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함을 말한다.

水雲은 『龍潭遺詞』에 이르기를

> "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마는 현숙한 모든 군자 동귀일체 하였던가"[45]
> "억조창생 많은 사람 동귀일체하는 줄을 사십평생 알았더냐"[46]

라고 하였다.

同歸一體의 원리는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를 대립과 분열이전의 하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동귀일체는 대립, 분열의 부조화를 조화시킬 수 있고 自由와 創意, 能

率, 平等의 편중을 雙全할 수 있으며 대립을 근원적으로 해소함에 있어 人間中心의 福祉國家建設로 하나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同歸一體는 자각한 민중의 단결을 고취하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다. 甲午東學革命 당시에 海夢(全琫準, 1855~1895)역시 바로 이 同歸一體의 理念으로 민중을 결집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海夢은 問招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問答을 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問 : 너도 또한 東學이란 매우 좋아하는가.
答 : 동학이란 본 마음을 지키고 한울을 공경하는 길이기 때문에 매우 좋아한다.
問 : 마음을 바로 잡는 점은 東學黨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따로 너의 입당이유가 있지 않은가.
答 : 단순히 마음을 바로 잡는 것 뿐이라면 물론 동학당에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학의 이른 바 '守心,正氣'의 주요한 취지는 마음을 바로 잡는 것외에 協同一致의 뜻이 있는 것이다. 마음을 바로 잡은 사람이 일치협력하여 간악한 관리를 제거하고 輔國安民의 업을 성취하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47]

위의 供招 가운데 協同一致는 오늘날의 社會主義의 의미를 담는 同歸一體의 理念을 말한 것이다. 마음을 바로 잡은 사람들(守心正氣)이 동귀일체함을 뜻한다. 여러 갈래의 다양성 속에 조화와 일치점을 찾고 모든 모순과 갈등을 지양하는 平和와 和合의 福祉社會建設의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창조를 뜻한다.

이러한 東學의 精神을 계승한 天道教 靑友黨은 북쪽의 社會主義 統制經濟體制와 남쪽의 資本主義 自由經濟體制를 통합한 同歸一體의 새 경제제도를 강령으로 내세웠다. 변화와 함께 우리의 土着的 理念定立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동학은 非同歸一體的, 기술적, 물질적 측면의 체제의 강조보다 사람을 위주로 윤리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한 강령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東學革命 당시의 綱領이라든가 執綱所의 12個條 改革案을 보면 그것이 언제나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同歸一體의 理念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48].

各者爲心의 오늘의 경제상황을 두고 西歐의 改良主義, 修正主義의 哲學 不在의 한계까지도 극복한 同歸一體의 理念이 새로운 경제체제로 도입되어야 한다. 同歸一體의 새 經濟는 富의 평등적 평화적 上向分配를 통하여 향상된 경제생활을 지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한에 있어서 福祉問題는 모두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남한은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복지가 미진하다. 북한은 國民總生産의 규모에 비하여 군사비 지출이 너무 크므로 복지를 확대할 여력이 없었다. 그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체적으로 民族意識을 가지고 韓國的 民主主義, 韓國的인 協同

福祉制를 만들어 北韓에 대하여 남한의 資本, 科學, 技術 그리고 經營의 경험을 남북협력과정을 통해서 도와주어 남북한이 同歸一體의 理念으로 그 政治理念과 體制를 상호접근해 갈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 해가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5. 後天開闢(文化主義)

21世紀의 韓國의 政治理念은 어떻게 변화할까. 이 질문을 두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文化主義의 價値觀과 平和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物本主義, 神本主義의 西歐的 접근방법에서 人本主義를 중심으로 하는 東洋的 연구방법을 주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제 社會福祉의 문제도 재정적 물질적인 요인보다는 인간적 도덕적 文化的 요인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東學思想의 文化主義의 政治社會的 의미를 표출하고 있는 주된 개념을 포착하여 그것의 핵심적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자. 이는 일단 '無爲以化' '地上天國' 그리고 '後天開闢'의 개념으로 접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49].

老子의 '無爲而治'의 國家哲學은 통치행위 자체를 극소화시키는 최소정부의 관념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無爲而治의 論理와 '小國寡民'의 理想은 궁극적으로는 '국가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50]. 그리고 東學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하게 현세가 부정된 후천개벽의 君子共同體의 이상속에 反政治의 논리에 따른 국가관념의 매몰상태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强者의 지배와 억압의 정치현실을 두고 老子의 역설을 들어보도록 하자.

> "弱은 强에 이기고, 柔는 剛에 이긴다."[51]

이 명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역설의 진리는 무엇일까? 柔弱한 것, 하위의 것이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이 말은 '다투지 않는' 승리를 뜻한다. 이는 자기 시대의 끝없는 전쟁상태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염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력과 폭력 자체를 혐오하는 自然主義의 世界觀의 기반이기도 했다. 그는 남과 다투지 않는 '不爭之德'을 설득하게 된다[52]. 그런데 이 부쟁지덕은 이른 바 '무저항주의'와 '비폭력'의 이념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데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런 면에서 老子의 學說은 强者의 사상과는 상반되는 일종의 '弱者思想'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어쨌든 여기서 東學의 無爲以化의 思想에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무저항주의와 비폭력의 論理와 老子의 不爭之德이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53].

東學의 無爲而化와 老子의 無爲而治는 새로운 文化(主義)에 의한 開闢의 後天과 小國寡民의 理想鄕에 도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理想鄕에서의 政治的 論理이자 平和觀이기도 하다.

地上天國의 理想은 현실적 고뇌가 온전히 해소되고 인간 상호간의 반계급주의적인 평등주의가 구현되는 인간해방의 원초적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극복의 대상으로서

의 現世는 궁핍과 질병과 억압의 '先天'이라면, 이와는 달리 현세의 모순이 극복된 세상은 새로운 文化로 이루어진 平和로운 '後天'이다. 後天은 이처럼 君子와 地上神仙의 세계로 그것은 入道와 함께 도달할 수 있는 세계로서 그 모습은 너무나 현실적이다.

"입도한 세상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무위이화될 것이니 지상신선 네 아니냐"[54]
"遊衣遊食 귀공자를 欽羨해서 하는 말이 신선인가 사람인가"[55]

현실세계의 고통이 심할수록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민중적 열망을 대변하는 희망찬 미래상은 단순한 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 욕망의 해결은 현세적 가치관 속에서 인간 상호간의 차별과 불평등의 빈부의 계급관계와 귀천의 신분관계를 과도하게 전환시킨다.

한편 부귀자와 빈천자의 계급신분관계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계급대립조차 모두가 君子되는 同歸一體의 상태로 해소되고 만다. 이러한 물질적 궁핍과 차별적 인간관계가 극복된 사회상태에서 대립적 인간관계 자체가 無爲而化로 스스로 해소된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 東學的 平和觀의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地上天國의 理想世界는 地上神仙의 世界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후천개벽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도달의 과정은 또한 後天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개벽'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開闢이라면 암흑과 혼돈에서 天地가 처음 생긴다는 뜻을 가지는데 이 開闢사상은 人文開闢을 뜻한다. 세계가 혼돈으로 되어 질곡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개벽과 같은 새로운 精神的, 文化的 큰 變革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水雲은 歷史를 크게 두 시대로 나누어 지나간 세상을 先天이라 하고 創造후의 未來의 세상을 後天이라 하였다. 따라서 후천개벽은 천지개벽이 아니라 인간중심의 文化開闢을 뜻하는 것으로 인류역사문화 전반의 일대 변혁과 새로운 창조의 변화와 교체를 말한다. 이와 같은 후천개벽의 平和觀은 역사의 순환에 따른 天運의 회복을 의미한다.

水雲은 스스로 天皇氏로 자처하고 海月에게 이르기를

"이 세상 운수는 천지가 개벽하던 처음의 큰 운수를 회복한 것이니 세계만물이 다시 포태의 수를 정치 않은 것이 없나니라…… 새 한울 새 땅에 사람과 물건이 또한 새로워질 것이니라"[56]

또 義菴에 이르기를

"개벽이란 한울이 떨어지고 땅이 꺼져서 전부 한 덩어리로 모였다가 子丑 두 조

각으로 나뉘임을 의미한 것인가. 아니다. 개벽이란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함을 말함이니, 한울땅과 일만 물건의 개벽은 공기로써 하고 인생만사의 개벽은 정신으로써 하나니 너의 정신이 곧 천지의 공기이니라……

천지의 기수로 보면 지금은 일년의 가을이오 하루의 저녁 때와 같은 세계라. 물질의 복잡한 것과 공기의 부패한 것이 그 극도에 이르렀으니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사람인들 어찌 홀로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큰 시기가 한번 바뀌일 때가 눈앞에 닥쳤다. "[57]

라고 하였다. 이는 큰 변혁의 개벽이 닥친 것을 말한 것이며 精神開闢을 역설하고 以身換性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以身換性은 문자 그대로 肉身의 관념을 性靈으로 바꾸라는 것이니 나의 정신이 육신에 사로잡히지 말고 본래의 나 즉 한울님 마음을 회복하여 거듭 태어나 새 사람이 됨을 말한다. 이리하여 天道敎는 신인간 창조운동에 앞장서게 되고 '精神開闢' '民族開闢' '社會開闢' 등 3대 개벽운동을 전개하게 된다[58].

이상 三大개벽의 실현의 과정은 개성적, 집단적, 세계적 순차로 실현되는 階段的 성격을 띄지만 보다 三者間의 연쇄성있는 운동에서 東學의 文化主義的성격이 활성화될 것이다[59].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文化主義 運動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나의 처방으로서 東學을 비롯한 전통적인 韓國思想에 대한 집중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生命이라는 주요개념을 중심으로 東洋의 傳統倫理, 民族史를 바로잡는 일등 우리의 傳統思想을 體로 하면서 西洋의 科學文明을 用으로 接木하여 韓國民族主義運動을 새롭게 정립하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인구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통일에 대한 展望을 두고 不燃其然의 메타메시지로서의 연속적이면서도 불연속적인 二重的 論理로 파악하는 그러한 새로운 世界觀運動, 精神思想, 文化運動의 물결이 크게 일어나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60].

4. 結論 -執綱所의 實踐-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東學革命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통치체제의 개혁과 사회변혁적 理想을 함축한 다양한 사상을 두고 농민혁명을 이끌어가는 전봉준을 비롯한 변혁의 주체가 東學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려 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추상적 관념형태로 제시된 變革思想은 그 자체가 자기완결적 논리체계로 정립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執綱所의 思想과 實踐에 그리고 이의 統一을 관심을 가지고 有意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61].

집강소에서 하는 일은 주로 폐정개혁의 조항을 실천하는 일이었다. 여기서는 먼저

집강소의 변혁이념의 한 중심축이 되는 弊政改革案의 토지의 '平均分作'의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자. 농민혁명의 궁극적 지향점인 평균분작의 문제는 農者得田의 원칙을 반영한 토지제도의 전면적 개혁의 논리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論理는 東學의 平和觀에 입각한 均産主義的 理念에 토대를 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62].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리가 이 단계에 와서 집강소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변혁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데 매우 큰 歷史的 意味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편 水雲이 創造한 "今不聞古不聞之事 今不比古不比之法"이라 한 '人乃天'의 原理에 입각한 새로운 지도이념을 집강소를 통해 실천으로서 理論과 實際를 一致시킨 東學의 造化論的 平和觀의 구체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東學과 같은 韓國의 傳統思想을 올바로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그 土臺위에서 民族主義, 民主主義, 民生主義, 文化主義의 現代政治理念을 民主的 社會主義랄까 民族的 民主主義의 理念型으로 구현해 나갈 때 民族의 平和統一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南北의 현실은 서로 外來思想에 집착되어 냉정논리의 단순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대립을 완화, 해소하는 平和統一의 철학사상이 韓國思想 속에 간직되어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西歐式 民主主義와 資本主義 그리고 東歐式 民主主義와 社會主義의 모순과 갈등을 平和的으로 해결하는 슬기와 哲學은 韓民族의 전통사상 속에서 발굴할 수 있으며 그 제도적 理念的 장치에 대해서는 "平和統一을 위한 政治理念的 摸索", "韓國政治硏究의 接近方法에 대하여"등의 글에서 개진한 바 있다[63]. 그것을 굳이 현대적 용어로서 표현한다면 民主的 社會主義, 또는 民族的 民主主義로 결부시킬 수 있으나 보다 더 소박하게 말해서 韓國民族主義 또는 韓國的 民主主義라고 부를 수 있다.

그 思想은 현대의 民族主義, 民主主義, 民生主義, 文化主義의 理念을 한반도의 현실상황과 한민족의 이익과 문화전통에 부합하게끔 그 취지에 충실하게 구현되어지는 사상이다. 이제 文民政府의 시대를 맞이하여 東學의 造化의 思想에 의한 地上天國, 後天開闢의 정신에 따라 國內外의 모든 思想對立과 남북한 관계를 圓融會通케 하는 民族思想을 토대로 平和統一로 접근하는 청사진을 제시할 때가 온 것 같다[64]. 그렇게 되면 남북의 7천만 동포는 이제 이러한 東學의 政治理念이 제시하는 平和共存과 和解, 和合 그리고 民族統一의 길로 모두 동조하고 나설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주〉

1)"한국學界, 西洋學問支部 벗어날 때", 東亞日報, 1993. 6. 8. 第14面.

2)이수훈, "19세기 인식론의 위기"(學而思), 교수신문, 1993. 6. 1. 第6面.

3)東學百年 시리즈(9), (朝鮮日報, 1993. 6. 1.)第14面.

水雲은 경주 가정리에서 再嫁女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양반이래도 별 볼일없는 양반) 어릴 때의 兒名은 복술이로 세상에 불만을 품고 보따리 장수 안해보는 것없이 다 해보며 주유천하하다가 고향산천 용담으로 돌아와 구도의 苦行 끝에 忽然히

得道한 것은 1860년 음력 4월 5일이다. (포덕원년)

그리고 그가 하늘님의 명을 받아 21字 주문을 지은 것은 이듬해 4월이오, 그가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大道를 허락한 것은 1861년 6월부터다. 그리고 온갖 박해와 음해 끝에 관에 체포된 것은 63년 12월 1일이요, 그가 대구 남문밖 관덕땅 뜰에서 참수된 것은 64년 3월 10일이다. 그러나 水雲이 傳道의 생애를 산 것은 예수보다도 짧은 불과 2년만의 세월이요 그가 참수됐을 당시 동학교도라 해봤자 줄잡아 3천명 정도였고, 그들의 신앙상태라는 것도 정릉골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해서 몰려드는 사람들 수준을 크게 넘은 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그들의 괴수격인 복술이가 국정모반의 左道亂正의 대역죄로 처형 당한 판에 혼비백산 흩어져버린 교도들의 정황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4)水雲은 두사람의 여종 가운데 한사람은 며느리를 삼고 한사람은 수양딸을 삼았으며, 第2代 교주 海月 崔時亨은 대가족제도 속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며느리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교도들에게 며느리도 하늘로 섬기라고 가르쳤다.
崔東熙, "天道敎 : 바른 세상을 위한 가르침", 『和解』제4집, (主流 : 1985. 8), p.53.

5)金哲, 『東學精義』, (東宣社, 1989), pp.385-386.

6)『東亞國語大辭典』, 李崇寧 金碩柱 監修, (東亞出版社, 1983. 9), p.1178.

7)金相日, "東洋哲學 통해 '有機體哲學' 재해석", 世界日報, 第1410號.

8)金相日, 『화이트헤드와 동양철학』(서광사, 1993), pp.282-289.

9)오익제, "통일이념과 동학사상"『신인간』통권 462호, 1988년 8월호(신인간사), pp.32-33.

10)이항녕, "통일이념과 동학사상"『新人間』11월호, (서울 : 天道敎 中央總部, 1989), p.15.

11)天道敎經典, 『東經大典』"論學文"

12)홍장화 편 『천도교 교리와 사상』(천도교중앙총부, 1991), pp.139-141.

13)'개벽'이라는 개념속에는 동학사상에 대한 세계사적 흐름속의 확연한 조망이 들어있어서, 동학 즉 無極大道인 天道를 통한 인간과 사회의 개조라는 구체적 비젼의 추구가 일관된 삶의 실천속에서 실현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수운이나 해월은 모두 革命을 개벽의 하위개념으로 그 실현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였으며 보다 본질적인 것은 侍天主의 인간관의 실현에 있다고 보았다. 命을 革한다는 정치적 변화가 곧 그러한 신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만국의 병화가 우리 조선강토를 짓밟을대로 짓밟고 물러날 때 개벽의 운세는 도래할 것이라는 巨視的 有機體史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함부로 조직을 와해시키는 폭력적 거사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金容沃, "崔時亨의 사고와 고민"(조선일보, 1963. 6. 1), 第14面.
: 金교수는 海月 崔時亨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개벽'의 시나리오를 쓴 적이 있을 만큼 東洋哲學과 이 부분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왔다.

14)이항녕, "동학의 우주관"(상)『新人間』6월호, 포덕 134년, 통권 제517호 (신인간사, 1993. 3. 6), p.20.
東學百年 시리즈(9), 前揭書.

東學의 『한울님』은 인격적인 소리를 지니고는 있으나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요 역

사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하느님이다. 그는 時空의 생성속에 내재하며 항상 불완전한 모습으로 완전을 향해 달려간다. 동학사상은 바로 이러한 한울님의 선포의 실현이며 그것은 한울님 즉 天主에 대한 관념의 혁신이다. 侍天主란 天主를 모시라는 뜻이 아니요, 天主를 모시고 있는 자리로서의 인간존재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며 人乃天이라고 후대, 사가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 人乃天에서 비로소 우리 民族의 近代的 平等的 自我가 정립되는 것이다.

15)홍장화 前揭書, pp.137-139.

16)曺敏, "한국근대변혁운동의 정치사상 : 개화파의 개혁사상과 동학농민혁명의 변혁사상을 중심으로", 高大大學院(政外科)博士學位論文, (1991. 12), p.106. 金容沃. 前揭書.

: 海月은 원래의 이름이 崔慶翔으로 경주시내 황오리태생의 무식꾼이었다. 해월이 東學에 入道한 것은 水雲이 포교할동을 막 시작할 초엽, 그러니까 1861년 6월의 일이다. 당시 그는 용담에서 하룻길인 마북동 검등골의 화전민이었다. 그리고 그가 수운으로부터 道統을 물려받은 것은 수운이 불잡혀 가기 넉달 전 63년 8월 14일의 일이다. 그러한 그가 水雲의 殉教로 1894년의 미비한 정황하에서 1894년 우리가 알고 있는 '東學革命'이라고 하는 광대한 거국적 조직운동을 가능하게 하기까지의 꼬박 30년간의 그의 피눈물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이 30년간의 歷史를 훑어내려오지 않고는 東學에 관한 어떠한 論文도 사상누각이요 공중허환이다. 東學의 모든 思想과 운동 그리고 包接조직은 바로 海月 최경상의 30년이라는 기나긴 삶의 역정에서 구체화된 것이며 검등골 최보따리 해월을 도외시한 동학혁명은 운운될 가치가 없다.

海月에 대한 역사기술에 있어서 가장 오류적 통념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南接과 北接이라는 분별개념이요, 또 하나는 1984년 동학전쟁과정에 있어서 전봉준은 의로운 진보세력이요, 崔海月은 기포를 막은 반동지도세력이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 상념이 모두 通時的 관점의 결여나 동학관계사들을 엄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데서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첫번째 오류는, 南接ㅡ北接의 개념으로 二元化시키는 것으로 이는 해월이 수운에게서 도통을 전수받기 전에 '북도중추인'이라는 도호를 받은 사실에서 개념의 혼동이 일어난다. '북도중추인'이라는 말은 아마도 경주용담에 비해 해월의 거처인 검곡이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용담에 살고 있는 한 구분키 위하여 소박하게 내린 이름이었는데, 해월은 자기 스승에 대한 충정때문에 평생 이 '북도중추인' 혹은 '북접주인' '북접법헌'(1892이후)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北接이 南接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동학조직이 남관구ㅡ북관구식으로 양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동학운동을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개념으로서 실제로 존재했던 적은 없다. 그것은 1890年代 말기의 동학운동사를 기술하는 후대의 방편적인 개념일 뿐이며 그것이 오늘날 혼동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해월은 保守的인 체제유지의 입장만을 취한 것은 아니며, 동학사상 최대 평화시위인 보은집회(3만명, 1893. 3. 11~4. 2)를 주체적으로 주도한 것도 그 자신이며 또 '斥倭洋倡義'와 '輔國安民'의 깃발을 휘날린 것도 그의 결단이다. 그리고 2차 혁명때 일본군이 조선강토를 능멸하고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과감히 전조직 총동원의 起包명령을 내리고 자신도 무주ㅡ장수를 거쳐 임실로 넘어가 전라도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대전투를 지휘케 되는 것이다. 우금치에서 쓰러져간 수 없는 파랑새의 울음소

리를 가슴에 품고 피신에 피신을 거듭한 끝에 1898년 4월 5일 원주 송골에서 체포되어 6월 2일 지금 서편제의 구슬픈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는 단성사 뒤편 육군법원의 교수대에서 조선근대사의 가장 찬란한 일대기의 종말을 고하였으니 이 때가 海月의 나이 72세였다.

17)趙鎔一, 『東學造化思想硏究』(서울 : 東星社, 1998)참고.

18)申福龍, "東學의 基本思想"『東學思想과 甲午農民革命』(평민사, 1985), p.226.

19)佛家的 수련과 득도의 과정에 대해서는, 『崔先生文集道源記』(『韓國思想』第21集 전재).

曺敏, 前揭書, p.115.

20)李敦化, "天道敎創建史", 『東學思想資料集』2, p.79.

21)拙稿, '不然其然의 原理' "韓國政治硏究의 方法에 對하여", 京畿行政論集(第8輯), 1993. 5. pp.12-17.

22)曺敏, 前揭書, pp.114-118.

金裕成, "'鸞郎碑序'解釋에 대한 考察", 『論文集』제21집, (大邱한의대, 1983)참조.

23)자연과 인간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경우에는 인간상호간의 문제인 政治와 社會에 대한 관념이 구체화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다 전근대적인 自然主義的 造化思想은 사회문제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을 무척 힘들게 할 뿐으로, 한편 외재적이고, 이질적인 것에 대한 조응적 관계를 두고 '政治的 順應主義'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4)우윤,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창작과 비평사, 1993)pp.100-125.

"19세기 민중운동과 민중사상", 『역사비평』제2집(1988. 봄) 참조.

25)韓昇助, 『韓國의 政治思想』(一念, 1989), p.329.

26)『천도교경전』, 〈용담유사〉, "안심가".

27)上揭書, 『東經大典』"布德文".

: 西洋 戰勝攻取 無事不成而 天下盡滅 亦不無脣亡之歎 輔國安民 計將案出.

28)上揭書, 『東經大典』"論學文",

: 西洋之人 道成德立 及其造化 無事不成 攻闢干戈 無人在前 中國燒滅 豈可無亡之患耶.

29)上揭書, 『東經大典』"布德文".

30)上揭書, 〈용담유사〉"안심가".

31)天道敎 靑友黨은 日帝治下에서 天道敎 靑友黨을 모체로 하여 1931년에 발전적으로 개편된 전위단체로서 日帝가 1937년에 中日전쟁을 도발하면서 탄압이 격화되자 지하로 잠적하였다가 光復후 다시 부활되어 민족진영을 대표한 정당으로 특히 北韓에서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한 바 있다. 남쪽에서는 광복 한달 후인 9월 14일 천도교 청우당이 재조직되었고, 북쪽에서는 국토분단 때문에 부득이 광복 다음 해 2월 1일 天道敎 北朝鮮宗務院을 설립함과 아울러 2월 8일에 北朝鮮 天道敎靑友黨을 따로 조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광복후 北韓에서는 쏘련의 지원을 받는 노동당과 맞서 靑友黨 초창기에 全北韓에 조직망을 갖고 국토분열을 저지하기 위한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등 역사적인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하게 한 靑友黨의 三大綱領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 보면, 靑友黨의 3대 강령은

첫째로, 民族自主의 民主主義 獨立國家의 建設이고,

둘째로, 事人如天의 精神에 맞는 새 道德의 樹立,

셋째로, 同歸一體의 理念에 맞는 새 經濟制度의 實現으로 되어 있다.

金哲 編, "東學의 政治思想 : 天道敎 靑友黨의 三大綱領을 中心으로" 『東學精義』(東宣社, 1989), pp. 357-358. p. 366.

33)韓昇助, 『21세기의 挑戰과 한국의 對應』(형설출판사, 1993. 3)p. 106.

34)『천도교의 교리와 사상』, 前揭書, pp. 135-136.

35)前揭書, 〈 龍潭遺詞 〉 "교훈가".

36)上揭書, "도덕가".

37)천도교서편찬위원회, 『천도교백년약사』上권, (서울 : 천도교중앙총부간, 1981), p. 120.

38)『천도교경전』前揭書, 〈 해월신사법설 〉 "布德".

39)『천도교 교리와 사상』前揭書, p. 57.

홍장화, 『한국사상』제21집, pp. 214-215.

40)韓國戰爭 이전까지는 共産黨員들은 靑友黨의 강령을 보고 事人如天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혁명과업수행에 逆行하는 것이라고 하여 비판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사실상 靑友黨은 事人如天 정신을 표방한 제2강령 때문에 右翼이니, 暴力革命을 거부한다느니 하는 명분을 붙여 보수반동으로 매도되어 탄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金哲, 前揭書, p. 372.

41)韓昇助, 『韓國의 政治思想』前揭書, p. 331-332.

42)Richard A. Higgott, Political Development Theory, (London: Croom Helm, 1983). 21세기위원회, 『미래전망, 2020년의 韓國과 世界』(동아일보사, 1992).

"21세기 韓國의 모습" 『民族知性』特輯(1989년 1월호), pp. 159-173.

韓昇助, 『21세기의 挑戰과 한국의 對應』, 前揭書, p. 110.

43)Agness Heller & Ferenc Feher, The Post Modern Political Condition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89).

Frank Cunningham, Democratic Theory and Socialism, (Basic Books, 1983).

44)韓昇助, 上揭書, p. 110.

45)『천도교경전』〈 용담유사 〉 "권학가".

46)上揭書, "교훈가".

47)전봉준 진술기록 ; 당시의 일본신문에 게재.

『천도교 교리와 사상』, 前揭書, pp. 72-73.

本稿脚註61을 參考.

48)曺敏, "집강소의 활동과 변혁이념", 前揭書, pp. 141-149.

49)曺敏, 前揭書, p. 119.

50)我無爲 以民自化 我好靜 以民自正 我無事 以民自富 我無慾 以民自撲 其政悶悶 其民醇醇 其政察察 其悶缺缺(『老子』제58장 "順化").

小國寡民 使有什伯之器而不用 使民重死而不遠徙 雖有舟與 無所乘之 雖有甲兵 無所陳之 使民復結繩而用之 甘美食 美其服 安其居 樂其俗 隣國相望 鷄犬之聲相聞 民至老死不相往來(『老子』제80장, "獨立").

51)弱之勝强 柔之勝剛(『老子』제78장, "信任").

52)善爲士者不武 善戰者不怒 善勝敵者不與 善用之者爲下 是爲不爭之德 是爲用人之力 是爲配天之極(『老子』제68장"配天").

53)曺敏, 前揭書, p.133.

54)『용담유사』"교훈가".

55)『용담유사』"안심가".

56)『천도교경전』해 월 신 사 법 설 "開闢運數"

57)上揭書, 해 월 신 사 법 설 "人與物開闢說"

58)『천도교 교리와 사상』, 上揭書, pp.60-67.

『천도교입문』, (천도교 중앙총부간, 1980), pp.47-49.

精神開闢은 낡은 관념형태의 일체청산과 個體의 정신적인 새로운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水雲은 天道를 창명하는 벽두에 먼저 靈符를 그려내고 한편 呪文을 지어 이를 念念不忘케 하여 守心正氣 侃養淑氣(예양숙기)로 정신적 질병을 퇴치케 하고 새롭고 참다운 自我의 자각에 부단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강조하였으니, 이것이 곧 정신개벽을 의미한다.

民族開闢은 병든 민족의 경우 事大思想에서 민족혼을 상실하거나 그 밖의 민족적 타락의 경우 새로운 민족정기 발양으로 革新醇化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민족집단내에 '정신개벽'을 완성하는 同德이 數로서 다수에 이르도록 하면서 대중집단의 계몽에서, 한편 전반적 생활양식의 새로운 文化와 제도상의 개조로 민족의 개벽이 실현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社會開闢은 한 국가안에 사는 같은 민족으로서 정치적 기회균등, 경제적 평등이 보장되어, 누에치는 잠부가 비단옷을 입고, 밭가는 농부가 쌀밥을 먹고, 벽돌쌓는 노동자가 벽돌집을 가져야 가장 합리적이며 天命과 天理에 합치되는 번영과 명랑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사회적 질병의 치유로 開闢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한편 사회개벽은 인류의 永久平和와 相互扶助로써, 이를테면 민족간 국가간의 침략, 정복, 갈등 등의 모든 행동을 지양하고 이상사회에 도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9)우리는 지난 冷戰時代에 美 蘇 두 강대국이 서로 敵對視하여 전쟁을 일으키면 둘 다 파멸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을 보아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나라가 얼마나 人權문제등 道德的인 政治를 하느냐 하는 道戰 또는 얼마나 經濟的인 實利를 얻으며 富國이 되느냐 하는 財戰, 다음으로 弘報와 外交 그리고 文化에 얼마나 수완을 발휘하느냐 하는 言戰에치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오늘날 세계역사는 義菴이 약 백년전에 예언한 대로 전쟁대신 東學의 三戰論에 의한 文化主義의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60)拙稿, "平和統一을 위한 政治理念的 摸索"『京畿行政論集』(第6輯)

(京畿大行政大學院, 1992). p.71.

61)曺敏, 前揭書, pp.135-149.

金 容 沃, 前揭書.

녹두(海夢)가 東學에 入道한 것은 1891년의 일로 처음에는 호남의 대접주 김덕명의 휘하에서 소접주로 있었다. 그래서 水雲 海月과 녹두와의 사이에는 30년의 갭이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시의 동학의 조직의 위계로 말하자면 海月이 로마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라면 녹두는 조선의 한 교당의 신부인 셈이다. 여기서 교황과 시골신부라는 위계상의 고하로써 양인의 역사적 가치를 포폄(褒貶)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바오로 교황보다 남미 해방신학의 신부가 더 위대한 역사적 인물로 기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교황과 시골 교구신부의 입장과 고민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걸쳐 오늘의 방대한 거족적 조직을 이룩해 놓은 장본인 海月의 입장과 30년이나 뒤늦게 그 조직에 편입된 신참 비분강개지사는

다를 수 밖에 없고 또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녹두 전봉준에게는 해월의 개벽사상과 같은 東學의 종교적 비젼이나 의식, 의미의 전환보다는 긴박한 사회현실, 구체적으로는 탐관오리들에 의하여 인민의 삶이 무자비하게 유린되는 폭력적 현실, 그리고 단지 동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문중에서 쫓겨나고 유리걸식하는 신세가 되어 생존권에 허덕이는 민중들의 삶의 문제해결이 보다 긴박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海月은 東學이라는 비젼을 통하여 역사를 개벽하려 했지만 녹두에게는 동학이라는 것은 긴박한 사회문제를 해결키 위한 조직적 방편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녹두는 농민전쟁을 주도하면서 통시적 통찰로 이 시대의 사회와 인간들이 무엇을 참으로 바라고 있는가를 목격하고 그 갈망의 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이렇게 하여 출현한 것이 바로 집강소라는 제도였던 것이다.

62)上揭書, p.145.

63)拙稿, "平和統一을 위한 政治理念的 摸索", 上揭書.

拙稿, "韓國政治硏究의 方法에 대하여"京畿行政論集(第8輯)(1993. 5).

64)韓昇助, 『韓國의 政治思想』前揭書, pp.341-342.

金哲, "東學의 政治思想"『東學精義』前揭書, pp.382-384.

남한의 그리스도교 신학은 겨레의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송 기 득

1

종교란 모름지기 사람의 구원을 지향한다. 그리스도교라고 해서 조금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스도교야말로 사람의 구원을 첫째로 삼는다.

그런데 사람의 구원이라고 할 적에 사람 일반이나 구원 일반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실재의 사람이 있고 구체로운 구원이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재 사람의 구체로운 구원을 묻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실재의 사람은 남한의 '국민'이든 북한의 '인민'이든 우리 겨레 모두를 가리키며, 우리 겨레의 구체로운 구원이란 통일 이상 덮을 게 없다. 그러기에 남한의 그리스도교가 겨냥하는 사람의 구원이란 실제로 우리 겨레의 통일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 겨레의 통일이야말로 오늘의 남한 그리스도교가 지향하는 사람 구원의 실체가 된다. 이것을 모른 체한다면 남한의 그리스도교는 사람의 역사 구원이란 그의 본뜻을 저버리는 것이며 오늘에 있을 역사의 의의를 잃게 된다. 겨레의 통일을 지향하는 바로 여기에 남한 그리스도교가 우리 겨레 앞에 있어야 할 역사의 뜻이 있는 것이다.

남한의 그리스도교 신학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겨레의 통일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더듬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남한의 그리스도교가 겨레의 통일을 도맡은 것은 아니다. 또 그럴 수도 없다. 다만 우리 겨레를 위한 그리스도교라면 겨레의 통일을 이루는데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학은 그리스도교의 신학인 만큼 할 수 있는대로 통일을 이루는 데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학이 통일에 참여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나는 여기에서 두 가지만을 지적하려고 한다. 첫째는, 남한의 그리스도교 신학이 통일을 위한 신학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 남한의 그리스도교 신학이 북한의 이념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바탕을 찾는 일이다.

2

그리스도교 신학이란 그리스도교의 기본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는가를 해석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스

도교의 기본되는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는 것이므로 그리스도교 신학은 그 까닭을 밝히고, 그 까닭이 겨레의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는가를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디 히브리말로는 '메시아'인데, 유다교의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를 뜻했지만, 처음 그리스도교에서는 죄의 '대속자'란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예수의 말과 행태에서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민중의 해방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교 신학이라면 먼저 예수가 민중 해방자임을 밝혀야 것이다.

예수를 추적할 수 있는 성서의 자료『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는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민중해방을 겨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민중'이란 예수의 말을 따면, 눈먼 사람들, 문둥병자들, 절음발이들, 가난한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쫓겨다닌 사람들 따위 사회의 밑바닥 계층들을 가리킨다. 정치 쪽에서 억눌리고 경제 쪽에서 빼앗기고 사회 쪽에서 밀려나고 문화 쪽에서 제쳐지고 이데올로기 쪽에서 탈주체화(예속화)되는 이른 바 소외계층 모두를 일컫는다. 예수는 바로 이 소외계층의 해방을 위해 운동을 폈다. 이것을 성서의 말을 빌려 '하느님나라운동'이라고 한다. 그것은 민중해방운동에 다름 아니다. 민중이 해방되는 세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민중해방을 위해 유다교의 권위와 전통에 도전했고, 율법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웠다. 그것은 그 때 힘있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들이 로마제국의 권력을 엎고 전통과 권위와 법을 내세워 민중을 '죄인'으로 몰아서 사람아닌 것으로 밀쳐내고 탄압했기 때문이다. 예수에 따르면 민중도 사람(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다. 민중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중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계, 민중의 인간화가 실현된 세계,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는 바로 이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기 위해 몸을 내댔던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는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 형틀에서 처참하게 살해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까닭은 그가 민중해방운동을 펼친 데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 해방전통을 이어 받는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민중해방자)라고 고백하고 따랐다. 이 사실을 오늘의 역사 현장에서 증언하려는 것이 남한의 민중신학이다.

그러나 민중신학은 그저 예수가 민중해방자라는 사실만을 밝히는 일에 머물지 않는다. 민중신학은 그것을 본보기(paradigm)로 삼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민중해방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그 사명으로 삼는다. 민중신학은 오늘의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우리 민중과 겨레의 해방 실체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하는, 이른바 민중 · 민족해방운동을 그 과제로 삼는 것이다. 남한의 그리스도교는 여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된다.

오늘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우리의 민중 · 민족해방운동의 실체는 무엇인가?

오늘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끊어 말해서 민중자신이다. 예수의 말을 빌리면 "아주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진 계층이다. 예수는 「마지막 심판의 비유」에서 "아주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태오 25 : 40)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민중을 동일시 한 것이다. 이것은 민중이 민중 자신을 해방시킬 그리스도란 뜻이며, 나아가 민중은 민중해방이라는 역사 변혁의 주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그리스도는 민중해방운동에 몸소 참여해서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을 가리킨다. 성서의 말을 빌리면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준 사람이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아 주고, 쫓겨 떠돌아 다닌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마태오 25 : 35-36) 사람들이다. 예를 든다면, 중국이 그리스도는 모택동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중국을 통일하고 중국 인민을 해방시켰다고 한다면 굳이 그를 중국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못할 까닭이 없다. 문제는 민중해방운동을 참으로 이루어냈느냐에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중을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데 있다. 민중 자신이면서 민중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참으로 우리가 바라는 오늘의 그리스도인 것이다. 예수는 그 때 한 사람의 민중으로서 민중의 소리를 대변하고 또 몸소 민중해방운동을 펼쳤던 분이다.

그리고, 한편 민중해방운동의 목표는 민중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간화의 실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중의 인간화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민중을 비인간화하는 악의 실체를 물리쳐야 한다.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 경제 체제이든, 문화 전통이든, 이데올로기이든, 법이든 어떤 것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민중신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맞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겨레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민족의 으뜸가는 과제를 놓고 볼 때 가장 기본되는 악의 실체는 남북의 분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 않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이데올로기에서 그 동안 우리가 겪었던, 어쩌면 지금도 겪고 있는 억눌림과 짓밟힘과 얽매임과 따돌림과 같은 온갖 괴로움은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악은 분단의 상황으로 정당화 되어 왔다. 남한의 군사권력집단이 그 지배를 정당화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언제나 내세웠던 구호가 있었다. 그것은 '안보'와 '반공'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안법이나 반공법으로 구체화했다. 이것은 그대로 분단모순의 대표되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 쪽의 것은 더욱 뚜렷하다. 남이나 북이 무력확장과 같은 전쟁준비에 썼던 돈을 민중(인민)의 사회복지를 위해 썼더라면 민중(인민)이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 결국 우리가 잘 못 산 까닭은 거의 분단모순에서 빚어졌다고 말해서 조금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겨레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분단의 담을 헐고 남과 북

이 하나를 이루는 통일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겨레가 통일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우리 겨레의 목숨이 달려 있다. 통일을 이루어내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겨레의 통일을 이루어낼 것인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겨레이다. 우리 겨레가 통일의 주체이다. 우리 겨레가 앞장서지 않고는 그 누구도 우리의 통일을 이루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나라 안에서도 찾을 수 있고, 나라 밖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미 힘을 가진 계층은 그것이 권력이든 돈이든 그것을 빼앗길까 보아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이고, 이른바 '우방'이라는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에 손상이 될까 보아 통일을 은근히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겨레의 통일은 우리가 모두 주체가 되어 스스로 이루어내는 길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겨레에게는 그럴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이 넉넉히 있다. 그런데 우리 겨레 가운데는 실제로 통일을 바라지 않는 계층도 있는 만큼, 통일의 구심점은 역시 겨레의 주체인 민중에게 둘 수 밖에 없게 된다. 민중계층은 누구나 통일을 열렬히 바라고 있으며 어느 한 사람도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겨레의 통일을 이루어낼 주체를 '민중 · 민족'이라고 말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을 지향하는 남한의 그리스도교 신학은 민중신학과 함께 민족신학 또는 통일신학이 서로 연대해서 통일의 기둥이 되어야 하고 또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남한에서 자기정체성을 확보하는 신학의 길이기도 하다.

3

우리가 우리 겨레의 통일을 이루는 데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이념을 같이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무릇 하나가 되려면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리이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려면 뜻(사상, 이념)이 같아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인간화의 지향'에서 찾고 싶다.

북한이 뿌리내리고 있는 사상은 '주체사상'인데 그 근본이념을 헤아려 보면 무어니 무어니해도 모든 인민들이 사람답게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데 그 본뜻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화의 지향은 남한이라고 해서 다를 수가 없다. 남한은 나름대로 인간화의 실현을 꿈꾼다. 비록 남북이 그것을 실현하는 체제가 다를 뿐, 그 이념에 있어서는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화의 실현은 통일된 나라의 실상이기도 하다. 우리가 통일된 나라를 바라는 것은 우리 겨레가 다 함께 사람답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인간다운 억누름과 짓밟음이 없는, 그래서 설움과 고통과 한(恨)이 없는 통일조국을 바라는 것이다. 소외계층이 없이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 정의와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다. '인간화'는 겨레의 통일에 우선한다. 인간화는 통일의

목적이고, 통일은 인간화의 수단이다. 그런데 남한에서 인간화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로 '민중사상'을 내세운 쪽이다.

민중문학, 민중경제학, 민중사회학, 민중예술 따위가 그것이다. 민중신학은 그 가운데 하나로서 남한의 그리스도교 쪽을 대표하고 있다. 이것은 남한의 그리스도교 안에는 그렇지 않은 쪽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오히려 그것은 '반공'을 앞세워 가진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의 구실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에서 민중신학은 남한의 그리스도교 교회로 하여금 민중의식을 되찾아 본디의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돌아가게 할 사명을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반공의식을 넘어서서 인간화의 실현에 동참하게 하여 겨레의 통일에 이바지 하게 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인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남한의 교회는 전체로 하여금 북한과 몸소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북한의 뜻을 좇는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람답게 사는 것을 그 이상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역사 현장에서 이루자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오늘 사람 이해와 경제이념 쪽에서 남과 북이 공유할 수 있는 인간화의 실상을 한 가지 밝혀 보려고 한다. 아마 주체사상과 민중신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민중(인민)의식과 함께 바로 이 점이 아닌가 한다.

민중신학의 자리에서 보면 그리스도교에서는 사람의 본질을 '주체성'으로 이해한다. 주체성이란 '주인된 몸'이란 뜻으로, 사람은 누구나 그 자신이 그의 임자(주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서에서 확인한다.

「창세기」라는 문서에 따르면, 신은 그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한다. '신의 형상'이란 사람의 존귀함과 세계 지배권을 상징한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로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신으로부터 위임 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또한 예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마르코 2 : 28)고 선언했다.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때 유대교의 의식과 관례와 전통과 법과 권위 따위 곧 모든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예수의 선언은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는 사실을 뚜렷하게 내세운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예수가 말한 '사람'은 그말의 앞뒤 관계(context)로 보아서 사람 일반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민중(인민)'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선언은 "민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는 말로 풀이될 수 있다. 이 생각은 "사람(인민)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그 밑동에서 서로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예수가 사람의 주인됨을 가장 확실하게 들어낸 대목이 있다. 그것은 예수가 하느님을 '주(主, adonai)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abba)'라고 불렀다는 사실이다. '주'라는 말이 봉건체제에서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썼던 호칭이라고 볼 때, 예

수는 자신을 결코 신의 '노예'로 보지 않고 신의 '아들'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들'이란 아버지의 위엄과 권리를 그대로 상속하는 존재로서 '자유의 사람'임을 상징한다. 따라서 예수의 호칭 속에는 "사람은 노예가 아니고 주인(자유의 사람)이다."는 사람 이해가 담겨 있는 것이다. 사람은 신에 대해서까지 노예가 아니고 주인인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도 예수의 사람 이해는 북한의 주체로운 사람 이해와 서로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처럼 민중신학과 주체사상 사이에 사람 이해가 같다는 것은 대화와 협력의 중요한 바탕이 되어 겨레의 통일을 이루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둘째로 민중신학이나 주체사상이 인간화를 지향한다고 할 적에, 사람답게 살아야 할 첫째가는 대상은 민중(인민)이다. 민중이야말로 인간 소외 계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중신학이나 주체사상은 궁극으로 민중(인민)의 해방(인간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두 사상은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민중해방'의 내용과 그 실현방법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민중신학은 그 이름이 가르키듯이 '민중'을 위하는데 철저한 편향성을 지닌다. 민중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민중해방도 민중신학의 첫째가는 목표가 된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브르즈와'는 민중을 통해서 비로소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으로 해방을 얻어야 할 계층은 '민중'이 아니고 '브르즈와'라고 할 수 있다. 예수는 "부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부자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 (민중)에게 다 나누어 주고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처럼 사는 길이라고 했다(마태 17 : 21~24).

민중신학은 이 말에 따라 철저하게 민중을 위주로 하는 '민중당파성'을 지향한다. 여기에서 아마도 민중신학은 주체사상과 동일성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중신학이 중국이나 북한에 가면 '인민신학'이 될지 모른다.

셋째로, 민중신학의 이해에 따르면, 예수의 경제의식이나 처음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경제실천은 한마디로 "힘 닿는 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데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민중)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 나라의 실현을 앞당기는 운동을 펴면서 그 나라의 경제이념을 "힘 닿는 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데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예수는 하늘 나라의 질서를 밝히기 위해서는 「포도원 일꾼」의 이야기(마태 20 : 1~15)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점을 잘 들어내고 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와서 하루종일 일하는 사람에게나, 낮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나 꼭 같이 한 데나리온을 하루품삯으로 주었다. 그 때 한 데나리온이란 돈은 사람이 겨우 하루를 살 수 있는 생계비였다. 문제는 하루종일 일한 사람이나 저녁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나 꼭 같이 하루의 생계비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한 만큼 삯을 받는다는 자본주의 경제관념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이다. 그런

데 왜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꼭 같은 액수의 돈을 받았을까? 그것은 일한 댓가(임금)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 수 있는 생계비로 받은 것이다. 사람이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아니, 일을 못하든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이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품삯으로 준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를 준 것이다. "임금이란 일의 댓가가 아니라 생계비이다"는 사상은 보통의 경제관념을 뛰어넘는다. 이것이 "힘 닿는 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예수의 소유평등의 경제원리이다.

이 원리는 처음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제대로 실천되었다. 이른 바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살림살이가 그것이다. 성서에 따르면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사도행전 2 : 44-45).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4 : 32, 34)

이것이야 말로 사유재산 없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살림살이의 본보기이다. 이러한 경제체제를 무엇이라고 할 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닌 게 분명하다. 그것은 사회주의 이념이나 공산주의 정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자 호세 미란다(Jasé Miranda)는 그것을 아예 '공산주의'라고 이름 붙이고, 「그리스도교는 공산주의다」라고까지 천명했다. 그리고 그는 이 주제의 글에서 그리스도교가 공산주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가 그리스도교를 선택했다고 말한다.

예수 시대나 처음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말은 없었지만, 이 둘 가운데 한 쪽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예수와 그의 처음 공동체는 분명히 사회주의 쪽을 선택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이데올로기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고루 잘 살 수 있는 인간화의 실현에 있는 것이다.

어쨌든 "힘 닿는 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가지는 이 경제원리는 남한의 민중신학이 겨레의 통일을 위해 경제 마당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인간화의 실현이라는 뜻에서 순수성을 가진다.

4

이제까지 우리는 남한의 그리스도교 신학이 우리 겨레의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물음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쪽에서 대답하려고 했다. 첫째는 남한의 그리스도교는 민중신학(민족신학 · 통일신학)에서 그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통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남한의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이해함으로써, 그리고 "힘 닿는 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경제질서를 통해서

인간화를 실현함으로써 남과 북이 뜻을 함께 하여 우리 겨레의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서로 대화 협력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남한의 그리스도교는 북한 교회와 합의하여 1995년을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하고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1988)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교회대표들과 통일을 숙의해 오고 있다. 한편 교인들에게는 통일의식을 북돋우면서 통일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역사 숙원임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정부당국에는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없앨 것을 재촉하고 「남북 7. 4공동성명」(1972)이나 「남북합의서」(1991)를 준수할 것을 일깨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통일공화국헌법」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리스도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꾼들이 주체가 되어 「사랑의 집」을 장만하여 끝내 전향하지 않았던 가석방 장기수들을 돌보고 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남한의 그리스도교와 그 신학(민중신학, 민족신학, 통일신학)은 우리 겨레의 통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힘을 쏟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더욱 힘을 쏟을 것이며 그리고 그것으로써 조금이나마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

집필자 소개

김 민 수
대한민국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 진 우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언어학과 및 동양어문학과 교수

엄 성 흠
중국 중앙민족학원 민족연구소 동북내몽고연구소 주임

윤 여 민
미국 Seton Hall University 교수

K.A. Namkung
미국 Seton Hall Univirsity, 미국-동북아시아연구프로젝트 주임

고 용 수
일본 甲南대학 조교수

김 진 현
대한민국 매일경제신문 회장

헬가 · 피히트
독일 Humboldt대학 교수

이 병 원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민족음악학교수

임 정 혁
일본 조선대학교 교원

박 승 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문제연구회 회장, 교수

강 명 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대학습당 연구사,

리 천 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농업대학 교수

김 영 두
대한민국 원광대학교 교수

김 도 종
대한민국 원광대학교 철학과 교수

오 형 근
대한민국 동국대학교 불교과 교수

노 태 구
대한민국 경기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송 기 득
대한민국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KIM Min-Su
Emeritus Professor, Korea University (ROK)

KIM Chin W.
Professor of Linguistics and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University of Ilinois at Urbana-Champaign (USA)

YANG Sheng Qin
Director of Northeast China and Inner Mongolia Research Section, Institute of Natinalities Studies,
Central University of Nationalites (RPC)

K.A. Namkung
Director, Poeject on US/E. Asia, Seton Hall University (USA)

Yeomin Yoon
Prefessor, Seton Hall University (USA)

KO Yong Soo
Assistant Professor, Konan University (Japan)

KIM Jin-Hyun
Chairman, Korea Economics Daily (ROK)

Helga Picht
Professor, Humboldt University (Germany)

Byongwon Lee
Professor of Ethnomusicology,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USA)

IM Jeong Hyok
Lecturer, Depatment of Physics, Korea University (Japan)

PARK Sung Dok
Chairman, Society for the Study of National Problems (DPRK)

KAGN Myog Chol
Senior Researcher of Grand People's Study House (DPRK)

LEE Chon Su
Professor, Agricultural College of Wonsan (DPRK)

KIM Young-Doo
Professor, Won Kwang University (ROK)

KIM Do-Jong
Professor, Won Kwang University (ROK)

OH Hyung-Kun
Professor, Buddhist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ROK)

NOH Tae-Goo
Professor, Kyog Gi University (ROK)

Song Kee-Deuk
Professor, Mokwon University (ROK)

편 집 후 기

우리 국제고려학회는 1990년에 창설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코리아학이 포괄하는 여러 분야의 국제학술회의를 다종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개최하여 코리아학의 진흥에 많은 힘을 써왔으며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사이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왔습니다. 또한 그 동안 우리 본부사무국에 편집부가 구성되고 학회지창간의 준비를 다그치면서 지난 봄에 회원 여러분들에게 학회지를 발간할데 대하여 알려 그에 실릴 론문을 모집하였습니다.

지난 8월 오사까에서 열렸던 학회운영위원회에서 학회지를 〈국제고려학〉(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으로 명명할것이 정식으로 결정되였으며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하여 오늘 드디여 창간호를 세상에 내게되였습니다.

이 론문집은 두부분으로 구성되여 있는데 첫째부분에는 회원 여러분들이 기고한 론문들을 주로 실었으며 둘째부분에서는 지난 2월에 중국 북경에서 우리 학회가 주최한 학술토론회 〈제2차 통일을 지향하는 철학〉에서 발표된 론분들이 실렸습니다.

론문투고에 관한 우리 학회의 독자적인 규정이 아직 없었으므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창간호를 편집하였습니다. 첫째로, 맞춤법에 관해서는 남북의 량쪽을 인정하고 필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둘째로, 원고작성상의 규정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 필자에게 맡긴다. 셋째로, 한자에 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될수록 적게 쓰는것이 바람직하나 원고에 한자가 많이 섞여있어도 그대로 둔다. 또한 중국, 일본, 코리아에서 현재 쓰이는 한자는 형태상차이가 있으나 (례컨데 簡体文字, 常用漢字등)어느 하나에 통일하지않고 필자가 쓴대로 한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라 편집을 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편집부가 약간 수정을 가하였습니다.

편집을 맡은 저자신의 힘이 부족한 탓으로 이 창간호에는 개선하여야 할 점들이 많이 있을것인데 우리 편집부는 앞으로 보다 훌륭한 학회지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분투할것입니다.

학회지를 창간함에 있어서 수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들에게 따뜻한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여러 선생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수)

국 제 고 려 학

발행일 : 1994년 12월 1일

편집인 : 김성수

발행처 : 국제고려학회
日本国大阪府八尾市楽音寺6丁目10番地
大阪経済法科大学内
TEL 0729(41)8211 内線.432,434
FAX 0729(41)4665

인 쇄 : KBS(株) TEL 06(716)5665

CONTENTS

CUI Ying Jiu — Foreword 1

■Articles

KIM Min-Su — *On the base model of CHU Shi-Gyeung's Mal-mo-i (Korean Dictionary)* 3
KIM Chin W. — *Language and Ideology: The case of Korean dictionaries* 19
YANG Sheng Qin — *On Korean Nationality's Acitivities in Lia Dong (China)* 29
Yeomin Yoon — *Korean Dumping in the United States: A Ficititious Crime?* 40
K.A. Namkung — *Interdependance in Northeast Asia: The Role of North Korea 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59
KO Yong-Soo —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Chaebols in South Korea and "Democratization"* 69
KIM Jin-Hyun — *The Role of Korea & Japan in A New Era of Northeast Asia.* 84
Helga Picht — *Problems of Researching History of Korean Philosophie* 97
Byongwon Lee — *Social Characteristics of Korean Musical Culture* 110
IM Jeong Hyok — *Feature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15-16th Century Korea* 120

■Special Edition Papers presented during the Second Symposium "Reunification-oriented Philosophy" (Beijing, 20-23 Februry, 1993)

PARK Sung Dok — *Juche-based Views of the Nation and Some Problems Korean Reunification is facing* 129
KANG Myong Chol — *Korean Reunification and the Active Roles of the Masses* 146
LEE Chon Su — *Great Unity of Our Entire Nation is the Right Way to Save Our Nation* 158
KIM Young-Doo — *Sang-Seng Philosophy & Reunification view of Won Buddhism* 170
KIM Do-Jong — *A philosophical aspect of the national problem -The Altered mode of Production & Cultural Productivity-* 177
OH Hyung-Kun — *National Consciousess of Community and the Theory of Harmony* 187
NOH Tae-Goo — *The Peace-Views of the Dong-Hak Revolution -The Dialectics of Creation & Evolution-* 195
SONG Kee-Deuk — *Minjung Theology and Reunification of Korea,* 219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Editor: KIM Song Sou
Published by: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6-10, Gakuonji, Yao 581, Osaka Japan
Printed by: KBS CO., LTD.
Issued: December 1st 1994